

일본 농업현황과 수입제도

2008.12

Agriculture in Japan



목 차

I 경지 / 17

1. 경지	19
1-1. 총면적 및 농경지면적	19
1-2. 연도별 농경지 면적 및 경지율	19
1-3. 지역별 농경지 면적 및 경지율	20
1-4. 논·확장 및 괴폐면적	21
1-5. 밭·확장 및 괴폐면적	22
1-6. 일본의 농업추세	23

II 인구 및 가구 / 27

1. 인구동향	29
1-1. 연도별·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29
1-2. 인구동태(출생·사망)	30
1-3. 장래추계인구	31
1-4. 시부·군부별 인구현황	31
2. 고용현황	32
2-1. 노동력과 고용	32
2-2. 산업별 취업자수	32
3. 농가인구	33
3-1. 연령별·성별 농가인구	33
3-2. 농림업 취업자수	34
3-3. 종사형태에 따른 농업인구	34

4. 농가호수	35
4-1. 총 농가호수	35
4-2. 농업 경영체수	35
4-3. 경지 종류별 농가호수 및 1호당 면적	36
4-4. 농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호수	36
4-5. 전국 농업경영조직별 농가호수	37

III 농림어업 경제 / 39

1. 주요 경제지표	41
1-1.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41
1-2. 경제 성장률	41
1-3. 국민분배소득	42
2. 연도별 농업·식료 관련 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43
2-1. 농업·식료 관련 산업 국내총생산	43
2-2. 농업·식료 관련 산업 국내생산액	44
2-3. 농업·식료 관련 산업 부가가치	45
3. 농림어업 생산액	46
3-1. 농업 총생산액	46
3-2. 농업 생산액	47
3-3. 임업 생산액	48
3-4. 어업 생산액	49
4. 농림어업 생산지수	52
4-1. 농림어업 생산지수 총괄	52
4-2. 농업 생산지수	52
4-3. 지역별 농업 생산지수	54
4-4. 임업 생산지수	56
4-5. 어업 생산지수	56

5. 물가지수	57
5-1. 국내기업 물가지수	57
5-2. 수입수출 물가지수	58
5-3. 소비자 물가지수	59
5-4. 농업 물가지수	60

N 농가 경제 / 61

1. 농가소득	63
1-1. 농가소득(논농사)	63
1-2. 농가소득(밭농사)	64
2. 농가경영비	65
2-1. 농가경영비(논농사)	65
2-2. 농가경영비(밭농사)	67
3. 농가경영수지	69
3-1. 농가경영수지(논농사)	69
3-2. 농가경영수지(밭농사)	70
4. 가계 지출	71
4-1. 한 세대당 평균 가계 지출	71
4-2. 가계의 식료 지출	72
4-3. 근로자 세대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수	73
5. 식료자급률	74
5-1. 식료자급률	74
5-2. 식료수급표	75

V 국제수지 및 무역 / 79

1. 국제 수지	81
----------------	----

2.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82
2-1. 총괄 및 무역수지	82
2-2. 품목별 수출실적	83
2-3. 품목별 수입실적	84
2-4. 국가별 수출실적	85
2-5. 국가별 수입실적	86
2-6.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상대국가 순위	87
2-7.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상대국가 순위	88
3. 대 한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	89
3-1.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	89
3-2. 대 한국 주요 수입품목	89
4. 농산물 수출입 동향	90

V 농 업 / 95

1. 쌀	97
1-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97
1-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98
1-3. 2008년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예상치	100
1-4. 2007년도 논벼의 피해면적 및 피해량	101
1-5. 수급동향	102
1-6. 가격동향	103
1-6-1. 생산자가격	103
1-6-2. 소매가격	104
2. 밀 · 보리	105
2-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05
2-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06
2-2-1. 밀	106
2-2-2. 보리	107

2-3. 수급동향	111
2-4. 가격동향	112
2-4-1. 생산자가격	112
2-4-2. 소매가격	113
3. 콩 · 팥	114
3-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14
3-1-1. 콩	114
3-1-2. 팥	114
3-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15
3-2-1. 콩	115
3-2-2. 팥	116
3-3. 수급동향	117
3-4. 가격동향	118
3-4-1. 생산자가격	118
3-4-2. 소매가격	119
4. 채소류	120
4-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20
4-1-1. 재배면적 및 수확량	120
4-1-2. 주요 채소 생산량	124
4-1-3. 계절별 주요 채소 수확량 및 출하량	125
4-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26
4-2-1. 무	126
4-2-2. 당근	128
4-2-3. 감자	130
4-2-4. 배추	132
4-2-5. 파	134
4-3. 수급동향	136
4-4. 가격동향	137
4-4-1. 생산자가격	137
4-4-2. 도매가격	139
4-4-3. 소매가격	140

4-5. 주요 채소류 재배시기	143
5. 과실류	144
5-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44
5-1-1. 재배면적 및 수확량	144
5-1-2. 주요 과실 생산량	147
5-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48
5-2-1. 사과	148
5-2-2. 밀감	149
5-2-3. 일본배	150
5-2-4. 포도	151
5-2-5. 복숭아	152
5-2-6. 감	153
5-3. 수급동향	154
5-4. 가격동향	155
5-4-1. 생산자가격	155
5-4-2. 도매가격	157
5-4-3. 소매가격	158
6. 화훼류	160
6-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60
6-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161
6-2-1. 국화	161
6-2-2. 카네이션	162
6-2-3. 장미	163
6-2-4. 백합	164
6-3. 출하량	165
6-4. 가격동향	166
6-4-1. 생산자가격	166
6-4-2. 도매가격	167
6-4-3. 소매가격	168

7. 가공 농산물	169
7-1. 주요 품목별 생산현황	169
7-1-1. 스프류	169
7-1-2. 향신료	170
7-1-3. 소스류	171
7-1-4. 엑기스류	172
7-1-5. 조미료	173
7-1-6. 식육가공품	175
7-2.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출입 현황	176
7-2-1. 조미료	176
7-2-2. 식육가공품	176
7-2-3. 유지	177

VI 축 산업 / 179

1. 쇠고기	181
1-1. 사육동향	181
1-1-1. 젖소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181
1-1-2. 젖소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182
1-1-3. 젖소 규모별 사육두수	183
1-1-4. 육우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184
1-1-5. 육우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185
1-1-6. 육우 규모별 사육두수	186
1-1-7. 육우 출생두수	187
1-2. 도축동향	188
1-3. 쇠고기 연도별 생산량	189
1-4. 수급동향	190
1-5. 가격동향	191
1-5-1. 생산자가격	191
1-5-2. 도매가격	192
1-5-3. 소매가격	193

2. 돼지고기	194
2-1. 사육동향	194
2-1-1.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194
2-1-2. 비육돈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195
2-1-3. 비육돈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두수	196
2-1-4. 번식용 암돼지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197
2-1-5. 번식용 암돼지 규모별 사육두수	198
2-2. 도축동향	199
2-3. 돼지고기 연도별 생산량	200
2-4. 수급동향	201
2-5. 가격동향	202
2-5-1. 생산자가격	202
2-5-2. 도매가격	203
2-5-3. 소매가격	204
3. 닭고기	205
3-1. 사육동향	205
3-1-1. 닭 사육호수 및 사육수수	205
3-1-2. 채란용 암탉 사육수수 규모별 사육호수	206
3-1-3. 채란용 암탉 규모별 사육수수	207
3-2. 도축동향	208
3-3. 닭고기 연도별 생산량	209
3-4. 수급동향	210
3-5. 가격동향	211
3-5-1. 생산자가격	211
3-5-2. 도매가격	212
3-5-3. 소매가격	213
4. 원유 및 유제품	214
4-1. 생산동향	214
4-1-1. 생유 및 음용 우유 생산량	214
4-1-2. 유제품 생산량	215
4-2. 수급동향	216

4-3. 가격동향	217
4-3-1. 생산자가격	217
4-3-2. 소매가격	218

VI 임업 / 219

1. 임야면적	221
1-1. 지역별 임야면적	221
1-2. 삼림계획대상 삼림 축적	222
1-3. 재촌자·부재촌자별 사유림면적	223
2. 육림·벌채 현황	224
2-1. 수종별 인공조림면적 추이	224
2-2. 재조림, 확대조림별 인공조림 면적	224
2-3. 입목벌채면적	225
2-4. 입목벌채재적	225
2-5. 수종·수요부문별 소재 생산량	226
3. 품목별 현황	227
3-1. 특용 임산물	227
3-1-1. 생산동향	227
3-1-2. 수급동향	231
3-1-3. 가격동향	232
3-2. 목재	233
3-2-1. 생산동향	233
3-2-2. 수급동향	238
3-2-3. 가격동향	239
3-2-4. 유통동향	241

IX 수 산 업 / 243

1. 어업인구	245
1-1. 어업취업자수	245
1-1-1. 성별·연령별 어업취업자수	245
1-1-2. 고용별 어업취업자수	246
1-1-3. 해상작업 종사일수별 어업취업자수	247
1-2. 어업세대수	247
1-3. 성별 어업세대원수	247
2. 어선현황	248
2-1. 형태별 어선수	248
2-2. 총 톤수별 해수동력 어선수	248
3. 생산동향	249
3-1. 어획동향	249
3-1-1. 연도별 어획량	249
3-1-2. 지역별 어획량	250
3-1-3. 주요 어종별 어획량	256
3-2. 양식현황	258
3-2-1. 해면 양식업 어종별 생산량	258
3-2-2. 내수면 어업·양식업 어종별 생산량	259
4. 수산가공 현황	260
4-1. 수산가공품 품목별 생산량	260
4-2.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	262
5. 수산물 수급 및 유통현황	263
5-1. 품목별·용도별 출하량	263
5-2. 어패류 수급동향	265
5-3. 가격동향	266
5-3-1. 주요 수산물 시장평균가격	266
5-3-2. 주요 수산물 소매가격	270

1. 식품산업현황	275
1-1. 식료수급표	275
1-2.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량, 발생억제량, 감량화량, 재생이용량	276
1-3. 가계식품소비	277
1-4. 출하 및 판매동향	278
1-4-1. 식품 제조업 출하액	278
1-4-2. 식품도매업 판매액	279
1-4-3. 식품소매업 판매액	280
1-5. 외식산업 시장규모	281
2. 식품유통현황	282
2-1. 식품 매입량	282
2-1-1. 농산물	282
2-1-2. 축산물	289
2-1-3. 수산물	295
2-2.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	297
2-2-1.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식품판매금액 추이	297
2-2-2. 통신판매 매상액 추이	297
2-2-3. 주요 채소 판매동향	298
3. 유통경로별 비용	299
3-1. 청과물	299
3-2. 수산물	300
3-2-1. 산지도매업자 유통경비	300
3-2-2. 산지출하업자 유통경비	300
3-2-3. 중도업자 유통경비	301
3-2-4. 소매업자 유통경비	301
4. 해외진출기업의 식품산업 활동실태	302
4-1. 현지법인 매상액	302
4-2. 현지법인 식품매상액 규모별 법인 수	303

4-3. 현지법인의 총 대상액 규모별 법인 수	304
4-4. 현지법인의 일본측 출자비율별 법인 수	305
4-5. 현지법인의 상시종업자수 규모별 법인 수	306
5. 식품 안전	307
5-1. HACCP	307
5-1-1. HACCP에 의한 식품안전성 확보	307
5-1-2. HACCP 도입시기	308
5-2. 트래서빌리티 시스템 도입상황	309
5-3. 식품에 관한 안심·불안감 관련 조사	310
5-3-1. 농축수산물·수입농산물	310
5-3-2. 제조, 가공과정·유통과정	311
5-3-3. 소매점·외식점포·가정	312
6. 유기농산물의 인증·등급	314
6-1. 유기농산물 등 인증업자의 인증건수	314

XI 수입제도 / 317

1. 품목별 개요	319
1-1. 산 동물	319
1-2. 육류 및 동 조제품	323
1-3. 기타 동물제품	329
1-4. 수산물 및 동 조제품	333
1-5. 유제품류	337
1-6. 식물, 수지 및 식물성 액즙 등	341
1-7. 채소, 과일 및 동 조리품	344
1-8. 곡물 및 동 조제품	349
1-9. 당류, 코코아 및 동 조제품	354
1-10. 향신료	357
1-11. 유지종자 및 동 조제품	359
1-12. 각종 조제식료품	362

1-13. 물 · 알콜류 · 식초	365
2. 농수산물의 수입심사 · 검사	369
3. 가축전염병예방법	372
4. 광견병예방법	375
5. 워싱턴조약	378
6. 검역법	382
7. 식물방역법	385
8.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	397
9. 식품위생법	400
10.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407
11. 주세법	412
12. 유기식품	415
13. 유전자조작작물	422
14. 농약단속법	431
15. 식품안전기본법	434
16. 식육기본법	437

1. 경지

1-1. 총면적 및 농경지면적

단위: 천 ha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면적	37,788	37,789	37,790	37,791	37,791	37,792	-
농경지면적	4,794	4,762	4,736	4,714	4,692	4,671	4,650
1)경작지율(%)	12.9	12.8	12.7	12.6	12.6	12.5	-

자료원: 총면적은 국토교통성 국토지리원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 시구정촌(市區町村)별 면적조사’(각 해의 10월 1일 시점). 경지면적 및 경지율은 농림수산성 통계부.

주: 1)은 당해의 경작지면적을 전해의 총면적(하보마이열도, 시코탄(色丹),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樺捉) 및 독도를 제외한다)으로 제하여(나누어서)산출

1-2. 연도별 농경지 면적 및 경지율

단위: ha

연도	계			논			밭			수전율 (水田率)	경지율
	면적	전년대비		면적	전년대비		면적	전년대비			
		차이	비율		차이	비율		차이	비율		
1998	4,905,000	△44,000	99.1	2,679,000	△22,000	99.2	2,226,000	△22,000	99.0	54.6	13.2
1999	4,866,000	△39,000	99.2	2,659,000	△20,000	99.3	2,207,000	△19,000	99.1	54.6	13.1
2000	4,830,000	△36,000	99.3	2,641,000	△18,000	99.3	2,189,000	△18,000	99.2	54.7	13.0
2001	4,794,000	△36,000	99.3	2,624,000	△17,000	99.4	2,170,000	△19,000	99.1	54.7	12.9
2002	4,762,000	△32,000	99.3	2,607,000	△17,000	99.4	2,156,000	△14,000	99.4	54.7	12.8
2003	4,736,000	△26,000	99.5	2,592,000	△15,000	99.4	2,144,000	△12,000	99.4	54.7	12.7
2004	4,714,000	△22,000	99.5	2,575,000	△17,000	99.3	2,139,000	△5,000	99.8	54.6	12.6
2005	4,692,000	△22,000	99.5	2,556,000	△19,000	99.3	2,136,000	△3,000	99.9	54.5	12.6
2006	4,671,000	△21,000	99.6	2,543,000	△13,000	99.5	2,128,000	△8,000	99.6	54.4	12.5
2007	4,650,000	△21,000	99.6	2,530,000	△13,000	99.5	2,120,000	△8,000	99.6	54.4	12.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경지면적’

1-3. 지역별 농경지 면적 및 경지율

단위: ha

구 분	논밭				수전률 (%)	경지율 (%)
	계		본지	밭둑		
	면적	전년대비				
전국	4,650,000	△21,000	4,460,000	190,400	54.4	12.5
홋카이도	1,163,000	△3,000	1,146,000	17,600	19.4	14.8
도부현	3,487,000	△19,000	3,314,000	172,800	66.1	11.8
도호쿠	877,500	△3,000	841,900	35,600	71.4	13.1
호쿠리쿠	321,300	△1,100	306,800	14,500	89.7	12.7
간토	763,600	△4,700	737,500	26,100	55.3	15.1
도카이	277,000	△2,800	264,100	12,900	59.0	9.4
긴키	237,800	△1,100	222,200	15,600	77.5	8.7
주고쿠	255,300	△1,300	231,700	23,600	76.7	8.0
시코쿠	148,800	△1,300	140,300	8,560	63.4	7.9
규슈	566,600	△3,400	532,000	34,600	57.9	13.4
오кина와	39,100	△100	37,700	1,390	2.2	17.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경지면적'

단위: ha

구 분	논				밭					
	보통		특수		보통		과수지		목초지	
	면적	전년대비 차이	면적	전년대비 차이	면적	전년대비 차이	면적	전년대비 차이	면적	전년대비 차이
전국	2,525,000	△13,000	4,810	△10	1,172,000	△1,000	323,900	△4,400	624,000	△3,400
홋카이도	226,000	△800	-	-	413,600	1,200	3,290	△70	520,200	△2,800
도부현	2,299,000	△12,000	4,810	△10	758,700	△1,700	320,700	△4,300	103,700	△600
도호쿠	626,100	△2,000	373	4	135,100	100	52,000	△700	63,900	△400
호쿠리쿠	287,700	△1,100	373	△8	25,200	200	5,780	△60	2,260	△30
간토	420,500	△3,200	1,980	0	275,500	△600	55,500	△600	10,100	△200
도카이	162,900	△1,700	620	△1	61,800	△500	48,700	△700	2,890	△80
긴키	184,400	△900	58	△1	17,900	0	34,800	△200	570	△11
주고쿠	195,300	△1,400	356	0	37,400	200	18,600	△200	3,610	0
시코쿠	93,700	△600	585	△4	17,100	100	36,700	△900	657	△1
규슈	327,500	△1,500	467	6	158,100	△1,000	66,500	△1,000	14,000	0
오кина와	879	5	-	-	30,500	△200	2,020	20	5,730	5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경지면적'

1-4. 논의 확장 및 괴폐면적

단위: ha

연도	확장 (증가 요인)				괴폐 (감소 요인)				
		개간	복구	논밭 전환		자연 재해	택지 등	경작 포기	논밭 전환
1998	232	3	102	127	22,500	47	7,390	5,710	3,460
1999	1,990	6	1,900	91	21,900	2,420	6,550	4,940	3,270
2000	1,420	9	1,320	93	19,400	912	6,530	4,550	3,350
2001	199	22	72	105	18,000	56	5,590	5,120	3,150
2002	290	6	141	143	17,100	172	5,180	4,410	3,550
2003	353	5	96	252	15,100	26	4,540	3,430	3,730
2004	588	13	507	68	17,300	689	4,370	3,230	4,760
2005	464	1	260	203	19,800	2,560	4,120	3,020	5,840
2006	1,770	33	1,660	80	14,800	41	4,450	3,010	4,690
2007	643	42	568	33	13,700	44	4,610	3,000	3,56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경지 및 재배면적통계'

1-5. 밭의 확장 및 괴폐면적

단위: ha

연도	확장 (증가 요인)				괴폐 (감소 요인)				
		개간	복구	논밭 전환		자연 재해	택지 등	경작 포기	논밭 전환
1998	5,930	2,440	16	3,460	27,500	6	5,880	17,400	127
1999	5,540	2,210	65	3,270	24,500	112	5,080	15,100	91
2000	5,820	2,340	32	3,350	23,700	62	4,740	15,000	93
2001	4,870	1,690	28	3,150	23,800	266	4,160	15,800	105
2002	5,330	1,730	51	3,550	19,800	17	3,830	12,600	143
2003	5,490	1,740	19	3,730	17,000	4	3,430	10,900	252
2004	9,230	2,180	626	4,760	14,700	695	3,230	8,140	68
2005	10,800	2,230	139	5,840	13,800	87	3,120	8,070	203
2006	6,910	2,080	140	4,690	14,200	11	3,430	8,440	80
2007	5,300	1,720	18	3,560	13,600	12	3,790	7,410	3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경지 및 재배면적통계'

1-6. 일본의 농업추세

□ 취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농업

- 일본의 농업은 경지면적의 감소 및 경작 포기면적의 증가,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감소·고령화, 아울러 농업구조의 취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일본의 농가 1호당 농지면적은 1.8ha(2006년)으로 약 40년 전에 해당하는 1965년(1.1ha)과 비교했을 때 비록 증가하기는 했으나 타 국가와 비교하면 EU의 9분의 1, 미국의 99분의 1, 호주의 1,902분의 1 수준으로 큰 격차가 있음
- 일본 농림어업의 산출액은 10조 3,291억 엔으로 이 가운데 농업 총 산출액은 1984년 11조 7,171억 엔을 기준으로 정점에 오른 후 1985년 이후 쌀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여 2006년에는 8조 2,900억 엔까지 감소하였음. 이러한 감소는 1985년 이후의 생산량 감소 및 1990년 이후의 가격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품목별 산출액 규모는 축산물이 가장 크고 이어서 채소, 쌀 순서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작 포기면적의 증가

- 최근 10년간 일본의 경작 포기 면적율은 1995년 6%에서 2005년 10%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경지 포기 면적율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주고쿠지방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작 포기면적은 38.6만ha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가 및 자급적 농가의 경작 포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경작포기지 면적율은 산간농업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농가 규모 확대 및 축소 경향

- 최근 일본은 경영경지가 5ha 이상에 해당하는 농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5ha 이상에서 5ha 미만으로 경영경지가 축소된 농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벼농작 단일 경영농가를 3가지로 세분화해본 결과 5ha 미만 및 5~10ha 부터 상위 계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남과 동시에 10ha이상 내지 및 5~10ha층으로부터 하위 계층으로의 축소 경향이 나타남
- 경영하는 농지의 규모를 확대 내지 축소한 경험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규모를 확대한 농가의 경우 농지를 물려받길 원하여 규모를 확대했다는 회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진보를 통해 생산효율이 높아졌다는 이유가 많았음. 한편 규모를 축소한 바 있는 농가는 고령화로 노동투입량이 감소한 이유와 농산물가격 및 단위면적당 수익이 저조하기 때문 이라고 회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 상기 조사를 통해 경영규모가 축소된 주된 요인은 ‘경영주의 고령화’, ‘단위면적당 수익의 저조’, ‘후계자 부재’ 등으로 나타남. 이러한 요인들은 특히 경작면적이 0.5ha 미만이 계층보다는 0.5ha 이상의 경지면적 규모다 다소 큰 계층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경영주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쌀 판매액을 좌우하는 장기적인 쌀 가격 하락 및 쌀 소비량의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후계자 부족현상까지 심화되고 있어 농가의 규모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향후 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의욕 있는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 및 인재확보 등을 위한 충실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전업농가 1호당 순소득(2006년)의 경우 전년대비 1.7%증가한 548만 엔으로 그 가운데 80%를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어 전업농

가의 경우 시장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음. 또한 전업농가는 겸업농가와 비교해서 단기(1년 이내)내에 반환해야 하는 부채 비율이 높아서 매해 안정된 현금 수입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논농사에서는 농업 산출액 가운데 전업농가 비율이 40%로 타 부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치이며 농가호수도 10%에 불과. 또한 채소 및 축산과 관련해서는 규모 확대가 진전되고 있으나 논농사에서는 여전히 소규모의 경영이 대부분이며 신속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농가 규모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1. 인구동향

1-1. 연도별 ·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세대수 - 만 호, 인구 - 만 명

구 분	총면적 (km)	2008				2007			
		총세대수	총인구	남	여	총세대수	총인구	남	여
전국	377,923	5,232	12,706	6,211	6,494	5,171	12,705	6,212	6,492
홋카이도	83,456	261	557	264	292	259	560	266	293
아오모리	8,918	56	143	68	74	56	144	68	75
이와테	15,279	49	136	65	70	49	137	66	71
미야기	6,862	89	233	113	119	88	234	113	120
아키타	11,434	41	113	53	59	41	114	54	60
야마가타	6,652	39	119	57	61	39	120	58	62
후쿠시마	13,783	74	207	101	106	73	208	101	107
이바라키	6,096	109	298	149	149	107	298	149	149
도치기	6,408	74	200	99	00	73	200	99	100
군마	6,363	75	201	99	101	74	201	99	101
사이타마	3,767	282	706	356	350	278	704	355	349
지바	5,082	249	609	305	303	245	605	304	301
도쿄	2,103	616	1,246	618	627	606	1,236	614	622
가나가와	2,416	383	879	444	435	377	874	441	432
니가타	10,789	83	241	117	124	83	242	117	124
도야마	2,046	38	110	53	57	37	111	53	57
이시카와	4,185	43	116	56	60	43	116	56	60
후쿠이	4,189	26	81	39	41	26	81	39	42
야마나시	4,201	33	87	42	44	32	87	43	44
나가노	13,105	80	217	106	111	79	218	106	111
기후	9,768	73	209	102	107	72	210	102	107
시즈오카	7,329	141	377	186	191	139	377	186	191
아이치	5,115	282	718	360	357	277	714	358	356
미에	5,761	71	185	90	95	70	185	90	95
시가	3,794	49	137	67	69	48	137	67	69
교토	4,613	109	255	123	132	108	256	123	132
오사카	1,897	382	867	421	445	377	866	422	444
효고	8,395	229	558	268	289	226	558	268	289
나라	3,691	54	141	67	74	54	142	68	74
와카야마	4,726	42	104	49	54	42	105	50	55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 분	총면적 (km)	2008년				2007년			
		총세대수	총인구			총세대수	총인구		
				남	여			남	여
돗토리	3,507	22	60	28	31	22	60	29	31
시마네	6,707	27	73	34	38	27	73	35	38
오카야마	7,009	76	194	93	1,00	75	195	94	101
히로시마	8,479	120	286	138	1,47	119	286	138	147
야마구치	6,112	63	147	70	77	63	148	70	78
도쿠시마	4,146	31	80	38	42	31	81	38	42
가가와	1,862	40	101	49	52	40	102	49	53
에히메	5,677	62	147	69	77	61	147	70	77
고치	7,105	34	78	36	41	34	79	37	41
후쿠오카	4,844	212	503	238	2,64	210	503	239	264
사가	2,440	30	86	40	45	30	86	41	45
나가사키	4,095	60	146	68	77	60	148	69	78
구마모토	6,403	71	184	87	97	71	185	87	97
오이타	5,099	50	121	57	63	49	121	57	64
미야자키	6,346	49	116	54	61	48	116	55	61
가고시마	9,043	77	173	81	92	77	175	82	92
오키나와	2,275	54	139	68	70	53	138	68	70

자료원: 국토교통성국토지리원 '전국도도부현 시구정촌별 면적조사'

1-2. 인구동태 (출생 · 사망)

단위: 실수 - 만 명, 비율 - %

연도	출생수	사망수	자연증가	인구 동태율(1000분비)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율
1990	122	82	40	10.0	6.7	3.3
1995	119	92	27	9.6	7.4	2.1
2000	119	96	23	9.5	7.7	1.8
2002	115	98	17	9.2	7.8	1.4
2003	112	101	11	8.9	8.0	0.9
2004	111	103	8	8.8	8.2	0.7
2005	106	108	△2	8.4	8.6	△0.2
2006	109	108	8	8.7	8.6	0.1
2007	108	110	△18	8.6	8.8	△0.1

자료원: 후생노동성 장관 관방통계정보부 '인구동태통계'

1-3. 장래추계인구

단위: 실수 - 만 명, 비율 - %

연도	인구				비율		
	계	0~14세	15~64	65세 이상	0~14세	15~64	65세 이상
2005	127,768	17,585	84,422	25,761	13.8	66.1	20.2
2010	127,176	16,479	81,285	29,412	13.0	63.9	23.1
2015	125,430	14,841	76,807	33,781	11.8	61.2	26.9
2020	122,735	13,201	73,635	35,899	10.8	60.0	29.2
2025	119,270	11,956	70,960	36,354	10.0	59.5	30.5
2030	115,224	11,150	67,404	36,670	9.7	58.5	31.8
2035	110,679	10,512	62,919	37,249	9.5	56.8	33.7
2040	105,695	9,833	57,335	38,527	9.3	54.2	36.5
2045	100,443	9,036	53,000	38,407	9.0	52.8	38.2
2050	95,152	8,214	49,297	37,641	8.6	51.8	39.6
2055	89,930	7,516	45,951	36,463	8.4	51.1	40.5

자료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추계인구'

1-4. 시부(市部), 군부(郡部)별 인구현황

연도	인구		인구밀도		면적		시정촌수		
	시부	군부	시부	군부	시부	군부	계	시부	군부
	만 명	만 명	명	명	천 ha	천 ha			
1985	9,289	2,816	902	105	10,305	27,363	3,254	652	2,602
1990	9,564	2,797	922	105	10,388	27,252	3,246	656	2,590
1995	9,801	2,756	933	103	10,509	27,146	3,233	665	2,568
2000	9,987	2,706	943	102	10,600	27,078	3,230	672	2,558
2005	11,025	1,750	607	92	18,179	19,503	2,217	751	1,466

자료원: 총무성통계국 「국세조사」의 결과자료.

주: 각해 10월 1일 시점

2. 고용현황

2-1. 노동력과 고용

단위: 만 명

연 도	1) 노동력 인구	취업자				완전 실업자수		2)유효구인배율	전산업상용노동자수 (2005년=100)		
		전(全)산업			총수	2) 비율	고용 지수		노동 시간 지수	실질 임금 지수	
		농업	임업	어업							
2005	6,650	6,356	253	6	23	294	4.4	0.95	100.0	100.0	100.0
2006	6,657	6,382	244	6	22	275	4.1	1.06	101.0	100.5	99.9
2007	6,669	6,412	246	5	21	257	3.9	1.04	102.8	99.9	99.1

자료원: 총무성 『노동력조사보고』, 후생노동성 『직업안정업무통계』, 후생노동성 『매월근로 통계 조사월보』

주: 1)은 15세 이상 인구가운데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것임.

2)연계치는 원계수임. 월계치는 계절조정을 거친 계수임.

2-2. 산업별 취업자수

단위: 만 명

산업분류	2007	2006	2005
모든 산업	6,412	6,382	6,356
농업	246	244	253
임업	5	6	6
어업	21	22	23
광업	4	3	3
건설업	552	559	568
제조업	1165	1161	1142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33	36	35
정보통신업	197	181	176
운송업	323	324	317
도매·소매업	1113	1113	1122
금융·보험업	155	155	157
부동산업	85	79	75
음식점·숙박업	342	337	343
의료·복지	579	571	553
교육·학습지원업	284	287	286
복합서비스사업	72	75	76
서비스업	933	938	916
공무	226	222	229
분류불가 산업	-	71	74

자료원: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연보', 15세 이상

3. 농가인구

3-1. 연령별 · 성별 농가인구

단위: 천 명

구분		남녀 합계						
		계	39세이하	40~49	50~59	60~64	65~69	70세이상
판매농가		2,986	254	193	440	296	406	1,397
주업농가		988	128	123	268	154	87	228
전업농가 비율		33.1	50.4	63.7	60.9	52.0	21.4	16.3
구성비	판매농가	100.0	8.5	6.5	14.7	9.9	13.6	46.8
	주업농가	100.0	13.0	12.4	27.1	15.6	8.8	23.1
남자								
판매농가		1,389	139	77	177	124	181	692
주업농가		521	79	65	139	75	56	107
전업농가 비율		37.5	56.8	84.4	78.5	60.5	30.9	15.5
구성비	판매농가	100.0	10.0	5.5	12.7	8.9	13.0	49.8
	주업농가	100.0	15.2	12.5	26.7	14.4	10.7	20.5
여자								
판매농가		867	25	61	176	112	146	346
주업농가		362	22	49	121	70	28	71
주업농가 비율		41.8	88.0	80.3	68.8	62.5	19.2	20.5
구성비	판매농가	100.0	2.9	7.0	20.3	12.9	16.8	39.9
	주업농가	100.0	6.1	13.5	33.4	19.3	7.7	19.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2008년 2월 시점

주: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의 농가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 농업소득)로 65세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농가를 의미

3-2. 농림업 취업자수

단위: 만 명

연도	농림업					1)비농림업			
	계	비율(%)	자영업자	가족종업자	고용자	계	자영업자	가족종업자	고용자
2002	268	4.2	129	100	39	6063	541	205	5292
2003	266	4.2	126	101	39	6050	535	195	5296
2004	264	4.2	127	101	36	6064	529	189	5346
2005	259	4.1	125	98	36	6097	525	184	5356
2006	250	3.9	120	87	42	6132	512	160	5430

자료원: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연보', 15세 이상

주: 1)은 분류불능분야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

3-3. 종사형태에 따른 농업인구

단위: 명

구 분	계	농업에 한해 종사	농업과 비농업 종사	비농업에 한해 종사
계	7,290	6,690	600	2,440
39세이하	4,140	3,830	320	1,200
15~19세	540	540	-	90
20~29	2,220	2,060	170	640
30~39	1,380	1,230	150	460
40~49	1,240	1,120	120	410
50~59	1,040	940	100	440
60~64	570	510	60	210
65세이상	310	290	10	190
남자계	3,980	3,630	350	1,030
39세이하	2,400	2,210	190	580
15~19세	420	420	-	40
20~29	1,150	1,060	90	400
30~39	830	730	100	140
40~49	490	440	50	80
50~59	510	450	60	120
60~64	440	400	40	110
65세이상	140	140	-	140
여자계	3,310	3,060	250	1,420
39세이하	1,740	1,620	120	610
15~19세	120	120	-	50
20~29	1,070	990	80	240
30~39	550	510	50	320
40~49	750	680	70	340
50~59	530	490	30	320
60~64	130	120	10	100
65세이상	170	160	10	5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2007년 기준

4. 농가호수

4-1. 총 농가호수

단위: 천호

구 분	총 농가호수			토지소유비농가
	계	판매농가	자급적 농가	
전국	2,521	1,750	770	1,221
홋카이도	52	46	7	18
도부현	2,468	1,704	764	1,203
도호쿠	423	333	90	168
호쿠리쿠	188	143	46	113
간토	553	372	181	247
도카이	269	164	105	146
긴키	245	156	89	113
주고쿠	253	159	94	119
시코쿠	150	101	49	72
규슈	366	262	103	21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주: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 엔 이상의 농가

4-2. 농업 경영체수

단위: 천 개

구 분	2008	2007	증감률	구성비	
				2008	2007
전국	1,804	1,867	△ 3.4	100.0	100.0
홋카이도	48	50	△ 4.0	2.7	2.7
도부현	1,756	1,817	△ 3.4	97.3	97.3
도호쿠	339	353	△ 4.0	18.8	18.9
호쿠리쿠	147	154	△ 4.5	8.1	8.2
간토	384	396	△ 3.0	21.3	21.2
도카이	169	174	△ 2.9	9.4	9.3
긴키	162	164	△ 1.2	9.0	8.8
주고쿠	164	171	△ 4.1	9.1	9.2
시코쿠	104	107	△ 2.8	5.8	5.7
규슈	272	281	△ 3.2	15.1	15.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4-3. 경지 종류별 농가호수 및 1 호당 면적

단위: 농가호수-천호, 면적-ha

구 분	경영경지		논		밭		과수지	
	농가호수	1호당면적	농가호수	1호당면적	농가호수	1호당면적	농가호수	1호당면적
판매농가	1,750	1.87	1,544	1.23	1,102	1.06	340	0.61
주업농가	365	4.85	277	2.71	243	3.76	95	1.15
주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20.9	-	17.9	-	22.1	-	27.9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2007년 기준

주: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 농업소득)로 65세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농가를 의미

4-4. 농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호수

단위: 천호

구 분		계	100만엔 미만	100~300	300~500	500~700	700만엔 이상
판매농가		1,750	1,017	364	114	65	191
주업농가		365	37	59	57	43	170
주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20.9	3.6	16.2	50.0	66.2	89.0
구성비	판매농가	100.0	58.1	20.8	6.5	3.7	10.9
	주업농가	100.0	10.1	16.2	15.6	11.8	46.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2007년 기준

주: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 농업소득)로 65세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농가를 의미

4-5. 전국 농업경영조직별 농가호수

단위: 천 호

구 분	판매가 있었던 농가	단일경영					
		계	벼농사	논농사	노지채소	시설채소	
판매농가	1,645	1,279	861	61	79	52	
주업농가	387	255	66	18	30	34	
주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23.5	19.9	7.7	29.5	38.0	65.4	
구성비	판매 농가	100.0	77.8	52.3	3.7	4.8	3.2
	주업 농가	100.0	65.9	17.1	4.7	7.8	8.8

(다음표에 이어서)

구 분	단일경영				준단일 복합경영	복합경영	
	과실류	낙농	육용우	기타			
판매농가	130	18	30	48	274	92	
주업농가	47	17	11	30	94	39	
주업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36.2	94.4	36.7	62.5	34.3	42.4	
구성비	판매 농가	7.9	1.1	1.8	2.9	16.7	5.6
	주업 농가	12.1	4.4	2.8	7.8	24.3	10.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구조동태조사결과', 2007년 기준

주: 농가- 경영경지면적이 1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15만엔 이상의 세대

판매농가- 경영경지면적이 30a이상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이 50만엔 이상의 농가

주업농가-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 농업소득)로 65세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농가

준단일복합경영농가- 농산물판매금액 중 주위(主位)부분의 판매금액이 60%미만의 판매농가

복합경영농가- 농산물판매금액가운데 주위부분의 판매금액이 60%미만의 판매농가

1. 주요 경제지표

1-1. 연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국내총생산(명목) (조 엔)	성장률 (전년대비%)	국내총생산(실질) (조 엔)	성장률 (전년대비%)
2004	498.5	1.0	528.0	2.0
2005	503.8	1.1	540.7	2.4
2006	512.2	1.7	554.1	2.5
*2007	516.0	0.7	563.8	1.7

자료원: 니케이신문사

주: 2007년의 수치는 확정치가 아닌 속보치(速報値)임

1-2. 경제 성장률

단위: %

구 분	연도			
	2004	2005	2006	2007
국내총생산(GDP)	2.0	2.4	2.5	1.6
국내수요	1.5	1.9	1.7	0.3
-민간수요	2.4	2.7	2.7	0.4
-민간최종소비지출	1.2	1.9	1.8	1.4
-가계최종소비지출	1.2	1.9	1.8	1.3
-귀속임대료	1.0	1.9	1.7	1.3
-민간주택	1.7	-1.2	0.2	13.3
-민간기업설비	6.8	6.7	5.6	-0.1
-민간재고품증가	0.1	0.0	0.2	-0.0
공적수요	-1.5	-0.6	-1.8	0.2
-정부최종소비지출	1.7	0.8	0.1	0.7
-공적고정자본형성	-12.7	-5.6	-9.1	-1.8
-공적재고품증가	0.0	-0.0	-0.0	0.0
총고정자본형성	1.3	2.8	1.9	-2.4
재화·서비스 순수출	0.5	0.5	0.8	1.3
-재화·서비스 수출	11.4	9.0	8.4	9.5
-재화·서비스수입	8.5	5.9	3.1	2.0
국내총소득	1.4	1.3	1.7	0.5
국민총소득	1.6	1.9	2.0	1.0
고용자보수	0.5	2.2	1.6	0.6

자료원: 내각부 경제사회종합 연구소 '국민경제계산연보'

1-3. 국민분배소득

단위: 실수 - 10억 엔, 증가율 - %

구분	2003		2004		2005	
	실수	전년대비 증가율	실수	전년대비 증가율	실수	전년대비 증가율
고용자보수	258,676.8	△1.5	256,465.5	△0.9	258,793.2	0.9
임금·봉급	219,686.1	△0.5	218,529.5	△0.5	220,735.4	1.0
재산소득	7,894.0	△18.4	9,959.9	26.2	12,743.9	28.0
기업소득	90,375.2	4.5	93,973.7	4.0	94,907.5	1.0
민간법인기업	44,812.1	3.5	48,917.4	9.2	48,776.4	△0.3
공기업	5,863.7	37.4	5,911.8	4.0	7,379.3	24.8
개인기업	39,879.4	2.1	39,144.5	△1.8	38,751.8	△1.0
농림어업	2,832.6	6.8	2,588.6	△8.6	2,710.7	4.7
국민소득	356,946.0	△0.5	360,399.0	1.0	366,444.6	1.7

자료원: 내각부 경제사회종합 연구소 '국민경제계산연보'

2. 연도별 농업·식료 관련 산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2-1. 농업·식료 관련 산업 국내총생산

단위 : 10억 원

구 분	국내총생산			전년대비 증가율 (%)		농업·식료 관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여율 (%)
	2004	2005	2006	2005	2006	2004	2005	2006	
농업·식료관련 산업	49,680.0	48,527.6	48,512.4	△2.3	0.0	100.0	100.0	100.0	100.0
농·어업	6,049.2	5,832.4	5,623.8	△3.6	△3.6	12.2	12.0	11.6	1,365.5
-농업	5,080.8	4,881.0	4,714.3	△3.9	3.4	10.2	10.1	9.7	1,090.9
-임업(특용임산물)	74.9	72.8	70.1	△2.8	△3.8	0.2	0.2	0.1	17.9
-어업	893.4	878.6	839.4	△1.7	△4.5	1.8	1.8	1.7	256.7
관련제조업	14,275.0	13,739.4	13,912.2	△3.8	1.3	28.7	28.3	28.7	△1,132.0
-식품공업	13,746.1	13,232.1	13,388.5	△3.7	1.2	27.7	27.3	27.6	△1,023.7
-도축	101.4	106.4	107.6	4.9	1.2	0.2	0.2	0.2	△8.2
-식육가공업	226.2	208.1	215.7	△8.0	3.6	0.5	0.4	0.4	△49.7
-우유·유제품	462.0	443.0	428.4	△4.1	△3.3	0.9	0.9	0.9	95.7
-수산가공업	1,061.6	1,066.2	1,095.8	0.4	2.8	2.1	2.2	2.3	△194.1
-정곡·제분	259.2	231.8	238.9	△10.6	3.1	0.5	0.5	0.5	△46.4
-면·빵·과자류	1,965.6	1,943.7	1,943.1	△1.1	0.0	4.0	4.0	4.0	3.9
-농산보존식품	207.5	202.1	201.1	△2.6	△0.5	0.4	0.4	0.4	6.3
-설탕·유지·조미료류	806.5	823.2	836.7	2.1	1.6	1.6	1.7	1.7	△88.0
-냉동조리식품	205.1	206.1	212.9	0.5	3.3	0.4	0.4	0.4	△44.5
-레토르트식품	49.2	49.5	48.8	0.6	△1.5	0.1	0.1	0.1	4.8
-반찬·초밥·도시락	735.3	752.8	738.0	2.4	△2.0	1.5	1.6	1.5	96.8
-학교급식	354.1	344.5	336.1	△2.7	△2.4	0.7	0.7	0.7	54.7
-기타식품	523.2	511.0	511.7	△2.3	0.1	1.1	1.1	1.1	△4.3
-주류	2,493.7	2,526.0	2,403.8	1.3	△4.8	5.0	5.2	5.0	799.8
-기타음료	1,855.2	1,857.3	1,879.7	0.1	1.2	3.7	3.8	3.9	△146.4
-담배	2,440.2	1,960.4	2,190.1	△19.7	11.7	4.9	4.0	4.5	△1,503.8
자재공급산업	528.9	507.3	523.8	△4.1	3.3	1.1	1.0	1.1	△108.3
관련투자	1,347.5	1,204.0	1,122.4	△10.7	△6.8	2.7	2.5	2.3	534.0
음식점	8,570.6	8,597.0	8,622.5	0.3	0.3	17.3	17.7	17.8	△166.9
관련유통업	19,437.7	19,154.9	19,231.4	△1.5	0.4	39.1	39.5	39.6	△500.7
-상업	17,702.1	17,367.4	17,616.9	△1.9	1.4	35.6	35.8	36.3	△1,633.8
-운송업	1,735.6	1,787.6	1,614.5	3.0	△9.7	3.5	3.7	3.3	1,133.1
전 체	498,490.6	503,844.7	511,877.0	1.1	1.6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 장관 관방정보과 '농업·식료관련산업 경제계산'

2-2. 농업 · 식료 관련 산업 국내생산액

단위: 10억 엔

구 분	국내생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		농업 · 식료 관련 산업에 차지하는 비율(%)			기여율 (%)
	2004	2005	2006	2005	2006	2004	2005	2006	
농업 · 식료관련 산업	103,431.1	102,301.7	102,560.2	△1.1	0.3	100.0	100.0	100.0	100.0
농 · 어업	11,877.7	11,611.7	11,505.7	△2.2	△0.9	11.5	11.4	11.2	△41.0
-농업	10,049.8	9,800.4	9,654.2	△2.5	△1.5	9.7	9.6	9.4	△56.5
-임업(특용임산물)	208.5	201.2	210.4	△3.5	4.6	0.2	0.2	0.2	3.6
-어업	1,619.5	1,610.1	1,641.0	△0.6	1.9	1.6	1.6	1.6	12.0
관련제조업	38,414.3	37,713.9	37,983.0	△1.8	0.7	37.1	36.9	37.0	104.1
-식품공업	36,215.4	35,483.3	35,644.7	△2.0	0.5	35.0	34.7	34.8	62.4
-도축	1,532.3	1,569.1	1,581.6	2.4	0.8	1.5	1.5	1.5	4.8
-식품가공업	815.4	803.1	804.7	△1.5	0.2	0.8	0.8	0.8	0.6
-유유 · 유제품	1,974.3	1,952.9	1,923.4	△1.1	△1.5	1.9	1.9	1.9	△11.4
-수산가공업	3,276.7	3,348.8	3,369.9	2.2	0.6	3.2	3.3	3.3	8.2
-정곡 · 제분	3,395.0	3,110.2	3,136.7	△8.4	0.9	3.3	3.0	3.1	10.2
-면 · 빵 · 과자류	4,941.8	4,898.6	4,861.0	△0.9	△0.8	4.8	4.8	4.7	△14.6
-농산보존식품	627.0	605.9	599.4	△3.4	△1.1	0.6	0.6	0.6	△2.5
-설탕 · 유지 · 조미료류	2,716.9	2,702.7	2,753.1	△0.5	1.9	2.6	2.6	2.7	19.5
-냉동조리식품	590.5	586.2	591.9	△0.7	1.0	0.6	0.6	0.6	2.2
-레토르트식품	200.4	203.7	202.1	1.7	△0.8	0.2	0.2	0.2	△0.6
-반찬 · 초밥 · 도시락	2,622.3	2,662.2	2,714.9	1.5	2.0	2.5	2.6	2.6	20.4
-학교급식	787.0	773.6	760.1	△1.7	△1.7	0.8	0.8	0.7	△5.2
-기타식품	1,361.2	1,375.5	1,357.6	1.1	△1.3	1.3	1.3	1.3	△6.9
-주류	3,937.9	4,060.8	3,939.6	3.1	△3.0	3.8	4.0	3.8	△46.9
-기타음료	4,446.1	4,451.1	4,501.7	0.1	1.1	4.3	4.4	4.4	19.5
-담배	2,990.5	2,378.6	2,547.0	△20.5	7.1	2.9	2.3	2.5	65.1
자재공급산업	2,198.9	2,230.6	2,338.3	1.4	4.8	2.1	2.2	2.3	41.6
관련투자	3,209.1	2,978.1	2,862.8	△7.2	△3.9	3.1	2.9	2.8	△44.6
음식점	20,923.0	21,022.4	21,084.7	0.5	0.3	20.2	20.5	20.6	24.1
관련유통업	29,006.9	28,975.6	29,124.1	△0.1	0.5	28.0	28.3	28.4	57.4
-상업	26,063.5	25,943.2	26,289.7	△0.5	1.3	25.2	25.4	25.6	134.1
-운송업	2,943.5	3,032.4	2,834.3	3.0	△6.5	2.8	3.0	2.8	△76.6
전 체	927,342.7	951,287.3	975,404.1	2.6	2.5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장관 관방정보과 '농업 · 식료관련산업 경제계산'

2-3. 농업 · 식료 관련 산업 부가가치

단위: %

구분	부가가치율(%)			전년대비증가율(%)	
	2004	2005	2006	2005	2006
농업 · 식료 관련 산업	48.0	47.4	47.3	△1.3	△0.2
농 · 어업	50.9	50.2	48.9	△1.4	△2.6
-농업	50.6	49.8	48.8	△1.6	△2.0
-임업(특용임산물)	35.9	36.2	33.3	0.8	△8.0
-어업	55.2	54.6	51.2	△1.1	△6.2
관련제조업	37.2	36.4	36.6	△2.2	0.5
-식품공업	38.0	37.3	37.6	△1.8	0.8
-도축	6.6	6.8	6.8	3.0	0.0
-식육가공업	27.7	25.9	26.8	△6.5	3.5
-우유 · 유제품	23.4	22.7	22.3	△3.0	△1.8
-수산가공업	32.4	31.8	32.5	△1.9	2.2
-정곡 · 제분	7.6	7.5	7.6	△1.3	1.3
-면 · 빵 · 과자류	39.8	39.7	40.0	△0.3	0.8
-농산보존식료품	33.1	33.4	33.6	0.9	0.6
-설탕 · 유지 · 조미료류	29.7	30.5	30.4	2.7	△0.3
-냉동조리식품	34.7	35.2	36.0	1.4	2.3
-레토르트	24.6	24.3	24.2	△1.2	△0.4
-반찬 · 초밥 · 도시락	28.0	28.3	27.2	1.1	△3.9
-학교급식	45.0	44.5	44.2	△1.1	△0.7
-기타식료품	38.4	37.1	37.7	△3.4	1.6
-주류	63.3	62.2	61.0	△1.7	△1.9
-기타음료	41.7	41.7	41.8	0.0	0.2
-담배	81.6	82.4	86.0	1.0	4.4
자재공급산업	24.1	22.7	22.4	△5.8	△1.3
관련투자	42.0	40.4	39.2	△3.8	△3.0
음식점	41.0	40.9	40.9	△0.2	0.0
관련유통업	67.0	66.1	66.0	△1.3	△0.2
-상업	67.9	66.9	67.0	△1.5	0.1
-운송업	59.0	58.9	57.0	△0.2	△3.2

자료원: 농림수산성장관 관방정보과 '농업 · 식료관련산업 경제계산'

3. 농림어업 생산액

3-1. 농업 총생산액

단위: 10억 엔

구 분	농업총생산액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1)기여율 (%)
	2004	2005	2006	2005	2006	2004	2005	2006	
농업(광의)계	5,080.8	4,881.0	4,714.3	△3.9	△3.4	100.0	100.0	100.0	100.0
농업(협의)계2	4,808.8	4,609.3	4,447.0	△4.1	△3.5	94.6	94.4	94.3	97.4
경종	4,182.3	3,888.3	3,801.9	△7.0	△2.2	82.3	79.7	80.6	51.8
곡류	1,313.5	1,285.8	1,163.4	△2.1	△9.5	25.9	26.3	24.7	73.4
쌀	1,235.1	1,208.6	1,089.2	△2.1	△9.9	24.3	24.8	23.1	71.6
보리류	68.3	67.3	64.1	△1.5	△4.8	1.3	1.4	1.4	1.9
잡곡	10.0	9.9	10.1	△1.0	△2.0	0.2	0.2	0.2	△0.1
고구마류	129.3	128.0	119.6	△1.0	△6.6	2.5	2.6	2.5	5.0
콩류	61.1	47.0	46.5	△23.1	△1.1	1.2	1.0	1.0	0.3
채소	1,474.6	1,345.1	1,384.4	△8.8	2.9	29.0	27.6	29.4	△23.6
과일	496.2	439.0	483.5	△11.5	10.1	9.8	9.0	10.3	△26.7
기타식용경종	158.8	142.6	123.6	△10.2	△13.3	3.1	2.9	2.6	11.4
비식용경종	548.8	500.9	480.9	△8.7	△4.0	10.8	10.3	10.3	12.0
축산	626.6	721.0	645.0	15.1	△10.5	12.3	14.8	13.7	45.6
낙농	343.4	339.4	312.9	△1.2	△7.8	6.8	7.0	6.6	15.9
계란	70.5	110.2	92.1	56.3	△16.4	1.4	2.3	2.0	10.9
브로일러	13.3	15.5	15.3	16.5	△1.3	0.3	0.3	0.3	0.1
육돈	81.0	90.9	82.2	12.2	△9.6	1.6	1.9	1.7	5.2
육우	68.7	116.2	89.3	69.1	△23.1	1.4	2.4	1.9	16.1
기타축산	49.7	48.8	53.3	△1.8	9.2	1.0	1.0	1.1	△2.7
농업서비스	272.0	271.7	267.4	△0.1	△1.6	5.4	5.6	5.7	2.6

자료원: 농림수산성장관 관방정보과 '농업·식료관련산업 경제계산'

주: 1) '기여율'은 2005~2006년도까지의 「농업·식료관련산업」 총생산 수치 증감에 대한 기여율

2) '농업(협의)계'의 농업생산액은 '경종' 및 '축산'의 합계이며 '농업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3-2. 농업 생산액

단위: 10억 원

	농업생산액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1)기여율 (%)
	2004	2005	2006	2005	2006	2004	2005	2006	
농업(광의)계	10,049.8	9,800.4	9,654.2	△2.5	△1.5	100.0	100.0	100.0	100.0
농업(협의)계2)	9,605.7	9,356.8	9,217.7	△2.6	△1.5	95.6	95.5	95.5	95.1
경종	6,575.4	6,347.3	6,207.0	△3.5	△2.2	65.4	64.8	64.3	96.0
곡류	2,245.7	2,203.8	2,064.3	△1.9	△6.3	22.3	22.5	21.4	95.4
쌀	2,068.6	2,026.0	1,891.9	△2.1	△6.6	20.6	20.7	19.6	91.7
보리류	158.6	159.5	153.9	0.6	△3.5	1.6	1.6	1.6	3.8
잡곡	18.5	18.3	18.5	△1.1	1.1	0.2	0.2	0.2	△0.1
고구마류	208.7	211.5	210.7	1.3	△0.4	2.1	2.2	2.2	0.5
콩류	98.2	81.5	83.4	△17.0	2.3	1.0	0.8	0.9	△1.3
채소	2,145.2	2,035.5	2,062.5	△5.1	1.3	21.3	20.8	21.4	△18.5
과일	791.6	755.7	784.7	△4.5	3.8	7.9	7.7	8.1	△19.8
기타식용경종	229.7	210.8	185.8	△8.3	△11.8	2.3	2.1	1.9	17.0
비식용경종	856.5	848.7	815.5	△0.9	△3.9	8.5	8.7	8.4	22.7
축산	3,030.3	3,009.5	3,010.7	△0.7	0.0	30.2	30.7	31.2	△0.8
낙농	959.0	969.2	938.9	1.1	△3.1	9.5	9.9	9.7	20.7
계란	473.6	424.5	425.1	△10.4	0.1	4.7	4.3	4.4	△0.4
브로일러	249.3	255.0	257.1	2.3	0.8	2.5	2.6	2.7	△1.4
육돈	516.2	500.7	500.3	△3.0	△0.1	5.1	5.1	5.2	0.3
육우	737.8	767.6	788.0	4.0	2.7	7.3	7.8	8.2	△14.0
기타축산	94.3	92.6	101.3	△1.8	9.4	0.9	0.9	1.0	△6.0
농업서비스	444.1	443.6	436.5	△0.1	△1.6	4.4	4.5	4.5	4.9

자료원: 농림수산성장관 관방정보과 '농업·식료 관련산업 경제계산'

주: 1) '기여율'은 2005~2006년도까지의 「농업·식료 관련산업」총생산 수치 증감에 대한 기여율
 2) '농업(협의)계'의 농업생산액은 '경종' 및 '축산'의 합계이며 '농업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3-3. 임업 생산액

단위: 천만 엔

구분	2006	2005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2006년)(%)
임업산출액	43,216	41,677	3.7	100.0
임업생산액	21,708	21,023	3.3	50.2
침엽수계	18,389	17,741	3.7	42.6
-삼나무	9,259	8,753	5.8	21.4
-노송나무	4,795	4,636	3.4	11.1
-적송·흑송	921	939	△1.9	2.1
-낙엽송·가문비나무·분비나무	2,899	2,844	1.9	6.7
광엽수계	3,219	3,171	1.5	7.4
죽재	99	110	△10.0	0.2
신탄생산	560	609	△8.0	1.3
채배버섯류	20,705	19,850	4.3	47.9
-생표고버섯	6,080	5,810	4.6	14.1
-건표고버섯	1,290	1,296	△0.5	3.0
-나도팽나무버섯	1,064	976	9.0	2.5
-팽이버섯	3,449	3,341	3.2	8.0
-느타리버섯	156	179	△12.8	0.4
-만가닥버섯	4,220	3,986	5.9	9.8
-잎새버섯	2,507	2,357	6.4	5.8
-새송이버섯	1,736	1,695	2.4	4.0
임야부산물채취	243	196	24.0	0.6
-송이버섯	209	166	25.9	0.5
생산임업소득	24,878	24,560	1.3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3-4. 어업 생산액

단위: 백만 원

어 종	2006	2005	전년대비 증감률 (%)
해면어업계	1,078,663	1,059,409	1.8
어류계	747,783	723,388	3.4
다랑어류계	151,626	152,886	△0.8
-참다랑어	27,262	26,617	2.4
-인도다랑어	11,904	12,343	△3.6
-날개다랑어	17,341	18,905	△8.3
-눈다랑어	55,257	54,287	1.8
-황다랑어	36,565	36,673	△0.3
-기타 다랑어류	3,297	4,061	△18.8
청새치	1,842	2,188	△15.8
황새치	7,537	7,702	△2.1
흑새치류	1,567	1,742	△10.0
기타 청새치류	484	363	33.3
가다랑어	60,392	59,542	1.4
물치 다랑어	1,570	1,565	0.3
상어류	6,176	6,697	△7.8
연어·송어류계	82,856	67,736	22.3
-연어류	79,311	63,753	24.4
-송어류	3,545	3,983	△11.0
전어	665	683	△2.6
청어	999	909	9.9
정어리	6,424	6,290	2.1
눈통멸	2,897	3,673	△21.1
멸치	21,382	18,594	15.0
치어	23,130	27,979	△17.3
전쟁이	37,202	38,464	△3.3
갈고등어류	2,814	2,854	△1.4
고등어류	41,255	34,165	20.8
꽁치	16,685	15,717	6.2
방어류	26,797	22,450	19.4
광어	10,157	9,324	8.9

(다음 페이지에 계속)

어 종	2006	2005	전년대비 증감률 (%)
가자미류	30,024	30,122	△0.3
대구	12,117	11,106	9.1
명태	22,242	19,425	14.5
임연수어	7,113	7,639	△6.9
볼락류	604	421	43.5
홍살치	2,798	3,439	△18.6
도루묵	4,079	4,234	△3.7
셋멸류	1,106	991	11.6
동갈민어·조기류	738	740	△0.3
매통이류	780	763	2.2
셋돔	1,360	1,467	△7.3
붕장어류	5,283	5,478	△3.6
갯장어	2,531	2,183	15.9
갈치	8,894	8,516	4.4
가오리류	1,001	1,011	△1.0
참돔	14,454	12,973	11.4
붉돔·황돔	2,924	3,288	△11.1
감성돔·청돔	1,781	1,527	16.6
벤자리	3,999	3,596	11.2
삼치류	7,558	6,428	17.6
만새기류	1,008	928	8.6
날치류	1,391	1,402	△0.8
숭어류	357	660	△45.9
농어류	6,244	5,281	18.2
까나리	8,347	10,094	△17.3
옥돔류	2,326	2,358	△1.4
복어류	4,281	4,766	△10.2
기타 어류	87,987	91,027	△3.3
새우류계	34,848	33,718	3.4
-대하	6,099	5,322	14.6
-보리새우	3,913	4,340	△9.8
-기타 새우류	24,835	24,056	3.2

(다음 페이지에 계속)

어 종	2006	2005	전년대비 증감률 (%)
계류 계	26,453	26,572	△0.4
-바다참계	11,022	10,219	7.9
-붉은대게	5,029	5,003	0.5
-꽃게류	3,795	4,565	△16.9
-기타 계류	6,608	6,785	△2.6
크릴새우류	1,164	872	33.5
조개류 계	93,237	95,706	△2.6
-전복류	15,686	12,006	30.7
-소라	6,324	6,334	△0.2
-대합류	1,084	1,076	0.7
-모시조개류	14,229	11,974	18.8
-가리비	39,599	48,498	△18.3
-함박조개	3,121	2,881	8.3
-피조개	78	450	△82.7
-기타 조개류	13,116	12,486	5.0
오징어류 계	90,177	99,545	△9.4
-갑오징어류	3,555	3,844	△7.5
-오징어	49,956	57,057	△12.4
-날개오징어	4,826	6,159	△21.6
-기타오징어류	31,840	32,485	△2.0
문어류	28,336	28,195	0.5
성게류	11,222	11,937	△6.0
해삼류	13,147	9,063	45.1
해산포유류	756	792	△4.5
기타 수산동물류	4,560	4,352	4.8
해조류계	26,656	24,867	7.2
-다시마류	19,795	17,168	15.3
-미역류	974	1,418	△31.3
-녹미채	1,414	1,461	△3.2
-우뭇가사리류	1,424	1,297	9.8
-기타 해조류	3,048	3,523	△13.5
포경업(고래류)	324	402	△19.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4. 농림어업 생산지수

4-1. 농림어업 생산지수 총괄

2000년=10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농림어업총합	100.0	98.0	96.8	92.9	93.6	94.8
전년대비증감률(%)	△0.1	△2.0	△1.2	△4.0	△0.8	△1.3
농업	100.0	98.3	97.2	92.4	94.0	95.3
임업	100.0	94.8	91.6	91.3	93.4	95.0
어업	100.0	97.7	96.6	96.1	91.5	92.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주: 1)은 농업, 임업, 어업의 각 종합지수에 각각의 웨이트를 곱하고 그 가산치를 농림어업의 웨이트로 나눠서 구한 수치임

4-2. 농업 생산지수

2000년=10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업종합	100.0	98.3	97.2	92.4	94.0	95.3
경종(耕種)종합	100.0	98.7	96.9	90.5	92.6	94.6
쌀	100.0	95.7	93.7	82.2	92.2	95.7
보리류	100.0	100.6	116.1	118.3	117.6	120.2
두류	100.0	104.0	105.9	89.6	85.6	96.0
서류	100.0	99.0	98.7	90.3	97.2	101.5
채소종합	100.0	98.8	96.9	93.8	91.1	91.5
시설	100.0	99.6
근채류	100.0	98.7	97.1	94.9	91.8	90.2
엽경채류	100.0	100.9	99.5	97.4	93.8	96.1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00년=10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과채류	100.0	96.0	94.5	90.4	89.3	89.9
향신채소	100.0	99.0	94.5	90.7	94.3	95.9
과실채소	100.0	99.7	95.9	91.7	87.6	86.4
과실	100.0	105.3	101.5	95.3	90.2	97.3
화훼류	100.0	99.9	98.9	96.8	93.7	90.9
공예농작물	100.0	100.6	97.5	96.5	101.7	95.4
기타	100.0	93.9	91.5	85.6	88.1	89.9
축산종합	100.0	97.4	98.1	97.5	97.9	97.2
젖소(乳用牛)	100.0	99.6	101.0	100.8	100.5	99.9
육우(肉用牛)	100.0	92.3	93.6	88.9	93.5	92.3
돼지	100.0	97.0	97.3	98.1	99.3	96.8
브로일러	100.0	99.8	103.0	104.6	103.6	106.6
계란	100.0	100.4	99.5	99.5	98.0	97.5
생유(生乳)	100.0	97.8	98.9	99.1	98.3	97.7
양잠(養蠶)	100.0	82.8	72.2	63.9	55.6	52.2
기타	100.0	100.5	97.6	96.0	90.6	88.3
식료	100.0	98.3	97.2	92.3	94.2	95.9
비식료	100.0	98.9	97.0	92.6	91.4	87.9
재배용 버섯(임업)을 포함하는 농업종합	100.0	98.4	97.3	92.6	94.2	95.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4-3. 지역별 농업 생산지수

2000년=100

구분	농업 종합	경종										
		종합	쌀	보리류	두류	서류	채소					
							종합	근채류	엽경 채류	과채류	향신 채소	과실 채소
전국	95.3	94.6	95.7	120.2	96.0	101.5	91.5	90.2	96.1	89.9	95.9	86.4
홋카이도	103.4	103.4	93.8	142.8	106.6	-	97.4	101.2	93.7	99.6	94.9	83.6
도호쿠	95.0	94.8	95.7	92.0	89.6	78.4	90.0	92.2	94.3	87.1	85.5	84.1
호쿠리쿠	90.1	89.3	90.3	101.4	75.8	90.7	86.5	81.3	93.8	86.1	85.8	84.2
간토	94.1	94.5	99.1	95.2	82.5	87.3	92.9	86.8	96.2	89.7	83.4	99.4
도카이	96.9	97.5	94.7	110.9	155.1	80.7	95.3	87.1	100.9	90.1	118.7	87.9
긴키	92.4	94.2	96.4	106.8	101.4	89.8	89.8	81.9	97.1	81.5	112.5	84.0
주고쿠	92.3	89.6	93.0	85.0	74.0	91.2	89.3	85.4	95.8	86.8	117.5	78.9
시코쿠	88.6	87.4	95.7	66.9	55.9	94.8	85.5	78.8	88.4	82.2	117.7	78.4
규슈	94.4	91.3	89.9	106.7	81.0	110.3	89.0	79.5	98.3	95.4	89.6	79.8
오키나와	88.3	89.2	83.8	-	15.2	100.1	91.7	70.0	91.2	102.8	-	73.0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00년=100

구분	경종				축산								
	과실	화훼류	공예 농작물	기타	종합	젖소	육우	돼지	브로 일러	계란	생유	양잠	기타
전국	97.3	90.9	95.4	89.9	97.2	99.9	92.3	96.8	106.6	97.5	97.7	52.2	88.3
홋카이도	92.6	84.1	114.4	120.2	103.4	99.4	110.5	88.9	114.2	97.5	106.0	-	92.8
도호쿠	102.8	99.0	76.9	88.6	95.7	85.8	87.5	94.1	107.8	97.3	91.6	56.4	149.8
호쿠리쿠	101.6	82.1	67.7	76.1	95.6	79.3	77.5	104.1	81.5	105.2	85.6	...	105.4
간토	97.9	88.4	87.4	84.5	92.7	82.4	88.9	97.1	97.7	101.3	83.8	54.3	135.4
도카이	98.7	97.0	109.2	98.6	94.6	87.2	93.8	95.0	97.0	98.9	88.9	...	98.4
긴키	102.5	77.4	97.6	74.6	84.1	80.6	84.6	94.2	90.3	76.8	87.3	-	93.4
주고쿠	88.8	86.9	58.6	69.3	98.8	87.7	96.0	99.3	104.6	106.5	88.5	...	121.1
시코쿠	88.1	78.5	73.1	88.3	93.3	90.3	78.5	93.2	106.1	100.2	87.8	43.2	83.1
규슈	89.8	93.3	92.8	98.6	100.2	91.5	103.4	99.0	108.3	86.9	98.0	...	90.2
오кина와	99.4	97.8	81.9	79.7	86.9	75.8	88.2	75.1	90.3	117.0	90.1	...	75.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4-4. 임업 생산지수

2000년=10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임업종합	100.0	94.8	91.6	91.3	93.4	95.0
소재종합	100.0	92.4	88.4	88.0	89.8	92.4
-침엽수	100.0	93.5	90.4	90.8	93.6	96.6
-광엽수	100.0	86.4	77.9	73.9	70.6	71.2
죽재(竹材)	100.0	92.6	73.6	76.0	68.3	64.2
신탄(薪炭)	100.0	90.6	74.9	66.6	61.0	57.4
버섯종합	100.0	99.4	98.3	98.4	101.5	101.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주: 침엽수 및 광엽수는 소재종합에 포함되어 있음

4-5. 어업 생산지수

2000년=100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어업종합	100.0	97.7	96.6	96.1	91.5	92.0
해면어업종합	100.0	95.3	92.7	94.5	89.7	89.6
-어류	100.0	97.7	95.2	97.9	93.9	95.9
-기타수산동물류	100.0	87.1	80.9	79.9	71.6	68.8
-해산포유류	100.0	106.1	113.0	101.9	115.4	93.5
-포경업	100.0	96.4	91.0	86.2	82.2	83.2
-조개류	100.0	93.0	97.1	103.3	97.8	90.1
-해조류	100.0	102.5	107.2	94.2	95.7	88.5
해면양식업	100.0	103.7	107.3	102.8	99.1	102.0
내수면어업	100.0	98.0	94.7	82.8	73.3	70.1
내수면양식업	100.0	95.4	87.9	86.7	84.0	76.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주: 2000년 기준 개정 이후 포경업을 해면어업으로 포함시켰음.

5. 물가지수

5-1. 국내기업 물가지수

2000년=10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평균	95.7	94.9	96.1	97.7	100.7
공업제품	95.6	94.8	95.9	97.8	100.8
가공식품	98.5	98.4	98.8	98.7	99.0
섬유제품	97.6	97.5	97.5	98.1	99.8
제재·목제품	97.3	97.6	99.0	98.0	102.0
펄프·종이·등제품	97.3	99.4	100.7	99.6	100.0
화학제품	97.0	98.3	101.5	107.2	111.5
플라스틱제품	96.1	95.4	96.6	101.2	105.1
석유·석탄제품	110.6	116.5	127.3	153.2	181.5
요업·토석제품	97.4	96.8	97.3	98.7	100.0
철강	97.5	102.8	117.1	130.0	133.9
비철금속	100.8	101.1	114.2	127.3	184.3
금속제품	98.2	98.6	101.4	104.2	105.5
일반기기	97.1	95.8	95.3	95.1	95.3
전기기기	83.6	78.0	74.5	71.4	69.7
수송용기기	95.9	94.1	93.1	92.3	92.2
정밀기기	98.0	96.9	95.8	94.6	94.2
기타공업제품	98.8	98.2	98.1	97.5	97.7
농림수산물	96.7	98.2	102.6	99.8	97.6
광산물	95.8	94.6	94.8	95.1	95.7
전력·도시가스·수도	96.6	94.2	93.6	91.7	94.0
스크랩류	104.5	136.8	178.5	177.9	235.9

자료원: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물가지수월보'

주: 對國內시장 국내생산품의 기업간 거래가격을 조사한 물가지수

5-2. 수입 · 수출 물가지수

2000년=10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입총평균	101.0	100.1	104.3	118.0	137.3
식료품 · 사료	113.3	116.4	124.1	127.4	135.4
섬유품	102.7	100.2	99.2	100.3	105.0
금속 · 동제품	99.6	102.5	124.9	153.1	215.7
목재 · 동제품	107.2	103.6	111.3	112.8	132.1
석유 · 석탄 · 천연가스	104.6	111.6	124.0	172.0	216.2
화학제품	105.1	109.8	114.6	124.1	138.5
기계기기	92.6	85.1	80.4	78.4	80.8
기타 산품 · 제품	107.4	103.4	103.7	109.3	119.9
수출총평균	101.9	97.8	96.4	98.3	102.8
섬유품	106.4	101.5	103.2	108.1	113.1
화학제품	101.6	104.1	114.7	125.3	136.7
금속 · 동제품	109.1	110.3	130.4	153.6	185.4
일반기기	106.5	103.7	101.0	102.6	104.6
전기기기	93.1	82.4	76.1	72.6	72.6
수송용기기	109.6	111.7	110.0	110.8	115.1
정밀기기	105.3	100.9	96.6	97.2	99.5
기타공업제품	103.9	99.3	95.3	99.4	102.4

자료원: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물가지수월보’

주: 수입물가지수는 수입품이 일본으로 입착하는 단계의 가격을, 수출물가지수는 수출품이 일본으로부터 적출되는 단계의 가격을 조사한 물가지수로 엔(円)베이스임

5-3. 소비자 물가지수

2005년=100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총합	100.6	100.3	100.3	100.0	100.3
소유주택의 귀속집세를 제외한 총합	100.7	100.4	100.4	100.0	100.3
식료	100.2	100.0	100.9	100.0	100.5
-그중, 갑각류	101.8	103.2	107.1	100.0	98.3
-어패류	103.9	101.9	100.6	100.0	102.2
- (신선어패)	106.0	103.2	101.8	100.0	102.8
-육류	94.6	95.4	98.1	100.0	100.8
-유란류	98.5	97.5	97.9	100.0	97.8
-채소·해조	99.1	101.2	104.4	100.0	103.3
- (신선채소)	97.7	101.5	107.0	100.0	105.8
-과일	96.7	97.2	100.8	100.0	103.7
- (신선과일)	96.2	97.0	100.7	100.0	104.0
-유지·조미료	104.4	102.0	100.8	100.0	98.7
-과자류	99.8	99.5	99.9	100.0	100.0
-조리식품	100.2	99.6	99.5	100.0	100.5
-음료	107.1	104.3	101.9	100.0	97.9
-주류	101.9	101.0	100.1	100.0	99.1
-외식	99.1	99.0	99.9	100.0	100.5
주거	100.4	100.3	100.1	100.0	100.0
광열·수도	99.6	99.1	99.2	100.0	103.6
가구·가사용품	109.2	105.9	102.4	100.0	97.9
피복 및 신발	101.4	99.5	99.3	100.0	100.8
보건의료	97.1	100.4	100.4	100.0	99.4
교육	98.1	98.7	99.3	100.0	100.7

자료원: 총무성 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연보'

주: 농림어가세대 및 단신세대를 제외한 전국의 소비자세대를 대상으로 함

5-4. 농업 물가지수

2005년=100

구분	웨이트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농산물(종합)	10,000	100.1	97.3	104.5	106.0	100.0	102.9	97.6
쌀	2,468	108.3	106.9	126.1	111.4	100.0	97.8	95.0
보리	230	110.4	108.8	105.7	100.1	100.0	102.2	58.2
잡곡	6	100.0	107.4	95.3
콩	124	87.8	84.5	93.9	105.5	100.0	87.5	81.3
고구마	263	80.9	71.5	94.7	93.7	100.0	100.1	83.7
채소	2,414	99.1	96.7	101.5	110.0	100.0	108.2	100.6
과실	1,045	105.0	92.8	94.6	109.8	100.0	120.6	110.1
공예농작물	626	109.7	101.3	103.2	104.1	100.0	95.4	88.1
화훼	741	95.0	99.1	101.0	105.0	100.0	99.1	100.7
축산물	2,075	91.6	90.2	91.2	96.4	100.0	99.0	99.5
계란	115	81.3	83.9	72.7	84.2	100.0	89.5	86.0
생유	829	100.4	100.5	101.7	101.2	100.0	97.7	97.2
육축	792	90.8	89.4	88.0	96.1	100.0	99.2	102.4
자축	300	78.4	72.9	84.8	93.1	100.0	105.7	104.4
성축	39	87.9	74.7	88.3	93.9	100.0	98.3	93.5
벼짚	8	100.2	93.9	93.3	100.2	100.0	103.9	101.7
농업생산자재(종합)	10,000	97.8	96.9	97.6	98.9	100.0	102.2	105.6
종묘 및 묘목	661	99.3	99.2	99.1	99.6	100.0	100.1	100.6
축산용동물	428	84.9	79.0	88.5	95.5	100.0	103.3	102.2
비료	1,054	96.7	97.3	97.3	97.7	100.0	102.4	106.6
사료	1,512	91.8	94.5	96.5	102.4	100.0	103.0	118.5
농업약제	916	103.5	102.3	101.6	100.4	100.0	99.5	99.5
기타재료	477	102.2	99.9	99.1	99.0	100.0	100.9	102.6
광열동력	945	87.2	84.3	86.3	89.2	100.0	112.8	116.5
농기계	1,841	102.4	100.9	100.7	100.4	100.0	99.8	99.6
자동차·同관계과	547	100.5	99.9	99.5	99.6	100.0	100.5	100.9
건축자재	497	103.6	101.8	100.3	99.9	100.0	102.0	106.5
농업용피복	38	101.4	100.8	100.6	100.0	100.0	99.9	99.8
임대금 및 요금	1,084	101.0	99.8	99.3	99.4	100.0	100.6	99.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1. 농가소득

1-1. 농가소득(농농사)

구분	농업 소득률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농업 고정자산 장비율	수익성		
					농업경영 관여자 1인당 농업소득	농업경영 관여자 1인당 총소득	농업전종자 1인당 농업소득
전국	%	천 엔	%	엔	천 엔	천 엔	천 엔
2007	37.1	4,107	45.1	2,513	1,486	2,095	3,666
2006	37.7	3,895	45.0	2,573	1,470	2,106	3,980
전년대비증감률(%)	△0.6	5.4	0.1	△2.3	1.1	△0.5	△7.9
(도부현)							
2007	38.0	3,648	46.5	2,380	1,329	1,960	3,423
2006	38.8	3,505	46.6	2,427	1,330	1,987	3,849
전년대비증감률(%)	△0.8	4.1	△0.1	△1.9	△0.1	△1.4	△11.1
(홋카이도)							
2007	34.6	7,033	41.3	3,187	2,428	2,916	4,999
2006	34.4	6,460	40.4	3,328	2,319	2,827	5,088
전년대비증감률(%)	0.2	8.9	0.9	△4.2	4.7	3.1	△1.7

(다음표에 계속)

구분	수익성			생산성		
	가족농업 노동1시간당 농업소득	농업고정 자산 천 엔 당 농업소득	경영농지 면적10a당 농업소득	자영농업 노동1시간당	농업고정 자산 천 엔 당	경영농지 면적10a당
전국	엔	엔	천 엔	엔	엔	천 엔
2007	1,299	478	49	1,463	582	60
2006	1,336	484	52	1,486	577	62
전년대비증감률(%)	△2.8	△1.2	△5.8	△1.5	0.9	△3.2
(도부현)						
2007	1,173	461	55	1,343	564	67
2006	1,229	475	58	1,382	569	69
전년대비증감률(%)	△4.6	△2.9	△5.2	△2.8	△0.9	△2.9
(홋카이도)						
2007	1,989	548	38	2,081	653	45
2006	1,930	522	38	2,044	614	45
전년대비증감률(%)	3.1	5.0	0.0	1.8	6.4	0.0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1-2. 농가소득(밭농사)

구분	농업 소득률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농업 고정자산 장비율	수익성		
					농업경영 관여자 1인당 농업소득	농업경영 관여자 1인당 총소득	농업전종자 1인당 농업소득
전국	%	천 엔	%	엔	천 엔	천 엔	천 엔
2007	37.5	6,416	43.1	2,188	2,142	2,524	3,516
2006	38.8	6,350	44.1	2,308	2,164	2,525	3,772
전년대비증감률(%)	△1.3	1.0	△1.0	△5.2	△1.0	0.0	△6.8
(도부현)							
2007	44.9	4,577	51.0	1,663	1,609	2,039	2,578
2006	46.2	4,597	52.0	1,820	1,627	2,029	2,741
전년대비증감률(%)	△1.3	△0.4	△1.0	△,8.6	△1.1	0.5	△5.9
(홋카이도)							
2007	32.1	10,779	37.2	3,365	3,267	3,553	5,856
2006	33.2	10,528	38.2	3,410	3,354	3,634	6,024
전년대비증감률(%)	△1.1	2.4	△1.0	△1.3	△2.6	△2.2	△2.8

(다음표에 계속)

구분	수익성			생산성		
	가족농업 노동1시간당 농업소득	농업고정 자산 천 엔 당 농업소득	경영농지 면적10a당 농업소득	자영농업 노동1시간당	농업고정 자산 천 엔 당	경영농지 면적10a당
전국	엔	엔	천 엔	엔	엔	천 엔
2007	1,469	600	49	1,506	688	57
2006	1,531	594	53	1,559	675	60
전년대비증감률(%)	△4.0	1.0	△7.5	△3.4	1.9	△5.0
(도부현)						
2007	1,063	577	118	1,093	657	134
2006	1,122	560	125	1,146	630	140
전년대비증감률(%)	△5.3	3.0	△5.6	△4.6	4.3	△4.3
(홋카이도)						
2007	2,413	625	31	2,434	723	36
2006	2,508	637	33	2,498	732	38
전년대비증감률(%)	△3.8	△1.9	△6.1	△2.6	△1.2	△5.3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2. 농가경영비

2-1. 농가경영비(논농사)

단위: 천 원

구분	농업경영비								
	합계	농업 고용 임금	종묘· 묘목	비료	농업 약제	광열 동력	농업용 자동차	농기구	농용 건물
(전국)									
2007	5,726	185	245	566	447	379	178	1,060	243
2006	5,400	139	222	510	409	336	163	1,011	246
전년대비증감률(%)	6.0	33.1	10.4	11.0	9.3	12.8	9.2	4.8	△1.2
(도부현)									
2007	4,859	160	209	472	379	336	161	926	200
2006	4,604	120	192	426	340	296	147	904	213
전년대비증감률(%)	5.5	33.3	8.9	10.8	11.5	13.5	9.5	2.4	△6.1
(홋카이도)									
2007	11,145	339	470	1,153	867	651	282	1,896	515
2006	10,484	264	420	1,050	842	594	259	1,690	457
전년대비증감률(%)	6.3	28.4	11.9	9.8	3.0	9.6	8.9	12.2	12.7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농업경영비								
	임대료	작업 위탁료	토지 개량 수리비	지불 소작료	부채 이자	*기타	공제 등의 부금 거출금	농업 현금 지출	감가 상각비
(전국)									
2007	451	95	306	463	86	1,022	282	4,757	970
2006	403	82	305	417	75	1,082	332	4,467	936
전년대비증감률(%)	11.9	15.9	0.3	11.0	14.7	△5.5	△15.1	6.5	3.6
(도부현)									
2007	334	89	208	456	54	875	215	3,983	878
2006	287	71	221	419	41	927	248	3,751	856
전년대비증감률(%)	16.4	25.4	△5.9	8.8	31.7	△5.6	△13.3	6.2	2.6
(홋카이도)									
2007	1,186	132	920	502	293	1,939	710	9,602	1,542
2006	1,147	156	841	409	292	2,063	865	9,058	1,432
전년대비증감률(%)	3.4	△15.4	9.4	22.7	0.3	△6.0	△17.9	6.0	7.7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주: 기타에는 동물, 사료, 자재, 포장·운반요금 등이 포함

2-2. 농가경영비(밭농사)

단위: 천 엔

구분	농업경영비								
	합계	농업 고용 임금	종묘· 묘목	비료	농업 약제	광열 동력	농용 자동차	농기구	농용 건물
(전국)									
2007	9,307	390	685	1,551	1,004	636	314	1,351	329
2006	8,819	370	628	1,449	982	592	312	1,294	329
전년대비증감률(%)	5.5	5.4	9.1	7.0	2.2	7.4	0.6	4.4	0.0
(도부현)									
2007	4,944	331	204	775	570	519	195	650	265
2006	4,761	309	204	757	550	476	197	649	282
전년대비증감률(%)	3.8	7.1	0.0	2.4	3.6	9.0	△1.0	0.2	△6.0
(홋카이도)									
2007	19,667	531	1,826	3,392	2,035	915	599	3,015	478
2006	18,415	515	1,627	3,084	2,002	866	583	2,816	443
전년대비증감률(%)	6.8	3.1	12.2	10.0	1.6	5.7	2.7	7.1	7.9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농업경영비								
	임대료	작업 위탁료	토지 개량 수리비	지불 소작료	부채 이자	*기타	공제 등의 부금 거출금	농업 현금 지출	감가 상각비
(전국)									
2007	935	185	86	302	133	1,406	225	8,119	1,192
2006	827	182	97	272	126	1,359	235	7,654	1,168
전년대비증감률(%)	13.1	1.6	△11.3	11.0	5.6	3.5	△4.3	6.1	2.1
(도부현)									
2007	273	103	57	188	36	778	42	4,182	766
2006	229	94	61	169	35	749	45	3,998	763
전년대비증감률(%)	19.2	9.6	△6.6	11.2	2.9	3.9	△6.7	4.6	0.4
(홋카이도)									
2007	2,505	379	155	573	364	2,900	656	17,468	2,204
2006	2,237	391	184	514	343	2,810	690	16,299	2,124
전년대비증감률(%)	12.0	△3.1	△15.8	11.5	6.1	3.2	△4.9	7.2	3.8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기타에는 동물, 사료, 자재, 포장·운반요금 등이 포함

3. 농가경영수지

3-1. 농가경영수지(농농사)

단위: 천 원

구분	집계 호수	농업			농업생산관련사업		
		조수익	경영비	소득	수입	지출	소득
(전국)	호						
2007	623	9,099	5,726	3,373	38	27	11
2006	637	8,664	5,400	3,264	73	71	2
전년대비증감률(%)	-	5.0	6.0	3.3	△47.9	△62.0	450.0
(도부현)							
2007	470	7,837	4,859	2,978	43	31	12
2006	490	7,529	4,604	2,925	83	80	3
전년대비증감률(%)	-	4.1	5.5	1.8	△48.2	△61.3	300.0
(홋카이도)							
2007	153	17,044	11,145	5,899	8	4	4
2006	147	15,979	10,484	5,495	11	5	6
전년대비증감률(%)	-	6.7	6.3	7.4	△27.3	△20.0	△33.3

(다음표에 계속)

구분	농외(農外)			연금 등의 수입	총소득	조세 공과 제부담	가처분 소득	추계 가계비
	수입	지출	소득					
(전국)								
2007	777	210	567	804	4,755	766	3,989	4,819
2006	650	115	535	874	4,675	702	3,973	4,675
전년대비증감률(%)	19.5	82.6	6.0	△8.0	1.7	9.1	0.4	3.1
(도부현)								
2007	786	236	550	851	4,391	702	3,689	4,780
2006	634	126	508	935	4,371	649	3,722	4,588
전년대비증감률(%)	24.0	87.3	8.3	△9.0	0.5	8.2	△0.9	4.2
(홋카이도)								
2007	723	40	683	500	7,086	1,155	5,931	5,036
2006	757	43	714	486	6,701	1,036	5,665	5,245
전년대비증감률(%)	△4.5	△7.0	△4.3	2.9	5.7	11.5	4.7	△4.0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3-2. 농가경영수지(밭농사)

단위: 천 엔

구분	집계 호수	농업			농업생산관련사업		
		조수익	경영비	소득	수입	지출	소득
(전국)	호						
2007	470	14,898	9,307	5,591	19	11	8
2006	462	14,401	8,819	5,582	13	9	4
전년대비증감률(%)	-	3.5	5.5	0.2	46.2	22.2	100.0
(도부현)							
2007	264	8,966	4,944	4,022	27	14	13
2006	253	8,845	4,761	4,084	20	12	8
전년대비증감률(%)	-	1.4	3.8	△1.5	35.0	16.7	62.5
(홋카이도)							
2007	206	28,978	19,667	9,311	-	-	-
2006	209	27,571	18,415	9,156	-	-	-
전년대비증감률(%)	-	5.1	6.8	1.7	-	-	-

(다음표에 계속)

구분	농외(農外)			연금 등의 수입	총소득	조세 공과 제부담	가처분 소득	추계 가계비
	수입	지출	소득					
(전국)								
2007	498	172	326	663	6,588	1,007	5,581	4,938
2006	491	174	317	611	6,514	999	5,515	4,933
전년대비증감률(%)	1.4	△1.1	2.8	8.5	1.1	0.8	1.2	0.1
(도부현)								
2007	523	224	299	763	5,097	716	4,381	4,357
2006	525	227	298	702	5,092	785	4,307	4,344
전년대비증감률(%)	△0.4	△1.3	0.3	8.7	0.1	△8.8	1.7	0.3
(홋카이도)								
2007	435	45	390	425	10,126	1,690	8,436	6,328
2006	414	45	369	395	9,920	1,509	8,411	6,329
전년대비증감률(%)	5.1	0.0	5.7	7.6	2.1	12.0	0.3	0.0

자료원: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조사'

4. 가계 지출

4-1. 한 세대당 평균 가계 지출

연도	지출금액	식료	쌀		신선채소	
			지출금액	구입수량	지출금액	구입수량
			엔	kg	엔	g
2005	300,903	75,346	2,781	7.56	5,318	14,791
2006	295,333	74,343	2,614	7.14	5,375	14,560
2007	297,139	75,136	2,598	7.21	5,351	14,817
2007/2006 (%)	100.6	101.1	99.4	101.0	99.6	101.8

(다음표에 계속)

연도	식료					
	신선과실		신선육		신선어패	
	지출금액	구입수량	지출금액	구입수량	지출금액	구입수량
	엔	g	엔	g	엔	g
2005	3,112	8,017	4,940	3,308	4,638	3,331
2006	2,954	7,267	4,909	3,305	4,585	3,176
2007	3,129	7,388	5,006	3,360	4,565	3,161
2007/2006 (%)	105.9	101.7	102.0	101.7	99.6	99.5

자료원: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4-2. 가계의 식료 지출

연도	지출금액	식료	쌀		신선채소	
			지출금액 (엔)	구입수량 (kg)	지출금액 (엔)	구입수량 (g)
			2005	300,903	75,346	2,781
2006	295,333	74,343	2,614	7.14	5,375	14,560
2007	297,139	75,136	2,598	7.21	5,351	14,817
2007/2006 (%)	100.6	101.1	99.4	101.0	99.6	101.8

(다음표에 계속)

연도	식료					
	신선과실		신선육		신선어패	
	지출금액 (엔)	구입수량 (g)	지출금액 (엔)	구입수량 (g)	지출금액 (엔)	구입수량 (g)
2005	3,112	8,017	4,940	3,308	4,638	3,331
2006	2,954	7,267	4,909	3,305	4,585	3,176
2007	3,129	7,388	5,006	3,360	4,565	3,161
2007/2006 (%)	105.9	101.7	102.0	101.7	99.6	99.5

자료원: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4-3. 근로자 세대의 가계소득과 소비지수

2005년=100

연도	근로자의 가계		근로자세대의 소비수준 지수(전국)			
	실수입	가처분소득	총합	식료	주거	광열·수도
	엔	엔				
2005	522,629	439,672	100.0	100.0	100.0	100.0
2006	525,254	441,066	97.4	97.7	93.4	100.1
2007	527,129	441,070	98.0	98.4	91.7	97.1
2007/2006 (%)	100.4	100.0	100.6	100.7	98.2	97.0

(다음표에 계속)

연도	근로자세대의 소비수준 지수(전국)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	교육	교양·오락	잡화비
20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6	99.9	96.0	96.0	96.9	103.8	97.4	95.6
2007	100.1	97.7	97.3	98.2	103.1	103.6	100.4
2007/2006 (%)	100.2	101.8	101.4	101.3	99.3	106.4	105.0

자료원: 총무성 '가계조사보고'

5. 식료자급률

5-1. 식료자급률

단위: 10억 엔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민총소득(실질)	519,689	532,251	540,240	550,204	3)560,658
국내총생산(명목)	490,294	498,328	501,734	508,925	3)515,581
그중,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	1.7	1.6	1.5	1.5	..
그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21.0	21.2	21.5	21.3	..
그중, 도매, 소매가 차지하는 비율	13.5	13.6	13.8	13.5	..
국내총생산(실질)	512,513	526,578	536,762	549,631	3)561,279
총고정자본형성	111,783	113,159	116,885	119,415	3)119,827
국내가계최종소비지출	273,778	275,706	277,092	282,250	3)284,963
그중, 식품·음료·담배	51,559	51,564	49,575	49,322	..
1)공급열량을 토대로 한 종합식료자급률	40	40	40	39	3)40
1)생산액을 토대로 한 종합식료자급률	70	69	69	68	3)66
1)2)주식용곡물자급률	60	60	61	60	3)60
1)2)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 자급률	27	28	28	27	3)28

자료원: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 '국민경제계산'

주: 1)은 해당연도의 수치임

2)곡물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사항량)×100

3)개수치(概數値)임

5-2. 식료수급표

단위: 천 톤

종별 · 품목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국내 소비용	국내소비용 내역				
		수입량	수출량		사료용	가공용	조식료		순식료
							총수	1인1년당 kg	
쌀	8,714	856	140	9,257	5	373	8,655	67.7	7,841
밀	910	5,386	0	6,348	522	356	5,286	41.4	4,123
보리	180	1,903	0	2,199	1,138	985	70	0.5	32
나맥	14	0	0	12	0	7	5	0.0	3
고구마	968	64	1	1,031	5	367	618	4.8	556
감자	2,877	868	2	3,743	6	1,102	2,263	17.7	2,037
콩	227	4,161	12	4,304	125	3,223	866	6.8	866
채소	12,420	2,992	13	15,395	0	0	13,837	108.3	11,992
과실(계)	3,492	5,162	54	8,600	0	16	7,171	56.1	5,283
귤	1,066	0	5	1,082	0	0	920	7.2	690
사과	840	924	27	1,716	0	0	1,544	12.1	1,312
우유·유제품(계)	8,024	4,020	24	12,243	52	0	11,916	93.3	11,916
음용	4,509	0	0	4,509	0	0	4,464	34.9	4,464
유제품용	3,432	4,020	24	7,651	0	0	7,421	58.1	7,421
육류(계)	3,141	2,442	8	5,609	0	0	5,496	43.0	3,614
쇠고기	513	662	0	1,180	0	0	1,156	9.0	728
돼지고기	1,246	1,125	1	2,391	0	0	2,343	18.3	1,476
닭고기	1,372	605	7	1,975	0	0	1,935	15.1	1,374
계란	2,599	113	0	2,712	0	0	2,584	20.2	2,196
어패류	5,079	5,161	815	9,526	2,281	0	7,245	56.7	4,072
해조류	123	54	3	174	0	28	146	1.1	146
설탕류(계)							2,529	19.8	2,529
막설탕	168	1,475	8	1,586	0	1,586	0	0.0	0
정당(精糖)	2,157	375	1	2,533	2	22	2,489	19.5	2,489
유지류(계)	2,050	934	11	2,988	116	362	2,495	19.5	1,840
식물유지	1,731	835	10	2,574	0	252	2,308	18.1	1,712
동물유지	319	99	1	414	116	110	187	1.5	128
된장	484	8	10	485	0	0	484	3.8	484
간장	942	1	19	924	0	0	921	7.2	921
버섯류	442	92	1	533	0	0	506	4.0	438

자료원: 농림수산성 장관 관방 식료안전보장과 '식료수급표', 2007년 기준

【참고자료】

□ 식료자급률이란?

- 식료자급률이란 국내의 식료소비가 국내생산을 통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식료의 안정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공급열량 베이스를 통해 산출한 식료자급률이 사용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채소 내지 과실은 비교적 저칼로리이며 축산물의 경우 수입사료에 의해 생산된 열량은 국산공급열량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열량 베이스를 통해 산출할 경우 낮은 자급률이 도출됨. 이로 인해 국내생산동향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생산액을 베이스로 산출한 자급률이 더욱 유용함

□ 2006년, 일본 9년 만에 자급률 저하

-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공급열량 베이스로 산출한 식료자급률은 1965년도의 73%로부터 33년 뒤에 해당하는 1998년에는 40%까지 저하되었으며 이후 8년 연속 비슷한 자급률을 유지해옴. 그러나 2006년도에는 주로 악천후의 영향 등에 의해 설탕류, 고구마, 감자류 꺾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 및 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 1포인트 감소하여 39%로 저하

□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저수준

-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최저 수준임. 곡물자급률도 세계 175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125위이며 인구가 1억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에서는 최하위임

□ 식생활의 변화가 식료자급률의 장기적인 저하에 영향

- 식료자급률의 장기적인 저하는 일본 내에서 자급 가능한 쌀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 생산으로는 공급이 곤란한 옥수수 등의 사료곡물이 필요한 축산물 및 유량원료(콩, 유채씨)를 사용하는 유지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식생활이 크게 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1965년과 41년 후에 해당하는 2006년도의 국민 1인 1일당 공급열량을 비교해보면 공급열량은 2,459kcal에서 2,548kcal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쌀의 비율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축산물 및 유지류의 비율은 상승
- 쌀의 소비량은 정점을 맞이한 1962년을 기준으로 2006년에는 감소하였음. 한편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여 1960년도와 비교해서 각각 4.3배, 3.4배까지 증가
- 또한 외식 및 식품가공업 등의 실수자(實需者)의 가공 및 업무용 수요의 증가에 일본 국내 생산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도 식료자급률의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도의 공급열량 베이스 자급률 목표는 45%

- 식료자급률은 일본 내의 농업생산 상황뿐만 아니라 식료소비방식에 의해서도 좌우됨. 따라서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에 있어서 식료 소비 및 농업생산의 양면에 걸친 국민 참가형 지침으로서, 국민에게 식료로 공급되는 열량의 50%이상을 국산으로 충당할 것을 목표로 당면의 실현성을 고려하여 2015년의 식료자급률목표로 공급열량 베이스 기준, 45%, 생산액 베이스 기준으로 76%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2006년도의 식료자급률은 39%로 9년 만에 저하됨. 이로 인해 향후 식료자급률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행동계획을 책정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자가 단결하여 성과를 의식한 전략적인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식료자급률의 향상을 위해서 식료자급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쌀, 사료작물, 유지류, 채소, 이 4가지 중점품목에 착안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추가적인 활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화할 전망이다
 - ① 쌀가루이용 추진을 포함한 쌀의 소비확대
 - ② 사료자급률의 향상
 - ③ 유지류의 과다섭취의 억제
 - ④ 가공·업무용수요에 대응한 채소 생산확대
 - ⑤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 추진

1. 국제 수지

단위: 억 원

구 분	2005	2006	2007	전년대비
경상수지	182,591	194,488	250,012	+51,525
-무역·서비스수지	76,930	73,460	100,755	+27,316
-무역수지	103,348	94,643	123,791	+29,148
-수출	626,319	716,309	797,239	+80,931
-수입	522,971	621,665	673,448	+51,783
-서비스수지	△26,418	△21,183	△23,016	△1,832
-소득수지	113,817	137,457	162,730	+25,273
-경상이전수지	△8,157	△12,429	△13,493	△1,064
자본수지	△140,068	△124,665	△219,166	△94,500
-대외직접투자	△50,459	△58,459	△86,182	△27,723
-대내직접투자	3,059	△7,566	26,479	+34,045
-대외증권투자	△235,674	△96,890	△129,368	△32,477
-주식	△25,406	△30,550	△29,689	+860
-중장기채	△220,246	△77,255	△102,434	△25,179
-단기채	9,978	10,914	2,756	△8,158
-대내증권투자	203,461	221,985	249,267	+27,782
-주식	139,786	98,554	54,204	△44,350
-중장기채	72,321	84,599	105,246	+20,647
-단기채	△8,646	38,832	89,817	+50,984
-금융파생상품	△8,023	2,835	3,216	+381
-기타투자	△47,019	△181,081	△278,227	△97,147
외화준비증감	△24,562	△37,196	△42,947	△5,778
오차탈루	△17,960	△36,627	12127	+48,754
경상수지대명목 GDP비율(%)	3.6	3.9	4.8	-

자료원: 재무성 국제국

2.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2-1. 총괄 및 무역수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율
		100만 엔	%				
수 출	총액 (A)	54,548,350	61,169,979	65,656,544	75,246,173	83,931,438	11.5
	농림수산물계 (B)	340,234	360,899	400,825	448,961	515,971	14.9
		(278,865)	(295,398)	(330,996)	(373,897)	(433,688)	(16.0)
	농산물	195,852	203,814	216,823	235,884	267,759	13.5
		(158,773)	(165,842)	(177,167)	(194,591)	(222,005)	(14.1)
	임산물	9,002	8,844	9,174	9,027	10,432	15.6
		(9,002)	(8,844)	(9,174)	(9,027)	(10,432)	(15.6)
	수산물	135,379	148,242	174,828	204,050	237,780	16.5
		(111,090)	(120,712)	(144,655)	(170,279)	(201,252)	(18.2)
	B / A (%)	0.6	0.6	0.6	0.6	0.6	0.0
	(0.5)	(0.5)	(0.5)	(0.5)	(0.5)	(0.0)	
수 입	총액 (C)	44,362,023	49,216,636	56,949,392	67,344,293	73,135,920	8.6
	농림수산물계 (D)	7,077,515	7,455,450	7,657,413	8,085,915	8,557,424	5.8
	농산물	4,368,078	4,573,929	4,792,187	5,004,148	5,530,399	10.5
	임산물	1,140,277	1,244,562	1,196,539	1,374,929	1,390,502	1.1
	수산물	1,569,159	1,636,959	1,668,688	1,706,839	1,636,523	△4.1
	D / C (%)	16.0	15.1	13.4	12.0	11.7	△2.5
무역수지 (A - C)	10,186,327	11,953,343	8,707,152	7,901,880	10,795,517	36.6	
농림수산물 (B - D)	△6,737,281	△7,094,550	△7,256,589	△7,636,954	△8,041,453	5.3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주: 수출란의 괄호안 수치 알콜 음료, 담배, 진주를 제외한 금액임

2-2. 품목별 수출실적

순위	품 목	수량 단위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100만엔	%
1	진주 (천연/양식)	kg	23,741	31,495	27,771	17.0	33,859	7.5
2	담배	t	24,860	27,279	22,883	△7.9	30,034	10.1
3	가다랑어 · 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t	77,902	15,032	103,433	32.8	22,992	53.0
4	소스혼합조미료	t	40,422	18,383	42,347	4.8	19,240	4.7
5	건해삼 (조제품)	t	273	12,563	345	26.4	16,667	32.7
6	알콜음료	k l	47,024	14,014	44,607	△5.1	15,720	12.2
7	고등어 (냉장 · 냉동)	t	179,861	12,650	156,266	△13.1	14,099	11.5
8	연어 · 송어 (신선/냉장/냉동)	t	66,451	17,731	58,859	△11.4	13,352	△24.7
9	가리비 (신선/냉장/냉동/염수 /건조)	t	6,831	10,177	8,848	29.5	12,696	24.8
10	명태(신선/냉장/냉동)	t	82,481	11,262	79,624	△3.5	12,319	9.4
11	과중용 종자 등	t	1,987	11,402	2,012	1.3	11,594	1.7
12	조개관자 (조제품)	t	1,457	10,385	1,470	0.9	10,097	△2.8
13	청량음료수	k l	29,042	6,845	33,917	16.8	8,224	20.1
14	사과	t	18,761	5,697	25,728	37.1	7,994	40.3
15	폐지가죽 (원피)	t	63,912	7,586	65,038	1.8	7,752	2.2
16	밀가루	t	290,029	7,894	255,375	△11.9	7,724	△2.2
17	배합조제사료	t	27,307	6,379	26,290	△3.7	6,768	6.1
18	반죽제품 (어육소세지 등)	t	7,762	5,301	8,445	8.8	5,909	11.5
19	전복 (조제)	t	42	2,918	69	64.8	5,497	88.4
20	초콜릿	t	4,958	4,620	5,546	11.9	5,473	18.5
상위 20품목 계 (A)				239,613		268,011	268,011	11.9
농림수산물합계 (B)				448,961		515,971		14.9
A / B (%)				53.4		51.9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2-3. 품목별 수입실적

순위	품 목	수량 단위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100만엔	%
1	옥수수	천t	16,883	300,762	16,628	1.5	451,697	50.2
2	돼지고기	t	725,049	383,611	760,350	4.9	403,595	5.2
3	담배	t	156,914	398,836	163,683	4.3	388,946	2.5
4	제재가공제	천m ³	8,822	352,683	7,645	13.3	345,550	2.0
5	칩	천t	13,776	245,437	14,337	4.1	287,869	17.3
6	쇠고기	t	461,543	226,276	474,798	2.9	241,304	6.6
7	신선·건조과실	t	1,848,037	233,335	1,772,201	4.1	240,540	3.1
8	알콜음료	kl	418,665	222,359	415,641	0.7	232,584	4.6
9	새우(신선/냉장/냉동)	t	238,020	248,013	214,575	9.8	225,928	8.9
10	가다랑어·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t	324,509	230,568	267,817	17.5	217,408	5.7
11	천연고무	t	891,674	231,494	855,790	4.0	211,748	0.8
12	합판	천m ³	553,298	242,126	396,909	28.3	211,365	12.7
13	통나무	천m ³	10,582	213,530	8,973	15.2	207,028	3.0
14	콩	천t	4,042	149,072	4,161	209	195,481	31.1
15	밀가루	천t	5,337	148,919	5,275	1.2	192,168	29.0
16	연어·송어 (신선/냉장/냉동)	t	202,423	107,032	238,226	17.7	142,146	32.8
17	닭고기조제품	t	345,300	132,510	344,621	0.2	137,436	3.7
18	냉동채소	t	834,592	123,417	823,854	1.3	126,484	2.5
19	커피콩(생두)	t	422,696	113,207	389,818	7.8	117,645	3.9
20	채종(채유용)	t	2,274	83,385	2,134	6.2	112,518	34.9
상위 20품목 계 (A)				4,368,572			4,689,441	7.3
농림수산물합계 (B)				8,085,915			8,557,424	5.8
A / B (%)				54.0			54.8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2-4. 국가별 수출실적

순위		국가 · 지역명	2006		2007		
2006	2007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100만엔	%	%
1	1	홍콩	83,617	18.6	104,681	20.3	25.2
2	2	미국	78,907	17.6	85,923	16.7	8.9
3	3	대만	63,748	14.2	71,887	13.9	12.8
5	4	대한민국	51,583	11.5	61,542	11.9	19.3
4	5	중국	59,539	13.3	57,020	11.1	△4.2
6	6	타이	19,916	4.4	24,354	4.7	22.3
7	7	싱가포르	9,922	2.2	11,680	2.3	17.7
9	8	베트남	4,516	1.0	7,516	1.5	66.4
8	9	호주	4,902	1.1	5,459	1.1	11.4
11	10	캐나다	4,448	1.0	5,409	1.0	21.6
21	11	필리핀	2,751	0.6	5,343	1.0	94.2
13	12	네덜란드	4,190	0.9	5,167	1.0	23.3
12	13	독일	4,306	1.0	5,167	1.0	20.0
16	14	인도네시아	3,997	0.9	4,518	0.9	13.0
15	15	영국	4,008	0.9	4,489	0.9	12.0
17	16	말레이시아	3,698	0.8	4,315	0.8	16.7
18	17	러시아	3,392	0.8	4,207	0.8	24.0
14	18	프랑스	4,035	0.9	4,106	0.8	1.8
10	19	괌 (미)	4,487	1.0	3,955	0.8	△11.9
20	20	아랍 에미리트연방	2,910	0.6	3,246	0.6	11.5
	참고	E U (27개국)	24,783	5.5	28,330	5.5	14.3
		상위 20개국 계	418,873	93.3	479,986	93.0	14.6
		농림수산물 계	448,961	100.0	515,971	100.0	14.9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2-5. 국가별 수입실적

순위		국가 · 지역명	2006		2007		
2006	2007		수출액	구성비	수출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100만엔	%	%
1	1	미국	1,772,801	21.9	1,965,270	23.0	10.9
2	2	중국	1,223,288	15.1	1,206,803	14.1	△1.3
3	3	호주	620,561	7.7	652,176	7.6	5.1
5	4	캐나다	492,870	6.1	523,812	6.1	6.3
4	5	타이	437,517	5.4	437,888	5.1	0.1
6	6	인도네시아	339,082	4.2	337,573	3.9	△0.4
7	7	말레이시아	270,967	3.4	277,778	3.2	2.5
9	8	러시아	220,055	2.7	237,439	2.8	7.9
8	9	칠레	215,892	2.7	223,343	2.6	3.5
11	10	프랑스	199,310	2.5	214,442	2.5	7.6
21	11	브라질	189,419	2.3	210,558	2.5	11.2
13	12	뉴질랜드	175,584	2.2	190,435	2.2	8.5
12	13	필리핀	139,253	1.7	150,403	1.8	8.0
16	14	대한민국	152,783	1.9	147,006	1.7	△3.8
15	15	독일	84,422	1.0	141,780	1.7	67.9
17	16	베트남	134,762	1.7	135,250	1.6	0.4
18	17	덴마크	115,541	1.4	111,175	1.3	△3.8
14	18	대만	117,587	1.5	110,550	1.3	△6.0
10	19	이탈리아	86,107	1.1	94,922	1.1	10.2
20	20	인도	78,346	1.0	85,449	1.0	9.1
	참고	EU(27개국)	866,938	10.7	971,209	11.3	12.0
		상위20개국계	6,542,439	87.8	6,703,971	87.5	7,066,146
		농림수산물계	7,455,450	100.0	7,657,413	100.0	8,085,915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2-6.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상대국가 순위

단위: 억 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	홍콩	미국	대만	한국	중국
액수	1,047	859	719	615	570
농산물	대만	미국	홍콩	한국	중국
액수	621	487	400	276	209
임산물	중국	한국	필리핀	미국	대만
액수	35	13	11	11	6
수산물	홍콩	미국	중국	한국	타이
액수	644	362	326	326	174

자료원: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2-7.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상대국가 순위

단위: 억 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타이
액수	19,653	12,068	6,522	5,238	4,379
농산물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타이
액수	17,205	6,945	4,802	3,387	3,103
임산물	말레이시아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액수	1,797	1,787	1,358	1,194	1,175
수산물	중국	미국	러시아	칠레	타이
액수	3,336	1,412	1,199	1,183	1,16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3. 대 한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

3-1. 대 한국 주요 수출품목

구분	단위	순위	연도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100만엔		100만엔		100만엔	%
담배	kg	3	923	1,065	654	643	1,062	1,346	4.5
소스혼합조미료	t	4	2,321	1,177	3,368	1,525	3,400	1,615	8.4
건해삼	t	2	8	188	5	38	7	137	0.8
알콜음료	kl	4	2,084	469	3,309	859	5,074	1,136	7.2
고등어	t	1	5,151	313	33,729	2,766	34,665	3,646	25.9
연어·송어	t	5	1,586	397	750	229	673	149	1.1
가리비	t	5	535	478	868	618	1,240	879	6.9
명태	t	1	26,898	4,776	31,078	5,706	31,734	6,645	53.9
파종용 씨앗	t	1	288	1,870	294	1,787	304	2,144	18.5
돼지가죽	t	5	3,491	410	3,372	410	1,419	164	2.1
배합조제사료	t	1	5,570	1,563	9,630	2,326	7,836	2,228	32.9
반죽제품 (어육소시지 등)	t	4	89	79	188	207	258	278	4.7
초콜릿 과자	t	3	288	181	747	632	916	1,006	18.4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3-2. 대 한국 주요 수입품목

구분	단위	순위	연도						
			2005		2006		2007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성비
				100만엔		100만엔		100만엔	%
알콜음료	kl	5	100,414	13,795	99,603	14,511	106,667	15,126	6.5
가다랑어·다랑어	t	2	52,451	25,876	43,425	26,256	37,145	26,967	12.4
닭고기조제품	t	3	642	318	576	302	549	284	0.2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4. 농산물 수출입 동향

□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가

- 일본의 농산물 수입액은 엔고 현상의 진전 및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 가운데 식생활의 다양화 등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은 과거 최고액인 5조 5,304억엔에 달하여 대폭적인 수입초과의 해였음
- 또한 WTO교섭 등을 통해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해온 결과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가로 자리 잡았음. 농산물수출은 세계적인 일식유행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등을 배경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200억 엔의 수출액을 기록
- 일본의 농산물 수입은 미국(전체수입액 가운데 31.1%), EU(13.4%), 중국(12.6%), 호주(8.7%), 캐나다(6.1%)으로부터 주로 이루어짐. 이는 일본의 농산물 수입 상대국가 가운데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며 옥수수와 관련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0%를 초과하고, 쇠고기는 호주가 80%를 차지하는 등 일본은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 아울러 주된 수입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해외 농지면적은 1,245만 ha로 추정되는데 이는 일본이 자국 경지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농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여 상시 농지 및 농업용수를 확보하며 농업 노동자 육성과 확보, 그리고 농업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식료공급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함
- 일본의 식료공급은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수급 환경이 돌변하여 국제가격이 고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내의 식료품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 따라서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는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액의 대폭 증가

- 세계적인 일식유행과 아시아 국가의 소득수준 향상을 배경으로 일본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은 최근 대폭 증가하였음. 2007년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6%증가하여 4.337억 엔이 되었는데 이는 3년 전인 2004년과 비교했을 때 1.5배 증가한 수치임
- ‘21세기 신농정(新農政)2006’정책에서는 농림수산물 · 식품의 수출액을 2004년부터 5년간 배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계획이 제기되었으며 ‘21세기 신농정 2007’정책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가속시켜서 2013년까지 수출액을 1조 엔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 새롭게 제기되어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7년, 수출상대국가 제 1위는 홍콩

- 농림수산물 · 식품의 수출증가에는 수산물 수출의 증가가 크게 기여했으며 농산물의 기여도도 최근 증가하고 있음. 수출상대국가는 아시아 및 미국이 중심임. 2007년은 홍콩은 미국을 넘어서 일본의 수출 대상국 1위가 되었으며 경제발전에 동반되는 고액 소득자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액의 증가도 현저하여 對중국 수출액이 2007년에 564억 엔으로 5년 전보다 1.9배 증가했음

□ 고구마, 사과, 딸기, 쇠고기 수출 확대

- 품목별로 보면 최근 고구마, 사과, 딸기, 쇠고기, 돼지고기, 녹차 외에도 초콜릿과자 등의 과자 수출의 신장이 현저함. 쌀의 경우 주로 대만, 홍콩, 미국 등으로 수출되나 2007년 6월, 對중국 수출이 4년 만에 재개되어 2008년 3월 시점에서 124톤이 수출되는 등 對중국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종합적인 수출전략의 구체화 추진

- 2013년까지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의 실현을

위해 2007년 5월에 농림수산물등수출촉진전국협의회에서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종합적인 수출전략’이 승인되었음. 동 전략에서는 관계부성, 지방공공단체 등이 연대하여 수출환경의 정비, 품목별 전략적 수출촉진,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 일본식·일본식재 등의 對해외 정보발신을 행하기로 되어 있음

□ 품목별 전략적 수출촉진이 중요

- 또한 품목별로 수출촉진을 중점적으로 도모해야하는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품목별 전략적인 수출촉진을 실시. 쌀·쌀가공품의 경우 쌀은 대만,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가공쌀밥은 미국, 캐나다가 중점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등 중점개별품목과 중점국가가 명확히 규정되고 수출확대를 위한 공정표가 책정되어 있음. 또한 와규(和牛)에 대한 통일마크의 작성 등 지적재산전략·브랜드전략의 추진, 품목별 광보전략의 책정과 광보매체의 정비, 공급기반의 강화도 일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일본식·일본식재 등의 해외 홍보의 중요성

-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식·일본식재 등의 해외홍보가 효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일본은 수출촉진 로고마크를 제작하고 對중국 쌀 수출 재개 시 중점적·전략적으로 행사가 개최된 바 있음. 또한 관계부성·단체 등과 연대하여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등에 대해서 제철의 고품질 일본식재를 사용한 일식 등을 제공하는 ‘WASHOKU-Try Japan’s Good Food’행사가 실시되고 있음
- 한편 일본식을 홍보할 수 있는 해외 일본 음식점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본식의 보급을 통해 일본식재의 수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민간유지에 의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일본식음식점 해외보급추진기구(JRO)’가 설립되었음. JRO는 타이베이, 상하이, 방콕, 런던 등의 지역에서 지부에 일식 음식점 관계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일본의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 촉진 목표】

- 일본은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의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함
 - 농림수산물 · 식품의 수출액을 2013년까지 1조 엔 규모로 증액
- 또한 상기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마련
 - ① 농림수산물등 해외판로창출 · 확대사업
 - 유망한 수출대상국과 수출이 기대되는 국가 · 지역에서의 상설점포 설치 및 상담회 개최를 통해서 해외에서의 일본산 농림수산물 등의 판로확대를 지원
 - ②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사업
 - 향후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특정품목과 관련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수출에 임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출확대 프로젝트 등을 지원
- 2007년도의 농림수산물 · 식품 수출액은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3년에 수출액을 1조엔 규모로 증액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엔고(円高)등의 시장 정세를 주시하면서 2007년도와 동일하게 전략에 따라서 중점품목 및 중점국가에 대해 수출환경 정비, 품목별 전략적인 활동, 의욕 있는 농림어업자에 대한 지원, 관계성청과 연대한 일식 · 일본식재의 해외홍보를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1. 쌀

1-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작황 지수	10a당 평년 수량
		자실용				
	ha	ha	kg	t		kg
1997	1,950,000	1,944,000	515	10,004,000	102	504
1998	1,800,000	1,793,000	499	8,939,000	98	507
1999	1,786,000	1,780,000	515	9,159,000	101	512
2000	1,768,000	1,763,000	537	9,472,000	104	518
2001	1,711,000	1,700,000	532	9,048,000	103	518
2002	1,693,000	1,683,000	527	8,876,000	101	522
2003	1,670,000	1,660,000	469	7,779,000	90	524
2004	1,704,000	1,697,000	514	8,721,000	98	525
2005	1,709,000	1,702,000	532	9,062,000	101	527
2006	1,692,000	1,684,000	507	8,546,000	96	529
2007	1,678,000	1,669,000	522	8,705,000	99	529
2008	1,637,000	-	542	8,647,000	102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경지 및 재배면적 통계', '작물통계'

주: 2008년 수치는 개수치임

1-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논·밭 비		논벼				
	농사면적	수확량	농사면적	10a당 수확량	10a당 평년 수확량	작황지수	수확량
전국	1,673,000	8,714,000	1,669,000	522	529	99	8,705,000
홋카이도	116,000	603,200	116,000	520	532	98	603,200
도호쿠	433,800	2,431,000	433,800	560	557	101	2,431,000
호쿠리쿠	215,600	1,140,000	215,600	529	532	99	1,140,000
간토	312,800	1,629,000	309,300	524	534	98	1,620,000
도카이	107,100	529,200	107,100	494	503	98	529,200
긴키	113,100	569,100	113,100	503	509	99	569,100
주고쿠	119,000	592,200	119,000	498	517	96	592,200
시코쿠	58,700	281,400	58,700	479	484	99	281,400
규슈	195,900	936,300	195,800	478	502	95	936,200
오кина와	1,020	2,880	1 020	282	309	91	2 88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 2007년도 논벼의 작황은 등숙(登熟)기간의 기후가 전체적으로 고온·소우 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서쪽지방의 등숙이 억제경향이었으나 추우전선(秋雨前線) 및 태풍의 피해가 적었던 결과 작황지수는 전국평균 99, 10a당 수량은 522kg, 수확량은 870만 5,000톤(전년대비 102%)이었음

□ 논벼

- 2007년산 논벼의 작황은 전국평균 작황지수 99, 10a당 수량이 522kg이었음. 농업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에서는 이삭 수 및 벼 수가 평년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7월의 저온 및 수확기의 계속적인 강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작황지수 98, 10a당 수량 520kg이었음
- 도호쿠지역에서는 태평양측을 중심으로 벼 수가 평년수준 내지 그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일부지역에서 폭우 등에 의한 피해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등숙정도가 양호했던 결과 작황지수 101의 10a당 수량 560kg이었음
- 간토지역으로부터 서쪽지역에서는 벼 수가 평년수준 내지 그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등숙기간 동안, 고온·소우의 영향으로 인해 등숙이 억제되었고 일부지역에서 멸구 및 문고병 등의 병충해도 발생했으나 추우전선 및 태풍 피해가 적었던 결과 호쿠리쿠지역은 작황지수 99, 10a당 수량 529kg, 긴키지역의 경우 작황지수 99, 503kg, 시코쿠지역은 99, 479kg, 간토지역은 98, 524kg, 도카이지역은 98, 494kg, 주고쿠는 96, 498kg이었음. 또한 규슈에서는 태풍 제4호 등의 영향을 받은 미야자키현 및 가고시마현의 조기미로 인해 유백미 등의 등숙장해가 다발한 결과 작황지수 95, 10a당 수량 478kg이었음

□ 밭벼

- 2007년산 밭벼는 주산지인 이바라키현의 생육기간 동안 기후 및 한파 등의 피해가 적었던 결과 평균수량대비 108%, 10a당 수량 257kg이었음

1-3. 2008년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예상치

구분	재배면적	전년대비		10a당 예상 수량	참고			
		차이	비율		주식용 재배면적	예상수확량 (주식용)	10a당 평년수량	작황 지수
전국	1,637,000	△41,000	98	542	1,597,000	8,647,000	530	102
홋카이도	114,600	△1,500	99	565	110,900	626,600	534	106
도호쿠	419,400	△16,400	96	565	406,900	2,299,000	558	101
호쿠리쿠	211,100	△5,100	98	545	201,700	1,100,000	532	102
관동	302,100	△8,300	97	546	297,300	1,622,000	534	102
도카이	106,000	△1,600	99	510	104,600	533,600	504	101
긴키	111,100	△2,200	98	520	109,900	571,600	508	102
주고쿠	117,800	△1,700	99	529	116,600	616,600	517	102
시코쿠	58,400	△400	99	509	58,300	296,500	484	105
규슈	195,800	△4,100	98	516	189,600	978,100	502	103
오кина와	687	△8	99	382	384	9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8년 9월 시점

주: 작황지수는 10a당 예상수량/10a당 평년수량을 통해 계산된 수치임.

1-4. 2007년도 논벼의 피해면적 및 피해량

피해종류	피해면적	피해량	구성비
	ha	t	%
총수	4,209,000	851,200	100
기상피해	2,520,000	579,700	68
풍수해	456,100	134,300	16
가뭄피해	10,900	2,910	0
냉해	281,900	120,000	14
일조량부족	1,248,000	241,300	28
고온장해	519,200	80,800	9
기타	3,620	395	0
병해	849,300	177,200	21
도열병	314,300	93,000	11
문고병	295,900	54,500	6
기타	239,100	29,700	3
충해	721,900	78,400	9
이화명충	62,300	6,570	1
멸구	108,400	28,500	3
방귀벌레	124,600	11,600	1
기타	426,600	31,700	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 주: 1. 기상피해의 기타는 염해 등
 2. 병해의 기타는 깨씨무늬병 등
 3. 충해의 기타는 벼물바구미 등

1-5. 수급동향

연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재고 증감량	국내 소비량	순식료	1인1년당 공급량	1인1일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천 t	천 t	천 t	천 t	천 t	천 t	kg	g
2003	7,792	957	237	△904	9,389	7,643	61.9	163.6
2004	8,730	726	193	△290	9,269	7,569	61.5	162.4
2005	8,998	978	179	252	9,222	7,592	61.4	162.8
2006	8,556	799	160	△466	9,186	7,492	61.0	160.6
2007	8,714	856	140	△466	9,257	7,841	61.4	167.7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1-6. 가격 동향

1-6-1. 생산자가격

단위: 원

연도 · 월별		멥쌀현미 (60kg)	잡쌀현미 (60kg)	멥쌀백미 (10kg)	잡쌀백미 (10kg)
2005		13,300	14,490	3,060	3,792
2006		13,130	13,540	3,069	3,536
2007		12,790	12,200	3,022	3,481
2007	8	12,870	10,000	2,849	3,511
	9	12,410	12,160	3,631	4,296
	10	12,080	11,300	3,015	3,438
	11	12,210	12,950	2,966	3,160
	12	12,350	14,440	2,911	3,344
2008	1	12,320	13,540	2,976	3,266
	2	12,380	14,170	2,987	2,931
	3	12,400	14,840	2,497	3,402
	4	12,510	...	2,718	3,402
	5	12,490	...	2,701	3,402
	6	12,510	...	2,376	3,402
	7	12,520	...	2,868	3,402
	8	12,540	12,630	2,879	3,40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1-6-2.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멤쌀 (5kg)		참쌀 (1kg)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2,040	2,219	643	580
2006		1,996	2,147	614	538
2007		1,950	2,154	610	525
2007/2006 (%)		97.7	100.3	99.3	97.6
2007	8	1,949	2,152	614	536
	9	1,924	2,152	602	528
	10	1,913	2,152	617	536
	11	1,928	2,152	600	534
	12	1,903	2,168	589	504
2008	1	1,819	2,159	592	502
	2	1,823	2,159	600	509
	3	1,822	2,159	583	523
	4	1,817	2,159	604	532
	5	1,795	2,187	589	532
	6	1,823	2,187	589	514
	7	1,843	2,197	587	514
	8	1,854	2,177	590	514
2008.8/2007.8 (%)		95.1	101.2	96.1	95.9
2008.8/2008.7 (%)		100.6	99.1	100.5	1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2. 밀 · 보리

2-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도	밀			두줄보리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1998	69,500	244	169,900	36,200	263	95,100
1999	74,100	382	282,900	33,400	422	140,800
2000	79,900	388	310,100	34,000	430	146,200
2001	89,400	326	291,000	36,800	351	129,300
2002	94,000	344	323,000	38,400	332	127,300
2003	99,500	300	298,400	37,100	310	115,000
2004	98,600	306	302,100	34,800	354	123,200
2005	98,000	341	334,600	32,500	359	116,700
2006	97,700	331	323,100	31,800	344	109,300
2007	92,600	357	330,300	32,200	374	120,400

(다음표에 계속)

연도	여섯줄보리			나맥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ha	kg	t	ha	kg	t
1998	10,100	253	25,600	5,420	199	10,800
1999	10,300	338	34,800	5,100	392	20,000
2000	11,400	336	38,300	5,400	409	22,100
2001	15,100	320	48,300	5,940	328	19,500
2002	17,600	348	61,300	6,190	325	20,100
2003	18,200	312	56,800	5,900	312	18,400
2004	17,600	291	51,200	5,060	306	15,500
2005	15,500	303	47,000	4,540	267	12,100
2006	15,300	278	42,500	4,420	303	13,400
2007	15,700	334	52,500	4,020	371	14,9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작물통계'

2-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2-2-1. 밀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도부현	92,600	357	330,300	△5,100	95	108	7,200	102	107
도호쿠	8,160	199	16,200	△80	99	112	1,600	111	94
호쿠리쿠	x	157	x	x	x	x	x	x	127
간토	22,800	336	76,700	△2,900	89	93	△15,900	83	88
도카이	14,300	311	44,500	100	101	114	5,600	114	107
긴키	8,810	286	25,200	110	101	109	2,300	110	110
주고쿠	1,270	343	4,350	0	100	119	680	119	117
시코쿠	1,590	367	5,830	△110	94	115	400	107	104
규슈	35,600	442	157,400	△2,200	94	115	12,500	109	122
오кина와	14	171	24	4	140	122	10	171	9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2-2-2. 보리

구분	재배면적	수확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수확량	
			대차	대비	대차	대비
	ha	t	ha	%	t	%
도부현	144,600	518,300	△4,700	97	29,800	106
도호쿠	9,570	20,000	△70	99	1,100	106
호쿠리쿠	8,080	28,800	610	108	8,100	139
간토	40,300	130,800	△3,700	92	△,20,300	87
도카이	14,600	45,600	0	100	6,200	116
간키	9,750	28,400	160	102	2,600	110
주고쿠	3,980	16,200	△170	96	1,200	108
시코쿠	3,880	14,300	△550	88	100	101
규슈	54,300	234,200	△1,100	98	30,800	115
오кина와	14	24	4	140	10	17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두줄보리】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도부현	33,200	412	136,700	1,000	103	110	16,400	114	120
도호쿠	-	-	-	-	-	-	-	-	-
호쿠리쿠	11	200	22	1	110	105	3	116	183
간토	12,300	380	46,800	200	102	126	10,200	128	106
도카이	22	46	10	△3	88	64	△8	56	27
긴키	150	262	393	△4	97	98	△19	95	97
주고쿠	2,580	411	10,600	90	104	91	△700	94	115
시코쿠	21	381	80	△3	88	97	△14	85	118
규슈	18,100	435	78,700	700	104	105	6,900	110	131
오кина와	-	-	-	-	-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여섯줄보리】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도부현	15,700	334	52,500	400	103	120	10,000	124	105
도호쿠	1,410	267	3,770	10	101	86	△550	87	92
호쿠리쿠	8,000	359	28,700	610	108	128	8,000	139	123
간토	5,330	315	16,800	△250	96	118	1,900	113	87
도카이	327	309	1,010	45	116	166	485	192	118
긴키	598	353	2,110	30	105	104	180	109	108
주고쿠	75	263	197	10	115	209	115	240	141
시코쿠	-	-	-	-	-	-	-	-	-
규슈	6	383	23	△6	50	264	6	135	105
오кина와	-	-	-	-	-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나 맥】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도부현	4,020	371	14,900	△400	91	122	1 500	111	117
도호쿠	-	-	-	-	-	-	-	-	-
호쿠리쿠	-	-	-	-	-	-	-	-	-
간토	x	331	x	x	x	82	x	x	89
도카이	2	300	6	△1	67	166	1	120	150
긴키	191	341	651	1	101	126	136	126	125
주고쿠	x	303	x	x	x	127	x	x	129
시코쿠	2,270	367	8,330	△430	84	115	△320	96	106
규슈	1,340	387	5,190	△10	99	140	1,450	139	141
오кина와	-	-	-	-	-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2-3.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재고 증감량	국내소비량			1인1년당 공급량 (kg)		
		수입량	수출량		조식료	사료용	가공용			
2002	소맥	829	4973	0	△401	6203	5207	440	375	31.9
	대맥	197	2142	0	△86	2425	81	1281	1055	0.3
	나맥	20	0	0	0	20	9	0	10	0.0
2003	소맥	856	5539	0	79	6316	5338	429	366	32.6
	대맥	180	1999	0	△84	2263	78	1195	984	0.3
	나맥	18	0	0	△1	19	8	1	10	0.0
2004	소맥	860	5484	0	78	6266	5286	431	364	32.3
	대맥	183	2094	0	△38	2315	67	1187	1055	0.2
	나맥	16	0	0	△4	20	12	0	8	0.1
2005	소맥	875	5292	0	△46	6213	5198	476	357	31.7
	대맥	171	2030	0	△64	2265	56	1227	976	0.2
	나맥	12	0	0	△4	16	8	0	8	0.0
2006	소맥	937	5464	0	73	6228	5207	484	357	31.8
	대맥	161	2153	0	11	2303	52	1241	1004	0.2
	나맥	13	0	0	1	12	4	0	8	0.0
2007	소맥	910	5386	0	△52	6348	-	522	356	41.4
	대맥	180	1903	0	△116	2199	-	1,138	985	0.5
	나맥	14	0	0	2	12	-	0	7	0.0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2-4. 가격동향

2-4-1. 생산자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두줄보리 (50kg)	밀 (60kg)	나뭇 (60kg)	여섯줄보리 (50kg)
2005		7,098	8,920	8,827	6,793
2006		7,030	9,144	8,840	6,606
2007		6,885	4,763	4,462	3,388
2007	8	6,985	3,893	4,045	3,523
	9	7,376	5,144
	10	7,001	5,230
	11	...	5,230
	12
2008	1
	2
	3
	4
	5
	6	6,565	3,958	4,713	2,805
	7	6,973	3,997	4,436	3,402
	8	7,013	5,17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2-4-2.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밀(가루) (1kg)	
		도쿄	오사카
2005		189	192
2006		191	191
2007		189	191
2007/2006 (%)		99.0	100.0
2007	8	188	190
	9	186	190
	10	186	193
	11	188	193
	12	188	194
2008	1	197	199
	2	195	200
	3	195	199
	4	201	202
	5	212	212
	6	219	220
	7	215	224
	8	224	224
2008.8/2007.8 (%)		119.1	117.9
2008.8/2008.7 (%)		104.2	1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3. 콩 · 팥

3-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3-1-1. 콩

단위: 재배면적 - ha, 수확량 - t

연도	재배면적	10a당 수량(kg)	수확량
2003	151,900	153	232,200
2004	136,800	119	163,200
2005	134,000	168	225,000
2006	142,100	161	229,200
2007	138,300	164	229,400
2008	147,100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3-1-2. 팥

단위: 재배면적 - ha, 수확량 - t

연도	재배면적	10a당 수량(kg)	수확량
2003	42000	140	58800
2004	42600	212	90500
2005	38300	206	78900
2006	32200	198	63900
2007	32700	201	65600
2008	32100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3-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3-2-1. 콩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전국	138 300	164	226,700	△3,800	97	102	△2,500	99	97
(농업지역)									
홋카이도	22,700	236	53,600	△5,400	81	95	△16,500	76	102
도부현	115,600	150	173,100	1,600	101	107	14,000	109	96
도카이	38,100	137	52,100	2,500	107	98	2,400	105	92
호쿠리쿠	14,800	129	19,100	△200	99	91	△2,100	90	82
간토	14,500	159	23,100	△700	95	95	△2,500	90	89
도카이	10,100	162	16,400	160	102	109	1,600	111	113
긴키	8,170	126	10,300	330	104	82	△1,700	86	83
주고쿠	6,640	130	8,600	△180	97	96	△630	93	98
시코쿠	1,050	119	1,250	△90	92	88	△290	81	89
규슈	22,300	189	42,200	△200	99	170	17,200	169	109
오키나와	-	-	-	-	-	-	-	-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3-2-2. 팔

구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전년대비					10a당 평균 수량 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대차	대비	대비	대차	대비	
	ha	kg	t	ha	%	%	t	%	%
전국	32,700	201	65,600	500	102	102	1,700	103	111
홋카이도	23,800	244	58,100	1,000	104	99	2,100	104	110
아오모리	565	94	531	△63	90	101	△53	91	109
이와테	706	73	515	△82	90	95	△92	85	99
후쿠시마	654	82	536	△50	93	105	△13	98	100
시가	68	65	44	6	110	94	1	102	90
교토	641	60	385	△25	96	111	24	107	1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3-3. 수급동향

단위: 천 t

연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국내소비량				1인1년당 공급량 (kg)
			수입량	수출량	조식료	사료용	가공용		
2002	잡곡	31	19,057	0	18,719	232	14,647	3,824	1.1
	콩류	395	5,387	0	5,773	1,231	125	4,264	9.3
	대두	270	5,039	0	5,309	851	113	4,208	6.7
2003	잡곡	32	19,113	0	18,687	238	14,646	3,783	1.1
	콩류	337	5,510	0	5,777	1,243	134	4,242	9.4
	대두	232	5,173	0	5,311	858	124	4,187	6.7
2004	잡곡	24	18,127	0	17,897	236	13,865	3,779	1.2
	콩류	303	4,754	0	5,162	1,237	135	3,653	9.3
	대두	163	4,407	0	4,715	877	121	3,595	6.9
2005	잡곡	34	18,642	0	17,927	246	13,863	3,805	1.2
	콩류	352	4,482	0	4,790	1,232	138	3,313	9.3
	대두	225	4,181	0	4,348	871	125	3,261	6.8
2006	잡곡	35	18,440	0	17,991	253	13,921	3,806	1.2
	콩류	332	4,377	0	4,792	1,225	135	3,213	9.2
	대두	229	4,042	0	4,354	866	125	3,158	6.8
2007	잡곡	-	-	-	-	-	-	-	-
	콩류	335	4,458	12	4,729	-	136	3,723	9.2
	대두	227	4,161	12	4,304	-	125	3,223	6.8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3-4. 가격동향

3-4-1. 생산자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콩 (60kg)	팥 (60kg)
2005		18,840	15,170
2006		14,310	16,140
2007		12,800	14,530
2007	8	14,060	...
	9	14,050	...
	10	13,870	13,370
	11	10,020	13,080
	12	9,734	14,190
2008	1	9,460	14,590
	2	9,420	14,490
	3	9,211	15,000
	4	9,463	...
	5	9,426	...
	6	9,492	...
	7	9,081	...
	8	8,980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3-4-2.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팥 (100g)	
		도쿄	오사카
2005		165	180
2006		158	176
2007		162	171
2007/2006 (%)		102.5	97.2
2007	8	162	173
	9	164	172
	10	165	175
	11	165	175
	12	161	168
2008	1	143	135
	2	145	132
	3	143	135
	4	143	136
	5	143	136
	6	144	139
	7	145	133
	8	142	139
2008.8/2007.8 (%)		87.7	80.3
2008.8/2008.7 (%)		97.9	104.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4. 채소류

4-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4-1-1. 재배면적 및 수확량

단위: 재배면적 - ha, 수확량 - t

구분	2004		2005		2006		2007	
	재배 면적	수확량	재배 면적	수확량	재배 면적	수확량	재배 면적	수확량
무	4,000	1,620,000	39,100	1,627,000	38,300	1,650,000	37,200	1,626,000
순무	5,710	167,800	5,470	153,200	5,390	150,700	5,360	159,300
당근	19,500	615,700	19,000	614,900	18,800	624,100	19,100	657,500
우영	9,240	171,500	8,780	161,700	8,690	159,300	8,800	163,100
연근	4,210	60,700	4,170	64,200	4,130	58,400	4,060	58,200
토란	15,800	184,800	15,000	184,500	14,400	174,700	14,100	173,600
배추	20,200	887,600	19,800	924,300	19,300	942,300	18,700	918,800
양배추	33,300	1,279,000	33,500	1,364,000	33,000	1,372,000	32,700	1,359,000
시금치	23,800	288,700	23,700	298,200	23,300	298,800	22,900	298,200
과	23,500	485,500	23,100	493,500	22,700	491,900	22,500	495,100
양과	23,100	1,128,000	23,000	1,087,000	23,600	1,161,000	24,300	1,265,000
가지	11,700	390,200	11,400	395,700	11,100	371,900	10,800	371,800
토마토	13,100	754,900	13,000	759,200	12,900	728,300	12,700	750,300
오이	13,700	673,000	13,400	674,600	13,100	628,500	12,800	639,800
밤호박	16,800	225,500	16,900	234,100	16,900	220,400	17,200	230,500
피망	3,680	153,400	3,620	153,800	3,540	146,800	3,500	149,600
가지꽃콩	13,100	73,700	13,000	77,100	12,900	71,000	12,800	71,400
딸기	7,000	198,200	6,880	196,200	6,790	190,700	6,580	191,000
수박	13,900	454,000	13,400	450,200	13,000	418,700	12,600	421,600
멜론	11,100	248,600	10,400	241,800	9,830	216,600	9,520	221,300
양상추	21,800	509,300	21,500	551,700	20,900	545,400	20,900	544,000
샐러리	715	36,100	678	34,900	686	35,100	669	35,100
콜리플라워	1,460	23,500	1,430	25,400	1,390	26,500	1,410	25,400
브로콜리	10,000	93,500	10,700	105,200	11,400	122,000	11,900	125,400
감자	87,200	2,888,000	86,900	2,752,000	86,600	2,635,000	87,400	2,873,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 **순무**

- 수확량은 15만 9,300t, 출하량은 12만 8,5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8,600t(전년대비 6%), 8,700t(同7%)증가
- 재배면적은 5,360ha로 전년대비 30ha(同1%)감소
- 10a당 수량은 2,970kg으로 생육기간, 비교적 기후가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6% 상회

□ **우영**

- 수확량은 16만 3,100t, 출하량은 13만 6,200t으로 각각 전년대비 3,800t(전년대비 2%), 5,300t(同4%)증가
- 재배면적은 8,800ha로 전년대비 110ha(同1%)증가
- 10a당 수량은 1,850kg으로 전년대비 1%상회

□ **연근**

- 수확량은 5만 8,200t으로 전년산과 비슷하며 출하량은 4만 7,100t으로 전년대비 300t(전년대비 1%)증가
- 재배면적은 4,06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에 의한 재배중지·규모축소 등의 결과, 전년대비 70ha(同2%)감소
- 10a당 수량은 1,430kg으로 전년대비 1%상회

□ **셀러리**

- 수확량은 3만 5,100t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출하량은 3만 3,600t으로 전년 대비 400t(전년대비 1%)증가
- 재배면적은 669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에 의한 재배중지·규모축소 등의 결과, 전년대비 17ha(同2%)감소
- 10a당 수량은 5,250kg으로 생육기간, 비교적 기후가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3%상회

□ 컬리플라워

- 수확량은 2만 5,400t, 출하량은 2만 3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1,100t (전년대비 4%), 600t(同3%)감소
- 재배면적은 1,410ha로 전년대비 20ha(同1%)증가
- 10a당 수량은 1,800kg으로 도쿠시마현에서 연작(連作)장해에 의한 병해 등의 발생결과, 전년대비 5%하락

□ 브로콜리

- 수확량은 12만 5,400t, 출하량은 11만 3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3,400t(전년대비 3%), 4,400t(同4%)증가
- 재배면적은 1만 1,900ha로 최근 안정되어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생산 확대 지도가 행해지고 있는 등의 결과 전년대비 500ha(同4%)증가
- 10a당 수량은 1,050kg으로 아이치현에서 1~3월간 저온으로 인해 생육이 억제되는 등 작황이 양호했던 전년과 비교해서 2% 하락

□ 밤호박

- 수확량은 23만 500t, 출하량은 17만 6,0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1만 100t(전년대비 5%), 9,900t(同6%)증가
- 재배면적은 1만 7,200ha로 홋카이도에서 기타 채소로 전환한 농가가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300ha(同2%)증가
- 10a당 수량은 1,340kg으로 홋카이도에서 정식(定植)후의 저온에 의해 생육이 일시 정체되었으나 그 이후 기후가 호전되어서 전년대비 2% 상회

□ 가지꽃콩

- 수확량은 7만 1,400t, 출하량은 4만 9,1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400t (전년대비 1%), 1,400t(同3%)증가
- 재배면적은 1만 2,800ha로 전년대비 100ha(同1%)감소

- 10a당 수량은 558kg으로 생육기간 동안 기후가 비교적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2%상회

□ 딸기

- 수확량은 19만 1,000t, 출하량은 17만 3,000t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재배면적은 6,58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에 의한 재배중지·규모축소 등의 결과 전년대비 210ha(전년대비 3%)감소
- 10a당 수량은 2,900kg으로 11월 이후 비교적 기후가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3% 상회

□ 멜론

- 수확량은 22만 1,300t, 출하량은 20만 1,1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4,700t(전년대비2%), 3,900t(同2%) 증가
- 재배면적은 9,52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에 의한 재배중지·규모축소 등의 결과 전년대비 310ha(同3%) 감소
- 10a당 수량은 2,330kg으로 생육기간 비교적 기후가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6% 상회

□ 수박

- 수확량은 42만 1,600t, 출하량은 36만 1,000t으로 전년대비 각각 2,900t(전년대비 1%), 3,900t(同1%)증가
- 재배면적은 1만 2,60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 및 중량채소의 경원(敬遠)에 의한 재배중지·규모축소 등의 결과 전년대비 400ha(同3%)감소
- 10a당 수량은 3,350kg으로 생육기간 동안 비교적 기후가 양호했던 결과 전년대비 4%상회

4-1-2. 주요 채소 생산량

단위: 천 t

연도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상추
2005	1,627	615	924	1364	298	494	552
2006	1,650	624	942	1372	299	492	545
2007	-	-	-	-	-	-	-
2007/2006(%)	-	-	-	-	-	-	-

(다음표에 계속)

연도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토란	양파
2005	675	396	759	154	185	1,087
2006	629	372	728	147	175	1,161
2007	640	372	750	150	-	1265
2007/2006(%)	101.7	100.0	103.0	102.0	-	109.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4-1-3. 계절별 주요 채소 수확량 및 출하량

품목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무	37,200	4,370	1,626,000	1,258,000	97	101	99	100
봄	5,010	4,930	247,000	217,800	101	106	107	108
여름	7,400	3,650	270,100	239,600	95	100	95	95
가을·겨울	24,800	4,470	1,109,000	800,500	97	100	98	99
당근	19,100	3,440	657,500	584,900	102	104	105	107
봄·여름	4,260	3,770	160,400	145,100	103	104	107	110
가을	6,590	3,190	210,100	193,000	103	109	112	114
겨울	8,260	3,470	286,800	246,700	100	100	100	100
감자	87,400	3,290	2,873,000	2,365,000	101	108	109	111
봄	84,500	3,350	2,828,000	2,335,000	101	108	109	111
가을	2,880	1,540	44,400	30,400	98	99	97	97
배추	18,700	4,910	918,800	705,800	97	100	98	99
봄	1,850	5,770	106,800	94,900	96	98	94	95
여름	2,850	6,240	177,800	160,500	99	106	105	107
가을·겨울	14,000	4,530	634,200	450,400	97	99	96	97
양배추	32,700	4,160	1,359,000	1,181,000	99	100	99	100
봄	8,720	4,020	350,900	303,700	102	101	102	103
여름·가을	10,000	4,410	440,800	384,600	98	103	100	102
겨울	13,900	4,080	566,800	492,400	98	98	96	97
양상추	20,900	2,600	544,000	509,900	100	100	100	100
봄	4,250	2,670	113,400	105,200	97	103	99	98
여름·가을	8,600	2,760	237,000	226,500	100	99	99	99
겨울	8,050	2,410	193,800	178,300	101	100	102	103
파	22,500	2,200	495,100	386,300	99	102	101	102
봄	3,330	2,530	84,200	72,900	98	110	107	107
여름	4,960	1,930	95,900	81,400	99	103	103	102
가을·겨울	14,300	2,200	315,100	231,900	100	99	99	100
오이	12,800	5,000	639,900	539,000	98	104	102	102
겨울·봄	3,290	10,100	332,400	308,700	97	107	104	104
여름·가을	9,490	3,240	307,600	230,200	98	102	100	100
가지	10,800	3,440	371,800	278,100	97	103	100	101
겨울·봄	1,350	10,500	141,800	133,600	93	107	100	101
여름·가을	9,470	2,430	229,800	144,500	98	102	100	101
토마토	12,700	5,910	750,300	664,600	98	104	103	103
겨울·봄	4,110	9,580	393,700	370,400	100	104	104	105
여름·가을	8,600	4,150	356,500	294,200	98	104	102	102
피망	3,500	4,270	149,600	128,300	99	103	102	102
겨울·봄	800	9,660	77,300	72,800	98	103	101	102
여름·가을	2,700	2,680	72,300	55,400	99	104	103	10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4-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4-2-1. 무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전국	37,200	4,370	1,626,000	1,258,000	97	101	99	100
홋카이도	4,050	4,250	172,200	155,900	96	103	98	99
아오모리	3,370	4,580	154,300	136,300	100	100	100	102
이와테	977	3,110	30,400	18,400	98	97	94	92
미야기	799	2,290	18,300	7,760	94	100	94	97
아키타	649	2,590	16,800	5,920	94	100	94	97
야마가타	605	3,790	22,900	11,200	99	102	101	103
후쿠시마	1,060	3,380	35,800	15,500	97	100	97	99
이바라키	1,460	4,930	72,000	56,100	98	99	97	98
도치기	567	4,340	24,600	17,100	97	102	98	98
군마	1,070	3,710	39,700	28,100	96	100	96	97
사이타마	568	4,230	24,000	16,400	103	100	103	108
지바	3,200	5,470	175,100	157,600	99	103	102	102
도쿄	254	4,400	11,200	8,780	97	99	96	97
가나가와	1,240	8,230	102,000	94,100	98	104	102	103
니가타	1,610	3,320	53,400	27,800	95	96	91	89
도야마	186	2,290	4,260	1,580	97	100	96	97
이시카와	343	4,340	14,900	9,720	96	102	98	98
후쿠이	310	2,540	7,880	4,790	99	95	94	90
야마나시	236	2,540	5,990	2,360	92	100	92	86
나가노	782	2,630	20,600	7,340	93	102	95	96
기후	778	3,920	30,500	23,200	102	94	96	98
시즈오카	620	5,480	34,000	27,100	100	97	97	104
아이치	758	4,240	32,100	26,900	96	100	96	97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미에	302	3,810	11,500	7,660	100	99	99	103
시가	232	3,080	7,140	3,630	92	95	88	89
교토	268	3,330	8,930	5,430	97	103	101	101
오사카	31	5,070	1,570	802	97	99	96	97
효고	522	3,760	19,600	8,770	96	103	99	97
나라	125	4,140	5,180	3,100	96	96	92	92
와카야마	197	6,750	13,300	11,300	102	96	98	98
돗토리	336	3,990	13,400	8,480	99	104	103	97
시마네	285	3,000	8,550	2,450	98	99	97	94
오카야마	462	3,680	17,000	11,200	95	95	90	88
히로시마	541	3,140	17,000	7,680	99	99	98	99
야마구치	432	3,030	13,100	9,390	96	103	99	109
도쿠시마	568	7,870	44,700	37,500	94	100	94	96
가가와	166	4,510	7,480	4,690	98	101	99	100
에히메	319	2,800	8,920	4,440	95	99	94	93
고치	219	3,370	7,380	4,380	99	98	96	96
후쿠오카	443	5,100	22,600	18,700	99	101	100	99
사가	99	3,560	3,520	1,490	104	94	98	101
나가사키	730	7,290	53,200	47,600	97	112	108	107
구마모토	945	3,270	30,900	25,000	91	102	93	95
오이타	468	3,590	16,800	11,200	99	104	103	105
미야자키	2,240	4,490	100,600	85,000	95	101	95	94
가고시마	1,770	5,050	89,300	77,200	104	100	103	104
오кина와	61	2,120	1,290	28	113	98	110	11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4-2-2. 당근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전국	19,100	3,440	657,500	584,900	102	104	105	107
홋카이도	5,380	3,480	187,200	178,000	105	106	112	114
아오모리	1,310	3,070	40,200	36,900	107	99	106	108
이와테	167	1,510	2,520	1,150	100	96	96	97
미야기	171	1,290	2,210	1,030	97	102	99	101
아키타	86	1,300	1,120	350	98	103	101	105
야마가타	64	1,260	805	244	96	97	92	111
후쿠시마	166	1,260	2,090	830	99	101	100	101
이바라키	840	4,010	33,700	28,000	99	100	100	100
도치기	146	2,560	3,740	2,920	99	103	103	103
군마	92	1,500	1,380	625	100	97	97	100
사이타마	603	4,080	24,600	21,400	104	101	105	108
지바	3,280	4,030	132,300	122,500	99	101	101	100
도쿄	115	3,650	4,200	3,670	99	96	95	96
가나가와	149	2,480	3,690	2,990	101	99	101	104
니가타	327	1,910	6,230	4,160	99	101	99	102
도야마	22	891	196	22
이시가와	55	1,480	816	564	102	82	83	90
후쿠이	35	1,550	542	346	97	104	101	107
야마나시	26	1,080	281	67	96	93	89	87
나가노	116	1,500	1,740	380	92	96	88	83
기후	205	3,430	7,040	5,920	94	126	118	119
시즈오카	140	2,660	3,730	3,060	97	104	100	99
아이치	587	4,330	25,400	22,400	97	98	94	95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미에	80	1,930	1,540	672	100	92	92	92
시가	49	1,470	721	262	100	88	88	89
교토	62	2,210	1,370	931	102	107	109	114
오사카	7	2,500	175	106
효고	129	2,720	3,510	2,550	96	114	109	113
나라	33	1,840	608	251	97	98	96	100
와카야마	71	3,490	2,480	2,210	91	101	92	92
돗토리	112	3,060	3,430	2,850	96	97	92	96
시마네	46	1,330	612	191	100	96	96	91
오카야마	106	1,760	1,860	1,120	96	99	95	93
히로시마	105	1,590	1,670	692	100	101	101	105
야마구치	95	1,300	1,230	600	99	105	103	131
도쿠시마	975	5,190	50,600	46,900	106	111	111	111
가가와	115	2,830	3,250	2,790	100	97	97	96
에히메	61	1,380	840	295	97	97	94	108
고치	50	1,920	960	705	100	95	94	95
후쿠오카	92	2,280	2,100	1,510	103	102	106	105
사가	32	1,350	431	176	107	98	104	114
나가사키	759	3,690	28,000	25,700	381	109	109	115
구마모토	516	2,660	13,700	11,700	100	106	107	107
오이타	144	2,350	3,380	2,550	101	105	106	108
미야자키	706	3,680	26,000	23,500	103	104	108	109
가고시마	562	3,520	19,800	16,600	99	102	101	101
오кина와	127	2,740	3,480	2,550	98	100	97	9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4-2-3. 감자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전국	87,400	3,290	2,873,000	2,365,000	101	108	109	111
홋카이도	56,900	3,940	2,242,000	2,003,000	102	109	111	112
아오모리	1,280	2,360	30,200	21,000	98	102	99	95
이와테	493	2,050	10,100	932	98	101	99	104
미야기	662	1,840	12,200	915	100	89	89	107
아키타	790	1,720	13,600	2,090	99	101	99	101
야마가타	289	2,000	5,780	719	98	95	93	92
후쿠시마	1,550	1,860	28,800	4,590	98	104	102	97
이바라키	1,590	2,850	45,300	33,700	99	107	106	106
도치기	598	1,860	11,100	3,030	101	101	103	109
군마	497	2,150	10,700	2,420	93	103	96	102
사이타마	786	2,110	16,600	3,900	102	107	108	129
지바	1,530	2,350	36,000	29,500	97	111	107	111
도쿄	316	2,060	6,520	3,510	98	99	97	99
가나가와	502	2,350	11,800	5,810	99	103	102	107
니가타	906	1,880	17,000	3,340	98	100	97	99
도야마	137	1,870	2,560	225	99	94	93	89
이시가와	324	1,300	4,210	487	98	90	89	88
후쿠이	389	1,250	4,880	598	98	98	96	110
야마나시	325	1,630	5,300	604	98	94	92	97
나가노	1,230	2,170	26,700	2,960	98	100	98	100
기후	298	1,970	5,870	1,120	97	104	101	114
시즈오카	787	2,490	19,600	15,400	96	115	111	119
아이치	480	1,450	6,980	3,390	97	104	100	101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미에	241	1,490	3,600	1,860	99	92	92	94
시가	202	1,020	2,050	283	96	100	95	115
교토	233	1,180	2,750	1,130	95	101	96	95
오사카	95	1,280	1,220	276	98	98	96	105
효고	402	1,200	4,820	976	100	101	101	106
나라	188	1,210	2,270	821	102	98	100	100
와카야마	91	1,240	1,130	394	90	104	94	103
돗토리	189	1,380	2,610	369	100	100	100	104
시마네	199	1,510	3,010	519	98	101	99	103
오카야마	353	1,520	5,380	717	99	99	98	92
히로시마	605	1,360	8,210	1,940	96	106	102	98
야마구치	252	1,460	3,670	1,170	100	104	103	108
도쿠시마	162	1,560	2,520	869	96	105	100	107
가가와	125	1,240	1,550	383	98	103	101	94
에히메	376	1,510	5,680	1,370	94	103	97	101
고치	153	1,350	2,070	1,290	96	102	98	98
후쿠오카	384	1,460	5,620	1,220	98	100	98	95
사가	177	1,920	3,390	1,850	104	121	126	152
나가사키	4,090	2,700	110,500	94,800	100	107	107	106
구마모토	664	1,790	11,900	7,550	104	98	103	114
오이타	190	1,500	2,840	958	91	105	95	92
미야자키	611	2,590	15,800	13,700	102	122	123	125
가고시마	4,560	2,050	93,300	85,800	101	103	104	104
오кина와	169	1,680	2,840	1,630	86	100	86	8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4-2-4. 배추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전국	18,700	4,910	918,800	705,800	97	100	98	99
홋카이도	926	4,140	38,300	33,700	88	110	97	98
아오모리	313	2,760	8,640	4,800	98	96	94	95
이와테	478	2,530	12,100	5,100	94	98	93	93
미야기	578	2,020	11,700	4,460	99	103	102	102
아키타	327	2,340	7,650	2,440	96	98	94	92
야마가타	277	4,150	11,500	4,210	99	98	97	97
후쿠시마	774	3,150	24,400	8,020	99	100	99	100
이바라키	2,920	7,020	205,000	183,900	97	96	93	96
도치기	549	4,920	27,000	18,500	101	99	100	98
군마	689	4,410	30,400	24,000	95	106	101	103
사이타마	386	5,030	19,400	11,700	104	107	111	116
지바	262	4,240	11,100	7,440	98	99	97	96
도쿄	87	4,830	4,200	2,660	97	98	95	96
가나가와	164	4,100	6,720	4,760	101	95	95	102
니가타	506	2,190	11,100	3,480	97	99	96	93
도야마	111	2,470	2,740	878	91	102	93	91
이시가와	99	2,660	2,630	984	98	88	86	98
후쿠이	78	1,900	1,480	494	100	95	95	86
야마나시	197	2,620	5,170	2,370	98	100	98	98
나가노	2,790	7,330	204,600	180,700	100	101	101	101
기후	288	3,120	8,990	4,480	100	100	100	100
시즈오카	171	4,720	8,070	5,700	96	96	92	93
아이치	636	6,100	38,800	33,700	92	108	99	99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미에	198	4,240	8,390	5,780	101	92	93	97
시가	199	2,680	5,340	3,000	97	96	93	101
교토	137	3,500	4,800	2,550	94	101	95	97
오사카	27	5,630	1,520	1,100	100	99	99	96
효고	460	4,740	21,800	15,500	100	91	91	92
나라	113	3,840	4,340	2,360	100	97	97	97
와카야마	181	7,460	13,500	11,800	92	95	88	88
돗토리	127	3,090	3,920	1,720	95	102	98	96
시마네	175	2,440	4,270	1,570	99	91	90	83
오카야마	376	5,320	20,000	15 300	98	96	94	94
히로시마	287	2,780	7,970	2,410	97	100	97	97
야마구치	256	2,400	6,140	3,570	98	98	96	98
도쿠시마	100	6,030	6,030	4,470	100	99	99	103
가가와	31	3,360	1,040	406	100	99	98	108
에히메	168	3,450	5,800	4,130	98	98	96	96
고치	91	2,910	2,650	1,730	100	96	96	96
후쿠오카	228	4,020	9,160	6,950	97	101	98	96
사가	72	3,570	2,570	1,300	96	101	97	94
나가사키	384	5,990	23,000	19,800	97	100	97	98
구마모토	445	3,350	14,900	11,800	97	104	101	101
오이타	420	4,710	19,800	15,100	98	102	100	100
미야자키	204	4,060	8,280	7,070	92	104	96	96
가고시마	434	5,000	21,700	17,800	95	123	117	124
오кина와	9	2,060	185	11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4-2-5. 파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전국	22,500	2,200	495,100	386,300	99	102	101	102
홋카이도	857	3,490	29,900	26,600	99	106	105	105
아오모리	548	2,660	14,600	11,200	101	97	98	98
이와테	441	1,720	7,570	4,920	97	103	100	100
미야기	556	1,460	8,130	5,300	102	108	110	114
아키타	452	2,350	10,600	7,380	101	103	104	107
야마가타	460	2,150	9,880	5,780	101	106	108	110
후쿠시마	715	1,710	12,200	7,340	99	102	101	103
이바라키	1,880	2,470	46,400	37,800	98	102	100	100
도치기	555	1,930	10,700	8,310	103	103	106	111
군마	1,120	2,210	24,800	18,600	98	97	95	96
사이타마	2,130	2,880	61,400	50,100	101	103	104	106
지바	2,460	2,760	68,000	60,200	98	103	101	101
도쿄	137	2,070	2,840	2,020	100	98	98	99
가나가와	415	2,750	11,400	9,350	100	98	97	102
니가타	771	1,890	14,600	9,300	99	105	104	111
도야마	207	1,630	3,380	2,810	101	97	99	120
이시가와	105	1,860	1,950	1,210	98	104	102	103
후쿠이	85	1,850	1,570	1,130	105	106	111	106
야마나시	96	1,350	1,300	235	97	98	96	100
나가노	610	1,970	12,000	5,320	99	99	97	96
기후	271	1,390	3,760	1,960	101	99	100	100
시즈오카	494	2,410	11,900	10,100	95	94	89	89
아이치	555	2,230	12,400	8,970	97	100	97	96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재배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미에	214	1,890	4,050	2,280	100	95	96	98
시가	111	1,790	1,990	901	97	95	93	94
교토	271	2,630	7,120	5,960	104	99	103	108
오사카	282	2,610	7,370	6,270	98	98	96	95
효고	324	1,930	6,260	3,690	101	89	90	97
나라	125	2,210	2,760	2,170	98	98	96	96
와카야마	98	1,750	1,710	1,370	96	101	97	97
돗토리	680	1,910	13,000	11,200	92	103	95	97
시마네	140	1,560	2,190	1,530	100	105	105	109
오카야마	162	1,680	2,720	1,760	99	98	97	95
히로시마	303	1,750	5,290	4,110	99	96	95	96
야마구치	186	1,450	2,700	1,680	94	107	100	105
도쿠시마	202	1,580	3,190	2,480	102	98	100	98
가가와	265	1,660	4,410	3,670	100	99	99	100
에히메	168	1,580	2,660	1,770	97	98	96	97
고치	364	1,450	5,270	4,830	97	102	99	99
후쿠오카	676	1,330	9,000	8,020	100	100	100	100
사가	334	988	3,300	2,690	102	100	102	101
나가사키	147	1,940	2,850	2,410	103	115	118	119
구마모토	257	1,730	4,440	3,320	101	101	101	102
오이타	723	1,880	13,600	12,100	103	111	113	114
미야자키	147	1,370	2,020	1,490	101	104	105	106
가고시마	430	1,340	5,770	4,570	100	100	100	99
오кина와	9	1,160	104	8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4-3.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재고 증감량	국내소비량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g)	
		수입량	수출량		가공용	순식료			
채소									
2002	13,229	2,760	5	0	16,054	0	12,410	97.4	266.8
2003	12,905	2,922	8	0	15,819	0	12,237	95.9	262.0
2004	12,344	3,151	4	0	15,491	0	11,978	93.8	257.0
2005	12,492	3,367	10	0	15,849	0	12,302	96.3	263.8
2006	12,363	3,246	9	0	15,600	0	12,118	94.8	259.8
2007	12,420	2,992	13	0	15,395	0	11,992	93.9	256.4
황녹색 채소									
2002	2,731	1,134	1	0	3,864	0	3,218	25.3	69.2
2003	2,724	1,152	3	0	3,873	0	3,227	25.3	69.1
2004	2,658	1,234	1	0	3,891	0	3,242	25.4	69.6
2005	2,692	1,446	2	0	4,136	0	3,454	27.0	74.1
2006	2,660	1,438	2	0	4,096	0	3,420	26.8	73.3
2007	2,740	1,406	4	0	4,141	0	3,472	27.2	74.2
기타 채소									
2002	10,568	1,626	4	0	12,190	0	9,192	72.1	197.6
2003	10,181	1,770	5	0	11,946	0	9,010	70.6	192.9
2004	9,686	1,917	3	0	11,600	0	8,736	68.4	187.4
2005	9,800	1,921	8	0	11,713	0	8,848	69.3	189.7
2006	9,703	1,808	7	0	11,504	0	8,698	68.1	186.5
2007	9,680	1,586	9	0	11,254	0	8,520	66.7	182.2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4-4. 가격동향

4-4-1. 생산자가격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시금치	파	양상추
2005		565	994	406	687	3,358	1,290	1,152
2006		594	1,185	443	684	3,260	1,453	1,207
2007		550	749	382	604	3,420	1,312	1,377
2007	8	459	529	425	852	4,999	1,764	1,764
	9	598	753	581	714	6,386	1,437	876
	10	799	677	443	545	4,910	1,611	1,662
	11	456	931	400	434	2,714	1,310	1,060
	12	521	789	358	601	2,849	1,265	1,422
2008	1	410	771	355	588	2,235	1,319	1,240
	2	535	942	455	752	2,922	1,398	1,780
	3	716	1,695	815	940	2,079	1,919	1,671
	4	691	1,902	816	738	3,174	1,625	1,353
	5	810	1,628	577	545	4,098	1,718	1,172
	6	593	2,101	371	430	3,787	1,707	1,169
	7	471	938	438	435	4,184	1,316	606
	8	556	553	310	367	5,742	1,356	873

(다음 페이지에 계속)

II 일본 농업현황과 수입제도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오이 (5kg)	가지 (5kg)	토마토 (4kg)	피망	토란	양파
2005		969	1,161	902	2,557	1,822	834
2006		1,170	1,354	993	3,295	2,290	758
2007		1,168	1,339	989	3,126	2,616	602
2007	8	911	1,441	808	2,471	2,159	620
	9	1,363	1,334	1,164	3,216	2,555	587
	10	1,273	1,393	1,588	2,908	2,541	509
	11	1,413	1,348	740	3,227	2,313	501
	12	1,401	1,605	1,113	2,578	2,492	524
2008	1	1,583	1,168	673	3,658	2,446	611
	2	1,735	1,981	915	6,338	2,767	650
	3	1,190	1,491	974	4,300	3,137	1,848
	4	1,059	1,095	1,248	3,152	3,224	792
	5	975	1,294	841	3,171	...	512
	6	1,052	1,337	759	3,636	4,940	642
	7	853	1,320	883	2,747	3,807	601
	8	722	754	639	1,672	2,070	58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4-4-2. 도매가격

단위: 출하량-t, 도매가격-엔/kg

구분	2004		2005		2006		2007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무	1,241,000	...	1,248,000	...	1,264,000	...	1,258,000	72
순무	132,200	110	120,800	126	119,800	120	128,500	107
당근	532,600	...	539,700	...	548,200	...	584,900	95
우영	140,800	...	132,900	...	130,900	...	136,200	181
연근	49,100	...	51,300	...	46,800	...	47,100	442
토란	110,100	...	108,500	...	102,700	...	104,600	235
배추	673,300	...	702,200	...	714,600	...	705,800	54
양배추	1,100,000	...	1,161,000	...	1,181,000	...	1,181,000	76
시금치	231,900	...	239,500	...	239,800	...	241,900	409
과	375,100	...	380,800	...	378,800	...	386,300	303
양과	985,500	...	944,400	...	1,019,000	...	1,118,000	75
가지	290,400	...	293,600	...	275,200	...	278,100	277
토마토	665,900	...	668,100	...	642,200	...	664,600	291
오이	572,200	...	566,300	...	526,300	...	538,900	264
밤호박	168,100	...	175,900	...	166,100	...	176,600	146
피망	130,800	...	131,100	...	125,300	...	128,300	389
가지꽃콩	48,900	...	52,100	...	47,700	...	49,100	609
딸기	179,500	1,005	177,600	1,057	172,700	1,061	173,000	1,039
수박	386,800	...	384,600	...	357,100	...	361,000	164
멜론	226,100	...	220,300	...	197,200	...	201,100	435
양상추	473,200	...	506,500	...	510,600	...	509,900	180
셀러리	34,100	...	33,000	...	33,200	...	33,600	237
콜리플라워	18,440	...	20,000	...	20,900	...	20,300	167
브로콜리	80,000	303	90,800	303	105,900	286	110,300	310
감자	327,000	123	297,600	111	310,300	122	331,600	9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생산출하통계'

4-4-3. 소매가격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무		당근		배추		양배추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150	161	351	336	176	184	179	189
2006		163	171	370	355	200	208	184	198
2007		142	151	294	285	168	178	160	171
2007/2006(%)		87.1	88.3	79.5	80.3	84.0	85.6	87.0	86.4
2007	8	143	154	306	275	187	179	173	199
	9	168	175	326	281	248	243	166	181
	10	193	187	319	304	199	216	165	175
	11	123	141	306	288	130	177	137	156
	12	122	149	275	321	118	161	150	153
2008	1	117	135	275	305	120	144	148	159
	2	125	124	279	308	123	157	163	151
	3	149	155	380	414	212	226	213	194
	4	140	146	441	415	256	224	208	192
	5	158	161	474	399	211	209	164	192
	6	144	148	470	386	199	202	154	167
	7	133	145	431	361	216	207	151	187
	8	154	167	347	341	206	187	131	153
2008.8/2007.8(%)		107.7	108.4	113.4	124.0	110.2	104.5	75.7	76.9
2008.8/2008.7(%)		115.8	115.2	80.5	94.5	95.4	90.3	86.8	81.8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시금치		과		양상추		오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766	775	500	870	425	475	497	541
2006		760	785	549	861	430	479	543	590
2007		775	770	521	824	451	483	536	584
2007/2006(%)		102.0	98.1	94.9	95.7	104.9	100.8	98.7	99.0
2007	8	955	958	572	809	375	443	543	595
	9	1,230	1,166	598	1,045	488	467	541	563
	10	962	1,019	636	1,122	516	552	491	574
	11	626	599	519	906	310	382	555	640
	12	671	630	543	907	441	436	580	633
2008	1	656	551	552	937	437	396	694	746
	2	644	575	495	811	470	493	768	834
	3	567	535	586	998	500	464	521	601
	4	702	613	601	799	411	441	482	519
	5	753	657	679	824	307	370	463	434
	6	730	735	702	755	376	439	460	438
	7	786	837	630	764	314	387	464	447
	8	1,004	1,021	587	856	362	389	415	443
2008.8/2007.8(%)		105.1	106.6	102.6	105.8	96.5	87.8	76.4	74.5
2008.8/2008.7(%)		127.7	122.0	93.2	112.0	115.3	100.5	89.4	99.1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가지		토마토		피망		토란		양파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565	636	615	599	74	70	467	557	219	254	
2006	603	663	616	603	83	78	603	826	221	253	
2007	577	631	645	624	84	79	592	702	204	226	
2007/2006(%)	95.7	95.2	104.7	103.5	101.2	101.3	98.2	85.0	92.3	89.3	
2007	8	544	559	532	528	70	72	805	940	186	206
	9	488	479	629	648	75	75	618	746	208	210
	10	593	543	695	742	76	70	564	686	204	227
	11	528	577	744	754	72	73	532	609	194	229
	12	688	829	854	841	73	71	554	559	195	222
2008	1	693	880	685	611	93	78	521	614	201	238
	2	851	1,037	663	574	131	124	536	537	200	258
	3	697	798	654	586	113	109	634	678	213	288
	4	583	648	685	636	89	79	652	767	206	272
	5	552	580	622	561	87	68	736	980	201	207
	6	587	592	534	513	80	63	938	1,160	196	205
	7	547	511	532	506	76	70	1,018	1,067	198	200
	8	397	410	496	451	61	60	767	793	202	201
2008.8/2007.8(%)	73.0	73.3	93.2	85.4	87.1	83.3	95.3	84.4	108.6	97.6	
2008.8/2008.7(%)	72.6	80.2	93.2	89.1	80.3	85.7	75.3	74.3	102.0	100.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4-5. 주요 채소류 재배시기

단위: 천 t

구분	무		당근		배추		양배추		파		양상추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계절별 생산량	봄 4~6월	246	봄, 여름 4~7월	160	봄 4~6월	107	봄 4~6월	351	봄 4~6월	84	봄 4~5월	113
	여름 7~9월	270	가을 8~10월	210	여름 7~9월	178	여름, 가을 7~10월	441	여름 7~9월	96	여름, 가을 6~10월	237
	가을, 겨울 10~3월	1135	겨울 11~3월	287	가을, 겨울 10~3월	660	겨울 11~3월	590	가을, 겨울 10~3월	320	겨울 11~3월	191

(다음표에 계속)

구분	오이		가지		토마토		피망		토란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재배시기	생산량
계절별 생산량	겨울, 봄 12~6월	332	겨울, 봄 12~6월	142	겨울, 봄 12~6월	394	겨울, 봄 11~5월	77	가을, 겨울 6~3월	174
	여름, 가을 7~11월	308	여름, 가을 7~11월	230	여름, 가을 7~11월	357	여름, 가을 6~10월	72	기타 4~5월	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야채생산출하통계', 생산량은 2006년 기준

5. 과실류

5-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5-1-1. 재배면적 및 수확량

단위: 재배면적 - ha, 수확량 - t

구분	2004		2005		2006		2007	
	재배면적	수확량	재배면적	수확량	재배면적	수확량	재배면적	수확량
밀감전체	52,300	1,060,000	51,500	1,132,000	50,300	841,900	49,400	1,066,000
-조생온주	29,700	625,000	29,300	675,400	28,600	487,600	28,100	628,300
-보통온주	22,600	435,400	22,200	456,300	21,700	354,300	21,300	438,100
-여름밀감	3,640	73,800	3,540	61,700	3,350	58,100
햇사쿠	2,770	57,800	2,690	51,400	2,560	49,400
이요강	7,160	131,000	6,830	108,000	6,390	85,700
사과전체	41,300	754,400	40,800	818,900	40,300	831,800	39,900	840,100
-후지	21,100	416,000	21,000	453,200	20,700	460,000	20,500	468,400
-츠가루	5,600	94,200	5,510	100,900	5,430	98,600	5,370	99,900
-조나골드	3,650	75,700	3,600	73,500	3,540	78,600	3,480	74,600
일본배	15,500	328,100	15,200	362,400	14,900	291,400	14,600	296,800
-이십세기	2,180	45,900	2,070	48,400	1,970	39,300
-풍수	3,960	98,400	3,910	107,100	3,840	87,300
-신고	1,360	29,600	1,350	37,400	1,320	32,400
서양배	1,730	23,900	1,760	32,300	1,760	28,300	1,740	29,600
복숭아	10,300	151,900	10,300	174,000	10,300	146,300	10,200	150,200
자두	3,140	27,100	3,130	26,800	3,090	21,400	3,050	21,900
감	23,800	232,400	23,700	285,900	23,500	232,700	23,200	244,800
밤	24,300	24,000	23,800	21,800	23,300	23,100	23,000	22,100
파인애플	443	11,500	443	10,400	441	10,700	438	10,400
매실	17,300	113,600	17,800	123,000	18,000	119,700	17,500	120,600
비과	1,940	6,470	1,890	6,730	1,780	6,100	1,740	5,710
포도	19,200	205,600	19,000	219,900	18,900	210,500	18,600	209,100
-델라웨어	3,890	41,400	3,820	41,500	3,720	40,300
-거봉	649	7,590	6,440	7,310	6,36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 밀감

- 결과수면적은 4만 9,40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 사정 등에 의한 폐원 및 기타 감귤류로의 전환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2,100ha(4%)감소
- 수확량은 106만 6,000t, 출하량은 95만 500t으로 8월의 악천후의 영향으로 과실비대가 억제되는 등, 2005년산과 비교했을 때 각각 6만 6,000t(同6%), 5만 4,500t(同5%)감소

□ 사과

- 재배면적은 3만 9,900ha로 생산자의 고령화에 동반되는 노동력사정 등에 의한 폐원으로 인해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400ha(전년대비 1%)감소
- 수확량은 84만 100t, 출하량은 74만 8,700t으로 개화기에 적합한 기후를 맞이한 결과 결과수가 증가하는 등,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각각 8,300t(同1%), 9,200t(同1%)증가

□ 일본배

- 일본배의 수확량은 29만 6,800t으로 일부지역에서 우박 및 태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작황상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5,400t(전년대비 2%)증가

□ 서양배

- 서양배의 수확량은 2만 9,600t으로 적합한 기후로 인해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1,300t(전년대비 5%)증가

□ 복숭아

- 복숭아의 수확량은 15만 200t으로 개화기에 저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정불량 등이 발생했으나 작황상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3,900t(전년대비3%)증가

□ 자두

- 자두의 수확량은 2만 1,900t으로 개화기의 저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정불량 등이 발생했으나 작황상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500t(同2%)증가

□ 감

- 감의 수확량은 24만 4,800t으로 낙과 및 과실비대의 억제, 병충해의 발생이 보인 지역이 있었으나 대부분 적합한 기후로 인해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1만 2,100t(동5%)증가

□ 밤

- 밤의 수확량은 2만 2,100t으로 과실비대가 7월말 이후의 고온·소우 현상의 영향으로 억제됨으로 인해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1,000t(同4%)감소

□ 매실

- 매실 수확량은 12만 600t으로 재배면적은 감소했으나 적합한 기후에 개화기를 맞이한 결과 결과수가 많았기에 전년대비 900t(同1%)증가

□ 포도

- 포도의 수확량은 20만 9,100t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결과 전년산과 비교했을 때 1,400t(同1%)감소

5-1-2. 주요 과실 생산량

단위: 100t

연도	밀감	여름밀감	햇사쿠	이요강	사과	일본배	감
2005	11,320	617	514	1,080	8,189	3,624	2,859
2006	8,419	581	494	857	8,318	2,914	2,327
2007	10,660	8,401	2,968	2,448
2007/2006(%)	126.6	101.0	101.9	105.2

(다음표에 계속)

연도	복숭아	매실	포도	밤	딸기	멜론	수박
2005	1,740	1,230	2,199	218	1,962	2,418	4,502
2006	1,463	1,197	2,105	231	1,907	2,166	4,187
2007	1,502	1,206	2,091	221
2007/2006(%)	102.7	100.8	99.3	95.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5-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5-2-1. 사과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39,900	2,110	840,100	748,700	99	102	101	101
홋카이도	670	1,470	9,850	8,870	96	114	110	112
아오모리	21,200	2,160	457,900	415,500	100	104	104	104
이와테	2,710	2,090	56,600	48,500	99	100	98	99
미야기	277	1,520	4,210	3,550	92	108	100	103
아키타	1,710	2,010	34,400	29,300	97	105	102	101
야마가타	2,470	1,900	46,900	40,700	98	93	92	91
후쿠시마	1,470	2,390	35,100	31,400	98	110	108	108
군마	439	2,230	9,790	8,980	98	107	104	107
도야마	101	1,770	1,790	1,670	99	105	105	106
이시가와	60	1,340	804	718	100	98	98	102
야마나시	117	1,450	1,700	1,430	95	99	94	94
나가노	7,920	2,150	170,300	148,800	99	96	96	96
기후	92	2,340	2,150	1,970	98	104	101	101
히로시마	81	1,700	1,380	1,350	101	107	109	11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2-2. 밀감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49,400	2,160	1,066,000	950,500	96	98	94	95
지바	107	1,560	1,670	1,030	93	115	107	108
가나가와	1,360	2,170	29,500	23,300	98	106	104	104
시즈오카	5,780	2,530	146,200	130,000	98	105	103	105
아이치	1,420	2,550	36,200	31,700	97	103	100	103
미에	1,380	2,000	27,600	23,500	95	104	98	97
오사카	817	1,940	15,800	13,600	97	103	100	100
효고	193	1,330	2,570	1,450	90	99	89	92
와카야마	7,600	2,440	185,400	169,400	100	95	95	94
히로시마	2,670	1,550	41,400	34,200	96	81	78	76
야마구치	1,060	1,670	17,700	14,200	88	112	99	95
도쿠시마	942	1,730	16,300	14,200	96	95	91	97
가가와	1,250	1,540	19,300	17,300	90	109	99	99
에히메	7,520	2,240	168,300	153,100	95	94	89	89
고치	395	2,490	9,840	9,290	100	102	102	103
후쿠오카	1,970	1,830	36,100	33,000	91	98	90	90
사가	2,980	2,420	72,100	67,500	90	104	93	94
나가사키	3,590	2,100	75,400	67,300	99	91	90	90
구마모토	4,620	2,100	97,000	89,100	97	99	96	97
오이타	1,070	2,260	24,200	20,800	86	107	91	95
미야자키	848	1,950	16,500	14,200	92	99	92	93
가고시마	1,180	1,830	21,600	17,800	98	99	96	9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2-3. 일본배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14,600	2,030	296,800	272,300	98	104	102	102
미야기	166	1,970	3,270	2,850	92	103	95	96
아키타	214	1,850	3,960	3,530	96	116	111	114
야마가타	138	1,410	1,950	1,580	103	111	114	115
후쿠시마	1,120	2,030	22,700	21,100	97	105	102	103
이바라키	1,460	1,980	28,900	27,400	97	102	99	99
도치기	871	2,600	22,600	20,800	101	117	118	118
군마	244	2,300	5,610	4,940	97	92	89	91
사이타마	555	2,040	11,300	10,400	97	98	95	96
지바	1,620	2,250	36,500	34,700	100	105	105	104
도쿄	97	2,400	2,330	2,210	100	107	107	108
가나가와	271	2,230	6,040	5,620	100	110	110	110
니가타	526	2,770	14,600	13,400	100	94	94	96
도야마	187	2,040	3,810	3,720	98	130	127	128
이시카와	158	2,350	3,710	3,380	101	95	96	96
후쿠이	71	1,980	1,410	1,360	100	100	100	100
나가노	926	2,140	19,800	17,400	98	104	102	102
기후	147	2,200	3,230	2,800	99	113	112	111
아이치	408	1,870	7,630	6,950	99	96	95	95
시가	59	1,360	802	762	100	111	111	113
교토	95	2,280	2,170	2,010	99	120	119	120
효고	95	2,200	2,090	1,860	98	144	141	142
돗토리	1,180	2,090	24,700	22,600	95	109	104	104
히로시마	154	1,760	2,710	2,520	100	97	96	94
도쿠시마	243	2,150	5,220	4,810	100	105	105	104
가가와	35	1,470	515	475	97	101	99	99
후쿠오카	499	2,030	10,100	9,580	98	99	97	98
사가	337	1,960	6,610	5,990	86	117	101	96
나가사키	83	1,230	1,020	823	99	84	84	87
구마모토	602	1,580	9,510	8,470	100	85	85	84
오이타	397	2,250	8,930	8,160	99	100	99	9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2-4. 포도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18,600	1,120	209,100	190,700	98	100	99	99
홋카이도	1,150	829	9,530	9,000	98	109	107	109
아오모리	456	1,240	5,650	4,750	100	110	110	118
이와테	354	1,110	3,930	3,520	100	104	103	104
아키타	206	1,560	3,210	2,820	92	108	100	99
야마가타	1,750	1,230	21,500	19,600	99	103	101	102
후쿠시마	274	1,220	3,340	3,030	100	110	111	111
도치기	261	1,080	2,820	2,500	100	115	115	116
군마	140	835	1,170	969	97	114	110	108
사이타마	214	788	1,690	1,480	100	106	107	110
니가타	347	992	3,440	2,780	99	112	110	111
도야마	28	868	243	232	93	105	98	98
이시가와	158	740	1,170	1,050	101	90	91	91
야마나시	4,080	1,260	51,400	47,500	98	98	96	95
나가노	2,310	1,330	30,700	28,500	99	100	99	99
아이치	493	1,040	5,130	4,780	99	95	94	94
시가	58	919	533	501	100	110	110	111
오사카	486	1,230	5,980	5,620	100	105	105	105
효고	340	917	3,120	2,890	103	108	111	113
돗토리	95	749	712	664	100	85	85	85
시마네	312	1,040	3,240	3,120	98	102	100	100
오카야마	1,070	1,350	14,400	12,800	100	96	95	95
히로시마	316	1,160	3,670	3,300	101	101	102	102
가가와	209	951	1,990	1,760	92	99	92	91
에히메	182	668	1,220	1,150	98	95	94	94
후쿠오카	973	912	8,870	8,160	98	94	92	92
오이타	351	704	2,470	2,250	97	103	100	1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2-5. 복숭아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10,200	1,470	150,200	137,400	99	103	103	103
야마가타	557	1,680	9,360	8,510	101	105	106	106
후쿠시마	1,570	1,770	27,800	25,700	103	91	93	93
니가타	256	1,100	2,820	2,360	100	99	99	100
야마나시	3,280	1,650	54,100	51,000	100	104	105	104
나가노	1,150	1,570	18,100	16,500	100	100	100	100
기후	90	1,040	936	835	99	101	100	100
아이치	230	980	2,250	2,000	94	111	105	104
와카야마	779	1,570	12,200	11,200	100	111	111	111
오카야마	671	1,180	7,920	7,130	99	117	116	118
가가와	221	851	1,880	1,630	93	118	110	113
에히메	118	699	825	702	96	105	101	12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2-6. 감

구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전년대비			
					결과수 면적	10a당 수량	수확량	출하량
	ha	kg	t	t	%	%	%	%
전국	23,200	1,060	244,800	196,000	99	107	105	105
야마가타	1,090	933	10,200	8,400	97	106	103	103
후쿠시마	1,290	977	12,600	10,400	100	86	86	85
니가타	796	1,310	10,400	9,400	98	102	100	100
도야마	287	655	1,880	1,500	100	96	95	93
이시가와	290	312	905	507	100	60	60	60
후쿠이	140	557	780	525	99	107	105	136
야마나시	577	943	5,440	4,260
나가노	679	1,380	9,370	8,150	101	101	103	103
기후	1,450	1,020	14,800	12,900	97	90	88	87
아이치	1,270	1,000	12,700	10,200	101	99	101	96
나라	1,860	1,510	28,100	25,600	101	109	109	108
와카야마	2,880	1,820	52,400	47,200	100	105	105	105
돗토리	360	900	3,240	2,590	99	87	86	86
시마네	523	497	2,600	1,700	97	106	103	106
가가와	216	656	1,420	1,100	94	97	91	92
에히메	817	1,490	12,200	10,500	97	170	165	169
후쿠오카	2,060	990	20,400	18,500	98	142	140	13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과실생산출하통계', 2007년 기준

5-3.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재고 증감량	국내소비량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g)
		수입량	수출량		가공용	순식료			
과실									
2002	3,893	4,862	27	△52	8,780	19	5,347	42.0	115.0
2003	3,674	4,757	33	36	8,362	18	5,079	39.8	108.7
2004	3,464	5,353	44	5	8,768	16	5,301	41.5	113.7
2005	3,703	5,437	64	40	9,036	17	5,503	43.1	118.0
2006	3,231	5,130	32	41	8,288	14	5,038	39.4	108.0
2007	3,492	5,162	54	0	8,600	16	5,283	41.3	113.0
밀감									
2002	1,131	1	5	△29	1,156	0	737	5.8	15.8
2003	1,146	1	5	35	1,107	0	706	5.5	15.1
2004	1,060	1	5	△18	1,074	0	685	5.4	14.7
2005	1,132	1	5	28	1,100	0	701	5.5	15.0
2006	842	1	3	△58	898	0	572	4.5	12.3
2007	1,066	0	5	△21	1,082	0	690	5.4	14.8
사과									
2002	926	534	10	△23	1,473	0	1,127	8.8	24.2
2003	842	541	17	1	1,365	0	1,044	8.2	22.4
2004	755	704	11	23	1,424	0	1,090	8.5	23.4
2005	819	788	18	12	1,577	0	1,206	9.4	25.9
2006	832	776	19	99	1,490	0	1,140	8.9	24.4
2007	840	924	27	21	1,716	0	1,312	10.3	28.1
기타 과실									
2002	1,836	4,327	12	0	6,151	19	3,483	27.3	74.9
2003	1,686	4,215	11	0	5,890	18	3,329	26.1	71.3
2004	1,650	4,648	28	0	6,270	16	3,526	27.6	75.7
2005	1,752	4,648	41	0	6,359	17	3,596	28.1	77.1
2006	1,557	4,353	10	0	5,900	14	3,326	26.0	71.3
2007	1,586	4,328	22	0	5,802	16	3,281	25.7	70.2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5-4. 가격동향

5-4-1. 생산자가격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감귤	이요강	사과		일본배
				후지	츠가루	풍수
2005		1,134	1,202	2,506	2,111	2,056
2006		2,168	1,242	2,306	2,148	2,660
2007		1,354	1,656	2,370	2,073	2,648
2007	8	2,951
	9	1,563	2,169	2,481
	10	1,594	1,781	2,663
	11	1,358	...	2,429
	12	1,136	...	2,220
2008	1	...	1,578	1,923
	2	...	1,266	2,054
	3	...	986	2,192
	4	2,155
	5	2,310
	6
	7
	8	2,718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10kg

연도 · 월별	감	복숭아 (5kg)	포도(4kg)		딸기 (1kg)	수박	
			텔라웨어	거봉			
2005	1,641	1,609	2,046	2,247	908	1,393	
2006	2,062	1,967	2,097	2,442	875	1,573	
2007	1,802	1,993	2,195	2,451	906	1,509	
2007	8	...	1,805	1,790	1,896
	9	1,746	1,923
	10	1,872
	11	1,796	1,147	...
	12	1,796	1,147	...
2008	1	1,014	2,624
	2	1,007	3,795
	3	771	2,775
	4	676	2,152
	5	637	1,528
	6	...	1,880	3,448	...	1,033	1,592
	7	...	1,998	2,411	3,774	1,148	1,549
	8	...	1,436	1,613	2,949	...	1,49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5-4-2. 도매가격

단위: 출하량-t, 도매가격-엔/kg

구분	2004		2005		2006		2007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출하량	도매 가격
밀감전체	936,500	193	1,005,000	148	743,200	265	950,500	208
조생온주	561,900	...	610,000	...	440,220
보통온주	374,600	...	394,900	...	303,000
여름밀감	64,300	...	53,600	...	50,400
햇사쿠	49,000	...	43,500	...	42,200
이요캉	117,800	...	96,600	...	76,900	189
사과전체	666,900	279	724,100	234	739,500	254	748,700	242
후지	367,500	...	398,600	...	408,000	243
츠가루	82,600	...	89,200	...	87,200	227
죤나골드	67,600	...	65,900	...	70,700	243
일본배	300,800	248	333,000	232	266,600	303	272,300	298
이십세기	41,500	...	43,800	...	35,400	322
풍수	91,100	...	99,000	...	80,600	285
신고	26,900	...	34,500	...	29,900	260
서양배	20,800	356	28,500	237	24,700	312	26,100	284
복숭아	139,500	457	160,400	378	133,900	476	137,400	430
자두	23,500	377	23,300	359	18,400	468	19,100	440
감	184,900	259	230,800	163	186,700	244	196,000	224
밤	16,600	338	14,800	461	16,200	394	15,600	397
과인애플	11,100	...	10,100	...	10,400	...	10,100	162
매실	95,600	445	105,100	393	101,100	279	102,800	247
비과	5,080	871	5,380	879	4,880	922	4,590	941
포도	187,500	616	200,800	565	191,800	607	190,700	658
텔라웨어	37,800	...	37,800	...	36,700	668
거봉	60,200	...	67,900	...	61,800	69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5-4-3. 소매가격

단위: 엔/kg

연도 · 월별		밀감		사과(후지)		배		감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566	571	531	549	441	450	452	433
2006		571	594	472	536	547	604	540	569
2007		662	727	484	529	558	608	518	546
2007	8	595	637	558	642
	9	1197	1276	464	575	493	522
	10	558	673	586	610	504	474
	11	458	486	461	530
	12	435	471	427	456
2008	1	482	434	458	502
	2	449	409	441	485
	3	509	439	445	487
	4	463	491
	5	514	524
	6	543	557
	7	554	576
	8	569	609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kg

연도 · 월별		수박		포도(거봉)		복숭아		멜론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332	329	1,234	1,268	761	822	605	641
2006		345	354	1,332	1,388	848	927	610	630
2007		347	342	1,320	1,358	859	935	612	570
2007/2006(%)		100.6	96.6	99.1	97.8	101.3	100.9	100.3	90.5
2007	8	324	316	1,739	1,737	916	986	549	489
	9	1,088	1,175	872	907
	10	1,064	1,111
	11
	12
2008	1
	2
	3
	4
	5	408	403	725	692
	6	344	306	642	622
	7	318	308	1,875	1,691	883	865	528	515
	8	321	320	1,318	1,281	710	805	529	552
2008.8/2007.8(%)		99.1	101.3	75.8	73.7	77.5	81.6	96.4	112.9
2008.8/2008.7(%)		100.9	103.9	70.3	75.8	80.4	93.1	100.2	107.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6. 화훼류

6-1. 연도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재배면적	출하량	재배면적	출하량
	a	천송이(개)	a	천송이(개)	%	%
철화류	1,724,000	4,835,000	1,749,000	4,918,000	99	98
국화	564,900	1,817,000	570,900	1,855,000	99	98
카네이션	41,100	388,200	43,500	411,100	95	94
장미	48,500	356,600	48,900	369,100	98	96
양란류	18,600	18,700	18,900	22,700	98	100
스타티스	21,500	117,800	24,900	120,800	85	93
거베라	9,770	180,300	10,300	181,800	95	99
리시엔더스	46,700	117,700	-	-	104	101
백합	86,100	170,300	87,300	175,100	98	98
알스트로메리아	9,700	67,900	-	-	96	101
절엽	68,500	169,300	67,200	163,000	102	104
절지	410,100	250,600	402,000	245,900	102	102
구근류	56,400	167,700	57,500	165,300	97	101
분화류	203,700	294,100	210,900	299,500	97	98
시클라멘	23,000	22,100	23,200	22,300	98	98
관엽식물	35,100	54,300	35,100	54,600	100	98
화목류	44,000	50,200	46,500	50,600	95	100
화단용	169,600	792,800	171,500	800,800	100	99
팬지	32,800	177,800	34,000	185,300	96	9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6-2. 지역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6-2-1. 국화

구분	재배면적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a	천 송이	%	%
전국	564,900	1,817,000	99	98
이와테	12,400	27,100	115	113
미야기	10,500	23,600	101	100
후쿠시마	12,800	30,900	98	106
이바라키	15,400	36,900	105	101
도치기	12,100	40,500	101	97
군마	7,670	21,600	103	105
지바	4,140	12,000	100	104
후쿠이	4,550	11,000	107	107
나가노	15,100	42,300	86	84
시즈오카	19,000	57,800	96	93
아이치	143,900	524,700	100	100
오사카	4,300	12,900	92	89
효고	7,400	22,100	95	103
나라	10,400	44,900	97	97
와카야마	6,810	22,500	102	97
히로시마	8,810	23,800	105	113
가가와	9,730	30,500	93	92
후쿠오카	31,500	116,100	102	103
나가사키	12,000	55,100	102	105
구마모토	11,300	29,100	97	94
미야자키	9,800	23,600	98	98
가고시마	39,900	135,000	97	95
오키나와	89,600	313,000	102	9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6-2-2. 카네이션

구분	재배면적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a	천 송이	%	%
전국	41,100	388,200	95	94
홋카이도	4,980	38,800	101	105
지바	3,060	31,100	85	87
나가노	9,670	70,500	97	83
시즈오카	993	13,200	83	83
아이치	5,860	64,800	96	101
효고	2,710	43,300	99	100
가가와	847	10,100	96	94
후쿠오카	1,060	12,100	95	100
나가사키	2,170	23,200	103	113
구마모토	1,180	12,500	96	11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6-2-3. 장미

구분	재배면적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a	천 송이	%	%
전국	48,500	356,600	98	96
미야기	1,140	8,460	101	107
야마가타	2,150	20,800	101	102
이바라키	1,050	6,810	99	100
도치기	1,480	11,300	100	102
군마	2,060	14,300	101	108
사이타마	855	7,170	95	97
지바	1,420	10,000	90	94
가나가와	1,860	15,600	92	91
나가노	1,800	7,110	102	68
기후	873	7,820	100	105
시즈오카	4,360	32,300	96	94
아이치	6,070	51,600	101	95
나라	985	6,620	94	87
와카야마	1,610	8,580	100	90
오카야마	977	6,870	102	94
에히메	1,590	14,800	107	102
후쿠오카	2,510	23,000	82	83
사가	974	6,920	99	97
나가사키	832	6,420	94	104
구마모토	1,050	9,250	92	104
오이타	1,910	14,800	99	100
미야자키	959	6,430	101	9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6-2-4. 백합

구분	재배면적	출하량	전년대비	
			재배면적	출하량
	a	천 송이	%	%
전국	86,100	170,300	98	98
홋카이도	7,940	7,990	92	97
이와테	2,340	4,230	85	88
야마가타	1,410	2,730	99	99
후쿠시마	2,020	4,490	95	136
이바라키	119	281	82	74
도치기	1,200	4,410	90	87
사이타마	6,920	25,100	101	100
지바	3,190	9,440	98	97
도쿄	98	147	100	100
니가타	14,800	17,600	106	104
나가노	3,000	6,040	96	90
시즈오카	647	1,910	103	97
아이치	1,400	2,500	104	97
오사카	620	1,270	124	99
효고	762	2,120	90	116
나라	164	411	112	110
도쿠시마	1,430	2,590	97	97
에히메	1,870	3,480	97	99
고치	12,100	19,700	105	99
후쿠오카	3,200	8,010	101	102
구마모토	2,710	6,380	99	97
오이타	1,080	1,620	93	86
미야자키	3,310	5,960	97	87
가고시마	5,460	12,800	96	96
오키나와	43	38	83	5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기준

6-3. 출하량

단위: 1000송이(개)

구분	절화류		국화		카네이션		장미	
	조직수	출하량	조직수	출하량	조직수	출하량	조직수	출하량
집출하조직계	1,570	3,452,000	608	1,431,000	226	305,200	347	25,1000
집출하단체	814	3,060,000	416	1,297,000	165	277,000	182	17,0100
종합농협	607	2,482,000	328	994,000	135	193,400	146	12,7400
전문농협	7	212,000	5	181,600	2	X	4	6,940
임의조합	200	366,000	83	121,800	28	83,600	32	35,800
집출하업자	6	23,300	3	21,600	-	-	1	X
산지집하시장	1	X	1	X	-	-	-	-
다량출하농가	656	288,500	177	87,300	58	26,300	133	51,500
협업경영체	10	8,440	1	X	1	X	4	6240
회사	86	71,600	10	23,900	2	X	27	23,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2007년 기준

6-4. 가격동향

6-4-1. 생산자가격

단위: 엔/100송이

연도		국화	카네이션	장미 (50송이)	백합
2005		5,700	3,811	3,964	14,440
2006		5,622	3,925	4,037	13,150
2007		6,071	4,070	3,951	17,360
2007	8	6,107	4,528	2,258	15,270
	9	6,871	4,860	4,087	19,310
	10	7,188	5,151	3,952	19,010
	11	6,025	3,102	4,238	15,820
	12	6,667	4,158	6,063	17,570
2008	1	4,493	3,130	5,914	18,100
	2	4,810	4,312	7,509	22,240
	3	7,127	4,579	6,399	21,410
	4	5,742	2,927	3,395	16,840
	5	5,938	2,858	3,703	14,900
	6	3,868	4,038	2,695	10,070
	7	4,224	4,055	2,488	8,968
	8	7,062	4,202	2,635	16,65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6-4-2. 도매가격

품목	2007			전년대비		
	도매수량	도매가액	도매가격	도매수량	도매가액	도매가격
	천송이	천엔	엔/송이	%	%	%
절화류	5,814,407	337,376,937	58	95	99	104
국화	1,951,454	100,773,810	52	96	101	106
카네이션	486,616	22,618,692	46	98	100	100
장미	402,797	29,798,836	74	95	98	103
양란류	168,883	16,329,905	97	99	102	103
스타티스	147,164	7,125,059	48	100	99	98
거베라	199,121	6,413,967	32	95	104	107
백합	182,757	28,597,968	156	94	96	103
알스튜디오에 매립하	74,972	5,771,553	77	97	100	103
절엽	389,923	11,910,674	31	98	100	103
절지	309,330	23,600,223	76	97	99	101
분화류	291,758	99,945,320	343	93	98	105
시클라멘	14,739	6,783,839	460	93	98	105
관엽식물	49,105	16,206,778	330	94	95	101
화목류	43,185	15,550,975	360	95	100	105
화단류	454,900	25,887,805	57	92	101	110
팬지	73,151	3,499,296	48	81	103	12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6-4-3. 소매가격

단위: 엔/1송이

연도 · 월별		국화		카네이션		장미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202	180	173	151	288	267
2006		203	178	177	192	294	283
2007		205	181	180	155	299	281
2007/2006(%)		101.0	101.7	101.7	80.7	101.7	99.3
2007	8	203	159	179	145	285	247
	9	211	191	178	156	300	266
	10	208	197	177	154	301	270
	11	202	180	174	149	303	273
	12	206	186	179	155	313	301
2008	1	207	185	176	158	305	293
	2	202	184	176	152	306	317
	3	209	189	181	156	312	321
	4	203	182	179	152	304	288
	5	204	178	194	175	298	273
	6	195	165	173	139	280	257
	7	196	169	175	147	269	246
	8	205	201	171	155	266	258
2008.8/2007.8(%)		101.0	126.4	95.5	106.9	93.3	104.5
2008.8/2008.7(%)		104.6	118.9	97.7	105.4	98.9	104.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7. 가공 농산물

7-1. 주요 품목별 생산현황

7-1-1. 스프류

단위: 생산량 - t, 생산액 - 백만원

연도	항목	건조스프			캔	레토르트	칠드	기타	합계		조사협력기업
		포타주	콩소메	소계					전년 대비		
2001	생산량	15,778	9,890	25,668	26,837	7,720	31,456	23,382	115,064	104.2	41
	생산액	30,295	15,747	46,042	9,840	6,123	4,778	18,730	85,513	102.5	
2002	생산량	17,727	9,121	26,848	23,876	8,554	28,084	24,190	111,554	96.9	43
	생산액	30,607	14,351	44,958	9,158	6,259	4,252	17,021	81,648	95.5	
2003	생산량	20,141	9,523	29,664	18,393	12,936	28,309	22,290	111,592	100.0	44
	생산액	38,631	13,640	52,270	7,464	8,489	4,457	16,707	89,386	109.5	
2004	생산량	20,973	10,404	31,377	16,488	11,440	31,840	19,782	110,927	99.4	43
	생산액	39,982	15,965	55,947	6,889	8,599	6,129	19,861	97,425	109.0	
2005	생산량	19,901	9,910	29,811	19,519	9,004	28,088	32,983	119,406	107.6	43
	생산액	32,172	15,350	47,522	8,195	5,453	4,252	36,605	102,027	104.7	
2006	생산량	18,458	10,040	28,498	16,296	10,036	29,471	30,023	114,324	95.7	43
	생산액	34,549	15,792	50,342	7,266	6,293	5,213	35,461	104,574	102.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료품생산실태조사'

7-1-2. 향신료

단위: 생산량 - t, 금액 - 백만엔

품목	생산량		금액		용도별판매비율 (수량 베이스)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가정용	음식 접 등	식품 공업용	동업자 판매	기타
후추	7,612.6	99.7	8,688.6	98.8	20.6%	16.6%	37.8%	12.9%	12.1%
시나몬	287.6	79.4	504.4	85.4	22.6%	35.3%	31.3%	9.0%	1.7%
진저	5,807.2	116.1	5,252.9	110.4	27.5%	40.7%	23.8%	7.6%	0.4%
어니언 · 갈릭	11,550.0	111.0	7,038.5	116.5	6.2%	9.4%	68.3%	5.7%	10.4%
고춧가루	3,910.5	120.5	6,081.8	108.2	27.0%	25.3%	35.8%	0.8%	11.1%
메탈릭	308.6	60.9	257.9	51.3	0.4%	0.5%	1.7%	1.2%	96.2%
쿠민	419.0	121.4	180.4	81.0	2.4%	10.9%	24.1%	21.6%	41.0%
가루고추냉이	2,763.4	105.9	1,791.2	64.9	19.6%	74.1%	0.5%	4.2%	1.6%
가공고추냉이	13,883.3	119.6	18,824.9	90.3	56.1%	40.1%	0.1%	3.2%	0.5%
기타	11,952.2	132.0	10,919.8	84.6	12.8%	15.7%	61.8%	5.1%	4.6%
합계	58,494.3	115.2	59,540.4	94.4	21.6%	22.3%	33.4%	5.5%	17.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품생산실태조사', 2006년 기준

7-1-3. 소스류

단위: t

품목	용기	병	합성 수지 용기	금속 용기	레토르트	기타 용기	합계	2005년	전년 대비 (%)
파스타소스류									
파스타소스	54	2,006	3,182	18,829	2,889	26,960	20,618	130.8%	
피자소스	42	1,781	1,257	276	2,401	5,757	4,701	122.5%	
미트소스	0	2,704	10,042	31,051	1,252	45,048	26,636	169.1%	
계	96	6,491	14,481	50,156	6,542	77,765	51,955	149.7%	
중화소스류									
중화소스	321	3,546	333	14,619	5,956	24,776	17,358	142.7%	
마파소스	4	751	11	21,268	11,716	33,750	33,127	101.9%	
계	325	4,297	344	35,887	17,672	58,526	50,485	115.9%	
스테이크소스류									
스테이크소스	118	5,826	281	96	1,045	7,366	6,453	114.2%	
양념구이소스	117	3,257	392	183	416	4,366	2,816	155.0%	
스페어립소스	1	97	44	0	129	270	304	88.8%	
계	235	9,181	716	279	1,590	12,002	9,573	125.4%	
화이트소스류									
화이트소스	0	242	4,374	1,327	1,500	7,444	7,658	97.2%	
타르타르소스	2	9,357	0	49	2,040	11,449	13,279	86.2%	
계	2	9,599	4,374	1,377	3,541	18,892	20,937	90.2%	
기타소스류									
햄버그소스	27	1,326	408	823	1,395	3,978	4,010	99.2%	
데미글라스소스	0	1,616	9,580	3,834	1,263	16,292	16,744	97.3%	
오이스터소스	2,226	644	1,186	0	275	4,330	5,371	80.6%	
케첩소스	94	1,514	755	689	1,434	4,486	3,277	136.9%	
기타	704	6,797	523	7,439	4,866	20,330	20,339	100.0%	
계	3,050	11,897	12,452	12,785	9,232	49,416	49,741	99.3%	
합계	3,708	41,465	32,367	100,483	38,577	216,601	182,691	118.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료품생산실태조사', 2006년 기준

7-1-4. 액기스류

단위: t

제품명		원료 취급량								
		국산	수입	소계	원체액기스 (국산)			원체액기스 (수입)		
					가루	페이스트	액체	가루	페이스트	액체
동물	비프	5,490	643	6,133	5	19	62	0	380	569
	포크	31,111	471	31,582	224	746	1,541	140	1,627	2,979
	치킨	46,391	73	46,464	41	545	1,729	436	601	1,568
	기타	857	0	857	210	61	99	0	0	0
	계	83,849	1,187	85,036	480	1,371	3,431	576	2,608	5,116
수산	어류	38,476	1,067	39,543	75	1,319	12,328	0	880	671
	조개류	350	29	379	15	501	400	13	497	613
	해조류	156	0	156	2	183	77	0	249	234
	기타	104	821	925	25	148	19	0	64	42
	계	39,086	1,917	41,003	117	2,151	12,824	13	1,690	1,560
채소	채소류	3,714	2,618	6,332	125	26	2,937	140	115	2,296
	버섯류	17	68	85	0	8	7	0	30	73
	기타	3	232	235	0	0	0	0	0	0
	계	3,734	2,918	6,652	125	34	2,944	140	145	2,369
	기타	35	456	491	27	0	0	256	200	0
	합계	126,704	6,478	133,182	749	3,556	19,199	985	4,643	9,04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료품생산실태조사', 2006년 기준

7-1-5. 조미료

【생산량】

단위: 천 t

연도	된장	간장	글루타민산 소다	식초	소스류	마요네즈	카레
		천 kl		천 kl	천 kl		
2002	524	999	62	425	298	391	107
2003	510	981	61	427	305	392	107
2004	508	954	60	432	273	399	106
2005	497	939	47	433	304	408	106
2006	495	95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료품생산실태조사'

【소비량】

단위: kg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식염	2.5	2.4	2.5	2.4	2.9
된장	7.1	7.1	6.9	6.8	6.9
간장	7.9	7.6	7.8	7.4	7.5
식초	2.7	2.8	3.1	3.1	2.9
소스	1.7	1.7	1.6	1.7	1.6
케첩	1.4	1.4	1.5	1.5	1.5
마요네즈	4.8	4.7	4.7	4.6	4.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도 식료품생산실태조사'

7-1-6. 식육가공품

단위: t

연도	계	햄			베이컨	소시지			
		로스햄	프레스햄	비엔나 소시지		볼로나 소시지			
2005	493,800	139,015	80,568	10,580	76,287	278,497	197,405	16,276	
2006	490,656	136,263	80,154	10,550	78,241	276,153	199,071	16,449	
2007	480,582	132,743	78,043	10,769	78,909	268,930	193,609	16,393	
2007/2006(%)	97.9	97.4	97.4	102.1	100.9	97.4	97.3	99.7	
2007	7	43,273	13,313	7,917	1,153	6,600	23,360	15,953	1,629
	8	40,748	11,751	6,856	1,163	6,226	22,771	15,974	1,252
	9	38,935	10,227	6,077	818	6,297	22,412	16,703	1,121
	10	39,837	9,942	5,834	714	6,742	23,152	17,046	1,236
	11	42,401	12,368	7,194	843	6,979	23,054	16,067	1,998
	12	45,982	15,061	8,963	845	6,840	24,081	16,750	2,351
2008	1	31,689	7,687	4,484	667	5,532	18,471	13,815	865
	2	35,545	8,519	5,057	728	6,262	20,764	15,602	1,029
	3	38,415	9,647	5,710	898	6,790	21,978	16,037	1,120
	4	42,582	10,621	6,222	1,007	7,008	24,953	17,864	1,222
	5	41,404	10,815	6,521	1,013	6,788	23,801	17,545	1,145
	6	40,444	11,477	7,006	874	6,493	22,475	16,005	1,408
	7	43,359	12,994	7,796	1,108	6,296	24,069	16,302	1,704
2008.7/2007.7(%)	100.2	97.6	98.5	96.1	95.4	103.0	102.2	104.6	
2008.7/2008.6(%)	107.2	113.2	111.3	126.8	97.0	107.1	101.9	121.0	

자료원: 일본햄·소시지공업협동조합조사 결과

7-2. 주요 품목별 연도별 수출입 현황

7-2-1. 조미료

단위: 100만엔

품목	수량 단위	2006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스	t	62,939	15,904	59,733	14,347
원장	t	8,747	1,771	7,755	1,595
간장	t	1,065	96	19,335	3,482	1,091	87	17,368	3,127
기타 혼합조미료	t	38,100	6,515	40,422	18,383	36,764	5,685	1)37,409	1)17,118
식초·식초 대용물	kl	4,257	1,161	9,286	1,273	4,758	1,248	8,116	1,071
글루타민산 소다	t	86,482	10,854	447	200	77,078	8,266	283	131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주: 1)은 소스를 포함

7-2-2. 식육가공품

단위: 수량 - t, 가격 - 100만엔

품목	2006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햄·베이컨	4,440	4,822	-	-	3,499	3,711	-	-
식용육류(조각)	1,985	3,549	9	15	1,689	2,782	-	-
육엑기스 등	1,683	1,093	320	312	1,794	967	364	364
소시지류	40,694	17,642	16	13	33,690	14,708	6	6
육류·육류로 만든 조제품	533,623	203,910	405	130	497,595	182,859	459	188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7-2-3. 유지

단위: 수량 - 천 t, 가격 - 100만엔

품목	2006				2005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동물성유지	108.8	8,630	1.9	1,412	110.4	9,529	2.3	1,384
돼지기름(라드포함)	3.4	382	0.1	17	2.0	262	0.3	27
쇠기름	75.7	4,029	0.0	0.7	69.9	3,422	0.0	0.2
식물성유지	858.3	83,392	17.1	4,824	903.1	81,570	19.3	3,966
콩기름	59.7	6,106	0.2	37	51.6	5,493	0.2	44
목화씨기름	5.8	484	0.0	30	6.1	499	0.1	19
유채·개자유	17.1	1,601	0.3	91	63.2	5,085	0.2	60
삼씨기름	10.1	1,078	0.1	22	11.0	1,697	0.1	18
올리브유	30.9	21,104	0.0	119	33.6	17,679	0.0	40
팜유	474.9	27,286	0.1	32	455.0	23,380	1.1	92
야자유	63.6	4,890	0.0	2	64.4	5,044	0.2	10
팜핵유	54.4	3,988	0.1	12	54.2	4,120	0.0	4
옥수수기름	0.1	14	6.0	412	3.7	370	0.0	10
피마자유	16.6	1,569	0.4	109	25.0	2,542	0.4	107
참기름	2.6	716	5.7	2,560	3.9	1,047	5.1	2,196
유지원료	6,705.7	260,511	0.3	148	6,876.9	264,354	0.3	178
땅콩	41.5	4,958	0.0	18	41.5	4,574	0.0	12
콩	4,041.9	149,072	0.0	11	4,180.6	156,954	0.0	49
목화씨(채유용)	160.9	3,924	0.0	90	163.0	3,696		
유채	2,274.0	83,385	0.0	1	2,294.7	79,798		
깨(채유용)	159.1	17,260	0.0	88	162.8	16,964	0.0	80
홍화씨(채유용)	0.7	34			0.8	39		
마가린	0.7	138	0.8	283	0.8	140	0.9	261
쇼트닝	1.6	264			1.5	248		
어유 및 해수유	39.5	4,185		1,505	53.2	5,037		1,320
어유(간유제외)	38.6	3,664	1.2	1,404	51.4	4,346	1.2	1,184
간유	0.9	516	0.0	101	1.8	686	0.0	135

자료원: 재무성 관세국 '무역통계'

1. 쇠고기

1-1. 사육동향

1-1-1. 젖소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단위 : 두

구분	사육호수(호)	사육두수						암컷	
		합계	계	성축(2세이상)			미경산우	2세미만(미경산우)	미경산우계
				경산우					
				소계	착유우	건유우			
전국	24,400	1,533,000	1,075,000	998,200	861,500	136,700	76,500	458,000	534,500
(농업지역)									
홋카이도	8,090	819,400	521,600	481,200	410,700	70,400	40,400	297,800	338,200
도부현	16,300	713,300	553,100	517,000	450,800	66,300	36,000	160,200	196,300
도호쿠	3,910	132,700	97,900	90,500	78,900	11,600	7,410	34,800	42,200
호쿠리쿠	544	20,400	15,800	15,100	13,300	1,880	660	4,610	5,270
간토	5,120	229,300	180,600	168,200	146,300	21,900	12,400	48,700	61,100
도카이	1,190	70,000	56,300	53,400	47,000	6,450	2,890	13,700	16,600
긴키	962	40,300	32,100	30,700	26,600	4,090	1,430	8,210	9,630
주고쿠	1,220	56,500	43,200	41,000	35,500	5,420	2,240	13,300	15,500
시코쿠	675	27,000	22,300	20,500	17,800	2,670	1,760	4,740	6,500
규슈	2,540	131,900	100,300	93,200	81,500	11,700	7,110	31,600	38,700
오кина와	106	5,110	4,530	4,380	3,790	590	150	580	73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2. 젓소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단위: 호

구분	계	1~9	10~14	15~19	20~29	30~39	40~49	50~79	80~99	100두 이상
전국	24,600	2,660	1,660	1,890	3,850	3,780	3,110	4,880	1,180	1,560
홋카이도	8,030	313	124	167	431	965	1,250	2,960	804	1,010
도부현	16,500	2,350	1,540	1,720	3,410	2,820	1,860	1,910	379	544
도호쿠	3,880	965	444	429	769	506	308	361	43	53
호쿠리쿠	551	72	50	71	120	113	61	46	12	6
간토	5,220	595	475	509	1,140	990	660	572	88	188
도카이	1,220	90	72	89	208	209	165	224	71	91
긴키	1,000	156	103	101	208	175	111	95	22	30
주교쿠	1,200	175	115	129	230	222	131	123	34	43
시코쿠	722	120	93	91	146	105	64	70	12	21
규슈	2,630	172	184	299	573	478	333	392	92	109
오кина와	110	3	3	-	21	18	27	30	5	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3. 젖소 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두

구분	계	1~ 9	10~ 14	15~ 19	20~ 29	30~ 39	40~ 49	50~ 79	80~ 99	100두 이상
전국	1,562,000	27,300	25,300	45,200	123,800	176,700	192,200	417,900	148,800	404,500
홋카이도	821,700	10,200	2,320	8,040	18,200	51,500	85,400	269,900	105,200	270,900
도부현	740,000	17,100	23,000	37,100	105,600	125,200	106,800	148,000	43,600	133,600
도호쿠	137,100	7,700	6,840	9,210	23,800	22,900	18,000	28,200	5,220	15,100
호쿠리쿠	20,200	510	710	1,390	3,460	4,780	3,420	3,500	1,160	1,320
간토	238,200	3,930	6,920	10,800	35,400	43,000	37,500	44,100	10,400	46,000
도카이	72,200	420	960	1,930	6,290	9,420	9,120	16,500	7,450	20,100
긴키	41,500	1,180	1,490	2,280	6,310	7,660	6,180	6,740	2,450	7,210
주고쿠	57,100	1,300	1,890	3,000	7,510	10,100	7,650	10,200	4,120	11,400
시코쿠	28,700	780	1,370	1,830	4,210	4,330	3,370	5,450	1,470	5,920
규슈	139,500	1,300	2,750	6,690	18,000	22,300	20,000	31,600	10,800	26,200
오кина와	5,390	20	40	-	580	670	1,470	1,700	520	4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4. 육우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단위: 두

구분	사육호수	유용종 보유호수	합계	사육두수				
				유용종				
				계	비육 용우	흑모화종 (黑毛和種)	갈모화종 (褐毛和種)	기타
전국	80,400	7,470	2,890,000	1,823,000	770,100	1,734,000	30,400	58,100
농업지역								
홋카이도	3,000	998	511,300	162,200	43,600	151,700	2,950	7,620
도부현	77,400	6,470	2,379,000	1,661,000	726,600	1,583,000	27,500	50,500
도호쿠	22,600	1,410	414,700	303,900	121,800	294,400	810	8,690
호쿠리쿠	579	220	24,400	10,800	6,330	10,800	-	40
간토	4,900	1,750	339,000	139,400	86,500	136,000	230	3,190
도카이	1,710	615	152,500	73,500	53,300	73,100	40	270
긴키	2,470	282	93,900	67,800	40,100	63,800	80	3,920
주교쿠	4,870	406	139,500	80,300	37,300	75,100	20	5,170
시코쿠	1,190	389	72,900	29,300	20,700	25,400	3,810	100
규슈	36,000	1,360	1,058,000	872,900	355,000	821,400	22,500	29,000
오кина와	3,140	49	84,000	82,700	5,590	82,600	-	8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5. 육우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단위: 호

구분	계	1~4 마리	5~9	10~ 19	20~ 49	50~ 99	100~ 199	200 두이상	그중
									500두 이상
전국	80,000	26,300	19,200	14,600	10,600	4,400	2, 570	2 430	703
홋카이도	2,990	190	189	625	804	551	220	406	...
도부현	77,000	26,100	19,000	14,000	9,760	3,850	2,350	2,030	...
도호쿠	22,500	9,400	5,380	4,000	2,330	729	417	259	...
호쿠리쿠	560	180	83	80	91	63	41	22	...
간토	4,810	1,000	835	810	932	534	341	361	...
도카이	1,670	264	221	246	283	240	215	205	...
긴키	2,440	769	592	448	295	137	115	87	...
주고쿠	4,830	2,430	1,110	586	313	164	113	114	...
시코쿠	1,170	292	187	197	184	128	91	91	...
규슈	35,900	11,200	9,710	6,940	4,560	1,690	944	856	...
오кина와	3,140	553	860	694	768	159	70	31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6. 육우 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두

구분	계	1~4 마리	5~ 9	10~ 19	20~ 49	50~ 99	100~ 199	200 두 이상	그중
									500두 이상
전국	2,845,000	68,600	124,000	198,200	317,600	301,000	377,000	1,458,000	912,700
홋카이도	503,900	500	1,110	7,880	25,500	39,200	30,000	399,800	...
도부현	2,341,000	68,100	122,900	190,300	292,100	261,800	347,000	1,058,000	...
도호쿠	410,700	22,400	32,300	49,300	69,800	48,200	59,200	129,400	...
호쿠리쿠	23,200	460	580	1,190	3,250	4,510	5,530	7,720	...
간토	323,600	2,380	4,990	10,800	27,600	36,000	48,000	193,900	...
도카이	149,900	760	1,460	3,680	8,740	16,900	31,800	86,600	...
킨키	91,900	2,260	4,050	6,010	10,400	9,600	17,300	42,300	...
주고쿠	133,600	6,120	7,460	8,180	9,970	12,500	18,100	71,300	...
시코쿠	72,400	690	1,370	2,610	5,910	9,060	13,800	38,900	...
규슈	1,052,000	31,600	64,700	98,400	131,400	113,900	142,500	469,800	...
오кина와	83,200	1,490	6,010	10,200	25,000	11,100	10,700	18,600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1-7. 육우 출생두수

단위: 두

구분	계	암컷	수컷	출생두수 전년대비(%)
전국	547,700	263,000	284, 700	106.6
(농업지역)				
홋카이도	62,100	29,200	32,900	123.0
도부현	485,600	233,800	251,800	104.8
도호쿠	92,500	43,600	48,900	102.9
호쿠리쿠	2,540	1,160	1,370	105.4
간토	31,200	14,600	16,600	107.2
도카이	11,900	5,640	6,300	109.2
킨키	13,700	6,550	7,170	100.0
주고쿠	23,100	11,100	12,000	101.8
시코쿠	4,450	2,130	2,320	108.8
규슈	269,400	131,500	137,900	106.0
오키나와	36,900	17,500	19,400	100.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1-2. 도축동향

단위: 두

연도	도축두수 (안은 전년대비)	내역									상단()은 출하순위 하단()은 전년대비
		후쿠 오카	사가	나가 사키	구마 모토	오이타	미야 자키	가고 시마	야마 구치	기타	
2003		(1)	(3)	(4)	(2)	(5)	(8)	(6)	(7)	(9)	
	14,963	5,012	2,362	1,598	2,981	1,060	337	851	569	193	
	(95.2)	(105.7)	(95.5)	(89.0)	(98.7)	(80.4)	(85.5)	(66.1)	(98.1)	(166.4)	
2004		(1)	(3)	(4)	(2)	(5)	(8)	(6)	(7)	(9)	
	17,641	5,819	3,293	1,404	4,177	983	385	788	534	258	
	(117.9)	(116.1)	(139.4)	(87.9)	(140.1)	(92.7)	(114.2)	(92.6)	(93.8)	(133.7)	
2005		(1)	(2)	(4)	(3)	(5)	(7)	(6)	(8)	(9)	
	17,030	6,033.0	3,578.0	1,225.0	3,518.0	985.0	474.0	594.0	458.0	165.0	
	(96.5)	(103.7)	(108.7)	(87.3)	(84.2)	(100.2)	(123.1)	(75.4)	(85.8)	(64.0)	
2006		(1)	(2)	(4)	(3)	(6)	(7)	(5)	(8)	(9)	
	16,211	5,917	3,607	1,272	2,617	809	488	877	379	245	
	(95.2)	(98.1)	(100.8)	(103.8)	(74.4)	(82.1)	(103.0)	(147.6)	(82.8)	(148.5)	
2007		(1)	(2)	(4)	(3)	(6)	(7)	(5)	(8)	(9)	
	17,240	6,201	3,579	1,322	2,291	1,103	882	1,266	420	176	
	(106.3)	(104.8)	(99.2)	(103.9)	(87.5)	(136.3)	(180.7)	(144.4)	(110.8)	(71.8)	
구성비 (%)	100.0	36.0	20.8	7.7	13.3	6.4	5.1	7.3	2.4	1.0	

자료원: 일본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 '식육시장 연보'

1-3. 쇠고기 연도별 생산량

단위: t

연도 · 월별		성우				송아지		
		와규	젓소		와규 송아지	젓소 송아지	기타 송아지	
			비육 수컷	암컷				
2005		498,428	192,524	179,459	118,348	28	996	18
2006		496,229	190,857	173,434	123,400	21	731	10
2007		503,056	194,457	179,530	119,088	23	888	11
2007/2006(%)		101.4	101.9	103.5	96.5	109.5	121.5	110.0
2007	8	40,677	15,282	15,067	9,515	2	94	1
	9	39,318	14,781	14,526	9,213	2	82	1
	10	45,260	16,626	16,520	11,245	1	94	1
	11	51,336	21,397	17,442	11,591	2	72	0
	12	50,611	22,396	16,910	10,370	1	84	0
2008	1	38,528	13,439	14,691	9,687	2	71	0
	2	40,990	15,254	15,055	9,850	2	65	1
	3	40,416	14,831	14,731	10,023	1	97	2
	4	45,031	17,596	15,506	10,317	3	86	1
	5	40,408	15,175	15,020	9,329	2	84	2
	6	39,155	14,924	14,602	8,771	3	101	1
	7	46,167	18,845	15,811	10,680	3	109	1
	8	39,290	15,199	14,381	8,946	3	119	1
2008.8/2007.8(%)		96.6	99.5	95.4	94.0	150.0	126.6	100.0
2008.8/2008.7(%)		85.1	80.7	91.0	83.8	100.0	109.2	1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1-4.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 증감량	국내 소비량	순식료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kg)
2002	520	763	△50	1333	816	6.4	17.5
2003	505	743	△43	1291	795	6.2	17.0
2004	508	643	△4	1155	713	5.6	15.3
2005	497	654	0	1151	711	5.6	15.2
2006	495	667	17	1145	707	5.5	15.2
2007	513	662	△5	1180	728	5.7	15.6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2007년 기준

1-5. 가격동향

1-5-1. 생산자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육용우(10kg)			와규 송아지(1마리)	
		암컷 비육	거세 비육	유용 비육 수컷	암컷	수컷
2005		11,370	13,020	4,970	416,800	484,800
2006		11,550	13,130	5,178	441,400	512,400
2007		11,520	13,120	4,860	442,100	524,800
2007	8	11,200	12,720	4,572	441,300	521,100
	9	11,390	12,980	4,589	444,700	526,100
	10	11,240	12,980	4,450	437,300	527,000
	11	11,270	12,610	4,514	441,100	519,600
	12	11,560	13,300	4,620	433,700	522,000
2008	1	11,440	12,940	4,415	428,600	512,800
	2	11,530	12,900	4,445	421,700	509,500
	3	11,050	12,540	4,619	420,100	492,600
	4	10,820	12,120	4,693	385,200	470,000
	5	10,940	12,300	4,843	381,600	451,200
	6	10,330	11,750	4,818	368,600	422,500
	7	10,290	11,650	4,639	347,000	402,100
	8	10,270	11,110	4,588	351,500	405,2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1-5-2. 도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와규(거세와규)지육(1kg)				유용 비육 수컷 지육(1kg)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2004		2,008	1,944	1,968	1,882	1,163	930	1,202	1,028
2005		2,109	2,044	2,075	2,015	1,272	915	1,257	1,056
2006		2,136	2,053	2,096	2,029	1,254	926	1,261	1,090
2006/2005(%)		101.3	100.4	101.0	100.7	98.6	101.2	100.3	103.2
2007	8	2,067	1,966	2,004	1,910	1,138	917	1,115	970
	9	2,097	1,983	2,024	1,940	1,128	888	1,104	980
	10	2,044	2,018	1,968	1,938	1,129	865	1,095	998
	11	2,073	1,940	2,005	1,944	1,141	886	1,116	977
	12	2,235	2,081	2,090	2,021	1,234	893	1,157	1,008
2008	1	2,133	1,901	2,030	1,971	1,176	892	1,123	1,027
	2	2,047	1,966	1,997	1,936	1,137	873	1,119	1,017
	3	1,968	1,861	1,866	1,874	1,167	915	1,084	1,032
	4	1,949	1,929	1,886	1,912	1,157	919	1,160	1,050
	5	1,951	1,893	1,815	1,808	1,161	946	1,115	1,036
	6	1,889	1,792	1,835	1,767	1,077	982	1,069	942
	7	1,886	1,797	1,868	1,800	1,078	925	1,040	918
	8	1,871	1,827	1,829	1,751	1,052	894	1,018	892
2008.8/2007.8(%)		90.5	92.9	91.3	91.7	92.4	97.5	91.3	92.0
2008.8/2008.7(%)		99.2	101.7	97.9	97.3	97.6	96.6	97.9	97.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1-5-3.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쇠고기		쇠고기	
		(로스100g)		(수입품100g)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844	743	331	323
2006		855	828	340	289
2007		884	838	343	331
2007/2006 (%)		103.4	101.2	100.9	114.5
2007	8	862	824	339	319
	9	900	829	344	334
	10	896	862	339	332
	11	903	871	350	355
	12	910	859	323	362
2008	1	902	893	380	350
	2	924	896	348	374
	3	931	920	382	374
	4	900	913	370	363
	5	884	871	375	347
	6	905	887	369	372
	7	900	865	394	372
	8	893	896	367	378
2008.8/2007.8 (%)		103.6	108.7	108.3	118.5
2008.8/2008.7 (%)		99.2	103.6	93.1	101.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2. 돼지고기

2-1. 사육동향

2-1-1. 돼지 사육호수 및 사육두수

단위: 호, 두

구분	사육 호수	번식용 암돼지 보유 호수	사육두수				
			계	번식용 암돼지	수돼지	비육돈	기타
전국	7,230	6,250	9,745,000	910,100	57,400	8,117,000	660,900
(농업지역)							
홋카이도	297	270	550,600	49,800	2,700	466,000	32,100
도부현	6,930	5,980	9,194,000	860,200	54,700	7,651,000	628,800
도호쿠	1,060	915	1,653,000	156,100	8,240	1,388,000	101,600
호쿠리쿠	253	217	294,900	27,200	2,070	232,900	32,600
간토	1,970	1,750	2,577,000	238,600	15,600	2,210,000	112,800
도카이	603	530	745,500	69,900	4,900	610,900	59,900
간키	110	83	69,600	6,300	440	59,700	3,120
주고쿠	164	144	238,600	22,400	1,310	195,400	19,600
시코쿠	269	242	334,700	31,300	2,230	273,300	27,900
규슈	2,180	1,860	3,043,000	282,500	17,700	2,524,000	219,300
오키나와	330	241	236,900	26,000	2,290	156,600	52,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8년 2월 기준

2-1-2. 비육돈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단위: 호

구분	계	1~299 두	300~ 499	500~ 999	1,000~ 1,999	2,000 두이상	그중 3,000두 이상
전국	6,220	1,900	845	1,390	1,130	962	562
(농업지역)							
홋카이도	281	87	25	48	66	55	...
도부현	5,940	1,810	820	1,340	1,060	907	...
도호쿠	894	329	115	184	113	153	...
호쿠리쿠	218	60	24	74	27	33	...
간토	1,830	493	283	439	339	274	...
도카이	527	130	55	106	148	88	...
긴키	83	32	12	22	9	8	...
주코쿠	130	41	16	32	16	25	...
시료쿠	241	59	44	57	43	38	...
규슈	1,770	533	230	393	337	276	...
오кина와	253	136	41	34	30	12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2-1-3. 비육돈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두

구분	계	1~299 두	300~ 499	500~ 999	1,000~ 1,999	2,000 두이상	그중 3,000두 이상
전국	9,274,000	306,400	365,000	1,105,000	1,710,000	5,787,000	4,633,000
(농업지역)							
홋카이도	546,500	16,400	12,200	39,300	111,300	367,400	...
도부현	8,727,000	290,000	352,800	1,066,000	1,599,000	5,420,000	...
도호쿠	1,585,000	55,900	50,100	149,000	179,800	1,150,000	...
호쿠리쿠	283,800	14,800	12,400	62,000	49,000	145,700	...
간토	2,473,000	72,200	117,600	342,800	488,000	1,452,000	...
도카이	715,500	27,700	25,500	92,800	232,000	337,600	...
긴키	66,700	4,810	4,670	17,300	12,500	27,400	...
주고쿠	231,300	6,190	7,320	26,500	35,700	155,600	...
시코쿠	322,100	10,100	18,200	46,000	64,300	183,600	...
규슈	2,856,000	77,600	95,000	294,900	490,400	1,898,000	...
오кина와	194,400	20,800	22,000	34,300	47,500	69,800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2-1-4. 번식용 암태지 사육두수 규모별 사육호수

단위: 호

구분	계	1~29 두	30~ 49	50~ 99	100~ 199	200두 이상
전국	6,070	1,600	797	1,450	1,200	1,030
(농업지역)						
홋카이도	270	66	30	55	53	66
도부현	5,800	1,530	767	1,390	1,150	965
도호쿠	890	305	124	167	116	178
호쿠리쿠	210	42	21	67	41	39
간토	1,700	363	229	444	392	269
도카이	513	74	57	121	165	96
긴키	70	28	9	13	12	8
주교쿠	138	35	22	34	19	28
시코쿠	229	41	41	43	61	43
규슈	1,820	549	225	461	310	273
오кина와	236	96	39	40	30	3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2-1-5. 번식용 암돼지 규모별 사육두수

단위: 두

구분	계	1~29 두	30~ 49	50~ 99	100~ 199	200두 이상
전국	8,691,000	181,100	261,200	968,400	1,662,000	5,618,000
(농업지역)						
홋카이도	534,100	10,100	10,300	38,900	75,900	398,900
도부현	8,157,000	171,000	250,800	929,500	1,586,000	5,219,000
도호쿠	1,494,000	33,300	40,200	113,400	151,200	1,156,000
호쿠리쿠	247,100	11,400	8,070	46,500	53,300	127,800
간토	2,295,000	44,600	75,700	300,500	519,200	1,355,000
도카이	696,500	7,780	19,700	86,700	226,000	356,300
긴키	56,100	4,240	2,880	9,270	13,900	25,800
주교쿠	201,100	2,470	6,880	24,900	36,600	130,200
시료쿠	309,200	5,670	12,400	28,600	70,400	192,200
규슈	2,685,000	52,500	76,600	297,700	485,600	1,773,000
오кина와	172,500	9,040	8,330	21,900	29,800	103,4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2-2. 도축동향

단위: 두

연도	도축두수 ()안은 전년대비	내역									상단()은 출하순위 하단()은 전년대비
		후쿠 오카	사가	나가 사키	구마 모토	오이타	미야 자키	가고 시마	야마 구치	기타	
2003		(4)	(3)	(5)	(6)	(1)	-	-	(2)	-	
	97,455	16,267	16,477	7,762	2,588	28,374	-	-	25,987	-	
	(115.5)	(91.9)	(131.3)	(271.6)	(98.1)	(118.4)	-	-	(105.5)	-	
2004		(4)	(2)	(6)	(5)	(3)	-	-	(1)	(7)	
	81,109	16,243	17,142	2,103	2,846	16,297	-	-	26,374	104	
	(83.2)	(99.9)	(104.0)	(27.1)	(110.0)	(57.4)	-	-	(101.5)	-	
2005		(4)	(2)	(6)	(5)	(3)	-	-	(1)	-	
	78,892	13,818	18,450	3,615	4,694	14,119	-	-	24,196	-	
	(97.3)	(85.1)	(107.6)	(171.9)	(164.9)	(86.6)	-	-	(91.7)	-	
2006		(4)	(2)	(5)	(6)	(3)	-	-	(1)	-	
	77,033	11,896	17,814	4,998	3,389	13,847	-	-	25,089	-	
	(97.6)	(86.1)	(96.6)	(138.3)	(72.2)	(98.1)	-	-	(103.7)	-	
2007		(3)	(2)	(5)	(6)	(4)	-	-	(1)	-	
	78,553	14,079	18,187	6,045	2,712	12,856	-	-	24,674	-	
	(102.0)	(118.4)	(102.1)	(120.9)	(80.0)	(92.8)	-	-	(98.3)	-	
구성비 (%)	100.0	17.9	23.2	7.7	3.5	16.4	-	-	31.4	-	

자료원: 일본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 '식육시장 연보'

2-3. 돼지고기 연도별 생산량

단위: t

연도 · 월별		생산량
2005		1,244,963
2006		1,246,525
2007		1,250,247
2007/2006 (%)		100.3
2007	8	99,283
	9	93,230
	10	111,829
	11	114,567
	12	112,996
2008	1	108,167
	2	104,178
	3	99,533
	4	103,569
	5	100,365
	6	95,180
	7	98,068
	8	90,253
2008.8/2007.8 (%)		90.9
2008.8/2008.7 (%)		92.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4.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 증감량	국내 소비량	순식료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kg)
2002	1,246	1,101	△3	2,350	1,451	11.4	31.2
2003	1,274	1,145	13	2,406	1,486	11.6	31.8
2004	1,263	1,267	38	2,492	1,538	12.0	33.0
2005	1,242	1,298	46	2,494	1,540	12.1	33.0
2006	1,249	1,100	△35	2,383	1,471	11.5	31.5
2007	1,246	1,125	△21	2,391	1,476	11.6	31.6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2-5. 가격동향

2-5-1. 생산자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육돈 (10kg)	새끼돼지 (1마리) 생후90~110일 정도
2005		3,052	16,050
2006		3,023	15,520
2007		3,140	16,420
2007	8	3,447	15,200
	9	3,515	15,680
	10	3,121	15,650
	11	3,018	16,220
	12	3,267	16,800
2008	1	3,029	18,230
	2	3,372	19,590
	3	3,647	21,090
	4	3,489	21,480
	5	3,542	20,390
	6	3,771	20,510
	7	3,823	19,620
	8	3,771	17,68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2-5-2. 도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돼지고기(1kg)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2004		411	380	410	439
2005		435	390	420	450
2006		432	420	430	447
2006/2005(%)		99.3	107.7	102.4	99.3
2007	8	498	524	506	499
	9	469	510	498	501
	10	433	451	438	440
	11	424	444	414	431
	12	471	489	459	483
2008	1	411	419	395	435
	2	502	519	476	497
	3	520	535	505	541
	4	510	511	492	520
	5	525	535	483	540
	6	564	581	534	552
	7	551	570	533	564
	8	527	567	549	563
2008.8/2007.8(%)		105.8	108.2	108.5	112.8
2008.8/2008.7(%)		95.6	99.5	103.0	99.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2-5-3.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돼지고기		돼지고기	
		(로스100g)		(허벅지살100g)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239	245	156	169
2006		239	250
2007		242	252	178	175
2007/2006 (%)		101.3	100.8
2007	8	243	251	179	178
	9	246	254	180	172
	10	245	256	181	176
	11	244	253	180	176
	12	243	249	181	175
2008	1	246	252	180	178
	2	244	251	179	177
	3	247	247	182	177
	4	249	251	180	178
	5	253	247	182	178
	6	255	247	184	180
	7	253	247	185	180
	8	253	251	184	181
2008.8/2007.8 (%)		104.1	100.0	102.8	101.7
2008.8/2008.7 (%)		100.0	101.6	99.5	100.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3. 닭고기

3-1. 사육동향

3-1-1. 닭 사육호수 및 사육수수

단위: 천 수

구분	사육호수	사육마릿수			1호당 암탉 사육마릿수	전년대비	
		계	병아리 (6개월미만)	암탉 (6개월이상)		사육호수 (채란계)	암탉마릿수 (6개월이상)
	호				%	%	
전국	3,300	181,664	39,141	142,523	43.2	95.4	99.8
농업지역							
홋카이도	93	7,503	1,290	6,213	66.8	96.9	101.5
도부현	3,210	174,161	37,851	136,310	42.5	95.3	99.8
도호쿠	256	24,626	5,381	19,245	75.2	94.5	99.5
호쿠리쿠	123	10,053	2,206	7,847	63.8	90.4	102.3
간토	823	44,033	9,734	34,299	41.7	97.2	102.5
도카이	549	26,449	4,860	21,589	39.3	93.5	103.5
킨키	279	9,738	1,494	8,244	29.5	94.6	96.6
주오쿠	250	22,306	6,407	15,899	63.6	97.7	94.7
시코쿠	244	10,407	2,652	7,755	31.8	99.2	96.2
규슈	628	25,094	4,824	20,270	32.3	93.9	97.7
오키나와	55	1,455	293	1,162	21.1	91.7	99.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3-1-2. 채란용 암탉 사육수수 규모별 사육호수

단위: 호

구분	계	1,000~ 4,999수	5,000~ 9,999	10,000~ 49,999	50,000~ 99,999	100,000 수 이상
전국	2,990	771	481	1,090	288	356
(농업지역)						
홋카이도	81	30	9	17	8	17
도부현	2,910	741	472	1,080	280	339
도호쿠	217	63	25	64	13	52
호쿠리쿠	100	17	13	35	12	23
간토	721	220	124	229	58	90
도카이	509	109	79	212	64	45
간키	261	89	50	82	14	26
주고쿠	228	66	34	59	22	47
시코쿠	222	44	29	107	27	15
규슈	596	127	96	269	63	41
오кина와	55	6	22	20	7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3-1-3. 채란용 암탉 규모별 사육수

단위: 천 수

구분	계	1,000~ 4,999수	5,000~ 9,999	10,000~ 49,999	50,000~ 99,999	100,000 수 이상
전국	142,443	1,900	3,298	25,532	20,067	91,646
(농업지역)						
홋카이도	6,184	64	64	299	524	5,233
도부현	136,259	1,836	3,234	25, 233	19,543	86,413
도호쿠	19,241	143	169	1, 559	937	16,433
호쿠리쿠	7,834	47	96	718	775	6,198
간토	34,286	526	808	5,462	3,963	23,527
도카이	21,495	264	558	4,823	4,470	11,380
긴키	8,234	222	340	1,666	977	5,029
주고쿠	15,894	174	218	1,289	1,605	12,608
시코쿠	7,800	123	230	2,796	1,786	2,865
규슈	20,313	325	664	6,426	4,525	8,373
오키나와	1,162	12	151	494	505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2007년 기준

3-2. 도축동향

연도 · 월별		처리량(생체)		전년 동월대비	
		도축수수	중량	수	중량
		수	t	%	%
계		622,834	1,754,396	100.2	100.2
2007	1	49,636	140,527	101.9	102.8
	2	47,590	134,021	101.4	101.8
	3	53,509	151,754	101.3	101.6
	4	51,005	143,893	98.3	97.5
	5	53,239	152,284	101.3	101.8
	6	50,753	144,403	99.8	99.8
	8	49,517	135,664	99.2	100.1
	9	49,712	135,411	96.4	95.6
	10	54,876	152,456	101.4	99.8
	11	53,521	153,169	100.5	100.7
	12	59,562	169,495	99.5	99.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육유통통계'

3-3. 닭고기 연도별 생산량

단위: 천 t

구분	소비량	생산량
2000	1,750	1,195
2001	1,758	1,216
2002	1,744	1,229
2003	1,706	1,239
2004	1,615	1,242
2005	1,684	1,293
2006	1,733	1,364
2007	1,739	1,372
2008(4~8월)	717	56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축산물유통통계'

3-4.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 증감량	국내 소비량	순식료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kg)
2002	1,229	662	△10	1,898	1,321	10.4	28.4
2003	1,239	585	△27	1,848	1,286	10.1	27.5
2004	1,242	561	△3	1,805	1,256	9.8	26.9
2005	1,293	679	51	1,919	1,336	10.5	28.6
2006	1,340	589	△23	1,950	1,357	10.6	29.1
2007	1,372	605	△5	1,975	1,374	10.8	29.4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3-5. 가격동향

3-5-1. 생산자가격

단위: 원

연도 · 월별		브로일러 (10kg)	채란 (10kg)
2005		1,542	1,923
2006		1,520	1,722
2007		1,611	1,648
2007	8	1,585	1,505
	9	1,579	1,613
	10	1,609	1,677
	11	1,639	1,722
	12	1,668	1,831
2008	1	1,704	1,283
	2	1,697	1,848
	3	1,693	1,900
	4	1,696	1,855
	5	1,699	1,935
	6	1,701	1,833
	7	1,774	1,888
	8	1,777	1,91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3-5-2. 도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브로일러 (1kg)	채란 (1kg)
		도쿄	도쿄
2004	
2005	
2006	
2006/2005(%)	
2007	8	563	183
	9	566	203
	10	615	196
	11	670	186
	12	720	192
2008	1	746	147
	2	731	199
	3	745	202
	4	745	200
	5	749	202
	6	740	192
	7	738	205
	8
2008.8/2007.8(%)	
2008.8/2008.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3-5-3.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닭고기	
		(100g)	
		도쿄	오사카
2005		123	141
2006		123	148
2007		125	143
2007/2006(%)		101.6	96.6
2007	8	125	140
	9	125	140
	10	126	140
	11	125	144
	12	129	144
2008	1	128	143
	2	128	149
	3	131	151
	4	132	152
	5	134	151
	6	133	154
	7	134	154
	8	136	159
2008.8/2007.8(%)		108.8	113.6
2008.8/2008.7(%)		101.5	103.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4. 원유 및 유제품

4-1. 생산동향

4-1-1. 생유 및 음용 우유 생산량

단위: 생유생산량 - 천 t, 음용우유 - 천 kl

연도 · 월별	생유생산량				음용 우유 등 생산량						
	생유	업무용	유제품용	우유	업무용	가공유 · 성분조정우유	업무용	성분조정우유	음료		
2005	8,285.2	4,775.3	303.4	3,429.5	3,822.7	288.5	466.9	17.8	204.0	1,203.2	
2006	8,137.5	4,648.2	309.0	3,408.1	3,701.8	294.8	448.6	19.8	199.0	1,242.0	
2007	8,007.4	4,520.7	326.2	3,402.3	3,592.4	307.8	446.2	28.0	216.6	1,312.1	
2007/ 2006(%)	98.4	97.3	105.6	99.8	97.0	104.4	99.5	141.4	108.8	105.6	
2007	8	657.9	379.9	27.3	270.9	295.3	25.4	40.5	2.3	20.0	126.3
	9	638.1	403.7	28.9	227.6	318.4	27.1	39.6	2.1	19.7	124.5
	10	658.1	397.9	30.2	253.1	317.0	28.4	38.6	2.0	19.3	119.8
	11	635.1	371.8	31.1	256.3	296.2	29.7	35.3	2.1	18.1	103.8
	12	667.9	353.0	31.3	308.1	284.5	30.2	34.9	2.4	17.9	98.2
2008	1	680.9	354.6	26.4	319.5	282.7	25.0	34.5	1.8	18.1	99.7
	2	643.6	348.8	26.0	288.3	279.7	24.8	33.2	1.7	17.6	93.8
	3	697.3	361.3	28.8	329.3	284.0	27.4	35.8	2.0	19.1	102.6
	4	683.5	363.2	26.7	313.4	286.3	25.5	35.4	1.8	20.4	100.4
	5	710.3	383.9	24.5	319.4	302.4	23.4	36.6	1.7	21.3	106.7
	6	675.9	384.7	24.1	284.4	302.7	22.7	36.7	1.6	21.8	105.7
	7	669.0	389.0	25.4	273.2	305.1	23.9	39.8	1.7	24.4	117.4
	8	653.8	372.4	26.2	274.5	281.2	24.1	39.8	1.6	24.6	114.3
2008.8/ 2007.8(%)	99.4	98.0	96.0	101.3	95.2	94.9	98.3	69.6	123.0	90.5	
2008.8/ 2008.7(%)	97.7	95.7	103.1	100.5	92.2	100.8	100.0	94.1	100.8	97.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우유유제품통계'

4-1-2. 유제품 생산량

단위: t

연도 · 월별		전지분유	탈지분유	버터	크림	치즈	가당연유	무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	아이스크림
2005		14,366	186,766	84,070	90,985	122,549	34,366	1,256	6,737	116
2006		13,794	180,750	80,476	95,567	124,886	34,384	1,137	5,961	129
2007		14,027	172,545	75,058	103,109	125,392	37,458	1,041	6,349	134
2007/ 2006(%)		101.7	95.5	93.3	107.9	100.4	108.9	91.6	106.5	103.9
2007	8	1,148	12,339	5,480	8,050	10,174	2,645	101	786	13
	9	899	9,919	3,976	8,258	10,205	1,866	70	469	12
	10	1,163	11,320	4,728	8,948	11,448	2,530	89	313	12
	11	1,089	12,280	4,875	9,376	11,487	2,758	69	372	11
	12	675	17,002	6,594	10,549	11,539	3,530	104	559	10
2008	1	1,460	17,261	8,055	8,461	9,429	3,427	53	528	7
	2	1,387	14,439	6,640	8,518	9,850	3,065	93	398	10
	3	1,517	16,356	7,521	9,226	9,913	3,472	86	427	10
	4	1,501	15,149	7,091	8,425	11,220	3,349	82	548	11
	5	1,496	15,030	7,207	8,424	9,576	3,534	100	768	11
	6	1,325	12,376	6,058	8,234	9,446	3,187	88	668	12
	7	936	11,336	5,187	8,498	9,721	2,766	81	572	12
	8	1,067	11,007	5,057	8,684	8,237	3,331	108	529	12
2008.8/ 2007.8(%)		92.9	89.2	92.3	107.9	81.0	125.9	106.9	67.3	92.3
2008.8/ 2008.7(%)		114.0	97.1	97.5	102.2	84.7	120.4	133.3	92.5	1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우유유제품통계'

4-2. 수급동향

단위: 천 t

연도 및 종류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 증감량	국내소비량	순식료	1인1년당 공급량 (kg)	1인1일당 공급량 (g)
2004음용	4,902	0	0	4,902	4,853	38.0	104.1
유제품용	3,301	4,036	△44	7,372	7,114	55.7	152.6
2005음용	4,739	0	0	4,739	4,692	36.7	100.6
유제품용	3,472	3,836	△23	7,323	7,020	54.9	150.5
2006음용	4,619	0	0	4,619	4,573	35.8	98.1
유제품용	3,389	3,958	△131	7,464	7,199	56.3	154.4
2007음용	4,509	0	0	4,509	4,464	34.9	95.5
유제품용	3,432	4,020	△223	7,651	7,421	58.1	158.7

자료원: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수급표'

4-3. 가격동향

4-3-1. 생산자가격

단위: 원

연도 · 월별		생유 (10kg)
2005		819
2006		800
2007		789
2007	8	800
	9	794
	10	826
	11	814
	12	808
2008	1	784
	2	777
	3	780
	4	771
	5	822
	6	824
	7	847
	8	85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농업물가통계'

4-3-2. 소매가격

단위: 엔

연도 · 월별		우유 1개 200ml		분유 1개 850g		버터 1개 200g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101	91	2,560	2,521	319	316
2006		102	98	2,524	2,456	320	316
2007		104	101	2,453	2,376	324	323
2007/2006(%)		102.0	103.1	97.2	96.7	101.3	102.2
2007	8	105	101	2,444	2,345	318	326
	9	105	101	2,472	2,402	331	332
	10	104	101	2,459	2,367	329	320
	11	104	101	2,441	2,348	321	325
	12	104	101	2,488	2,352	321	325
2008	1	106	101	2,477	2,321	325	336
	2	106	103	2,477	2,312	328	331
	3	106	103	2,200	1,980	334	331
	4	114	108	2,398	2,156	335	353
	5	114	108	2,446	2,343	353	373
	6	114	108	2,424	2,288	365	367
	7	115	108	2,415	2,343	365	372
	8	115	109	2,415	2,408	367	370
2008.8/2007.8(%)		109.5	107.9	98.8	102.7	115.4	113.5
2008.8/2008.7(%)		100.0	100.9	100.0	102.8	100.5	99.5

자료원: 총무성 '소매물가통계조사보고'

1. 임야면적

1-1. 지역별 임야면적

단위: 천 ha

구분	2005년			2000년		
	계	현황삼림 면적	삼림이외의 초생지	계	현황삼림 면적	삼림이외의 초생지
전국	24,861	24,473	388	24,918	24,490	428
홋카이도	5,568	5,339	229	5,583	5,321	262
도호쿠	4,622	4,573	50	4,632	4,578	54
호쿠리쿠	1,640	1,620	20	1,640	1,621	19
간토	2,763	2,747	16	2,777	2,759	18
도카이	1,935	1,927	9	1,939	1,931	8
긴키	1,816	1,814	2	1,818	1,816	2
주고쿠	2,332	2,310	21	2,335	2,314	21
시코쿠	1,394	1,389	5	1,395	1,390	5
규슈	2,678	2,649	30	2,687	2,655	32
오키나와	112	106	6	111	105	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5년 농림업 센서스 농산촌지역조사 및 농촌집락조사보고서'

1-2. 삼림계획대상 삼림 축적

단위: 천 ha

구분	합계			인공림			천연림		
	계	침엽수	광엽수	계	침엽수	광엽수	계	침엽수	광엽수
전국	40,270	27,702	12,568	23,758	23,352	406	16,512	4,350	12,162
홋카이도	6,060	3,066	2,995	1,921	1,791	129	4,140	1,274	2,865
도호쿠	7,422	4,616	2,806	4,123	4,047	76	3,299	568	2,730
호쿠리쿠	2,545	1,449	1,096	1,329	1,320	9	1,216	129	1,087
간토	4,779	3,520	1,259	2,961	2,922	39	1,817	598	1,219
도카이	3,443	2,640	804	2,354	2,337	17	1,089	303	786
간키	3,644	2,877	766	2,451	2,435	17	1,192	442	750
주고쿠	3,753	2,846	907	2,114	2,101	13	1,639	746	894
시코쿠	2,793	2,339	454	2,206	2,190	16	587	149	438
규슈	5,706	4,326	1,380	4,285	4,200	85	1,422	127	1,295
오кина와	124	23	103	14	4	4	111	14	9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5년 농림업 센서스 농산촌지역조사 및 농촌집락조사보고서'

1-3. 재촌자·부재촌자별 사유림면적

단위: 천 ha

구분	계	삼림조합 가입자면적	재촌자 면적		부재촌자면적			
			삼림조합 가입자면적	소계	삼림조합 가입자면적	현내 (현內)	현외 (현外)	
1990	13,794	9,555	10,791	8,097	3,003	1,458	1,819	1,184
2000	13,482	9,148	10,131	7,500	3,321	1,647	2,008	1,313
2005	13,434	8,890	10,162	7,320	3,272	1,570	1,955	1,317
홋카이도	1,422	743	665	458	757	286	555	202
도호쿠	2,049	1,343	1,767	1,241	283	102	163	119
호쿠리쿠	1,039	654	859	571	180	83	95	85
간토	1,450	820	1,129	706	321	114	156	165
도카이	1,394	928	981	723	412	204	239	173
긴키	1,463	1,026	1,008	736	455	290	248	207
주고쿠	1,765	1,245	1,517	1,133	248	113	139	109
시코쿠	1,054	840	767	651	286	189	180	107
규슈	1,773	1,291	1,451	1,101	322	190	173	148
오кина와	26	1	17	1	8	0	7	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5년 농림업 센서스'

2. 육림 · 벌채 현황

2-1. 수종별 인공조림면적 추이

단위: ha

연도	계	침엽수					광엽수
		삼나무	노송나무	소나무류	낙엽송	기타	
2001	28,428	7,037	10,005	227	2,439	5,063	3,657
2002	27,259	6,190	9,110	223	2,439	5,296	4,001
2003	24,974	5,363	7,571	279	2,516	5,274	3,971
2004	24,964	5,203	6,957	211	3,281	5,561	3,751
2005	25,584	5,216	7,096	226	3,534	5,728	3,784

자료원: 임야청 '삼림 · 임업통계요람'

2-2. 재조림, 확대조림별 인공조림 면적

단위: ha

연도	계			국유림			민유림		
	계	재조림	확대조림	소계	재조림	확대조림	소계	재조림	확대조림
2001	32,457	18,036	14,421	4,029	3,907	122	28,428	14,129	14,299
2002	30,089	16,218	13,871	2,830	2,625	205	27,259	13,593	13,666
2003	28,898	16,570	12,328	3,924	3,698	226	24,974	12,872	12,102
2004	28,466	16,984	11,482	3,502	3,199	303	24,964	13,785	11,179
2005	28,576	18,701	9,875	2,992	2,957	35	25,584	15,744	9,840

자료원: 임야청 '삼림 · 임업통계요람'

2-3. 입목벌채면적

단위: ha

연도	계	국유림			민유림
		소계	임야청 소관	관행조림지	
2000	67,239	25,088	24,503	585	42,151
2001	47,058	20,841	20,314	527	26,217
2002	33,893	16,317	15,704	613	17,576
2003	22,204	10,111	96,23	489	12,093
2004	29,535	10,808	103,22	486	18,727

자료원: 임야청 '삼림·임업통계요람'

2-4. 입목벌채재적

단위: 천 m²

연도	계	국유림			민유림
		소계	임야청 소관	관행조림지	
2000	24,650	3,802	3,617	185	20,848
2001	21,138	3,567	3,416	151	17,571
2002	20,116	3,392	3,226	166	16,724
2003	20,387	3,364	3,204	160	17,023
2004	20,770	3,777	3,611	166	16,993

자료원: 임야청 '삼림·임업통계요람'

2-5. 수종 · 수요부문별 소재 생산량

단위: 천 m³

수종	계	제재용	합판용	목재 칩용
계	16,609	11,645	1,144	3,820
침엽수소계	14,017	11,316	1,126	1,575
적송 · 흑송	811	290	98	423
참나무	8,059	6,753	803	503
노송나무	1,991	1,929	0	62
낙엽송	1,944	1,392	217	335
가문비 · 분비나무	1,008	851	5	152
기타	204	101	3	100
광엽수	2,592	329	18	2,24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수급보고서', 2006년 기준

3. 품목별 현황

3-1. 특용 임산물

3-1-1. 생산동향

단위: t

연도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맛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2001	4,964	66,128	23,775	108,444	6,796	
2002	4,449	64,443	24,818	110,444	5,800	
2003	4,108	65,363	25,068	110,185	5,210	
2004	4,088	66,204	25,815	112,997	4,655	
2005	4,091	65,186	24,801	114,542	4,074	
2006	3,816	66,349	25,615	114,630	3,384	
2007	3,566	67,155	25,818	129,770	3,024	
주요 생산지 순위 (2007년)	1	오이타	도쿠시마	나가노	나가노	이바라키
	2	미야자키	군마	니가타	니가타	니가타
	3	구마모토	이와테	야마가타	후쿠오카	나가사키
	4	이와테	홋카이도	후쿠시마	홋카이도	야마가타
	5	에히메	도치기	군마	나가사키	시즈오카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t

연도	잎새버섯	호두	죽재 (천개뭉음)	동재(桐材) (m)	목랍	
2001	44,042	204	1,860	2,717	91	
2002	46,843	197	1,477	2,434	79	
2003	45,805	116	1,527	1,973	73	
2004	46,036	85	1,372	1,888	67	
2005	45,111	83	1,290	1,757	55	
2006	45,985	-	1,191	1,502	60	
2007	43,607	-	1,143	1,414	54	
주요 생산지 순위 (2007년)	1	니가타	-	가고시마	후쿠시마	후쿠오카
	2	시즈오카	-	구마모토	아키타	에히메
	3	후쿠오카	-	오이타	야마가타	
	4	군마	-	야마구치	군마	
	5	홋카이도	-	후쿠오카	니가타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t

연도	옻나무(kg)	고추냉이 (根莖)	죽순	목이버섯	송이버섯	
2001	1,729	1,249	36,114	26	78	
2002	1,553	1,196	35,178	38	52	
2003	1,388	1,166	31,712	56	80	
2004	1,402	1,105	30,800	62	149	
2005	1,340	1,099	23,201	65	39	
2006	1,326	-	26,900	-	65	
2007	1,378	-	22,339	-	51	
주요 생산지 순위 (2007년)	1	이와테	-	후쿠오카	-	나가노
	2	이바라키	-	가고시마	-	히로시마
	3	도치기	-	구마모토	-	이와테
	4	니가타	-	시즈오카	-	교토
	5	-	-	도쿠시마	-	오카야마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t

연도	목탄 (백 · 흑탄)	장작 (층적 m ³)	톱밥장작	연탄	두탄(豆炭)
2001	23,070	66,965	40,033	21,956	23,447
2002	20,564	60,010	38,287	20,059	21,026
2003	21,300	37,485	30,549	14,107	18,892
2004	19,608	37,477	19,302	16,237	17,522
2005	18,255	37,384	11,409	17,456	17,083
2006	31,321	-	-	-	-
2007	28,832	-	-	-	-
주요생산지 (2005년)	이와테	-	-	-	-
	시마네	-	-	--	-
	홋카이도	-	-	-	-
	후쿠시마	-	-	-	-
	기후	-	-	-	-

자료원: 임야청자료

3-1-2. 수급동향

단위: t

구분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송이버섯	죽순	목탄
2004					
생산량	4,088	66,204	149	30,800	47,306
수입량	8,844	27,205	2,317	285,498	143,255
수출량	73				1,053
소비량	12,859	93,406	2,466	316,298	189,508
수입비율	69	29	94	90	76
2005					
생산량	4,091	65,186	39	23,201	44,919
수입량	8,375	22,526	2,881	265,645	148,769
수출량	85				503
소비량	12,381	87,712	2,920	288,846	193,185
수입비율	68	26	99	92	77
2006					
생산량	3,861	66,349	65	26,900	42,345
수입량	7,949	16,394	1,720	272,891	141,945
수출량	76				535
소비량	11,734	82,743	1,785	299,791	183,755
수입비율	68	20	96	91	77
2007					
생산량	3,566	67,155	51	22,339	39,024
수입량	7,700	9,972	1,554	257,224	140,890
수출량	69				579
소비량	11,197	77,127	1,605	279,563	179,335
수입비율	69	13	97	92	79

자료원: 임야청자료

3-1-3. 가격동향

단위: 엔/kg

구분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맛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2001	3,624	1,150	468	318	434
2002	4,167	1,118	440	286	417
2003	4,146	1,039	398	286	420
2004	3,609	1,056	378	267	381
2005	3,719	1,108	417	316	398

자료원: 임야청자료

주: 건표고버섯은 시장 평균 가격, 나머지는 도쿄 중앙 도매시장 연평균 가격

단위: 엔/kg

구분	잎새버섯	송이버섯	죽순	웃나무	목탄
2001	665	42,919	170	36518	86
2002	656	34,914	248	36361	93
2003	642	29,550	220	35778	91
2004	620	24301	243	36111	100
2005	608	32,280	230	36111	120

자료원: 임야청자료

주: 잎새버섯은 시장 평균 가격, 나머지는 도쿄 중앙 도매시장 연평균 가격

3-2. 목재

3-2-1. 생산동향

단위: 천 m³

구분	계	제재용	합판용	목재침용
2001	15,774	11,766	182	3,826
2002	15,092	11,142	279	3,671
2003	15,171	11,214	360	3,597
2004	15,615	11,469	546	3,600
2005	16,166	11,571	863	3,732
2006	16,109	11,645	1,144	3,820
2007	17,650	11,981	1,632	4,03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수급보고서', '목재통계조사'

단위: 천 m³

구분	계	침엽수							광엽수
		소계	적송· 흑송	삼나무	노송 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 분비나무	기타	
전국	17,650	15,162	794	8,848	1,986	2,280	1,015	239	2,488
홋카이도	3,511	2,902	-	41	0	1,815	1,010	36	609
아오모리	571	490	76	347	0	33	1	33	81
이와테	1,211	811	164	417	0	228	1	1	400
미야기	586	500	61	427	2	8	0	2	86
아키타	898	801	57	718	-	13	-	13	97
야마가타	293	220	17	198	0	3	-	2	73
후쿠시마	697	547	85	411	29	11	-	11	150
이바라키	309	229	6	142	44	-	-	37	80
도치기	433	423	11	318	93	0	-	1	10
군마	177	162	3	123	13	22	-	1	15
사이타마	59	46	0	28	17	0	0	1	13
지바	97	76	4	66	6	0	-	0	21
도쿄	17	15	0	10	3	1	0	1	2

(다음표에 계속)

단위: 천 m³

구분	계	침엽수							광엽수
		소계	적송· 흑송	삼나무	노송 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 분비나무	기타	
가나가와	25	17	1	3	13	-	0	-	8
니가타	128	107	1	101	1	1	-	3	21
도야마	68	55	2	45	1	0	0	7	13
이시가와	124	111	5	90	2	0	0	14	13
후쿠이	107	102	8	92	2	0	-	0	5
야마나시	82	58	13	13	10	14	0	8	24
나가노	294	279	29	56	55	124	0	15	15
기후	314	294	10	137	132	7	0	8	20
시즈오카	257	254	1	146	107	0	-	0	3
아이치	125	118	3	59	54	0	-	2	7
미에	293	285	5	135	144	0	-	1	8
시가	38	31	5	22	4	0	-	0	7
교토	118	102	9	71	21	-	-	1	16
오사카	11	6	0	4	1	-	-	1	5
효고	208	189	6	132	42	-	-	9	19
나라	168	166	0	91	75	-	-	0	2
와카야마	160	159	0	94	65	-	-	0	1
돗토리	112	87	18	54	14	0	-	1	25
시마네	285	194	46	132	16	0	-	0	91
오카야마	361	343	18	130	195	-	-	0	18
히로시마	218	108	52	35	21	0	0	0	110
야마구치	199	144	18	93	33	0	0	0	55
도쿠시마	195	176	2	160	13	0	-	1	19
가가와	3	1	0	0	1	-	-	0	2
에히메	537	533	13	324	196	-	-	0	4
고치	429	404	6	250	143	-	-	5	25
후쿠오카	135	120	1	101	18	-	-	0	15
사가	141	117	0	93	24	-	-	-	24
나가사키	81	41	0	27	14	-	-	0	40
구마모토	842	799	6	621	166	0	3	3	43
오이타	862	854	0	762	91	0	-	1	8
미야자키	1,429	1,366	22	1,277	63	-	-	4	63
가고시마	438	318	10	252	42	-	-	14	120
오키나와	4	2	-	-	-	-	-	2	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목재통계조사'

【펄프 생산량】

단위: 천 t

연도	제지펄프					
	계	크래프트	서모메커니컬	리파이너 그라운드(RGP)	쇄목	기타
2002	10,589	9,258	730	236	291	73
2003	10,520	9,216	729	235	272	68
2004	10,653	9,348	746	231	259	68
2005	10,756	9,490	725	222	256	63
2006	10,789	9,572	712	215	240	60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종이·인쇄·플라스틱·고무 제품통계연보'

【보통합판생산량】

단위: 천 m³

구분	계	베니어코어합판			특수코어합판
		소계	1 류	2 류	
전국	3,073	3,041	2,714	327	32
홋카이도	139	107	73	34	32
도호쿠	1,493	1,493	1,459	34	-
간토	148	148	115	33	-
호쿠리쿠	251	251	162	89	-
도카이	94	94	16	78	-
긴키	x	x	x	-	-
주고쿠· 시코쿠	681	681	622	59	-
규슈	x	x	x	-	-

자료원: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목재수급보고서', '목재통계조사', 2007년

【특수합판 생산량】

단위: 천 m³

구분	계	오버레이 합판	프린트합판	도장합판	천연목 화장합판	기타합판	목질 복합합판
전국	924	32	131	36	53	672	467
홋카이도	34	4	4	-	2	24	24
도호쿠	71	1	1	16	0	53	52
간토	324	14	77	9	8	216	46
호쿠리쿠	5	0	0	4	1	-	-
도카이	122	6	8	1	18	89	87
긴키	28	1	16	3	4	4	3
주오쿠· 시코쿠	316	6	14	3	8	285	255
규슈	24	0	11	-	12	1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수급보고서', '목재통계조사', 2007년

【목재칩 생산량】

단위: 천 t

연도	계	소재(원목)	공장잔재		해체재·폐재	임지잔재
			자기공장	구입		
2004	5,782	2,139	1,778	420	1,388	58
2005	6,005	2,235	1,745	443	1,515	67
2006	5,899	2,276	1,818	457	1,282	66
2007	5,894	2,368	2,182		1,244	1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수급보고서', '목재통계조사'

【집성재 생산량】

단위: 생산량 - 천 m³, 생산액 - 억 엔

연도	생산액									생산액
	합계	조작용집성재			구조용집성재					
		계	무구	화장용	계	화장용	대단면	중단면	소단면	
2002	1173	227	89	138	946	48	46	408	444	1534
2003	1407	217	91	125	1191	37	54	526	574	1664
2004	1488	212	86	126	1276	36	52	582	607	1692
2005	1512	202	83	119	1310	28	51	594	645	1657
2006	1675	186	75	111	1490	23	30	791	646	1756

자료원: 일본 집성재 공업협동조합조사

3-2-2. 수급동향

단위: 천 m³

연도		제재용 소재			제제품		
		입하량	소비량	재고량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2007	8	1,546	1,581	3,466	971	965	1,705
	9	1,534	1,620	3,380	986	999	1,692
	10	1,690	1,726	3,344	1,044	1,058	1,678
	11	1,695	1,676	3,363	1,024	1,031	1,671
	12	1,552	1,564	3,351	978	984	1,665
2008	1	1,569	1,423	3,497	876	874	1,667
	2	1,382	1,448	3,431	907	880	1,694
	3	1,554	1,502	3,483	937	912	1,719
	4	493	1,532	3,444	951	974	1,696
	5	1,538	1,511	3,471	938	945	1,689
	6	1,410	1,538	3,343	946	957	1,678
	7	1,466	1,579	3,230	978	1,012	1,644
	8	1,412	1,440	3,202	892	907	1,629
2008.8/2007.8(%)		91.3	91.1	92.4	91.9	94.0	95.5
2008.8/2008.7(%)		96.3	91.2	99.1	91.2	89.6	99.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제재통계'

3-2-3. 가격동향

단위: 1㎡당 엔

구분	소나무		삼목나무		노송나무		미국산 소나무		미국산 솔송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지름 24~28cm		지름 14~22cm		지름 14~22cm		지름 30cm 이상		지름 30cm 이상		지름 20~28cm	
	길이 3.65~4.0m		길이 3.65~4.0m		길이 3.65~4.0m		길이 6.0m 이상		길이 6.0m 이상		길이 3.8cm	
2005		...	12,400	25,200	...	23,500
2006		...	12,700	26,300	...	24,200
2007		15,100	13,000	25,400	30,100	26,500	22,600
2007/2006(%)		...	102.4	96.6	...	109.5
2007	9	15,200	12,900	25,200	30,300	26,600	22,900
	10	15,300	12,900	24,900	30,000	26,700	22,700
	11	15,100	12,800	24,200	30,000	26,900	22,700
	12	14,900	12,400	23,900	29,800	26,900	22,500
2008	1	14,800	12,300	23,600	29,400	26,800	21,600
	2	14,800	12,100	23,800	29,500	26,900	21,200
	3	14,900	12,100	23,700	29,600	26,700	21,000
	4	14,500	11,800	23,400	29,300	26,400	21,000
	5	14,400	11,600	22,900	29,400	26,100	21,200
	6	14,400	11,400	22,400	29,200	26,100	21,300
	7	14,500	11,400	22,700	29,500	26,200	22,100
	8	14,600	11,600	23,200	29,700	26,300	22,200
	9	14,400	11,800	23,700	30,200	26,500	22,600
2008.9/2007.9(%)		94.7	91.5	94.0	99.7	99.6	98.7
2008.9/2008.8(%)		98.6	101.7	102.2	101.7	100.8	101.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가격'

【목재 도매가격】

단위: 1㎡당 엔

구분	소나무		삼나무				노송나무			
	두께 10.5~12.0cm		두께 10.5cm				두께 10.5cm			
	폭 24.0cm		폭 10.5cm				폭 10.5cm			
	길이 3.65~4.0m		길이 3.0m				길이 3.0m			
	(2급)		(2급)				(2급)			
	전국		전국	도쿄	오사카	건조재 (전국)	전국	도쿄	오사카	건조재 (전국)
2005	...	40,700	56,200	66,300	
2006	...	40,500	56,400	66,000	
2007	54,100	42,700	60,800	69,700	86,500	
2007/2006(%)	...	105.4	107.8	105.6	
2007	9	54,300	42,500	45,200	42,700	60,800	69,300	75,100	66,700	86,300
	10	54,300	42,400	45,200	42,700	60,800	69,300	75,100	66,700	85,700
	11	54,300	42,300	45,200	42,700	60,500	68,500	75,100	65,400	85,300
	12	54,300	42,300	45,200	42,700	60,400	68,300	75,100	65,400	85,200
2008	1	54,200	42,200	45,200	42,700	60,300	68,200	75,100	65,100	85,400
	2	54,300	42,100	45,200	42,700	60,300	68,100	75,100	65,100	85,400
	3	54,200	42,000	45,200	42,700	60,300	68,000	75,100	65,100	85,000
	4	53,900	42,000	45,200	42,700	60,200	67,900	75,100	65,100	85,000
	5	53,700	41,900	45,200	42,700	60,200	67,900	75,100	65,100	84,700
	6	53,500	41,900	45,200	42,700	60,200	67,800	75,100	65,100	84,500
	7	53,500	42,000	45,200	42,800	60,300	67,900	75,100	65,400	84,500
	8	53,500	42,000	45,200	42,800	60,300	67,900	75,100	65,400	84,200
	9	53,500	42,100	45,200	42,800	60,400	68,000	75,100	65,400	84,300
2008.9/2007.9(%)		98.5	99.1	100.0	100.2	99.3	98.1	100.0	98.1	97.7
2008.9/2008.8(%)		100.0	100.2	100.0	100.0	100.2	100.1	100.0	100.0	100.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가격'

3-2-4. 유통동향

【소재의 입하처별 입하량】

단위: 천 m³

구분	계	소재생산자			유통업자						기타
		국가· 공공 기관	자가 생산	소재 생산 업자	목재 시장	목재판매업자					
						목재 판매 업자	종합 상사	제재 공장	합단판 공장		
제재공장	24,335	658	1,230	2,101	7,386	4,689	7,059	147	26	1,040	
합판공장	3,903	2	0	9	8	185	3,283	1	1	414	
보통합판공장	3,885	2	0	9	5	180	3,274	1	0	414	
특수합판공장	18	0	0	0	3	5	9	0	1	0	
목재시장	8,907	349	841	5,747	186	505	156	542	3	578	
목재판매업자	16,869	443	657	1,123	1,426	3,198	6,930	1,130	277	1,68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유통구조조사보고서', 2006년 기준

【재료의 입하처별 입하량】

단위: 천 m³

구분	계	유통업자			공장				기타	
		목재 시장	목재판매업자		자사	제재 공장	합단판 공장	집성재 공장	직접 수입	기타
			목재 판매 업자	종합 상사						
프리컷공장	3,812	408	887	702	306	903	31	312	74	189
집성재공장	1,743	89	182	468	120	256	84	63	292	18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유통구조조사보고서', 2006년 기준

【제재품의 출하처별 출하량】

단위: 천 m³

구분	계	유통업자			공장				건축업자	기타
		목재시장	목재판매업자		프리컷공장	제재공장	합단판공장	집성재공장		
			목재판매업자	종합상사						
제재공장	17,008	3,659	5,126	970	720	268	36	141	4,231	1,856
목재시장	5,092	324	3,628	11	257	416	14	16	395	28
목재판매업자	21,225	870	6,452	274	1,001	2,078	99	341	8,476	1,63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유통구조조사보고서', 2006년 기준

【제재품 출하처별 출하량】

단위: m³

구분	계	공장				유통업자			기타	
		제재공장	합단판공장	프리컷공장	집성재공장	목재시매시장	목재판매업자	종합상사	건축업자	기타
출하량										
제재공장	12,552	345	13	762	188	2,405	4,333	775	1,762	1,968
목재유통업자계	22,358	1,689	21	932	450	830	7,712	443	8,396	1,884
목재시매시장	4,288	583	1	310	14	309	2,774	16	258	23
목재판매업자	18,069	1,105	21	622	435	521	4,938	427	8,138	1,861
구성비										
제재공장	100.0	2.7	0.1	6.1	1.5	19.2	34.5	6.2	14.0	15.7
목재유통업자계	100.0	7.6	0.1	4.2	2.0	3.7	34.5	2.0	37.6	8.4
목재시매시장	100.0	13.6	0.0	7.2	0.3	7.2	64.7	0.4	6.0	0.5
목재판매업자	100.0	6.1	0.1	3.4	2.4	2.9	27.3	2.4	45.0	10.3
구성비차이										
제재공장	-	1.1	△0.1	1.8	0.6	△3.0	4.4	0.4	△10.3	5.1
목재유통업자계	-	0.4	0.0	0.7	1.4	△1.1	△3.1	1.0	△1.1	1.9
목재시매시장	-	4.6	△0.3	3.1	△0.1	0.6	△5.4	0.2	△2.5	△0.1
목재판매업자	-	△0.4	0.1	0.1	1.7	△1.3	1.4	1.1	△4.5	1.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목재유통구조조사보고서', 2006년 기준

1. 어업인구

1-1. 어업취업자수

1-1-1. 성별 · 연령별 어업취업자수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차이	증감률	구성비	
					2007	2006
	명	명	명	%	%	%
어업취업자	204,330	212,470	△8,140	△3.8	100.0	100.0
남성	171,130	177,980	△6,850	△3.8	83.8	83.8
15~24세	4,550	4,790	△240	△5.0	(2.7)	(2.7)
25~39세	19,690	21,430	△1,740	△8.1	(11.5)	(12.0)
40~59세	64,830	68,280	△3,450	△5.1	(37.9)	(38.4)
60세 이상	82,050	83,470	△1,420	△1.7	(47.9)	(46.9)
65세 이상	64,010	64,870	△860	△1.3	(37.4)	(36.4)
여성	33,210	34,490	△1,280	△3.7	16.3	16.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취업동향조사'

1-1-2. 고용별 어업취업자수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차이	증감률	구성비	
					2007	2006
	명	명	명	%	%	%
어업취업자	204,330	212,470	△8,140	△3.8	100.0	100.0
자영어업	154,940	159,760	△4,820	△3.0	75.8	75.2
남성	123,410	127,300	△3,890	△3.1	(79.7)	(79.7)
여성	31,520	32,460	△940	△2.9	(20.3)	(20.3)
고용어업취업자	49,400	52,710	△3,310	△6.3	24.2	24.8
남성	47,710	50,670	△2,960	△5.8	(96.6)	(96.1)
여성	1,680	2,030	△350	△17.2	(3.4)	(3.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취업동향조사'

1-1-3. 해상작업 종사일수별 어업취업자수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차이	증감률	구성비	
					2007	2006
	명	명	명	%	%	%
어업취업자	204,330	212,470	△8,140	△3.8	100.0	100.0
30 ~ 89일	32,080	35,240	△3,160	△9.0	15.7	16.6
90 ~ 149일	45,710	48,460	△2,750	△5.7	22.4	22.8
150~199일	43,420	45,890	△2,470	△5.4	21.2	21.6
200~249일	42,870	43,720	△850	△1.9	21.0	20.6
250일이상	40,260	39,170	1,090	2.8	19.7	18.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취업동향조사'

1-2. 어업 세대수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차이	증감률	구성비	
					2007	2006
	세대	세대	세대	%	%	%
어업세대	151,050	157,790	△6,740	△4.3	100.0	100.0
개인어업경영체	111,210	115,530	△4,320	△3.7	73.6	73.2
어업종사자세대	39,830	42,260	△2,430	△5.8	26.4	26.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취업동향조사'

1-3. 성별 어업세대원수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 차이	증감률	구성비	
					2007	2006
	명	명	명	%	%	%
어업세대원	512,000	534,870	△ 22,870	△ 4.3	100.0	100.0
남성	263,010	275,080	△ 12,070	△ 4.4	51.4	51.4
여성	248,990	259,790	△ 10,800	△ 4.2	48.6	48.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취업동향조사'

2. 어선현황

2-1. 형태별 어선수

단위: 척

연도	총척수	동력어선		무동력 어선	해수어업		담수어업	
		척수	총톤수	척수	동력어선	무동력 어선	동력어선	무동력 어선
			천 t					
2001	350,444	340,770	1,416	9,673	331,571	6,396	9,200	3,277
2002	343,411	334,217	1,386	9,194	325,229	6,083	8,988	3,111
2003	337,368	329,021	1,351	8,347	320,010	5,400	9,011	2,947
2004	330,807	322,533	1,313	8,274	313,870	5,184	8,663	3,090
2005	325,450	317,332	1,278	8,118	308,810	5,205	8,552	2,913

자료원: 수산청 '어선통계표'

2-2. 총 톤수별 해수동력 어선수

단위: 척

연도	계	5t미만	5~10	10~15	15~20	20~30
2001	331,571	299,467	18,619	5,981	4,891	33
2002	325,229	293,452	18,508	5,967	4,812	31
2003	320,010	288,509	18,386	5,931	4,816	44
2004	313,870	282,430	18,524	5,906	4,774	41
2005	308,810	278,056	18,025	5,875	4,775	38

(다음표에 계속)

연도	30~50	50~100	100~200	200~500	500~1,000	1,000t이상
2001	194	698	737	911	22	18
2002	184	670	684	880	23	18
2003	166	625	649	847	23	14
2004	159	570	611	814	26	14
2005	142	514	582	783	26	14

자료원: 수산청 '어선통계표'

3. 생산동향

3-1. 어획동향

3-1-1. 연도별 어획량

단위: 천 t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산량계	5,880	6,083	5,776	5,765	5,669	5,964
해면어업	4,434	4,722	4,455	4,457	4,405	4,377
-원양어업	6,86	602	535	548	500	-
-근해어업	2,258	2,543	2,406	2,444	2,452	-
-연안어업	1,489	1,577	1,514	1,465	1,453	-
해면양식업	1,333	1,251	1,215	1,212	1,181	1,237
내수면어업	61	60	60	54	42	38
내수면양식업	51	50	46	42	41	4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양식업생산통계'

3-1-2. 지역별 어획량

단위: 100t

구분	계	어류							
		어류계	다랑어류	청새치류	가다랑어류	상어류	연어·송어	정어리류	전갱이류
전국	43,779	33,909	2,483	222	3,556	299	2,348	5,638	1,945
홋카이도	13,080	8,403	46	11	47	25	1,929	106	2
아오모리	1,562	673	41	3	104	17	53	37	5
이와테	1,490	1,007	64	10	6	27	271	13	6
미야기	2,683	2,217	307	67	433	150	63	77	13
아키타	99	76	1	0	0	1	5	0	7
야마가타	74	37	1	0	0	0	3	0	1
후쿠시마	997	919	66	8	54	6	8	125	10
이바라키	1,965	1,859	19	0	51	0	0	844	30
지바	1,686	1,597	7	2	18	1	0	938	45
도쿄	826	562	134	15	218	8	x	2	18
가나가와	517	479	77	5	146	9	x	62	19
니가타	372	304	29	0	148	1	5	2	26
도야마	461	406	33	8	55	5	6	21	35
이시가와	627	410	9	1	15	0	0	48	86
후쿠이	157	108	1	0	0	0	0	2	23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t

구분	계	어류							
		어류계	다랑어류	청새치류	가다랑어류	상어류	연어·송어	정어리류	전갱이류
시즈오카	2,133	2,054	390	16	929	12	-	145	40
아이치	760	391	x	0	x	0	-	227	14
미에	1,699	1,544	184	7	372	6	-	380	67
교토	135	117	0	0	1	0	0	31	26
오사카	205	196	-	-	-	0	-	137	9
효고	536	351	0	0	0	0	0	75	20
와카야마	333	307	16	1	9	1	-	59	82
돗토리	549	402	30	0	97	0	-	5	64
시마네	1,273	1,141	7	1	9	0	0	255	458
오카야마	68	28	-	-	-	0	-	3	0
히로시마	186	142	-	-	-	0	0	90	1
야마구치	497	387	4	0	1	0	0	85	61
도쿠시마	151	130	21	1	1	0	-	35	16
가가와	206	157	x	0	x	0	-	94	2
에히메	978	873	25	0	125	2	-	270	110
고치	996	980	348	24	259	10	-	150	40
후쿠오카	510	372	1	0	0	0	0	11	70
사가	181	97	0	-	0	0	-	16	18
나가사키	3,013	2,708	49	5	134	2	-	615	374
구마모토	256	175	5	2	3	3	-	49	5
오이타	452	397	60	6	1	1	-	141	58
미야자키	1,076	1,069	277	9	212	1	-	306	41
가고시마	820	692	137	11	99	6	-	180	42
오키나와	169	139	90	9	6	3	-	-	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t

구분	어류								
	고등어류	꽂치	방어	광어·가자미류	대구류	임연수어	도미류	까나리	기타
전국	4,599	2,986	722	636	2,620	1,391	257	469	3,739
홋카이도	68	1,591	23	204	2,214	1,348	0	167	622
아오모리	126	65	13	37	100	4	4	1	62
이와테	178	247	29	7	101	0	0	2	44
미야기	200	403	13	31	136	0	1	17	304
아키타	0	-	2	7	15	5	2	0	29
야마가타	0	-	2	3	9	1	4	-	11
후쿠시마	238	259	3	37	18	0	1	54	30
이바라키	823	31	6	11	1	0	2	1	38
지바	262	122	55	8	-	-	2	-	136
도쿄	28	-	10	0	-	-	0	-	122
가나가와	72	3	7	5	2	21	1	-	51
니가타	3	0	10	14	14	4	6	-	43
도야마	3	165	25	3	0	0	2	-	44
이시가와	44	1	74	20	4	7	7	-	93
후쿠이	3	0	20	14	0	0	3	0	40
시즈오카	433	12	5	1	-	-	1	-	69
아이치	3	-	1	14	-	-	5	54	73
미에	327	41	32	3	-	-	4	47	75
교토	4	0	10	3	0	0	2	0	40
오사카	1	-	0	3	-	-	1	8	37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t

구분	어류								
	고등어류	꽂치	방어	광어· 가자미류	대구류	임연수어	도미류	까나리	기타
효고	4	0	3	35	1	0	12	100	101
와카야마	77	2	7	1	-	-	3	0	49
돗토리	70	0	59	28	1	0	3	-	47
시마네	175	2	81	47	1	-	17	-	88
오카야마	0	0	0	6	-	-	2	3	14
히로시마	1	0	0	6	-	-	8	0	34
야마구치	51	0	21	22	0	-	-	26	11
도쿠시마	6	0	1	2	-	-	-	4	3
가가와	0	-	0	13	-	-	-	5	3
에히메	91	-	9	17	-	-	-	24	18
고치	36	2	19	0	-	-	-	3	1
후쿠오카	125	0	34	8	0	-	-	25	19
사가	33	0	2	1	-	-	-	3	2
나가사키	855	40	121	11	-	-	40	-	461
구마모토	3	-	3	4	-	-	11	-	86
오이타	18	-	8	6	-	-	9	-	89
미야자키	145	0	2	1	-	-	3	-	72
가고시마	91	0	10	1	-	-	9	-	106
오кина와	-	-	0	-	-	-	0	-	3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t

구분	새우류	게류	크릴새우류	조개류	오징어류	문어류	성게류	기타	해조류
전국	245	354	387	3,560	3,234	528	118	391	1,037
홋카이도	34	74	2	2,738	804	240	55	30	697
아오모리	1	7	-	31	764	24	9	20	34
이와테	0	1	190	6	216	19	17	2	21
미야기	0	3	190	13	232	17	8	1	1
아키타	2	7	-	4	3	5	0	1	1
야마가타	2	5	0	4	24	1	0	0	0
후쿠시마	0	5	0	16	30	24	0	2	0
이바라키	1	1	5	10	83	7	0	0	0
지바	2	0	-	44	20	2	0	1	20
도쿄	0	9	-	3	1	0	0	243	7
가나가와	0	0	-	4	23	3	0	3	5
니가타	7	26	0	10	12	5	0	5	3
도야마	8	7	-	4	34	1	0	0	1
이시가와	10	19	-	10	167	5	0	4	2
후쿠이	5	7	-	4	27	3	0	1	2
시즈오카	21	0	-	33	9	0	-	0	15
아이치	13	3	-	218	14	7	0	9	105
미에	4	0	-	96	15	8	0	4	27
교토	0	1	-	5	6	1	0	2	3
오사카	3	0	-	0	1	2	-	2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t

구분	새우류	게류	크릴새우류	조개류	오징어류	문어류	성게류	기타	해조류
효고	13	46	-	6	73	36	1	8	2
와카야마	3	0	-	1	9	1	0	0	8
돗토리	3	63	-	5	72	2	0	1	1
시마네	0	40	-	13	71	5	1	1	1
오카야마	4	3	-	10	3	11	0	9	0
히로시마	26	2	-	3	4	5	-	4	2
야마구치	19	3	-	19	40	10	3	10	4
도쿠시마	6	0	-	2	6	1	1	1	3
가가와	8	2	-	11	5	19	-	3	0
에히메	18	4	-	8	37	14	2	6	16
고치	1	0	-	1	12	0	0	0	0
후쿠오카	6	5	0	65	29	21	2	6	4
사가	2	1	-	66	11	1	1	1	1
나가사키	4	3	-	24	228	11	8	4	22
구마모토	2	1	-	55	5	6	2	1	8
오이타	7	3	-	12	8	6	1	5	13
미야자키	2	0	-	1	3	0	1	0	0
가고시마	5	0	-	1	113	2	3	0	3
오кина와	0	0	-	3	21	2	1	0	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양식업생산통계', 2007년 기준

3-1-3. 주요 어종별 어획량

단위: 백 t

어종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해면어업계	43,779	44,695	△916	98.0
어류계	33,909	35,040	△1,131	96.8
다랑어류	2,483	2203	280	112.7
흑다랑어	151	152	△1	99.3
인도다랑어	26	57	△31	45.6
날개다랑어	732	506	226	144.7
눈다랑어	777	707	70	109.9
황다랑어	783	738	45	106.1
기타 다랑어류	13	43	△30	30.2
청새치	29	31	△2	93.5
황새치	127	95	32	133.7
흑새치류	49	45	4	108.9
기타청새치류	17	11	6	154.5
가다랑어	3,287	3,280	7	100.2
물치다랑어류	269	300	△31	89.7
상어류	299	381	△82	78.5
연어·송어류계	2,348	2,309	39	101.7
연어류	2,101	2,189	△88	96.0
송어류	247	120	127	205.8
전어	117	85	32	137.6
칭어	63	33	30	190.9
정어리	793	525	268	151.0
눈통멸	590	382	208	154.5
멸치	3,609	4,155	△546	86.9
치어	646	481	165	134.3
전갱이	1,699	1,675	24	101.4
갈고등어류	246	237	9	103.8
고등어류	4,599	6,524	△1,925	70.5
꽁치	2,986	2,446	540	122.1
방어류	722	694	28	104.0
광어	82	74	8	110.8
가자미류	554	555	△1	99.8
대구	460	475	△15	96.8
명태	2,160	2,068	92	104.4
임연수어	1,391	1,164	227	119.5
홍살치	14	13	1	107.7
도루묵	78	132	△54	59.1
셋멸	46	46	0	100.0
붕장어류	73	79	△6	92.4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백 t

어종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갈치	179	161	18	111.2
참돔	156	158	△2	98.7
붉돔·황돔	67	66	1	101.5
흑돔·청돔	34	38	△4	89.5
벤자리	56	53	3	105.7
삼치류	181	137	44	132.1
농어류	109	114	△5	95.6
까나리	469	1,009	△540	46.5
옥돔	16	14	2	114.3
복어류	50	57	△7	87.7
기타어류	2,755	2,733	22	100.8
새우류	245	238	7	102.9
대하	13	13	0	100.0
보리새우	9	9	0	100.0
기타새우류	223	217	6	102.8
게류 계	354	366	△12	96.7
바다참게	60	60	0	100.0
붉은바다참게	202	215	△13	94.0
꽃게류	30	30	0	100.0
기타게류	62	61	1	101.6
크릴새우류	387	372	15	104.0
조개류 계	3,560	3,548	12	100.3
전복류	21	20	1	105.0
소라	84	79	5	106.3
모시조개류	359	350	9	102.6
가리비	2,583	2,719	△136	95.0
기타조개류	514	380	134	135.3
오징어류 계	3,234	2,863	371	113.0
오징어	2,544	1,903	641	133.7
붉은오징어	183	378	△195	48.4
기타오징어류	507	581	△74	87.3
문어류	528	508	20	103.9
성게류	118	108	10	109.3
해산포유류	15	16	△1	93.8
기타수산동물류	391	500	△109	78.2
해조류 계	1,037	1,137	△100	91.2
다시마류	728	847	△119	86.0
기타해조류	308	290	18	106.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양식업생산통계'

3-2. 양식현황

3-2-1. 해면 양식업 어종별 생산량

단위: 백 t

어종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해면양식업계	12,370	11,826	544	104.6
어류계	2,597	2,584	13	100.5
은연어	136	120	16	113.3
방어류	1,579	1,550	29	101.9
전갱이	17	20	△3	85.0
줄무늬전갱이	31	33	△2	93.9
참돔	670	711	△41	94.2
광어	46	46	0	100.0
복어류	42	44	△2	95.5
기타어류	76	59	17	128.8
조계류계	4,517	4,224	293	106.9
가리비	2,472	2,121	351	116.5
굴류(껍질有)	2,012	2,082	△70	96.6
굴	323	333	△10	97.0
기타조개류	33	21	12	157.1
보리새우	17	17	0	100.0
명게류	102	98	4	104.1
기타수산동물류	2	2	0	100.0
해조류계	5,136	4,901	235	104.8
다시마류	414	413	1	100.2
미역류	541	591	△50	91.5
김류(생중량)	3,955	3,677	278	107.6
판김(100만장)	10,228	9,531	697	107.3
큰실말류	223	218	5	102.3
기타해조류	2	2	0	100.0
진주(t)	27	27	0	100.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양식업생산통계'

3-2-2. 내수면 어업 · 양식업 어종별 생산량

단위: t

구분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내수면어업 · 양식업계	81,333	83,097	△1,764	97.9
내수면어업계	38,988	41,701	△2,713	93.5
-연어 · 송어	14,892	16,038	△1,146	92.9
-빙어	1,194	1,128	66	105.9
-은어	3,229	3,014	215	107.1
-뱅어	379	311	68	121.9
-잉어	528	579	△51	91.2
-붕어	1,006	1,079	△73	93.2
-황어 · 피라미	690	722	△32	95.6
-뱀장어	288	302	△14	95.4
-망둥어류	382	339	43	112.7
-기타어류	2,366	2,247	119	105.3
-바지라기	10,942	13,412	△2,470	81.6
-기타조개류	1,488	1,202	286	123.8
-새우류	973	928	45	104.8
-기타수산동식물류	631	399	232	158.1
내수면양식업계	42,345	41,395	950	102.3
-송어류계	11,125	11,000	125	101.1
-무지개송어	7,320	7,583	△263	96.5
-기타송어류	3,805	3,417	388	111.4
-은어	5,807	6,270	△463	92.6
-잉어	2,623	3,306	△683	79.3
-뱀장어	22,643	20,733	1,910	109.2
-기타수산동식물류	148	86	62	172.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어업 · 양식업 생산통계'

4. 수산가공 현황

4-1. 수산가공품 품목별 생산량

단위: t

품목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식용가공품	1,929,528	1,999,821	△ 70,293	96
반죽제품	605,841	617,956	△ 12,115	98
어묵	536,679	554,026	△ 17,347	97
어육햄·소시지류	69,162	63,930	5,232	108
냉동식품	283,667	292,985	△ 9,318	97
어패류	148,456	151,213	△ 2,757	98
수산물조리식품	135,211	141,772	△ 6,561	95
건제품	306,996	317,738	△ 10,742	97
음건	22,585	25,817	△ 3,232	87
오징어	10,613	10,450	163	102
정어리	1,063	1,367	△ 304	78
기타음건품	10,909	14,000	△ 3,091	78
염건품	212,002	222,883	△ 10,881	95
정어리	23,468	25,213	△ 1,745	93
전갱이	50,965	50,803	162	100
꽁치	20,752	24,458	△ 3,706	85
고등어	16,870	17,421	△ 551	97
가자미	11,615	12,786	△ 1,171	91
임연수어	45,564	49,129	△ 3,565	93
기타염건품	42,768	43,073	△ 305	99
자건품	72,409	69,038	3,371	105
정어리	32,664	29,676	2,988	110
멸치	28,458	23,779	4,679	120
까나리	4,168	6,627	△ 2,459	63
패주	1,979	2,001	△ 22	99
기타자건품	5,140	6,955	△ 1,815	74
염장품	190,370	197,975	△ 7,605	96
정어리	880	1,016	△ 136	87
고등어	26,305	26,363	△ 58	100
연어·송어	101,363	108,303	△ 6,940	94
대구·명태	9,560	11,253	△ 1,693	85
꽁치	13,032	13,077	△ 45	100
기타염장품	39,230	37,963	1,267	103
훈제품	7,871	7,876	△ 5	100
포제품	107,332	111,862	△ 4,530	96
포류	66,449	71,391	△ 4,942	93
가다랑어포	34,662	38,735	△ 4,073	89
가다랑어생포	3,550	3,726	△ 176	95
고등어포	14,824	12,118	2,706	122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t

품목	2007	2006	전년대비차이	전년대비(%)
기타포류	13,413	16,812	△3,399	80
얇은 포	40,883	40,471	412	101
얇은 가다랑어포	21,268	21,060	208	101
기타 얇은 포	19,615	19,411	204	101
기타식용가공품	427,451	453,429	△25,978	94
젓갈류	27,056	28,672	△1,616	94
오징어젓갈	23,212	23,814	△602	97
기타 젓갈류	3,844	4,858	△1,014	79
수산물절임	63,227	67,447	△4,220	94
조미가공품	302,038	310,976	△8,938	97
수산물조림	95,910	101,600	△5,690	94
다시마조림	42,449	43,441	△,992	98
기타 조림류	53,461	58,159	△4,698	92
건조·구이·튀김	116,673	119,494	△2,821	98
오징어제품	46,484	46,351	133	100
기타				
건조·구이·튀김	70,189	73,143	△2,954	96
기타 조미가공품	89,455	89,882	△427	100
기타	35,130	46,334	△11,204	76
구운김·보통김(천장)	7,652,951	8,180,342	△527,391	94
신선냉동수산물	1,661,167	1,679,191	△18,024	99
다랑어류	44,927	20,107	24,820	223
가다랑어류	22,865	25,912	△3,047	88
연어·송어류	169,977	154,929	15,048	110
정어리	267,527	249,400	18,127	107
전갱이·갈고등어	71,581	87,597	△16,016	82
고등어류	347,249	441,683	△94,434	79
꽁치	179,245	124,585	54,660	144
대구류	72,531	68,649	3,882	106
대구	16,251	13,645	2,606	119
명태알	56,280	55,004	1,276	102
임연수어	48,776	40,038	8,738	122
까나리	31,736	66,031	△34,295	48
가리비	64,784	63,222	1,562	102
오징어류	86,996	69,366	17,630	125
기타				
어류·수산동물류	188,323	189,014	△691	100
다진 것	64,650	78,658	△14,008	82
대구	35,314	41,557	△6,243	85
정어리·고등어	2,440	2,579	△139	95
임연수어	17,598	24,910	△7,312	71
기타 다진 것	9,298	9,612	△314	9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수산가공품 생산량'

4-2.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

단위: t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22,570	127,541	121,281	117,773	117,064
계류	4,062	3,562	3,280	2,822	2,421
바다참게	3,395	3,162	2,969	2,473	-
연어류	4,625	4,051	3,949	3,741	3,860
다랑어류	51,124	49,427	46,410	45,739	53,456
-화이트미트유	3,700	3,150	2,627	2,235	-
-라이트미트수	10,981	11,046	9,675	10,367	-
-라이트미트유	31,205	29,805	28,681	27,921	-
-다랑어플레이크	4,381	5,157	4,883	4,857	-
가다랑어류	10,954	11,586	11,924	10,533	-
-간장절임	10,191	10,345	10,901	9,116	-
고등어류	18,901	23,028	23,351	21,776	24,530
-삶은 고등어	8,579	10,196	10,425	8,456	-
-양념조리	2,853	3,285	3,300	2,751	-
-된장조리	6,126	7,814	8,212	7,928	-
정어리류	9,589	11,896	9,695	10,284	9,317
-양념조리	4,717	6,067	5,267	4,563	-
-토마토절임	833	744	270	397	-
-양념구이	1,078	1,569	1,376	1,337	-
꽂치류	7,352	8,339	9,344	9,820	10,318
-양념조리	1,130	1,257	2,315	1,458	-
-양념구이	5,804	5,937	5,922	7,231	-
고래	326	370	488	552	624
오징어류	2,298	2,527	2,218	1,934	2,428
-양념조리	2,290	2,526	2,214	1,934	-
기타어류	1,335	1,633	1,692	1,763	1,574
조개류	7,431	7,282	7,559	6,661	-
피조개	2,814	2,734	2,498	2,108	2,046
가리비	3,598	3,804	4,433	3,840	3,604
수산물가공품	4,572	3,840	1,372	2,149	2,886

자료원: 농림수산업성 통계부 '수산물가공품 생산량'

5. 수산물 수급 및 유통현황

5-1. 품목별 · 용도별 출하량

【출하량】

단위: t

품목	출하량계	식용					비식용		
		계	신선 식용	가공용			계	어유· 비료· 사료용	양식용 또는 어업용 사료
				반죽· 다진 제품용	통조림 용	기타			
합계	13,38,616	1,077,844	414,077	12,573	90,528	560,666	260,772	34,452	226,320
신선품계	1,071,078	810,756	344,101	12,573	49,823	404,259	260,322	34,452	225,870
다랑어	3,229	3,229	3,226	-	1	2	-	-	-
눈다랑어	7,529	7,527	7,060	136	185	146	2	2	-
황다랑어	3,037	3,035	2,789	137	59	50	2	1	1
가다랑어	59,704	59,691	40,603	-	8,845	10,243	13	-	13
연어·송어류	57,627	57,477	9,975	7	1,395	46,100	150	150	-
정어리	39,754	32,181	15,293	8,300	805	7,783	7,573	9	7,564
멸치	88,015	18,038	3,109	-	-	14,929	69,977	3,723	66,254
전갱이	98,623	65,950	32,495	3,228	-	30,227	32,673	48	32,625
고등어류	353,056	252,732	90,890	-	19,881	141,961	100,324	4,033	96,291
꽂치	189,832	141,584	52,136	0	18,647	70,801	48,248	26,486	21,762
방어류	30,100	30,099	24,575	-	-	5,524	1	-	1
가자미	16,779	16,696	9,464	-	0	7,232	83	-	83
대구	36,182	36,108	20,457	765	-	14,886	74	-	74
오징어	87,611	86,409	32,029	-	5	54,375	1,202	-	1,202
냉동품계	267,538	267,088	69,976	-	40,705	156,407	450	0	450
다랑어	963	963	963	-	-	-	-	-	-
눈다랑어	11,053	11,053	10,996	-	26	31	-	-	-
황다랑어	15,728	15,728	12,801	-	60	2,867	0	0	-
가다랑어	197,046	197,046	32,032	-	38,469	126,545	-	-	-
오징어	42,748	42,298	13,184	-	2,150	26,964	450	-	45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수산물유통조사', 2007년 기준

【구성비】

단위: %

품목	출하량계	식용					비식용		
		계	신선 식품	가공용			계	어유· 비료· 사료용	양식용 또는 어업용 사료
				반죽· 다진 제품용	통조림 용	기타			
합계	100.0	80.5	30.9	0.9	6.8	41.9	19.5	2.6	16.9
신선품계	100.0	75.7	32.1	1.2	4.7	37.7	24.3	3.2	21.1
다랑어	100.0	100.0	99.9	-	0.0	0.1	-	-	-
눈다랑어	100.0	100.0	93.8	1.8	2.5	1.9	0.0	0.0	-
황다랑어	100.0	99.9	91.8	4.5	1.9	1.6	0.1	0.0	0.0
가다랑어	100.0	100.0	68.0	-	14.8	17.2	0.0	-	0.0
연어·송어류	100.0	99.7	17.3	0.0	2.4	80.0	0.3	0.3	-
정어리	100.0	81.0	38.5	20.9	2.0	19.6	19.0	0.0	19.0
멸치	100.0	20.5	3.5	-	-	17.0	79.5	4.2	75.3
전갱이	100.0	66.9	32.9	3.3	-	30.6	33.1	0.0	33.1
고등어류	100.0	71.6	25.7	-	5.6	40.2	28.4	1.1	27.3
꽂치	100.0	74.6	27.5	0.0	9.8	37.3	25.4	14.0	11.5
방어류	100.0	100.0	81.6	-	-	18.4	0.0	-	0.0
가자미	100.0	99.5	56.4	-	0.0	43.1	0.5	-	0.5
대구	100.0	99.8	56.5	2.1	-	41.1	0.2	-	0.2
오징어	100.0	98.6	36.6	-	0.0	62.1	1.4	-	1.4
냉동품계	100.0	99.8	26.2	-	15.2	58.5	0.2	0.0	0.2
다랑어	100.0	100.0	100.0	-	-	-	-	-	-
눈다랑어	100.0	100.0	99.5	-	0.2	0.3	-	-	-
황다랑어	100.0	100.0	81.4	-	0.4	18.2	0.0	0.0	-
가다랑어	100.0	100.0	16.3	-	19.5	64.2	-	-	-
오징어	100.0	98.9	30.8	-	5.0	63.1	1.1	-	1.1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수산물유통조사'

5-2. 어패류 수급동향

단위: 천 t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생산	5,494	5,178	5,152	5,067	5,079
신선·냉동	2,427	2,306	2,376	2,214	2,396
염건·훈제·기타	2,029	1,870	1,882	1,914	1,837
통조림	252	244	230	234	242
사·비료	786	758	664	705	604
수입	5,747	6,055	5,782	5,711	5,161
신선·냉동	1,542	1,583	1,508	1,375	1,220
염건·훈제·기타	2,225	2,407	2,333	2,232	2,145
통조림	101	113	115	104	97
사·비료	1,879	1,952	1,826	2,000	1,699
수출	533	631	647	788	815
신선·냉동	344	474	488	645	658
염건·훈제·기타	72	58	72	71	83
통조림	12	8	6	5	8
사·비료	105	91	81	67	66
국내소비용	10,900	10,519	1,0201	9,820	9,526
신선·냉동	3,642	3,428	3,390	2,946	2,987
염건·훈제·기타	4,218	4,220	4,132	4,078	3,926
통조림	342	349	339	334	332
사·비료	2,698	2,522	2,340	2,462	2,281
국민1인1일당 공급순식료(g)	97.6	94.9	94.9	88.8	87.1
신선·냉동	43.4	40.7	40.9	35.6	35.9
염건·훈제·기타	50.2	50.1	49.9	49.2	47.2
통조림	4.1	4.1	4.1	4.0	4.0
사·비료	0.0	0.0	0.0	0.0	0.0

자료원: 농림수산업성 식료국 '식료수급표'

5-3. 가격동향

5-3-1. 주요 수산물 시장평균가격

단위: 엔/kg

연도 · 월별		다랑어류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2007	8	1,598	2,729	582	327	942	732	720	499
	9	2,709	3,591	597	365	1,297	769	764	412
	10	2,004	3,104	591	324	1,275	830	807	525
	11	1,953	2,835	397	306	1,334	867	851	534
	12	3,791	3,136	296	274	1,472	881	924	533
2008	1	4,379	2,617	326	308	1,218	805	985	512
	2	5,570	3,954	389	298	1,288	759	1,110	490
	3	7,021	2,964	390	350	1,220	702	1,045	506
	4	5,560	4,176	360	404	1,240	774	673	515
	5	2,811	3,367	339	395	908	835	452	606
	6	1,378	2,254	255	456	732	890	602	656
	7	*1,278	3,710	265	410	546	944	622	711
	8	1,215	2,921	407	413	961	1,008	570	626
2008.8/2007.8(%)		76.0	107.0	69.9	126.3	102.0	137.7	79.2	125.5
2008.8/2008.7(%)		95.1	78.7	153.6	100.7	176.0	106.8	91.6	88.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kg

연도 · 월별		다랑어류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신선	냉동
2007	8	1,598	2,729	582	327	942	732	720	499
	9	2,709	3,591	597	365	1,297	769	764	412
	10	2,004	3,104	591	324	1,275	830	807	525
	11	1,953	2,835	397	306	1,334	867	851	534
	12	3,791	3,136	296	274	1,472	881	924	533
2008	1	4,379	2,617	326	308	1,218	805	985	512
	2	5,570	3,954	389	298	1,288	759	1,110	490
	3	7,021	2,964	390	350	1,220	702	1,045	506
	4	5,560	4,176	360	404	1,240	774	673	515
	5	2,811	3,367	339	395	908	835	452	606
	6	1,378	2,254	255	456	732	890	602	656
	7	*1,278	3,710	265	410	546	944	622	711
	8	1,215	2,921	407	413	961	1,008	570	626
2008.8/2007.8(%)		76.0	107.0	69.9	126.3	102.0	137.7	79.2	125.5
2008.8/2008.7(%)		95.1	78.7	153.6	100.7	176.0	106.8	91.6	88.0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kg

연도 · 월별		가다랑어		정어리	눈등멸	멸치	전갱이
		신선	냉동				
2007	8	260	189	146	53	46	218
	9	359	198	187	65	45	182
	10	305	203	104	64	53	219
	11	402	174	262	57	58	130
	12	181	175	131	71	60	172
2008	1	254	185	215	68	57	167
	2	387	182	150	90	70	220
	3	598	184	130	78	51	169
	4	453	192	104	77	60	227
	5	365	220	64	85	50	258
	6	252	220	132	113	55	290
	7	239	206	*90	94	45	244
	8	342	218	114	53	44	229
2008.8/2007.8(%)		131.5	115.3	78.1	100.0	95.7	105.0
2008.8/2008.7(%)		143.1	105.8	126.7	56.4	97.8	93.9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엔/kg

연도 · 월별		갈고등어	고등어류	꽂치	임연수어	오징어		
						신선	원양 (냉동)	근해 (냉동)
2007	8	96	65	133	76	166	-	227
	9	120	76	78	51	129	-	221
	10	100	104	69	32	145	-	245
	11	102	110	51	29	169	-	243
	12	84	81	50	22	125	-	207
2008	1	92	95	61	31	169	-	207
	2	93	120	77	35	139	-	226
	3	95	110	113	49	337	-	207
	4	114	114	146	65	375	-	225
	5	197	86	244	93	245	183	264
	6	159	93	168	83	163	-	214
	7	127	*80	518	126	207	-	203
	8	115	79	216	90	204	252	239
2008.8/2007.8(%)		119.8	121.5	162.4	118.4	122.9	-	105.3
2008.8/2008.7(%)		90.6	98.8	41.7	71.4	98.6	-	117.7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산지수산물유통통계'

5-3-2. 주요 수산물 소매가격

단위: 100g당 엔

연도 · 월별	다랑어 (신선회용)		연어		연어 (소금절임)		고등어		방어		가자미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390	347	211	190	183	193	112	129	244	229	170	324	
2006	405	380	234	202	178	193	112	138	257	247	171	304	
2007	409	413	242	207	176	189	118	118	257	243	194	269	
2007/2006 (%)	101.0	108.7	103.4	102.5	98.9	97.9	105.4	85.5	100.0	98.4	113.5	88.5	
2007	8	402	424	236	209	183	184	111	114	261	247	193	294
	9	397	413	232	214	178	187	113	100	248	253	196	276
	10	399	418	239	204	174	188	108	101	255	227	203	275
	11	391	415	225	201	174	186	117	110	257	232	190	256
	12	399	417	233	204	171	193	113	108	258	226	186	264
2008	1	413	422	235	207	183	193	128	113	267	227	221	224
	2	398	398	242	205	174	192	116	113	251	239	201	265
	3	393	396	238	188	179	185	130	124	257	239	206	264
	4	396	395	234	196	180	194	138	127	257	241	179	256
	5	390	396	227	197	176	196	123	112	255	240	170	266
	6	398	406	226	201	175	194	131	125	275	248	169	279
	7	397	422	222	199	173	181	114	118	289	264	187	271
	8	411	406	228	211	174	198	109	130	292	281	175	294
2008.8/ 2007.8(%)	102.2	95.8	96.6	101.0	95.1	107.6	98.2	114.0	111.9	113.8	90.7	100.0	
2008.8/ 2008.7(%)	103.5	96.2	102.7	106.0	100.6	109.4	95.6	110.2	101.0	106.4	93.6	108.5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g당 엔

연도 · 월별		도미		오징어		문어		정어리		전쟁이		모시조개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220	199	100	83	242	232	127	112	109	155	116	127
2006		216	210	102	91	255	238	112	107	113	157	118	131
2007		608	451	95	83	267	245	113	96	112	162	116	138
2007/2006 (%)		281.5	214.8	93.1	91.2	104.7	102.9	100.9	89.7	99.1	103.2	98.3	105.3
2007	8	620	448	93	81	265	244	98	81	117	151	116	141
	9	624	444	88	79	274	246	106	91	122	152	114	142
	10	618	458	82	76	273	239	134	91	115	161	116	138
	11	600	426	84	68	282	233	120	85	112	146	116	133
	12	615	432	70	61	288	232	127	88	108	149	115	139
2008	1	623	475	86	70	291	228	94	119	120	144	117	131
	2	611	424	74	64	294	249	122	104	120	170	119	134
	3	602	436	92	86	293	249	124	89	113	166	122	142
	4	602	447	128	96	291	243	124	93	128	164	125	144
	5	603	426	128	105	293	253	114	88	119	166	122	146
	6	602	428	124	101	296	261	116	97	114	147	121	141
	7	621	434	102	92	282	262	115	88	122	156	122	145
	8	590	451	89	81	277	257	112	79	124	160	120	139
2008.8/2007.8(%)		95.2	100.7	95.7	100.0	104.5	105.3	114.3	97.5	106.0	106.0	103.4	98.6
2008.8/2008.7(%)		95.0	103.9	87.3	88.0	98.2	98.1	97.4	89.8	101.6	102.6	98.4	95.9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100g당 엔

연도 · 월별	김 (10장)		홍치		새우 (수입품)		굴		가리비		명란젓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2005	445	331	81	100	253	280	293	263	208	198	648	604	
2006	445	336	80	96	255	267	303	285	218	209	622	587	
2007	447	340	81	84	261	261	300	270	208	192	548	551	
2007/2006 (%)	100.4	101.2	101.3	87.5	102.4	97.8	99.0	94.7	95.4	91.9	88.1	93.9	
2007	8	449	348	122	148	262	247	209	173	542	550
	9	447	332	89	89	258	262	206	190	541	529
	10	439	332	80	85	262	246	345	300	202	217	546	529
	11	442	342	81	82	257	263	322	290	199	208	536	548
	12	439	327	77	70	255	265	319	282	196	193	540	558
2008	1	447	332	74	77	259	265	320	277	194	197	548	543
	2	443	332	69	71	261	250	295	267	204	192	545	568
	3	448	332	72	65	264	254	281	253	199	205	525	555
	4	446	342	70	64	260	245	210	197	552	519
	5	449	342	71	66	259	229	211	200	559	530
	6	448	342	69	67	256	226	212	205	561	537
	7	451	342	98	150	245	236	212	205	555	542
	8	451	347	121	135	244	222	210	191	562	543
2008.8/2007.8(%)	100.4	99.7	99.2	91.2	93.1	89.9	100.5	110.4	103.7	98.7	
2008.8/2008.7(%)	100.0	101.5	123.5	90.0	99.6	94.1	99.1	93.2	101.3	100.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산지수산물유통통계'

1. 식품산업현황

1-1. 식료수급표

단위: 천 t

종별 · 품목별	국내 생산량	외국무역		국내 소비용	국내소비용의 내역				
		수입량	수출량		사료용	가공용	조식료		순식료
							총수	1인1년당 (kg)	
쌀	8,714	856	140	9,257	5	373	8,655	67.7	7,841
밀	910	5,386	0	6,348	522	356	5,286	41.4	4,123
보리	180	1,903	0	2,199	1,138	985	70	0.5	32
나뭇	14	0	0	12	0	7	5	0.0	3
고구마	968	64	1	1,031	5	367	618	4.8	556
감자	2,877	868	2	3,743	6	1,102	2,263	17.7	2,037
콩	227	4,161	12	4,304	125	3,223	866	6.8	866
채소	12,420	2,992	13	15,395	0	0	13,837	108.3	11,992
과실(계)	3,492	5,162	54	8,600	0	16	7,171	56.1	5,283
굴	1,066	0	5	1,082	0	0	920	7.2	690
사과	840	924	27	1,716	0	0	1,544	12.1	1,312
우유 · 유제품(계)	8,024	4,020	24	12,243	52	0	11,916	93.3	11,916
음료용	4,509	0	0	4,509	0	0	4,464	34.9	4,464
유제품용	3,432	4,020	24	7,651	0	0	7,421	58.1	7,421
육류(계)	3,141	2,442	8	5,609	0	0	5,496	43.0	3,614
쇠고기	513	662	0	1,180	0	0	1,156	9.0	728
돼지고기	1,246	1,125	1	2,391	0	0	2,343	18.3	1,476
닭고기	1,372	605	7	1,975	0	0	1,935	15.1	1,374
계란	2,599	113	0	2,712	0	0	2,584	20.2	2,196
어패류	5,079	5,161	815	9,526	2,281	0	7,245	56.7	4,072
해조류	123	54	3	174	0	28	146	1.1	146
설탕류(계)							2,529	19.8	2,529
막설탕	168	1,475	8	1,586	0	1,586	0	0.0	0
백설탕	2,157	375	1	2,533	2	22	2,489	19.5	2,489
유지류(계)	2,050	934	11	2,988	116	362	2,495	19.5	1,840
식물유지	1,731	835	10	2,574	0	252	2,308	18.1	1,712
동물유지	319	99	1	414	116	110	187	1.5	128
된장	484	8	10	485	0	0	484	3.8	484
간장	942	1	19	924	0	0	921	7.2	921
버섯류	442	92	1	533	0	0	506	4.0	438

자료원: 농림수산성 식료국 '식료수급표', 2007년 기준

1-2. 식품폐기물 등의 발생량, 발생억제량, 감량화량, 재생이용량

단위: 실수 - 천 t, 비율 - %

업종 · 연도		식품산업폐기물 연간발생량		발생억제량		감량화량		재생이용량	
		실수	발생 비율	실수	억제 비율	실수	억제 비율	실수	재생 이용률
식품산업계	2004	11,358	100	515	4	330	3	5,793	51
	2005	11,362	100	510	4	366	3	6,664	59
	2006	11,352	100	546	5	365	3	6,707	59
식품제조업	2004	4,898	43	235	5	234	5	3,803	78
	2005	4,946	44	241	5	176	4	4,221	85
	2006	4,947	44	265	5	210	4	4,229	86
외식산업	2004	3,104	27	110	3	47	2	770	25
	2005	3,043	27	116	4	138	5	910	30
	2006	3,042	27	124	4	83	3	932	31
식품소매업	2004	2,604	23	121	4	37	1	821	32
	2005	2,629	23	122	4	44	2	1,028	39
	2006	2,620	23	124	5	58	2	1,038	40
식품도매업	2004	751	7	48	6	12	2	398	53
	2005	744	7	31	4	8	1	505	68
	2006	743	7	32	4	15	2	509	6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실태 조사보고'

1-3. 가계식품소비

단위: 월평균액 - 엔, 구성비 - %

구분	총 세대		2인 이상세대		단신세대	
	월평균액	구성비	월평균액	구성비	월평균액	구성비
소비지출	258,006	100.0	294,943	100.0	163,699	100.0
식료	59,491	23.1	68,111	23.1	37,422	22.9
곡물류	5,480	2.0	6,279	2.1	2,366	1.4
어패류	5,768	2.2	7,163	2.4	2,193	1.3
육류	4,722	1.8	6,061	2.1	1,292	0.8
계란류	2,725	1.1	3,297	1.1	1,257	0.8
채소·해조	6,861	2.7	8,353	2.8	3,041	1.9
과실	2,227	0.9	2,610	0.9	1,247	0.8
유지·조미료	2,463	1.0	3,033	1.0	1,003	0.6
과자류	4,004	1.6	4,813	1.6	1,932	1.2
조리식품	7,350	2.8	8,202	2.8	5,169	3.2
음료	3,379	1.3	3,638	1.2	2,715	1.7
주류	2,802	1.1	3,228	1.1	1,714	1.0
외식	11,932	4.6	11,434	3.9	13,211	8.1
주거	19,530	7.6	18,115	6.1	23,153	14.1
광열·수도	18,906	7.3	22,278	7.6	10,267	6.3
가구·가사용품	8,136	3.2	9,734	3.3	4,044	2.5
피복 및 신발	11,407	4.4	12,776	4.3	7,901	4.8
보건의료	10,788	4.2	12,787	4.3	5,668	3.5
교통·통신	33,011	12.8	37,864	12.8	20,587	12.6
교육	9,100	3.5	12,650	4.3	8	0.0
교양오락	27,379	10.6	30,040	10.2	20,565	12.6
기타 소비지출	60,338	23.4	70,588	23.9	34,084	20.8

자료원: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연보', 2006년 기준

1-4. 출하 및 판매동향

1-4-1. 식품 제조업 출하액

단위: 억 엔

연도	출하액						
	식품 제조업	축산식품 제조업	수산식품 제조업	채소·과일 통조림·농산보존 식품제조업	조미료 제조업	당류 제조업	정곡·제분업
2004	227,892	47,263	32,132	8,228	18,307	4,363	13,538
2005	226,775	47,494	32,134	8,199	18,205	4,527	12,505
2006	226,732	47,311	31,313	8,202	18,153	4,566	12,160
2006/2005 (%)	100.0	99.6	97.4	100.0	99.7	100.9	97.2

(다음 표에 계속)

연도	출하액						
	식품제조업			음료·담배·사료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주류 제조업	차·커피 제조업
	빵·과자 제조업	동식물유지 제조업	기타식품 제조업				
2004	40,447	7,774	55,839	106,397	22,235	38,396	5,617
2005	40,811	7,180	55,720	96,660	19,463	37,541	5,628
2006	41,627	7,501	55,899	95,967	18,867	36,284	5,356
2006/2005 (%)	102.0	104.5	100.3	99.3	96.9	96.7	95.2

자료원: 경제산업성 '공업통계표'

1-4-2. 식품도매업 판매액

단위: 억 원

연도	판매액								
	도매업	각종 상품 도매업	1)각종 상품 도매업		음료 식품	농축산물· 수산물 도매업	곡물류 도매업	채소 도매업	과실 도매업
			1)각종 상품 도매업	기타 각종상품 도매업					
2002	4,133,548	481,291	451,041	30,250	842,737	402,563	71,832	91 810	22,191
2004	4,054,972	490,306	462,097	28,209	863,898	425,776	108,113	118,680	
2007	4,106,789	487,970	465,823	22,146	754,189	348 900	34 709	79,599	18,160

주: 1) 종사자가 상시 100명 이상의 도매업

(다음 표에 계속)

연도	판매액								
	도매업								
	식품도매업			식품·음료 도매업					
	농축산물·어업도매업			식품·음료 도매업	주류 도매업	과자·빵 도매업	음료 도매업	차류 도매업	기타식품 음료 도매업
	식육 도매업	신선어패 도매업	기타 농축산물 수산물 도매업						
2002	57,130	126,291	33,307	440,174	94,043	35,935	48,203	7,923	211,725
2004	62,219	117,886	18,878	438,122
2007	63,783	96,690	49,457	405,289	78,310	36,885	42,304	7,630	204,131

자료원: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1-4-3. 식품소매업 판매액

단위: 억 엔

연도	판매액						
	소매액	식품소매액			음료식품 소매액	각종식료품 소매액	주류소매액
		각종상품 소매액	백화점, 종합슈퍼	1)기타 각종상품 소매액			
2002	1,351,093	173,222	169,420	3,802	412,260	152,387	37,838
2004	1,332,786	169,135	164,087	5,048	413,342	170,846	33,295
2007	1,345,717	156,237	151,280	4,957	408,101	170,852	25,151

주: 1)종사자수가 상시 50명 미만의 소매업

(다음 표에 계속)

연도	판매액						
	소매업						
	식료품소매업						
	식육소매업	선어소매업	건어물 소매업	채소·과실 소매업	과자·빵 소매업	곡물류 소매업	기타식료품 소매업
2002	7,744	10,789	2,440	12,180	21,721	7,307	162,294
2004	6,895	9,486	...	12,147	22,688	6,664	151,321
2007	6,592	8,539	...	9,966	20,661	4,518	161,823

자료원: 경제산업성 '상업통계표'

1-5. 외식산업 시장규모

단위: 억 엔

연도	외식산업									
	합계	급식주체부문						음료주체부문	찾집·주점 등	요정·바 등
		급식주체부문	영업급식	음식점			집단급식			
			음식점	국내선기내식 등	숙박시설					
2005	243,903	191,664	155,313	121,565	2,539	31,209	36,351	52,239	21,975	30,264
2006	246,403	194,412	158,343	124,230	2,530	31,583	36,069	51,991	21,536	30,455
2007	247,009	194,849	158,663	124,806	2,524	31,333	36,186	52,160	21,584	30,576
2007/2006 (%)	100.2	100.2	100.2	100.5	99.8	99.2	100.3	100.3	100.2	100.4

자료원: 외식산업종합조사연구센터

2. 식품유통현황

2-1. 식품 매입량

2-1-1. 농산물

【청과물】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생산자, 집출하 단체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판매
				계	도매시장		상사 및 기타 도매업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3,563	3,563	2,336	709	181	230	297	502	12	3	
”(매입량비율)		100.0	65.6	19.9	5.1	6.5	8.3	14.1	0.3	0.1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464	100.0	71.3	25.6	0.8	1.8	23.0	3.1	0.0	-	
채소절임제조업	360	100.0	56.4	40.7	19.3	16.5	4.9	0.3	1.8	0.9	
조미료제조업	23	100.0	7.8	10.0	0.1	1.0	9.0	81.9	0.2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874	100.0	44.3	23.6	3.9	6.8	12.9	32.0	0.0	-	
반찬제조업	119	100.0	33.7	30.3	3.2	15.1	11.9	36.0	0.1	-	
기타	1,723	100.0	79.7	11.5	4.1	4.9	2.5	8.5	0.3	0.0	
식품제조업(매입량)	28,885	28,885	13,581	15,259	11,181	2,245	1,833	36	9	-	
”(매입량비율)		100.0	47.0	52.8	38.7	7.8	6.3	0.1	0.0	-	
도매시장계	23,316	100.0	50.9	49.1	36.1	5.8	7.1	-	-	-	
도매시장(도매업자)	15,275	100.0	74.4	25.6	10.8	5.2	9.6	-	-	-	
도매시장(중도업자)	8,041	100.0	6.4	93.6	84.3	6.9	2.4	-	-	-	
기타도매업	5,570	100.0	30.6	68.6	49.5	16.1	3.0	0.7	0.2	-	
식품소매업(매입량)	10,148	10,148	1,182	8,759	4,068	4,316	374	52	145	10	
”(매입량비율)		100.0	11.7	86.3	40.1	42.5	3.7	0.5	1.4	0.1	
백화점·종합슈퍼	949	100.0	7.5	92.1	16.6	73.2	2.2	0.4	0.0	-	
각종료품소매업	5,744	100.0	10.0	88.0	44.9	39.6	3.6	0.5	1.4	-	
채소소매업	1,531	100.0	15.4	83.6	48.0	32.4	3.2	0.3	0.2	0.5	
과실소매업	349	100.0	27.8	67.4	40.2	27.0	0.2	0.1	4.3	0.4	
편의점	42	100.0	2.2	96.1	24.7	67.1	4.3	0.0	1.8	-	
기타식품소매업	1,533	100.0	13.2	83.0	29.1	47.6	6.3	0.8	2.9	0.0	
외식산업(매입량)	1,336	1,336	130	597	144	272	181	32	575	1	
”(매입량비율)		100.0	9.7	44.7	10.8	20.3	13.5	2.4	43.1	0.1	
일반식당	401	100.0	12.6	43.9	6.4	25.4	12.0	1.5	42.0	-	
일본요리점	229	100.0	11.1	41.2	10.8	24.2	6.2	0.3	47.4	-	
서양요리점	132	100.0	16.6	36.4	9.5	23.1	3.9	4.6	41.8	0.5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278	100.0	2.9	53.3	10.0	13.0	30.3	4.6	39.1	0.1	
기타 일반음식점	296	100.0	8.0	44.1	18.0	16.2	9.9	2.3	45.4	0.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수입 성과물】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자사 직접 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계	도매시장		상사	기타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309	309	6	260	3	11	236	9	43	0	
〃 (매입량비율)		100.0	1.8	84.1	1.0	3.6	76.5	3.0	14.0	0.0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10	100.0	58.9	41.1	0.3	-	23.0	17.8	-	-	
채소절입제조업	1	100.0	-	100.0	2.7	0.0	48.9	48.4	-	-	
조미료제조업	4	100.0	-	15.0	0.0	-	14.7	0.2	85.0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180	100.0	-	99.6	-	0.0	98.0	1.6	0.4	0.0	
반찬제조업	34	100.0	-	18.6	1.0	2.5	15.1	-	81.3	0.0	
기타	80	100.0	-	85.7	3.3	12.8	64.3	5.3	14.2	0.0	
식품제조업(매입량)	3,686	3,686	541	3,128	901	227	1,825	176	16	1	
〃 (매입량비율)		100.0	14.7	84.9	24.4	6.2	49.5	4.8	0.4	0.0	
도매시장계	2,222	100.0	2.4	97.6	29.8	4.2	56.5	7.1	-	-	
도매시장(도매업자)	1,465	100.0	3.3	96.7	10.7	2.6	75.5	7.9	-	-	
도매시장(중도업자)	757	100.0	0.6	99.4	66.8	7.2	19.8	5.6	-	-	
기타도매업	1,464	100.0	33.3	65.5	16.3	9.2	38.8	1.2	1.1	0.1	
식품소매업(매입량)	1,620	1,620	60	1,549	465	543	492	50	7	4	
〃 (매입량비율)		100.0	3.7	95.6	28.7	33.5	30.3	3.1	0.4	0.2	
백화점·종합슈퍼	305	100.0	7.7	91.1	5.7	26.1	55.4	3.8	1.3	-	
각종식품소매업	873	100.0	3.7	95.9	30.9	31.3	31.3	2.5	0.3	0.1	
채소소매업	166	100.0	0.2	99.5	41.2	55.1	0.3	2.9	0.0	0.3	
과실소매업	33	100.0	-	94.8	46.1	47.7	0.2	0.8	-	5.2	
편의점	3	100.0	4.6	89.3	36.8	48.3	0.4	3.8	0.3	5.8	
기타식품소매업	239	100.0	1.6	97.8	38.8	33.9	20.3	4.7	0.4	0.2	
외식산업(매입량)	80	80	1	48	12	17	5	14	6	25	
〃 (매입량비율)		100.0	1.0	59.9	14.6	21.0	6.7	17.6	8.0	31.1	
일반식당	33	100.0	0.7	63.9	6.3	13.8	11.8	32.0	12.1	23.3	
일본요리점	6	100.0	5.2	55.4	6.1	33.2	5.0	11.1	0.2	39.2	
서양요리점	18	100.0	0.8	67.9	33.9	30.2	2.1	1.7	10.0	21.3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15	100.0	-	50.1	17.0	17.9	0.2	15.1	3.1	46.8	
기타 일반음식점	8	100.0	1.7	47.4	8.3	28.0	8.5	2.7	1.0	49.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채 소】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생산자, 집출하 단체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재배
				계	도매시장		상사 및 기타 도매업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3,047	3,047	1,985	562	154	193	214	486	12	2	
〃 (매입량비율)		100.0	65.1	18.4	5.1	6.3	7.0	15.9	0.4	0.1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246	100.0	78.9	15.2	1.6	3.4	10.2	5.8	0.0	-	
채소절임제조업	310	100.0	50.9	45.9	22.2	18.1	5.7	0.3	2.1	0.8	
조미료제조업	21	100.0	7.8	9.9	0.1	1.0	8.8	82.2	0.2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873	100.0	44.3	23.6	3.9	6.8	12.9	32.0	0.0	-	
반찬제조업	119	100.0	33.8	30.0	3.1	15.0	11.9	36.1	0.1	-	
기타	1,477	100.0	81.5	9.3	2.9	3.5	2.9	8.8	0.4	-	
식품제조업(매입량)	21,175	21,175	10,189	10,943	7,834	1,620	1,489	36	8	-	
〃 (매입량비율)		100.0	48.1	51.7	37.0	7.7	7.0	0.2	0.0	-	
도매시장계	16,964	100.0	52.2	47.8	34.5	5.3	7.9	-	-	-	
도매시장(도매업자)	11,586	100.0	73.4	26.6	10.7	5.2	10.6	-	-	-	
도매시장(중도업자)	5,378	100.0	6.5	93.5	85.8	5.6	2.1	-	-	-	
기타도매업	4,211	100.0	31.6	67.4	46.9	17.0	3.4	0.9	0.2	-	
식품소매업(매입량)	7,204	7,204	836	6,181	2,715	3,194	272	47	135	6	
〃 (매입량비율)		100.0	11.6	85.8	37.7	44.3	3.8	0.7	1.9	0.1	
백화점·종합슈퍼	688	100.0	5.1	94.4	19.8	72.1	2.5	0.5	-	-	
각종식품소매업	4,000	100.0	9.9	87.4	40.5	42.8	4.2	0.7	2.0	-	
채소소매업	1,152	100.0	17.1	81.8	45.4	33.2	3.3	0.3	0.2	0.5	
과실소매업	147	100.0	32.9	60.3	42.3	17.9	0.1	0.1	6.7	0.0	
편의점	34	100.0	2.4	95.8	17.7	74.4	3.6	0.0	1.8	-	
기타식품소매업	1,183	100.0	13.4	81.9	30.9	46.8	4.3	1.0	3.7	-	
외식산업(매입량)	1,283	1,283	124	568	132	263	174	32	557	1	
〃 (매입량비율)		100.0	9.7	44.3	10.3	20.5	13.5	2.5	43.4	0.1	
일반식당	385	100.0	12.7	43.7	5.9	25.6	12.1	1.5	42.1	-	
일본요리점	219	100.0	11.3	40.9	10.5	24.1	6.3	0.3	47.5	-	
서양요리점	120	100.0	15.9	34.8	6.7	24.0	4.1	4.9	43.8	0.6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276	100.0	2.9	53.4	10.0	12.9	30.5	4.6	39.0	0.1	
기타 일반음식점	282	100.0	8.3	42.9	17.9	16.5	8.5	2.3	46.3	0.2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수입 채소】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자사 직접 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계	도매시장		상사	기타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249	249	5	200	3	4	188	6	43	0	
”(매입량비율)		100.0	2.0	80.5	1.1	1.5	75.6	2.3	17.4	0.0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7	100.0	74.2	25.8	0.4	-	-	25.4	-	-	
채소절임제조업	1	100.0	-	100.0	2.7	-	48.9	48.4	-	-	
조미료제조업	4	100.0	-	14.8	0.0	-	14.8	0.0	85.2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180	100.0	-	99.6	-	-	98.0	1.6	0.4	-	
반찬제조업	34	100.0	-	18.5	0.9	2.4	15.2	-	81.5	0.0	
기타	23	100.0	-	50.9	10.8	12.0	24.9	3.2	49.0	0.1	
식품제조업(매입량)	877	877	67	795	195	62	454	84	15	0	
”(매입량비율)		100.0	7.6	90.7	22.2	7.1	51.8	9.6	1.7	0.0	
도매시장계	567	100.0	2.8	97.2	24.5	3.2	56.5	13.0	-	-	
도매시장(도매업자)	423	100.0	2.8	97.2	9.1	3.9	68.7	15.6	-	-	
도매시장(중도업자)	144	100.0	2.8	97.2	69.6	1.3	20.9	5.4	-	-	
기타도매업	310	100.0	16.4	78.7	18.1	14.2	43.1	3.3	4.7	0.1	
식품소매업(매입량)	347	347	28	317	91	107	110	10	1	1	
”(매입량비율)		100.0	8.0	91.5	26.2	30.7	31.6	3.0	0.2	0.3	
백화점·종합슈퍼	81	100.0	25.3	74.4	4.3	11.7	57.7	0.7	0.3	-	
각종식품소매업	165	100.0	4.3	95.2	28.6	31.4	32.7	2.6	0.3	0.3	
채소소매업	52	100.0	0.5	98.8	45.3	46.1	0.5	6.9	0.0	0.7	
과실소매업	3	100.0	-	98.7	70.3	28.4	-	-	-	1.3	
편의점	1	100.0	-	94.1	28.7	57.7	-	7.6	-	5.9	
기타식품소매업	46	100.0	0.3	99.4	32.6	44.2	18.7	4.0	0.1	0.1	
외식산업(매입량)	44	44	0	22	5	8	3	6	6	16	
”(매입량비율)		100.0	0.8	48.8	11.5	18.8	5.8	12.7	13.4	36.9	
일반식당	17	100.0	0.8	47.6	5.9	11.4	11.9	18.4	23.5	28.1	
일본요리점	3	100.0	0.1	70.1	0.5	44.7	7.8	17.1	0.1	29.8	
서양요리점	6	100.0	1.1	53.5	25.6	21.8	5.6	0.5	27.7	17.8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13	100.0	-	49.2	18.3	15.9	0.1	14.9	2.5	48.4	
기타 일반음식점	5	100.0	2.8	34.7	1.4	31.5	0.2	1.5	-	62.5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수입 1차 가공채소】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자사 직접 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계	도매시장 (도매업자 중도업자)	상사	기타		
식품제조업(매입량)	549	549	11	521	2	504	15	17	1
”(매입량비율)		100.0	2.1	94.8	0.3	91.8	2.7	3.0	0.1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45	100.0	17.4	82.1	1.9	78.2	1.9	0.5	-
채소절임제조업	33	100.0	4.4	94.5	0.7	90.3	3.6	1.1	-
조미료제조업	33	100.0	0.1	98.2	0.0	71.5	26.7	1.6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20	100.0	-	96.3	-	94.7	1.7	3.7	-
반찬제조업	17	100.0	-	51.7	3.5	41.9	6.3	48.3	-
기타	400	100.0	0.5	97.7	0.0	97.1	0.6	1.6	0.2
외식산업(매입량)	70	70	44	17	3	2	13	2	6
”(매입량비율)		100.0	63.4	25.1	3.6	3.2	18.3	3.6	8.0
일반식당	14	100.0	8.9	72.2	3.5	4.0	64.7	8.6	10.4
일본요리점	2	100.0	-	44.8	6.1	-	38.7	29.4	25.8
서양요리점	7	100.0	2.7	61.0	23.8	20.3	16.9	6.6	29.7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1	100.0	-	80.9	14.5	29.9	36.5	14.0	5.1
기타 일반음식점	47	100.0	91.3	4.5	0.5	0.3	3.6	0.6	3.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과 실】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생산자, 집출하 단체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재배
				계	도매시장		상사 및 기타 도매업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516	516	351	147	27	37	83	17	0	1	
”(매입량비율)		100.0	68.1	28.4	5.3	7.2	16.0	3.2	0.0	0.2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218	100.0	62.6	37.4	-	-	37.4	0.0	-	-	
채소절임제조업	49	100.0	90.6	7.5	0.9	6.5	-	-	-	1.9	
조미료제조업	2	100.0	8.7	12.4	-	1.0	11.3	79.0	-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0	100.0	-	100.0	22.6	0.4	77.0	-	-	-	
반찬제조업	0	100.0	7.7	92.3	42.0	50.3	-	-	-	-	
기타	247	100.0	69.1	24.7	10.7	13.6	0.4	6.2	0.0	0.1	
식품제조업(매입량)	7,710	7,710	3,392	4,316	3,347	625	344	0	2	-	
”(매입량비율)		100.0	44.0	56.0	43.4	8.1	4.5	0.0	0.0	-	
도매시장계	6,352	100.0	47.6	52.4	40.4	7.0	5.0	-	-	-	
도매시장(도매업자)	3,688	100.0	77.4	22.6	11.0	5.1	6.5	-	-	-	
도매시장(중도업자)	2,663	100.0	6.3	93.7	81.2	9.6	2.9	-	-	-	
기타도매업	1,359	100.0	27.4	72.5	57.4	13.2	1.8	0.0	0.1	-	
식품소매업(매입량)	2,943	2,943	346	2,578	1,354	1,122	102	5	10	4	
”(매입량비율)		100.0	11.8	87.6	46.0	38.1	3.5	0.2	0.3	0.1	
백화점·종합슈퍼	260	100.0	13.8	86.0	8.3	76.1	1.6	0.1	0.0	-	
각종식품소매업	1,744	100.0	10.2	89.4	54.9	32.3	2.3	0.2	0.2	-	
채소소매업	379	100.0	10.4	89.0	55.7	30.2	3.1	0.2	0.0	0.5	
과실소매업	202	100.0	24.1	72.5	38.7	33.6	0.3	-	2.6	0.8	
편의점	8	100.0	1.1	97.3	54.9	35.1	7.2	0.0	1.6	-	
기타식품소매업	349	100.0	12.7	86.6	23.1	50.5	13.0	0.2	0.4	0.1	
외식산업(매입량)	53	53	5	29	12	9	7	1	18	0	
”(매입량비율)		100.0	10.4	54.1	23.4	16.8	13.9	1.0	34.5	0.0	
일반식당	15	100.0	9.8	48.6	20.4	20.1	8.1	0.4	41.2	-	
일본요리점	10	100.0	7.2	46.7	18.9	24.6	3.2	0.1	46.0	-	
서양요리점	12	100.0	24.3	52.1	37.0	13.8	1.3	1.5	22.1	0.0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2	100.0	1.8	42.6	13.4	16.7	12.4	2.5	53.1	-	
기타 일반음식점	13	100.0	2.3	69.2	19.4	9.8	40.0	1.8	26.7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수입 과실]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자사 직접 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계	도매시장		상사	기타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매입량)	60	60	1	59	0	8	48	3	0	0	
”(매입량비율)		100.0	1.1	98.8	0.4	12.5	80.1	5.8	0.0	0.0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물보존식품제조업	3	100.0	23.6	76.4	-	-	76.1	0.3	-	-	
채소절임제조업	0	100.0	-	100.0	-	69.9	-	30.1	-	-	
조미료제조업	0	100.0	-	100.0	-	-	-	100.0	-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0	100.0	-	99.6	-	2.8	96.5	0.4	-	0.4	
반찬제조업	0	100.0	-	95.7	80.8	14.9	-	-	-	4.3	
기타	57	100.0	-	100.0	0.3	13.2	80.4	6.1	0.0	0.0	
식품제조업(매입량)	2,809	2,809	475	2,333	706	165	1,371	92	1	1	
”(매입량비율)		100.0	16.9	83.0	25.1	5.9	48.8	3.3	0.0	0.0	
도매시장계	1,655	100.0	2.3	97.7	31.6	4.5	56.5	5.1	-	-	
도매시장(도매업자)	1,043	100.0	3.5	96.5	11.3	2.1	78.2	4.8	-	-	
도매시장(중도업자)	612	100.0	0.1	99.9	66.2	8.5	19.6	5.6	-	-	
기타도매업	1,154	100.0	37.9	62.0	15.8	7.8	37.7	0.6	0.1	0.1	
식품소매업(매입량)	1,273	1,273	32	1,232	374	436	382	39	7	3	
”(매입량비율)		100.0	2.5	96.7	29.4	34.3	30.0	3.1	0.5	0.2	
백화점·종합슈퍼	224	100.0	1.3	97.1	6.2	31.3	54.6	5.0	1.6	-	
각종식품소매업	708	100.0	3.6	96.1	31.4	31.2	31.0	2.4	0.3	0.1	
채소소매업	115	100.0	0.1	99.8	39.3	59.2	0.2	1.0	-	0.2	
과실소매업	31	100.0	-	94.5	44.0	49.3	0.3	0.9	-	5.5	
편의점	3	100.0	5.5	88.4	38.3	46.5	0.4	3.1	0.3	5.8	
기타식품소매업	192	100.0	1.9	97.4	40.3	31.4	20.7	4.9	0.5	0.2	
외식산업(매입량)	35	35	0	26	7	8	3	8	0	8	
”(매입량비율)		100.0	1.3	73.8	18.5	23.9	7.8	23.7	1.1	23.7	
일반식당	17	100.0	0.5	80.3	6.7	16.1	11.7	45.7	0.8	18.4	
일본요리점	3	100.0	10.6	40.2	11.9	21.2	2.1	5.0	0.3	48.9	
서양요리점	11	100.0	0.6	75.8	38.4	34.7	0.2	2.4	0.4	23.2	
중화요리점·동양요리점	1	100.0	-	59.1	4.4	37.2	1.2	16.3	9.6	31.4	
기타 일반음식점	3	100.0	-	68.9	19.8	22.0	22.4	4.6	2.8	28.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6년 기준

2-1-2. 축산물

【돼지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농협·경제 연합회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비율
				도매 시장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매입량)	917	917	593	69	115	92	3	45
” (매입량비율)		100.0	64.7	7.6	12.5	10.0	0.3	4.9
축산식품제조업	859	100.0	68.9	8.0	11.2	6.3	0.3	5.2
냉동조리식품제조업	48	100.0	1.2	0.1	28.2	70.4	0.1	-
반찬제조업	7	100.0	9.6	2.8	47.7	37.9	2.0	-
기타식품제조업	3	100.0	2.0	6.1	45.6	37.6	8.7	-
식품도매업(매입량)	1,367	1,367	599	62	451	251	3	-
” (매입량비율)		100.0	43.8	4.6	33.0	18.4	0.2	-
도매시장	190	100.0	96.4	1.6	2.1	-	-	-
기타도매업	1,177	100.0	35.4	5.0	38.0	21.4	0.2	-
식품소매업(매입량)	656	656	98	70	335	123	29	0
” (매입량비율)		100.0	14.9	10.7	51.1	18.7	4.5	0.1
백화점·종합슈퍼	109	100.0	6.5	6.8	33.1	39.6	14.1	-
각종식품소매업	312	100.0	23.6	5.4	49.8	18.0	3.2	-
식육소매업	121	100.0	7.9	30.4	56.3	3.9	1.2	0.3
기타음식료품소매업	114	100.0	6.5	8.2	66.7	16.4	2.3	-
외식산업(매입량)	171	171	5	13	46	16	91	-
” (매입량비율)		100.0	2.9	7.6	26.8	9.2	53.5	-
일반식당	42	100.0	0.5	9.1	28.5	5.4	56.5	-
일본요리점	32	100.0	0.9	8.4	21.0	9.0	60.8	-
서양요리점	10	100.0	3.6	4.4	26.8	12.9	52.3	-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61	100.0	1.7	6.8	21.2	11.5	58.8	-
불고기가게	14	100.0	22.1	8.2	60.8	3.9	5.0	-
기타일반 음식점	13	100.0	0.1	6.1	26.3	13.6	53.9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수입 돼지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자사 직접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수입 상사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매입량)	576	576	48	243	123	156	8
”(매입량비율)		100.0	8.3	42.1	21.3	27.0	1.3
축산식품제조업	546	100.0	7.9	43.8	21.0	25.9	1.3
냉동조리식품제조업	15	100.0	32.2	15.7	28.8	23.4	-
반찬제조업	2	100.0	1.1	42.5	40.2	16.1	0.1
기타식품제조업	13	100.0	-	0.1	20.9	77.5	1.5
식품도매업(매입량)	1,215	1,215	434	412	343	25	0
”(매입량비율)		100.0	35.7	34.0	28.3	2.1	0.0
도매시장	31	100.0	-	23.2	76.8	-	-
기타도매업	1,184	100.0	36.6	34.2	27.0	2.1	0.0
식품소매업(매입량)	115	115	9	21	66	15	3
”(매입량비율)		100.0	8.1	18.4	57.7	13.5	2.3
백화점·종합슈퍼	30	100.0	14.0	6.6	41.7	30.6	7.1
각종식품소매업	39	100.0	2.0	7.3	83.6	6.2	0.9
식육소매업	21	100.0	20.3	3.4	72.1	4.1	0.1
기타음식료품소매업	25	100.0	-	63.4	23.9	12.2	0.5
외식산업(매입량)	85	85	3	4	39	20	20
”(매입량비율)		100.0	3.1	4.4	45.6	23.6	23.2
일반식당	22	100.0	2.4	3.1	46.6	14.4	33.4
일본요리점	21	100.0	5.4	7.4	24.9	54.5	7.8
서양요리점	5	100.0	0.9	0.3	48.5	21.5	28.8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27	100.0	2.2	2.5	61.5	8.8	25.0
불고기가게	4	100.0	-	4.4	68.4	15.4	11.8
기타일반 음식점	5	100.0	5.7	11.2	25.6	21.8	35.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쇠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농협·경제 연합회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 비육
				도매 시장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매입량)	200	200	108	27	27	30	0	9
” (매입량비율)		100.0	53.8	13.3	13.7	14.9	0.0	4.4
축산식품제조업	189	100.0	56.4	14.0	13.5	11.4	-	4.7
냉동조리식품제조업	8	100.0	14.7	-	14.3	71.0	-	-
기타식품제조업	4	100.0	-	2.5	18.9	76.7	1.9	-
식품도매업	728	728	361	134	159	73	1	1
” (매입량비율)		100.0	49.5	18.3	21.8	10.0	0.2	0.1
도매시장	192	100.0	99.0	0.2	0.5	0.2	0.1	-
기타도매업	537	100.0	31.9	24.8	29.5	13.5	0.2	0.2
식품소매업(매입량)	300	300	40	47	147	47	13	6
” (매입량비율)		100.0	13.3	15.7	49.1	15.7	4.4	1.9
백화점·종합슈퍼	39	100.0	11.4	10.4	30.1	32.0	16.2	-
각종식품소매업	138	100.0	19.7	7.5	52.2	18.2	2.5	-
식육소매업	81	100.0	7.8	38.2	42.9	1.4	2.8	6.9
기타음식료품소매업	41	100.0	4.5	3.9	69.1	19.9	2.6	-
외식산업(매입량)	107	107	6	15	52	8	25	0
” (매입량비율)		100.0	5.5	14.0	49.0	7.8	23.4	0.4
일반식당	8	100.0	7.5	7.8	12.2	5.4	61.4	5.7
일본요리점	5	100.0	0.4	3.1	43.2	32.3	21.0	-
서양요리점	19	100.0	3.5	12.9	52.5	5.8	25.2	-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7	100.0	-	5.1	17.0	5.5	72.4	-
불고기가게	65	100.0	7.0	17.0	57.4	5.8	12.6	-
기타일반 음식점	3	100.0	0.0	11.5	18.4	32.2	37.9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수입 최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자사 직접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수입 상사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매입량)	180	180	13	77	31	57	3
" (매입량비율)		100.0	7.1	42.4	17.4	31.6	1.5
축산식품제조업	127	100.0	8.8	47.5	21.0	20.6	2.0
냉동조리식품제조업	19	100.0	8.1	80.8	6.0	5.0	0.1
기타식품제조업	1	100.0	-	-	50.4	40.6	9.0
식품도매업	33	100.0	-	1.1	9.6	89.2	0.2
" (매입량비율)	722	722	402	151	145	25	0
도매시장		100.0	55.6	20.9	20.0	3.4	0.0
기타도매업	5	100.0	-	23.9	76.1	-	-
식품소매업(매입량)	718	100.0	56.0	20.9	19.7	3.5	0.0
" (매입량비율)	100	100	8	9	63	19	2
백화점·종합슈퍼		100.0	8.0	9.0	62.5	18.5	1.9
각종식품소매업	22	100.0	16.2	6.0	35.0	35.2	7.6
식육소매업	37	100.0	3.6	6.7	77.9	11.4	0.4
기타음식료품소매업	25	100.0	12.4	1.9	83.5	2.1	0.1
외식산업(매입량)	16	100.0	-	29.6	33.0	37.1	0.3
" (매입량비율)	88	88	2	4	55	11	16
일반식당		100.0	1.8	4.5	62.6	12.6	18.4
일본요리점	16	100.0	3.3	3.9	42.8	24.4	25.7
서양요리점	4	100.0	11.4	4.0	37.4	15.0	32.2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42	100.0	0.1	1.9	73.0	9.0	16.0
불고기가게	3	100.0	-	7.9	40.5	6.8	44.8
기타일반 음식점	21	100.0	-	4.3	70.4	12.6	12.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닭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농협·경제 연합회 등	식품 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자사비육
식품제조업(매입량)	794	794	513	130	140	1	10
" (매입량비율)		100.0	64.6	16.4	17.6	0.1	1.2
축산식품제조업	747	100.0	66.9	15.9	15.9	0.0	1.3
냉동조리식품제조업	36	100.0	34.5	16.6	48.7	0.1	-
반찬제조업	5	100.0	17.6	50.4	29.0	3.0	-
기타식품제조업	6	100.0	0.0	57.8	34.1	8.0	-
식품도매업(매입량)	1,428	1,428	535	586	297	1	9
" (매입량비율)		100.0	37.5	41.0	20.8	0.0	0.6
식품소매업(매입량)	510	510	73	302	107	28	1
" (매입량비율)		100.0	14.3	59.2	20.9	5.5	0.2
백화점·종합슈퍼	96	100.0	6.9	33.2	45.2	14.7	-
각종식품소매업	241	100.0	20.8	56.0	19.5	3.8	-
식육소매업	82	100.0	10.9	79.5	4.0	4.5	1.2
기타음식료품소매업	91	100.0	7.8	76.9	14.1	1.2	-
외식산업(매입량)	87	87	3	29	16	39	0
" (매입량비율)		100.0	3.7	33.6	18.1	44.5	0.1
일반식당	20	100.0	10.0	44.4	7.7	37.7	0.2
일본요리점	10	100.0	0.0	51.6	16.0	32.3	-
서양요리점	9	100.0	3.6	36.6	7.3	52.5	-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21	100.0	3.1	28.2	6.5	62.3	-
불고기가게	7	100.0	2.9	56.5	29.2	11.4	-
기타일반 음식점	19	100.0	0.0	8.3	43.7	48.0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수입 닭고기】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업종	매입량	계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자사 직접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수입 상사	기타 도매업		
식품제조업(매입량)	76	76	5	30	19	20	1
”(매입량비율)		100.0	6.5	39.7	25.6	26.4	1.8
축산식품제조업	40	100.0	1.9	64.3	24.3	6.9	2.6
냉동조리식품제조업	7	100.0	57.7	16.0	9.7	16.7	-
반찬제조업	7	100.0	0.5	38.8	47.9	11.7	1.0
기타식품제조업	22	100.0	-	1.9	26.0	70.8	1.4
식품도매업(매입량)	581	581	230	217	125	9	0
”(매입량비율)		100.0	39.6	37.3	21.5	1.6	0.0
식품소매업(매입량)	45	45	1	16	23	5	1
”(매입량비율)		100.0	2.0	34.7	50.5	10.5	2.3
백화점·종합슈퍼	7	100.0	8.1	10.1	35.8	36.3	9.7
각종식품소매업	13	100.0	0.3	1.6	85.0	10.6	2.6
식육소매업	7	100.0	4.4	10.1	78.4	6.5	0.6
기타음식료품소매업	18	100.0	-	79.4	18.2	2.3	0.0
외식산업(매입량)	42	42	3	3	20	5	12
”(매입량비율)		100.0	7.9	6.3	47.1	11.2	27.5
일반식당	21	100.0	4.5	8.5	52.9	9.6	24.6
일본요리점	3	100.0	1.4	4.4	36.9	2.0	55.3
서양요리점	6	100.0	5.8	10.1	34.6	12.8	36.7
중화요리점· 동양요리점	10	100.0	15.4	1.9	41.4	16.3	25.0
불고기가게	2	100.0	-	-	87.8	0.8	11.4
기타일반 음식점	2	100.0	36.3	-	27.5	24.2	11.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5년 기준

2-1-3. 수산물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어협 등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산지 도매 시장, 도매 업자	도매시장		상사	기타 도매업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 계	3,433	3,433	593	1,767	179	55	318	149	350	16	
축산식품제조업	1	100.0	23.1	56.6	-	-	4.6	11.0	4.8	-	
수산식품제조업	3,268	100.0	17.5	53.1	5.0	1.4	8.8	4.0	9.5	0.5	
조미료제조업	13	100.0	0.2	59.2	0.0	0.1	7.1	8.9	24.4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112	100.0	16.4	19.9	14.5	0.0	20.9	5.8	22.4	-	
반찬제조업	4	100.0	4.4	28.2	7.0	5.4	22.0	10.0	22.7	0.2	
기타식품제조업	34	100.0	8.3	0.1	1.2	28.5	9.8	26.2	25.9	0.2	
기타	1	100.0	0.9	-	1.7	-	30.4	52.6	14.4	-	
식품도매업 계	11,513	11,513	5,471	2,843	1,859	199	305	480	352	2	
도매시장내도매업자 (산지)	4,944	100.0	89.6	10.2	0.1	-	-	0.0	0.0	-	
도매시장내도매업자 (소비자)	2,150	100.0	29.2	40.6	4.0	4.5	3.7	11.1	6.9	-	
도매시장내 중도업자	1,555	100.0	1.6	1.9	93.2	1.4	0.2	1.6	0.1	-	
기타도매업	2,863	100.0	13.5	50.1	11.2	2.8	7.7	7.5	7.0	0.1	
식품소매업 계	1,382	1,382	101	204	291	624	38	67	51	6	
백화점·종합슈퍼	313	100.0	5.3	12.6	11.9	44.0	6.5	10.0	9.2	0.6	
각종식품소매업	529	100.0	2.3	14.2	26.0	48.3	2.7	3.7	2.5	0.3	
선어소매업	348	100.0	16.0	18.5	19.9	42.8	0.3	1.8	0.5	0.3	
건어물소매업	30	100.0	21.6	28.4	13.6	16.4	2.3	8.4	9.2	0.1	
편의점	1	100.0	-	2.1	8.4	63.7	-	16.7	0.4	8.6	
기타음식료품소매업	161	100.0	6.1	10.3	26.7	47.8	1.0	4.7	2.9	0.5	
외식산업 계	273	273	14	12	31	122	8	29	7	50	
일반식당	40	100.0	5.4	4.8	10.0	27.0	1.0	15.9	2.2	33.7	
일본요리점	88	100.0	5.9	5.6	14.6	44.3	0.6	11.0	1.5	16.4	
서양요리점	9	100.0	2.2	5.1	12.2	25.0	1.6	17.2	1.8	34.9	
중화요리점	9	100.0	0.3	4.7	4.0	29.5	8.2	20.1	4.0	29.1	
불고기점	2	100.0	0.3	2.0	12.5	19.4	1.4	31.3	10.0	23.1	
초밥가게	114	100.0	5.0	3.4	10.9	56.6	4.5	5.9	1.5	12.1	
오코노미야키가게	5	100.0	1.6	2.2	1.9	21.9	-	14.0	34.0	24.3	
기타	5	100.0	5.2	11.7	1.8	18.1	16.2	26.2	14.0	6.9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4년 기준

[수입 수산물/신선·냉장·냉동·염장]

단위: 매입량 - 천 t, 비율 - %

업종(소분류)	매입량	매입처별 매입량 비율									
		계	자사 직접 수입	식품도매업						식품 제조업	식품 소매업
				산지 도매 시장, 도매 업자	도매시장		상사	기타 도매업			
					도매업	중도업					
식품제조업 계	578	578	54	139	44	17	250	46	28	0	
수산식품제조업	497	100.0	7.4	26.6	8.7	3.3	41.1	8.5	4.3	-	
채소·과실 통조림 농산보존식품제조업	2	100.0	-	-	-	-	57.4	42.6	-	-	
조미료제조업	3	100.0	15.7	-	0.5	6.8	59.9	17.1	-	-	
냉동조리식품제조업	58	100.0	17.9	9.9	-	0.5	64.5	1.7	5.4	0.0	
반찬제조업	5	100.0	-	-	1.8	0.1	39.5	4.6	53.9	0.0	
기타식품제조업	12	100.0	57.3	4.0	1.7	3.0	24.7	5.2	4.2	0.0	
기타	1	100.0	-	-	-	-	87.2	10.1	2.6	0.1	
식품도매업 계	2943	2943	774	107	430	88	1160	253	130	1	
도매시장내도매업자 (산지)	335	100.0	-	-	0.4	-	99.5	0.0	0.0	-	
도매시장내도매업자 (소비자)	735	100.0	10.7	9.5	5.1	8.1	41.3	17.3	8.0	-	
도매시장내 중도업자	250	100.0	0.1	0.7	91.1	1.8	5.0	1.0	0.2	-	
기타도매업	1622	100.0	42.9	2.2	10.1	1.4	31.4	7.6	4.3	0.1	
식품소매업 계	528	528	19	38	111	163	104	48	40	5	
백화점·종합슈퍼	171	100.0	8.8	15.3	8.8	15.4	25.4	9.6	14.7	2.0	
각종식품소매업	189	100.0	1.2	1.1	25.9	44.0	10.1	11.8	5.8	0.1	
선어소매업	98	100.0	0.3	5.7	26.0	24.9	36.5	5.3	0.7	0.6	
건어물소매업	13	100.0	13.4	0.3	65.3	2.7	5.0	7.9	5.5	0.0	
기타	58	100.0	-	6.7	22.6	49.5	9.5	5.4	5.2	1.1	
외식산업 계	116	116	1	2	12	32	18	25	6	20	
일반식당	19	100.0	0.7	3.8	6.9	15.4	8.8	28.8	4.1	31.4	
일본요리점	27	100.0	0.2	1.5	22.8	34.6	6.7	18.7	1.5	14.1	
서양요리점	9	100.0	3.0	0.0	4.2	13.6	8.4	41.4	3.7	25.7	
중화요리점	13	100.0	0.6	0.3	9.6	15.7	12.8	25.3	0.5	35.2	
불고기점	1	100.0	10.2	1.1	17.3	6.1	2.8	28.1	13.7	20.8	
동양요리점	1	100.0	-	0.2	-	16.1	-	25.9	-	57.7	
초밥가게	41	100.0	-	3.0	4.6	37.4	27.0	17.0	5.8	5.3	
오코노미야키가게	4	100.0	0.7	0.1	2.0	27.8	0.3	11.4	43.3	14.5	
기타 음식점	3	100.0	-	-	21.0	4.8	52.1	5.5	-	16.6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식품유통구조조사', 2004년 기준

2-2. 주요 품목별 판매동향

2-2-1.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식품판매금액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자판금액			보급대수 (각해 12월말 시점)
		음료	식품	
2002	69,799	27,652	1,055	55,247
2003	69,427	27,356	963	55,206
2004	69,234	27,402	915	55,481
2005	69,943	27,771	779	55,822
2006	68,303	27,302	780	55,157

자료원: 일본 자동판매기 공업회 조사

2-2-2. 통신판매 매상액 추이

단위: 억 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매상액	24,900	26,300	27,900	30,400	33,600

자료원: 일본 통신판매협회 조사

2-2-3. 주요 채소 판매동향

구분		국산 표준품과 수입품						
		국산 표준품		수입품		비율		병렬판매점 점포수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엔/kg	kg	엔/kg	kg	%	%	점
당근	2006	351	16	236	21	67	131	14
	2005	332	18	189	30	57	170	39
우엉	2006	700	7	344	4	49	62	120
	2005	592	4	249	6	42	142	58
파	2006	532	14	372	10	70	75	145
	2005	530	21	304	11	57	53	200
브로콜리	2006	674	12	459	13	68	104	349
	2005	683	10	419	17	61	166	389
호박	2006	484	14	325	21	67	151	112
	2005	452	19	266	25	59	136	78
방울 토마토	2006	1037	1	671	3	65	236	24
	2005	1053	2	752	4	71	170	20
토란	2006	543	5	218	10	40	193	32
	2005	459	3	196	9	43	333	9
양파	2006	216	73	219	18	101	25	75
	2005	204	105	213	39	105	37	49
마늘	2006	2428	1	601	2	25	156	620
	2005	2187	2	550	2	25	135	496
생강	2006	1188	4	725	4	61	93	362
	2005	1159	4	682	4	59	99	296
생표고 버섯	2006	1716	5	862	5	50	109	349
	2005	1748	5	839	5	48	101	33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신선식품가격·판매동향조사보고'

3. 유통경로별 비용

3-1. 청과물

단위: 금액-엔/100kg, 비율-%

구분	판매가격	집출하 · 판매경비			생산자 수취가격	선별, 포장을 행한 비율(복수회답)		
		계	집출하 경비	판매 경비		생산자	집출하 단계	
							기계선	수선
청과물평균	17,137	7,204	4,237	2,966	11,465	64	44	22
채소평균	13,595	6,299	3,624	2,674	8,648	68	42	17
무	8,307	4,913	3,102	1,811	4,767	80	20	10
당근	11,141	5,892	2,935	2,957	6,111	60	60	10
배추	4,244	2,720	1,564	1,157	2,105	100	-	-
양배추	6,534	3,803	2,137	1,666	3,590	100	-	-
시금치	45,415	43,431	36,147	7,284	29,260	100	-	-
과	38,102	19,200	12,794	6,407	26,213	90	10	10
가지	33,255	12,799	7,595	5,204	23,032	50	60	50
토마토	29,235	10,068	5,522	4,546	19,457	40	90	-
오이	25,559	11,382	7,286	4,096	18,527	70	70	30
피망	37,940	10,283	4,573	5,710	28,781	22	89	33
토란	24,271	8,162	4,357	3,805	17,032	50	60	10
양파	8,200	3,492	1,514	1,978	4,793	40	90	10
양상추	14,684	8,720	5,506	3,214	8,233	100	10	-
감자	12,534	4,815	2,152	2,663	7,775	20	100	20
아스파라거스	97,435	31,093	18,102	12,990	68,997	30	50	60
호박	17,867	6,272	2,697	3,575	12,237	60	60	20
브로콜리	27,358	12,964	8,607	4,357	18,162	100	10	10
마늘	96,313	45,376	34,289	11,086	74,747	70	10	40
생표고버섯	101,332	41,053	27,429	13,624	75,013	100	10	10
과실평균	40,208	13,099	8,230	4,869	29,811	53	52	38
딸기	100,379	34,547	23,420	11,127	79,210	100	-	50
메론	72,647	25,468	17,949	7,518	57,657	60	20	40
귤	28,089	6,862	3,192	3,670	21,230	20	100	10
사과	24,942	10,374	7,134	3,240	14,575	10	100	20
포도	52,765	18,094	11,201	6,893	39,803	100	-	80
배	27,347	9,703	6,033	3,670	18,508	30	90	3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3-2. 수산물

3-2-1. 산지도매업자 유통경비

단위: 금액-천 엔

구분	산지도매경비							
	계	포장재료비	출하 운송료	감가 상각비	집하비	보관료	판매관리비	
							소계	차지료
업자 평균	397,702	4,326	3,190	11,869	3,669	20,348	324,356	20,205

(다음 표에 계속)

구분	산지도매경비				산지 도매가격	산지 도매수입	(참고) 도매 수수료율
	판매관리비		자본이자	교부금			
	인건비	1)기타					
업자 평균	201,032	103,119	5,924	24,020	10,003,045	399,634	-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4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주: 1)은 견적지대, 사무비, 업무운영비, 시설비, 수도광열비, 조세, 폐기처분비, 잡화에 해당한다.

3-2-2. 산지출하업자 유통경비

단위: 금액-천 엔

구분	산지출하경비						
	계	판매경비				관리경비	
		소계	지불운임	포장재료비	1)기타	소계	복리후생비
업자 평균	384,075	187,552	81,334	49,421	56,797	88,765	10,999

(다음 표에 계속)

구분	산지출하경비					3)매입 금액	4)판매 수입
	관리경비		독립결산 시설경비	급료수당	자본이자		
	감가 상각비	2)기타					
업자 평균	13,229	64,527	10,142	93,286	4,330	1,593,385	1,982,148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4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주: 1)은 도매수수료, 보관료, 차량연료비, 거래통신비, 광고선전비, 상품폐기처분비에 해당

주: 2)는 지불지대, 임대료, 견적지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지불이자, 조세 및 부담금, 소모품비, 손해보험료, 집대교제비, 잡화에 해당

주: 3)은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매입금액

주: 4)는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판매금액에 완납장려금 및 출하장려금을 더한 금액

3-2-3. 중도업자 유통경비

단위: 금액-천 엔

구분	중도경비						
	계	판매경비				관리경비	
		소계	지불운임	포장재료비	1)기타	소계	복리후생비
업자 평균	124,801	17,851	6,203	2,912	8,736	35,743	7,698

(다음 표에 계속)

구분	중도경비					3)매입 금액	4)판매 수입
	관리경비		독립결산 시설경비	급료수당	자본이자		
	임대료	2)기타					
업자 평균	2,810	25,235	3,090	67,549	568	792,320	902,783

자료원: 농림수산물성 통계부 '2004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주: 1)은 보관료, 차량연료비, 거래통신비, 거래교통비, 광고선전비, 상품폐기처분비에 해당

주: 2)는 감가상각비, 지불지대, 견적지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지불이자, 조세 및 부담금, 소모품비, 손해보험료, 접대교제비, 시장사용료, 잡비에 해당

주: 3)은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매입금액

주: 4)는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판매금액에 완납장려금을 더한 금액

3-2-4. 소매업자 유통경비

단위: 금액-천 엔

구분	소매경비						
	계	판매경비				관리경비	
		소계	지불운임	광고선전비	1)기타	소계	임대료
업자 평균	18,484	1,738	397	277	1,064	6,905	1,308

(다음 표에 계속)

구분	소매경비					3)매입 금액	4)판매 수입
	관리경비		독립결산 시설경비	급료수당	자본이자		
	지불지대	2)기타					
업자 평균	451	5,146	190	9,411	240	40,774	61,979

자료원: 농림수산물성 통계부 '2004년 식품유통단계별가격형성조사'

주: 1)은 보관료, 차량연료비, 거래통신비, 거래교통비, 포장재료비, 상품폐기처분비에 해당

주: 2)는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견적지대, 수선비, 수도광열비, 지불이자, 조세 및 부담금, 소모품비, 손해보험료, 접대교제비, 잡화에 해당

주: 3)은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매입금액

주: 4)는 점포에서 취급하는 수산물의 판매금액에 완납장려금을 더한 금액

4. 해외진출기업의 식품산업 활동실태

4-1. 현지법인 대상액

단위: 백 만엔

구분	대상액	식품부문			
		대상액	對일본 수출액	현지 판매액	對제3국가 수출액
	(사)				
집계대상현지법인수	325	307		282	
업종별계	3,555,640	1,202,201	144,346	757,346	89,002
식료품제조업	715,168	620,961	126,180	411,650	73,557
식료제조업	218,660	215,393	3,683	209,446	2,264
도매업	2,095,314	256,457	14,117	27,408	13,181
소매업	504,425	95,526	X	X	-
외식산업·숙박업·기타	22,073	13,864	X	X	-
국가별 지역별계	3,555,640	1,202,201	144,346	757,346	89,002
중국	937,465	515,792	64,680	418,739	8,900
홍콩	448,042	310,807	X	309,970	X
대만	768,759	196,725	X	35,537	X
한국	464,625	177,801	X	176,965	X
싱가포르	423,674	76,047	25,420	20,130	30,497
말레이시아	94,692	40,844	X	27,563	X
타이	537,007	133,209	40,415	45,333	36,326
인도네시아	150,395	X	X	12,745	X
필리핀	41,401	27,904	X	19,299	X
베트남	13,607	X	X	1,035	X
라오스	-	-	-	-	-
캄보디아	-	-	-	-	-
미얀마	-	-	-	-	-
브루나이	-	-	-	-	-
인도	124,015	X	-	-	-
ASEAN 5	837,102	230,458	53,856	105,975	49,218
NIES 3	1,657,058	450,573	25,810	232,632	30,884
LDC	-	-	-	-	-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2007년 기준

4-2. 현지법인 식품매상액 규모별 법인 수

단위: 사

구분	계	1억엔 미만	1~10	10~100	100억엔 이상	불명
업종별계	336	48	131	109	19	29
식료품제조업	188	12	93	58	12	13
식료제조업	34	5	9	15	X	X
도매업	61	19	14	20	X	X
소매업	29	X	8	11	X	4
외식산업·숙박업·기타	24	X	7	5	-	X
국가·지역별계	336	48	131	109	19	29
중국	183	31	89	46	6	11
홍콩	16	5	X	5	X	-
대만	27	X	9	12	X	X
한국	9	3	X	X	3	-
싱가포르	19	X	X	X	X	X
말레이시아	9	X	X	X	X	X
타이	55	4	17	27	X	X
인도네시아	13	X	X	7	-	X
필리핀	X	X	-	X	X	X
베트남	10	X	6	-	-	X
라오스	-	-	-	-	-	-
캄보디아	-	-	-	-	-	-
미얀마	-	-	-	-	-	-
브루나이	-	-	-	-	-	-
인도	X	-	-	X	-	X
ASEAN 5	95	11	27	40	6	11
NIES 3	55	6	15	22	7	5
LDC	-	-	-	-	-	-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2007년 기준

4-3. 현지법인의 총 매출액 규모별 법인 수

단위: 사

구분	계	1억엔 미만	1~10	10~100	100억엔 이상	불명
업종별계	336	35	137	111	42	11
식료품제조업	188	13	94	62	15	4
식료제조업	34	X	9	16	X	3
도매업	61	X	18	19	16	X
소매업	29	X	6	8	X	X
외식산업·숙박업·기타	24	X	10	6	-	X
국가·지역별계	336	35	137	111	42	11
중국	183	27	92	46	12	6
홍콩	16	X	6	6	X	-
대만	27	X	9	13	X	-
한국	9	X	X	X	X	-
싱가포르	19	-	X	X	7	-
말레이시아	9	X	X	X	3	X
타이	55	X	17	27	7	X
인도네시아	13	X	X	7	X	X
필리핀	X	-	X	X	X	-
베트남	10	X	7	-	X	X
라오스	-	-	-	-	-	-
캄보디아	-	-	-	-	-	-
미얀마	-	-	-	-	-	-
브루나이	-	-	-	-	-	-
인도	X	-	X	-	X	X
ASEAN 5	95	X	29	42	14	X
NIES 3	55	X	15	23	X	-
LDC	-	-	-	-	-	-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2007년 기준

4-4. 현지법인의 일본측 출자비율별 법인 수

단위: 사

구분	계	25%미만	25~50	50~75	75~100	100%
업종별계	336	11	73	76	50	126
식료품제조업	188	8	47	45	26	62
식료제조업	34	-	7	10	8	9
도매업	61	X	6	6	X	41
소매업	29	X	10	8	X	5
외식산업·숙박산업·기타	24	-	3	7	5	9
국가·지역별계	336	11	73	76	50	126
중국	183	X	30	45	X	82
홍콩	16	X	X	X	X	10
대만	27	-	7	5	7	8
한국	9	-	X	X	-	3
싱가포르	19	-	X	X	-	16
말레이시아	9	-	X	4	X	X
타이	55	4	22	10	12	7
인도네시아	13	X	3	3	4	X
필리핀	X	X	4	-	X	X
베트남	10	X	X	3	X	4
라오스	-	-	-	-	-	-
캄보디아	-	-	-	-	-	-
미얀마	-	-	-	-	-	-
브루나이	-	-	-	-	-	-
인도	X	X	-	X	-	X
ASEAN 5	95	X	32	20	20	X
NIES 3	55	-	11	10	7	27
LDC	-	-	-	-	-	-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2007년 기준

4-5. 현지법인의 상시종업자수 규모별 법인 수

단위: 사

구분	계	50명 미만	50~ 100	100~ 300	300~ 500	500~ 1000	1000명 이상	불명
업종별계	336	107	56	75	X	36	34	X
식품제조업	188	39	34	56	X	25	18	X
식료제조업	34	9	4	8	6	X	X	-
도매업	61	42	12	3	X	X	-	-
소매업	29	7	3	4	X	4	9	X
외식산업·숙박업·기타	24	10	3	4	X	3	X	-
국가·지역별계	336	107	56	75	X	36	34	X
중국	183	64	33	42	14	16	X	X
홍콩	16	11	X	X	X	-	X	-
대만	27	8	6	X	X	X	X	-
한국	9	3	X	-	-	X	3	-
싱가포르	19	10	X	5	X	-	X	-
말레이시아	9	X	X	X	X	-	X	X
타이	55	13	X	17	X	9	8	-
인도네시아	13	X	X	4	X	X	3	-
필리핀	X	3	X	X	-	X	-	-
베트남	10	X	4	X	-	X	X	-
라오스	-	-	-	-	-	-	-	-
캄보디아	-	-	-	-	-	-	-	-
미얀마	-	-	-	-	-	-	-	-
브루나이	-	-	-	-	-	-	-	-
인도	X	X	X	-	-	-	-	-
ASEAN 5	95	20	12	25	X	15	14	X
NIES 3	55	21	10	X	X	5	7	-
LDC	-	-	-	-	-	-	-	-

자료원: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2007년 기준

5. 식품 안전

5-1. HACCP

5-1-1. HACCP에 의한 식품안전성 확보

단위: %

구분	회답 기업수	계	도입완료			도입 도중	도입 검토중	도입 예정 없음	HACCP에 대한 이해부족
			소계	모든공장 도입완료	일부공장 도입중				
	사								
계	1,682	100.0	10.6	5.6	5.0	4.0	27.9	37.8	19.7
업종별									
축산식품 제조업	192	100.0	25.2	17.8	7.4	8.6	31.0	22.0	13.1
유제품 제조업	52	100.0	39.6	32.5	7.1	10.6	35.9	10.9	3.0
기타축산식품 제조업	140	100.0	20.0	12.5	7.5	8.0	29.3	26.0	16.7
수산식품 제조업	363	100.0	9.5	4.3	5.2	5.0	27.1	40.8	17.8
채소·과일통조림 농산보조식품제조업	125	100.0	7.4	4.9	2.5	3.5	39.7	36.6	12.8
조미료·제분·유지 제조업	153	100.0	13.7	5.9	7.8	2.5	31.1	42.4	10.3
빵·과자 제조업	216	100.0	8.3	4.7	3.6	3.3	23.3	40.7	24.3
기타식품 제조업	452	100.0	10.6	4.5	6.1	3.7	27.8	39.1	18.9
청량음료·주류 제조업	181	100.0	6.4	4.1	2.3	2.3	24.8	31.2	35.3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 식품산업동향조사보고', 2006년 기준

5-1-2. HACCP 도입시기

단위: %

구분	회담 기업수	계	도입 완료	도입예정(도입완료까지의 예정시기)					도입 예정 없음
				소계	1년 이상	1~3년 이상	3~5년 이상	5년이후 (시기미정)	
	(기업)								
축산식료품계	236	100.0	23.5	40.3	2.1	12.9	9.6	15.7	36.4
수산식료품계	622	100.0	7.8	33.7	1.6	6.0	8.6	17.5	58.5
농산보존식료품계	204	100.0	7.3	42.5	1.7	9.1	8.7	23.0	50.3
조미료계	228	100.0	10.9	34.4	1.3	8.0	4.0	21.1	54.7
당류	9	100.0	9.0	32.1	-	-	19.6	12.5	58.9
정곡·제분	44	100.0	4.1	54.6	1.7	9.5	18.4	25.0	41.3
빵류	75	100.0	12.4	19.7	1.6	4.9	3.7	9.5	67.9
과자류	224	100.0	7.0	31.2	1.2	6.8	8.4	14.8	61.9
동식물유지	13	100.0	20.0	45.3	-	19.0	-	26.3	34.8
면류	152	100.0	7.5	37.1	2.5	3.8	9.7	21.1	55.5
두부·유부	64	100.0	7.4	19.8	-	1.9	2.8	15.1	72.7
냉동조리식품	83	100.0	12.5	46.4	0.9	12.1	13.7	19.7	41.2
반찬	173	100.0	12.6	34.7	1.3	7.6	7.8	18.0	52.8
도시락	76	100.0	13.5	28.8	0.9	4.6	13.8	9.5	57.8
기타식료품	234	100.0	9.3	35.8	1.5	5.8	10.2	18.3	55.0
청량음료	81	100.0	15.7	37.4	4.7	8.8	7.7	16.2	46.8
주류	111	100.0	1.4	25.1	-	5.1	6.5	13.5	73.6
차·커피	63	100.0	6.7	29.4	-	3.3	7.0	19.1	64.0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6년 식품산업동향조사보고'

5-2. 트래서빌리티 시스템 도입상황

단위: %

구분	회답 기업수	계	식품에 대한 트래서빌리티 시스템 도입 완료						트래서빌 리티시스 템미도입
			모든 식품에 도입			일부 식품에 도입			
			IT기기활용		IT기기 미활용	IT기기활용		IT기기 미활용	
			다양한 용도에 이용	트래서빌 리티에 한해 이용		다양한용 도에 이용	트래서빌 리티에 한해 이용		
식품 소매업계	2,085	100.0	9.2	0.6	10.3	6.0	0.5	16.9	56.6
각종상품 소매업	75	100.0	2.7	-	10.4	7.5	0.5	21.7	57.3
각종식료품 소매업	268	100.0	6.6	0.3	8.1	10.8	0.7	20.0	53.5
주류소매업	280	100.0	10.6	0.8	9.8	7.2	0.7	10.0	60.9
식육소매업	89	100.0	8.0	3.3	7.7	6.9	-	42.7	31.6
선어소매업	67	100.0	6.0	-	7.4	5.3	0.7	17.6	62.9
채소·과실 소매업	135	100.0	2.2	-	6.9	3.3	0.1	14.9	72.6
과자·빵 소매업	315	100.0	12.1	0.9	11.9	5.0	0.4	17.0	52.9
곡류소매업	131	100.0	4.7	1.7	11.2	7.5	0.2	23.9	50.8
기타음식료품 소매업	420	100.0	14.7	0.1	12.4	4.2	0.5	13.1	55.0
요리품 소매업	305	100.0	5.0	0.1	10.9	4.6	0.4	20.6	58.4

자료원: 농림수산성 통계부 '2007년 식품산업동향조사결과 개요', 2007년 기준

5-3. 식품에 관한 안심 · 불안감 관련 조사¹⁾

5-3-1. 농축수산물 · 수입농산물

단위: %

구분	농축수산물의 생산과정의 안전성						
	회답자수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응답
	명						
계	998	100	7	39	36	16	1
20대	86	100	8	41	27	21	3
30대	215	100	5	44	37	14	0
40대	215	100	6	37	39	18	-
50대	220	100	7	35	39	18	0
60대	184	100	10	37	35	15	2
70대 이상	78	100	12	40	32	10	6

(다음표에 계속)

구분	수입농산물, 수입원재료의 안전성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응답
계	100	1	8	37	53	1
20대	100	2	6	33	56	3
30대	100	-	9	42	49	-
40대	100	1	9	29	61	-
50대	100	-	7	33	60	-
60대	100	1	8	46	45	1
70대 이상	100	6	9	42	40	3

1) 2006년 3월에 식료품소비모니터(전국주요도시에 거주하는 일반 소비자) 1,021명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998명(회수율97.7%)으로부터 얻은 회답을 정리한 것임

5-3-2. 제조, 가공과정 · 유통과정

단위: %

구분	제조, 가공과정의 안전성						
	회답자수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회답
	명						
계	998	100	4	38	44	12	2
20대	86	100	6	43	38	10	2
30대	215	100	5	38	48	8	0
40대	215	100	4	38	40	16	1
50대	220	100	2	35	46	15	2
60대	184	100	5	37	46	10	2
70대 이상	78	100	5	45	36	9	5

(다음표에 계속)

구분	유통과정의 안전성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회답
계	100	7	51	32	8	2
20대	100	9	56	20	13	2
30대	100	8	58	28	6	1
40대	100	7	46	38	8	0
50대	100	5	50	34	10	1
60대	100	7	50	35	6	3
70대 이상	100	9	46	31	9	5

5-3-3. 소매점 · 외식점포 · 가정

단위: %

구분	소매점의 안전성						
	회답자수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회답
	명						
계	998	100	8	55	29	6	2
20대	86	100	13	60	20	5	2
30대	215	100	8	59	28	4	0
40대	215	100	7	55	31	6	0
50대	220	100	6	51	32	9	1
60대	184	100	7	56	27	6	4
70대 이상	78	100	12	50	27	5	6

(다음표에 계속)

구분	외식점포의 안전성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회답
계	100	4	28	45	22	2
20대	100	5	35	34	24	2
30대	100	4	32	44	20	-
40대	100	3	25	48	24	1
50대	100	2	25	46	26	1
60대	100	4	27	46	20	3
70대 이상	100	8	29	41	17	5

(다음표에 계속)

구분	가정에서의 식품 취급방법에 대한 안전성						
	회답자수	계	안심	다소안심	다소불안	불안	무회답
	명						
계	998	100	39	52	6	2	1
20대	86	100	31	58	6	2	2
30대	215	100	33	57	7	2	0
40대	215	100	36	55	6	2	-
50대	220	100	40	49	7	2	1
60대	184	100	47	45	5	1	2
70대 이상	78	100	46	44	4	-	6

6. 유기농산물의 인증·등급

6-1. 유기농산물 등 인증업자의 인증건수

단위: 사업체

구분	인증건수계	생산행정 관리자		소분 업자	수입 업자	농가
			유기농산물			
계	2,818	2,160	1,390	538	120	2,258
전국계	2,276	1,704	1,123	452	120	2,258
홋카이도	166	117	97	49	-	153
아오모리	8	8	7	-	-	53
이와테	20	19	16	1	-	38
미야기	56	52	49	3	1	148
아키타	44	39	35	5	-	113
야마가타	54	47	39	7	-	141
후쿠시마	44	38	34	6	-	76
이바라키	75	58	51	16	1	59
도치기	39	30	24	7	2	45
군마	41	37	23	4	-	47
사이타마	47	31	6	14	2	11
지바	47	39	23	6	2	11
도쿄	159	23	4	57	79	5
가나가와	49	20	8	24	5	33
니가타	131	117	111	14	-	219
도야마	21	16	11	5	-	20
이시카와	52	42	39	10	-	78
후쿠이	24	22	19	2	-	42
야마나시	13	13	12	-	-	12
나가노	54	53	35	1	-	57
기후	30	26	13	2	2	35
시즈오카	71	58	19	13	-	32
아이치	66	43	10	20	3	19
미에	36	31	14	5	-	31
시가	18	17	14	1	-	15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사업체

구분	인증건수계	생산행정 관리자		소분 업자	수입 업자	농가
			유기농산물			
교토	43	32	12	10	1	13
오사카	93	36	5	45	12	5
효고	108	70	31	33	5	31
나라	29	24	16	5	-	40
와카야마	24	20	12	4	-	37
돗토리	14	12	9	2	-	17
시마네	30	29	20	1	-	20
오카야마	7	6	4	1	-	4
히로시마	35	23	13	9	3	15
야마구치	5	3	2	2	-	2
도쿠시마	39	35	29	4	-	29
가가와	13	11	2	2	-	15
에히메	17	15	7	2	-	10
고치	6	5	2	-	1	50
후쿠오카	83	62	20	21	-	29
사가	43	40	21	3	-	56
나가사키	10	8	4	2	-	46
구마모토	134	123	104	11	-	122
오이타	10	8	1	1	1	1
미야자키	46	36	24	10	-	46
가고시마	112	101	71	11	-	91
오кина와	10	9	1	1	-	1
외국	542	456	267	86	-	-

자료원: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2007년 3월 31일 기준'

1. 품목별 개요

1-1. 산 동물

HS번호	품 목	관련법규
0101	살아있는 말, 당나귀, 노새, 포니	가축전염병예방법
0102	살아있는 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3	살아있는 돼지	가축전염병예방법
0104	살아있는 양, 염소	가축전염병예방법
0105	살아있는 가금	가축전염병예방법
0106	기타 살아있는 동물	가축전염병예방법 광견병예방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전염병 예방법

주1 : 01-06중 고래는 No.2 승인 또는 사전확인 필요

주2 : 01-06 (기타 살아있는 동물)에는 워싱턴조약으로 수입이 규제되어 있는 동물이 포함됨

주3 : 살아있는 어류는 03-01로 분류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동물검역

- ① 동물검역의 대상은 우제류 동물(소, 돼지, 양, 산양 등), 말, 닭, 메추라기, 칠면조, 집오리, 거위, 토끼, 개, 꿀벌임. 이를 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동물검역소에 신고해야 함
- ② 우제류 동물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외는 인정되지 않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 ③ 일본으로 수출되는 지정 검역물에는 수출국의 검사결과, 가축의 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④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축방역관에 의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확산 가능성 유무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함
- ⑤ 검사 결과, 지정검역물이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

□ 광견병예방법에 근거한 개 등의 수입검역

- ① 광견병예방법에 따르면 개 이외에 고양이, 미국너구리, 여우, 스컹크가 검역대상임
- ②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주사증명서의 첨부 필요
- ③ 수입금지지역의 지정은 없음. 단, 증명서의 내용이나 농림수산성장관이 지정하는 지역(11지역)등의 조건에 따라 계류기간이 달라짐.
주) 파충류, 어류 등은 동물검역 대상에서 제외

□ 워싱턴 조약에 지정되어 있는 동물의 수입

- ① 첨부자료 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멸종위기에 있는 동식물. 원칙적으로 상업거래는 금지되어 있음.
(오랑우탄, 자이언트팬더, 고릴라 등 약 900 종)
- ② 첨부자료 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국제거래를 엄격한 규제하에 두지 않으면 멸종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
상업거래가 가능.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과학당국의 조언을 얻어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 또한 경제산업성의 사전확인 필요.
(앵무새, 사자, 산호, 선인장 등 약 26,000종)
- ③ 첨부자료 I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수출국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특정국으로부터 특정 종을 수입 시).
기타지역은 원산지증명서[해마(캐나다), 하마(가나)등 약 300종]를 첨부해야 함. 상업거래는 가능
- ④ 첨부자료 II, III에 해당하는 종을 특정국으로부터 수입할 시는 해당국의 수출허가서만 필요,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또한 경제산업성의 사전확인 필요함
주) 워싱턴조약의 지정동물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공보(1998.3.31) 참조.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규제되어 있는 조수의 수입

① 대상이 되는 동물은 환경성령으로 정한 조수

- 조류 : 산새, 밀화부리, 피리새, 방울새, 검은머리방울새, 잣새, 노랑턱멧새, 무당새, 멧새, 종다리, 동박새, 곤줄박이, 북방쇠박새, 진박새, 노랑딱새, 딱새, 휘파람새, 개똥지빠귀, 진홍가슴, 울새, 쇠유리새 및 원앙(이상 살아있는 조류), 산새, 원앙새의 박제, 표본 및 새털제품
- 조수 : 여우, 너구리, 오소리, 담비, 족제비, 다람쥐, 하늘다람쥐, 영양(이상 살아있는 짐승)과 너구리 및 족제비, 다람쥐, 하늘다람쥐, 영양의 모피 및 그 제품

주) 조류의 알 : 종의 보호법 제4조제3호 제3항에 지정된 국내 희귀야생동물종(특정 국내희귀야생동물은 제외)이외의 모든 조류의 알을 수입할 경우에는 조수법에 근거한 수속은 필요 없으나 대신 종의 보존에 근거한 허가절차가 필요함

② 환경성령으로 지정된 위와 같은 조수(및 그 가공품)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국의 적법하게 포획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수출을 허가하는 내용의 증명서와 함께 수입해야 함. 단, 그런 제도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동물의 수입

① 2000년 1월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원숭이의 수입검역이 의무화되었음. 수입할 수 있는 원숭이는 시험연구용과 동물원전시용에 한함. 현행법에서 규제되는 전염병은 에보라 출혈열이나 마르부르크병으며,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가이아나, 수리남에 한함. 수입 시에는 에보라 출혈열 및 마르부르크병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수출국정부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함. 또한 2003년 10월에 SARS 및 천연두 등의 전염병을 예방법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과 동물유래전염병에 대해서 감염원에 해당하는 동물의 수입규제 등이 추가되었음

- ② 수입할 수 있는 장소는 나리타공항, 간사이국제공항의 2곳. 수입을 예정한 경우는 원숭이의 종류, 성별, 나이, 생산지, 탑승예정항공기, 도착일 및 기타사항을 첨부하여 도착예정일의 40일에서 70일전까지는 동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원숭이의 계류검사는 원칙적으로 30일간으로 도착 시에 항공기내에서 가축방역관에 의한 검사를 끝낸 후 동물검역소 시설에서 행해짐

- ③ 검역검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에보라 출혈열이나 마르부르크병이 발견되는 경우는 동물검역소장이 보건소를 경유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에 통지토록 되어 있음

□ 관련기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TEL : 03-3502-8111(代) <http://www.lin.lin.go.jp/maff/maff.htm>

- 광견병예방법 :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전염병과
TEL :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워싱턴조약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TEL :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가공품)무역심사과
(생사에 상관없이 가공되지 않은 것)무역심사과 농수산실
워싱턴조약 사무국 <http://www.cities.org/>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TEL : 03-3581-3351(代) <http://www.env.go.jp>

1-2. 육류 및 동 조제품

HS번호	품 목	관련법규
0201	쇠고기(신선, 냉장)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식품위생법 JSA법
0202	쇠고기(냉동)	
0203	돼지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4	양 또는 염소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5	말, 당나귀, 노새고기(신선, 냉장, 냉동)	
0206	식용설육(신선, 냉장, 냉동)	
0207	가금육, 설육(신선, 냉장, 냉동)	
0208	기타 육류, 설육(신선, 냉장, 냉동)	
0209	가금 및 돼지의 지방(신선, 냉장, 냉동, 염장등)	
0210	육류 및 설육(염장, 건조, 훈제 등)	
1601	소세지, 햄, 베이컨	
1602	기타 식육조제품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주1) 0210-90중 고래의 것은 No.2 승인 또는 사전확인 필요

주2) 필라프나 스투 등과 같은 육식과 채소, 곡물을 사용한 조제품은 『기타 식육조제품 (16-02)』으로 분류됨.

□ 동물검역

【육 및 식용설육】

- ① 대상이 되는 품목은 가축전염병예방방법으로 정한 우제류 동물의 육, 말, 가금 등의 육 및 내장임
- ② 법 제 43조에 명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함. 또한 철저한 가열처리를 한 식육에 대해서는 제 43조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가능
- ③ 육 또는 식용설육을 수입할 시는 수입검사신청서 및 수출국정부 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를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 ④ 수입금지품 여부 및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가축의 전염성질병 병원체를 확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 동물검역소로부터 수입검사증명서가 발행됨

【소시지 등의 식육조제품】

- ① 대상이 되는 품목은 가축전염병예방방법으로 정한 우제류 동물, 말, 가금의 육 및 내장을 사용한 조제품임
- ② 햄, 소시지, 베이컨에 대해서는 법 제 43조에 명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 및 제 43조의 표의 1지역(8지역)으로부터 수입 가능

【동물검역절차】

- ① 화물로 수입되는 식육 및 그 조제품은 수입자에 의해 수입검사 신청서 및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가 동물검역소에 제출되면 동물검역소나 항구, 공항내 지정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가 실시됨. 또한 해외여행객 등에 의해 휴대품으로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항내 동물검역카운터에서 검사가 실시됨
- ② 어느 경우든 수입금지품 여부 및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현물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가 축의 전염성질병 병원체를 확산시킬 염려가 없는 경우는 동물검역소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가 발행됨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검사절차

- ①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식육이나 그 조제품은 수입할 수 없음
- ② 식육 등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참조

□ 첨가물 등의 규제

- ①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되고 있음.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법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을 사용할 수 있음
- ② 식품첨가물은 ㉠사용대상식품이 한정되어 있는 것, ㉡사용목적 제한되어 있는 것,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됨

- ③ 첨가물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된 모든 식품첨가물을 표시해야 함
- ④ 또한 동법 제 11조에 따라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모두 식품명, 제조(수입)자명, 제조사(수입자) 소재지 이외에 제조년월일, 보존방법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료에 알리지물질이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표시 예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조

□ JAS 규격제도

【품질표시】

- 식육에 대해서는 품명, 원산국의 표시가, 또한 햄, 소세지 등의 식육조제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JAS마크의 부착】

-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의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통관 후에 JAS규격 부여단체에 신청하여 JAS마크의 부착하는 것은 가능. 단, 이 JAS마크의 부착여부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의향에 따르며 강제 규격은 아님

【생산정보공표 쇠고기의 JAS규격 구체화】

- 쇠고기와 관련해서는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의 종류·도살 날짜 등의 생산정보 제공 제도가 제정되어 있음. JAS규격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이 적용되는 국산 쇠고기에 대한 생산정보와 더불어 급이(給餌)정보, 동물용 의약품 투여정보 공표가 요구됨

- 인증생산행정관리자에 의한 생산정보 기록, 보관 및 공표
 - 농림수산장관이 등록한 제3자기관인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JAS법에 의거한 ‘인정생산행정관리자’로 인정받은 생산자 등은 JAS규격에 따라서 소마다 쇠고기의 생산정보를 기록·보관·공표하고 JAS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해야 함

- 인정소분류업자에 의한 생산정보공표쇠고기의 소분류 및 하구화(荷口化)
 - JAS법에 의거하여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소분류업자’로 인정받은 유통업자 등은 생산정보공표쇠고기를 소분류함과 동시에 소분류 과정에서 하구화(복수의 소로부터 얻어지는 쇠고기를 하나의 화구[20마리 이내]로 정리하는 것)함 소분류 및 하구화된 쇠고기는 하구에 생산정보를 공표하여 JAS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함
 - 소비자는 쇠고기의 생산정보공표JAS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 개체식별번호 또는 화구번호 등을 통해서, 또는 생산정보표시, FAX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생산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 아울러 2004년 6월 이후, 돼지고기와 관련해서도 생산정보공표 돼지고기의 JAS규격이 제정됨

- 유기JAS
 - 유기식육조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 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 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육 및 동 조제품의 성분규격

품명	기준
<p>〈식조란〉 살균액란(계란) 미살균액란(계란) (1)일반규격 〈식육제품〉 (2)개별기준 〈건조식육제품〉 〈비가열식육제품〉 〈특정가열식육제품〉 〈가열식육제품〉 용기 포장후 살균한 것 가열살균 후 포장용기에 넣은 것 고래고기 제품</p>	<p>살모넬라: 음성(25g 중, BPW와TT배지, RV배지에서 증균배양한 후 H2S생산에 의해 판별하는 배지(MLCB, DHL, XDL등) 및 H2L 비산생성으로서 살모넬라로 판별할 수 있는 배지 <BGS, BGM(개량 BGA), 런백배지, SNID등) 로 분리 배양하여 TSI배지, LI배지 또는 LIA배지에 접종하여 同定)</p> <p>세균수: 1,000,000/g 이하(표준평판배양법)</p> <p>아초산균 : 0.070g/kg 이하</p> <p>E.coli MPN치: 음성(0.1gx5 중, EC배지법) 수분활성 : 0.87 미만</p> <p>E. coli MPN치: 100/g(EC배지) 황색포도구균: 1,000/g 이하(난황가mannit 식염한천배지법) 살모넬라구균: 음성(25g중, EEM 부이온증균법+MLCB 또는 DHL 배지법)</p> <p>E. coli MPN치: 100/g(EC배지) 황색포도구균: 1,000/g 이하(난황가mannit 식염한천배지법) 클로스트리듐속균:1,000/g 이하(클로스트리듐배지법) 살모넬라구균: 음성(25g중, EEM 부이온증균법+MLCB 또는 DHL 배지법)</p> <p>대장균군: 음성(1gx3 중, B.G.L.B 배지법) 클로스트리듐속균:1,000/g 이하(클로스트리듐배지법) E.coli: 음성(0.1gx5 중, EC 배지법) 황색포도구균: 1,000/g 이하(난황가mannit 식염한천배지법) 살모넬라구균: 음성(25g중, EEM 부이온증균법+MLCB 또는 DHL 배지법)</p> <p>대장균군: 음성(1gx3 중, B. G. L .B 배지법) 아초산균: 0.070g/kg 이하(고래고기 베이컨)</p>

□ **관련기관, 단체**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TEL: 03-3502-8111(代) <http://www.lin.lin.go.jp/maff/maff.htm>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社)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社)일본식육가공협회
TEL: 03-3444-1211 <http://www.niku-kakou.or.jp>

1-3. 기타 동물제품

HS번호	품 목	관련법규
0501	머리털	가축전염병예방법
0502	돼지, 멧돼지 등의 털	가축전염병예방법
0511	마모	가축전염병예방법
0504	동물의 장, 방광 등(신선, 냉장, 냉동, 염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0505	새털	가축전염병예방법 위싱턴조약
0506	뺨 및 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싱턴조약
0507	상아, 귀갑 등	위싱턴조약
0510	안바그리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1501	돈지, 가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1502	소, 양, 염소의 지방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류의 유지	식품위생법
1505	울그리스에서 얻은 지방성물질	식품위생법
1506	기타 동물성유지	가축전염병예방법
4101	소 또는 말의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4102	양의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4103	기타 원피	가축전염병예방법
4104	소, 말의 가죽(털이 붙어있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4105	양 가죽(털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4113	염소 가죽(털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4113	기타 동물가죽(털이 붙어 있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4301	원모피(41-01에서 41-03까지의 원피 제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4302	유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주) 41-13, 43-01, 43-02로 분류되어 있는 동물제품 중에는 위싱턴조약으로 인해 수입이 규제되어 있는 제품이 포함됨

□ 동물검역

- ① 대상이 되는 것은 (우제류 동물, 말, 닭 등)의 뼈, 가죽, 털, 발굽 등이며, 피혁제품 등의 완전가공품은 동물검역의 대상에서 제외됨
- ② 식용여부를 불문하고 수출국정부가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검역시에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 ③ 동물검역소에서는 수입 금지품 여부 및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 첨부사실을 확인한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행함

□ 워싱턴조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의 부분 및 그 제품

- ① 부속서 I 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의 제품. 원칙적으로 상업거래는 금지됨.
 (오랑우탄, 호랑이 등의 박제, 가죽, 뼈 등)
- ② 부속서 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국제거래를 엄격한 규제 하에 두지 않으면 멸종위험이 발생할 동물의 제품. 상업거래는 가능.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과학당국의 조언을 얻어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 또한 통상산업성의 사전확인이 필요. (앵무새, 사자 등의 박제, 가죽, 뼈 등)
- ③ 부속서 I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수출국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특정국으로부터 특정 종의 수입). 또한 기타 지역에서 수입하고자 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첨부가 필요[해마(캐나다), 하마(가나)등의 박제, 가죽, 뼈 등]. 상업거래는 가능
- ④ 부속서 II, III에 해당하는 종을 올린 특정국으로부터 해당 종을 수입할 시는 해당국의 수출허가서,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또한 경제산업성의 사전확인이 필요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해 법률로 규제되어 있는 조수의 수입

- ① 동법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환경성령으로 정한 조수
 - 조류: 산새, 밀화부리, 피리새, 방울새, 검은머리방울새, 잣새, 노랑턱멧새, 무당새, 멧새, 종다리, 동박새, 곤줄박이, 북방쇠박새, 진박새, 노랑딱새, 딱새, 휘과람새, 개똥지빠귀, 진홍가슴, 울새, 쇠유리새 및 원앙이(이상 살아있는 조류), 산새, 원앙새의 박제, 표본 및 새털제품
 - 조수: 여우, 너구리, 오소리, 담비, 족제비, 다람쥐, 하늘다람쥐, 영양(이상 살아있는 짐승) 너구리 및 족제비, 다람쥐, 하늘다

랍취, 영양의 모피 및 그 제품

(주) 조류의 알: 종의 보호법 제4조 제3호 제3항에 지정된 국내 희귀 야생동식물종(특정 국내 희귀야생 동식물은 제외)이 외의 모든 조류의 알을 수입할 경우에는 조수법에 의거한 수속은 필요 없지만 대신 종의 보존에 근거한 허가절차가 필요함

② 환경성령으로 정한 위와 같은 조수(및 그 가공품)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국의 적법하게 포획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또는 수출을 허가하는 내용의 증명서와 함께 수입해야 함. 단, 그와 같은 제도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수출국 검사결과 가축 전염성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식육 및 동 조제품을 수입할 수 없음
- ② 식육 등의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참조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해당식품이 포함되는 것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일본표준상품분류에 있어 육류와 별도로 분류되는 내장에 대해서는 특히 귀, 코, 가죽 등 진피층을 포함하는 경우는 표시가 필요함. 또한 동물지방(라드, 머리)도 표시가 필요함. 하지만 상기 이외의 내장(케이싱재를 포함), 가죽(진피를 포함하지 않는 것), 뼈(고기가 붙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표시할 필요가 없음

□ 관련기관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워싱턴조약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TEL: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가공품)무역심사과
(생사를 불문하고 가공되지 않은 것)무역심사과 농수산물
워싱턴조약사무국 <http://www.cites.org>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TEL: 03-3581-3351(代) <http://www.env.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약사법 : 후생노동성 의약국 총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1-4. 수산물 및 동 조제품

HS번호	품 명	관련법규
0301	신선(살아있는 것)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2	신선(냉장, 냉동, 연육제외)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3	신선(냉동, 연육제외)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4	신선의 연육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5	신선(건조, 염장, 훈제) 또는 어분, meal	식품위생법 JAS법
0306	갑각류(살아있는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0307	연체동물(살아있는 것,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훈제)	식품위생법 검역법 JAS법
1603	신선, 갑각류, 연체동물의 엑기스	식품위생법 JAS법
1604	신선, 캐비아 및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대용품	식품위생법 JAS법
1605	갑각류, 연체동물의 조제품	식품위생법 JAS법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주1 : 1)태평양종 청어, 2)말린 김, 3)무가당 김, 4)김조제품(무가당 김 제외), 5)오징어 6) 대구알, 7)건오징어, 8)다시마조제품, 9)고등어, 10)정어리, 11)청어(태평양종 청어 제외), 12)참홀파래, 13)전갱이, 14)다시마, 15)한국산수산물(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대구, 가리비, 방어, 꽁치, 패주, 멸치), 16)대구, 17)명태, 18)가리비, 19)방어, 꽁치, 패주 및 멸치, 총 19품목은 수입할당(IQ)품목

주2 : 0301(살아있는 어류) 중에는 워싱턴조약에서 수입이 규제된 것 포함

□ 검역

- 수산물의 수입에 있어 수입 금지지역의 지정은 없음. 단 콜레라 오염지역 또는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수산물은 검역 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됨

□ 워싱턴조약에서 지정되어 있는 어류

- ① 부속서 I에 분류되어 있는 어류
 실라칸스 (coelacanth) 등 멸종위기의 동식물. 원칙적으로 상업거래는 금지됨
- ② 부속서 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철갑상어 등 국제거래를 엄격한 규제 하에 두지 않으면 멸종 위험

성이 있는 동식물.

상업거래 가능. 수출국 관리당국이 과학당국의 조언을 얻어 발행하는 수출허가서가 필요

③ 부속서 III에 분류되어 있는 동물:

수출국의 수출허가서가 필요(특정국가로부터의 특정 종 수입).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④ 부속서 II, III에 해당하는 종을 올린 특정국가로부터 해당 종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의 수출허가서가 필요. 기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또한 경제산업성의 사전확인이 필요

(주1) 워싱턴조약의 지정동물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 공보를 참조

□ 첨가물 등의 규제

① 식품위생법에 의거 다랑어, 방어 등의 생선에 탄산가스(CO)를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②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생산효과를 높이기 위해 항생물질이나 항균성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규격기준에 합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는 항생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만이 0.10ppm까지의 잔류가 인정됨

③ 수산물 중 복어에 대해서는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어종,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함

④ 또한 심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관이 입회하여 현장검사가 실시됨.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합격 날인하고 불합격일 경우에는 화물의 파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함.

⑤ 냉동의 생식용 어육은 냉동식품 규격이 적용됨. 동 규격에서는 세균수가 검체 1g당 100,000 이하이고 대장균류가 음성인 것이 조건임

⑥ 가열 후 냉동처리된 수산물(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은 제품 1g당 세균수가 3,000,000이하이고 E.coli가 음성이어야 함

⑦ 기타 건조, 염장 등의 수산가공품은 보존료 등의 첨가물 사용기

준 등에 유의해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관할 검역소의 식품감시담당과에 식품수입 신고서2부를 제출함. 검역소의 심사 및 검사 결과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을 날인하여 반환함
- ②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새우, 게, 연어, 고등어를 포함한 식품에 관해서도 원료에 해당식품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표시 예 등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참조

□ **JAS 규격**

① 품질표시

- 선어에 대해서는 품명, 원산국 표시가, 또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② JAS마크의 부착

- 어육햄, 소세지 등의 수산가공품은 통관 후에 JAS규격부여단체에 신청하면 JAS 마크의 부착이 가능함. 단, JAS마크의 부착 여부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의향에 의하며 강제규격은 아님. 수산물조제품 중에는 특수포장 어묵류, 성계가공품, 조미료, 성계무침, 가다랑어포, 어육햄, 소세지, 어묵, 煮乾어류 등의 JAS규격이 있음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수산물의 성분기준

품 목	기 준
어육연제품	대장균군 : 음성(어육수리미를 제외) (1g×3중, B.G.LB 배지법) 아초산균 : 0.050g/kg 이하 (단, 어육소세지, 어육햄)
연어알, 연어알젓, 대구알	아초산균 : 0.050g/kg 이하
냉동 데친문어	세 균 수 : 100,000/g 이하 (표준평판배양법) 대장균수 : 음성(0.01g×2 중, desokishicorrat 배지법)
생식용 굴	세 균 수 : 50,000/g 이하 (표준평판배양법) E.coli MPN치: 230 / 100g 이하 (EC 배지법)
생식용 냉동어게류	세 균 수 : 100,000/g 이하 (표준평판배양법) 대장균수 : 음성(0.01g×2 중, desokishicorrat 배지법)

□ **관련기관, 단체**

- 검역법 :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진염병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워싱턴조약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TEL: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 기준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社)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社)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TEL: 03-3438-1411 <http://www.jffic.or.jp>

1-5. 유제품류

HS번호	품목	관련법규
0401	밀크 및 크림	식품위생법 JAS법
0402	밀크 및 크림(농축, 건조 또는 감미료를 넣은 것)	식품위생법 JAS법
0403	발효 또는 산화시킨 우유	식품위생법 JAS법
0404	유장(whey)	식품위생법 JAS법
0405	버터(dairy spread)	식품위생법 JAS법
0406	치즈, 커드(curd)	식품위생법 JAS법
0407	조란(신선, 보존처리한 것)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JAS법
0408	껍질이 붙어있지 않은 조란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JAS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JAS법
0409	천연벌꿀	식품위생법 JAS법
0410	기타 식용의 동물제품	식품위생법 JAS법

JAS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동물검역

- 생유는 동물검역의 대상. 치즈 등의 가공품은 동물검역의 대상외
- ① 생유를 수입할 시는 동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검사신청서 및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를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 ②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 첨부여부 확인 후 현물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는 수입검역증명서가 발행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유제품 수입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식품수입신고서」를 2부 제출함
검역소의 심사 및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날인하여 반환함.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참조
- ② 또한 심사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관 입회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됨.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합격

날인되고 불합격의 경우에는 화물의 파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함

- ③ 성령으로 정한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성분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제조방법이나 보존방법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음
- ④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의 내추럴치즈에 대해서는 리스테리아균의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소프트, 세미소프트 타입의 내추럴치즈는 수입시 검사명령의 대상 식품이 되어 있음
- ⑤ 요쿠르트나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무지유고형분, 유산균수, 대장균균에 대한 성분규격이 정해져 있음

□ 표시에 관한 규제

- 치즈에 대해서는 부당 경쟁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에 근거하여 치즈 공정거래협의회가 업계 자율규제로서 「치즈의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규약」을 작성하였음. 또한 발효유, 유산균음료에 대해서도 부당 경쟁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근거하여 발효유, 유산균음료 공정거래협의회가 ‘발효유, 유산균음료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작성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알리지 물질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음. 우유, 유제품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해당식품이 포함되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거나 권장되고 있음. 표시 예 등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유제품의 성분기준

품 명	성 분 기 준	
탈지유	무지유고형분	8.0% 이상
	유지방분	0.5% 미만
	비중(섭씨 15도에서)	1.032-1.038
	산도(유산)	0.18% 이하
	세균수(표준평판배지법으로 1ml 당)	50,000 이하
가공유	대장균수군	음성
	무지유고형분	8.0% 이상
	산도(유산)	0.18% 이하
	세균수(표준평판배지법으로 1ml 당)	50,000 이하
크림	대장균군	음성
	유지방분	18.0% 이상
	산도(유산)	0.20% 이하
버터	세균수(표준평판배지법으로 1ml 당)	10,000 이하
	대장균군	음성
	유지방분	80.0% 이상
	수분	17.0% 이하
버터오일	대장균군	음성
	유지방분	99.3% 이상
	수분	0.5% 이하
가공치즈	대장균군	음성
	유고형분	40.0% 이상
농축유장	대장균군	음성
	유고형분	25.0% 이상
	대장균군	음성

□ JAS규격제도

① 품질표시

유제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용량, 제조업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② 유기JAS

유기유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을 통해 인정되고 해당제품이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TEL: 03-3581-3351(代) <http://www.env.go.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회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 기준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社)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社)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TEL: 03-3438-1411 <http://www.jffic.or.jp>

1-6. 식물, 수지 및 식물성 액즙 등

HS 번호	품목	관련법규
0601	연근	식물방역법 종묘법 JAS법
0602	기타 살아있는 식물	식물방역법 종묘법 JAS법
0603	절화 및 꽃눈	식물방역법 종묘법 JAS법
0604	식물의 잎, 가지 등	식물방역법 종묘법 JAS법
1209	파종용 종자	식물방역법 종묘법 JAS법
1210	호프	식물방역법 JAS법
1211	의료용, 살충용 등에 사용하는 식물	식물방역법 독물·극물단속법 약사법
1212	해초, 기타 해조류, 사탕무 등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213	곡물의 낱과 껍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1214	비료용의 비트, 기타 비료용건초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1301	락(lac), 천연고무, 수지 등	식품위생법 약사법 대마단속법
1302	식물성의 액즙 및 엑기스 등	약물 및 극물단속법 주세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아편법 대마단속법 JAS법

주 1 : 다음의 것은 수입할당(IQ) 품목임.

- (1) 방형(정방형 포함)의 종이모양으로 만든 식용의 해초. 한 장의 면적이 430cm² 이하의 것
- (2) 김류의 식용해초 및 이를 섞은 해초
- (3) 기타 식용해초(파래류, 김류, 다시마류에 한함)
- (4) 대마의 수지

주 2 : (06-01~06-04)중에는 워싱턴 조약에서 수입이 제한된 식물도 포함됨.

□ 식물검역

- 식물방역법상 수입되는 식물은 ①수입금지품, ②수입검사품, ③ 검사불요품으로 대별됨
 - 수입금지품: 일본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는 지역의 기생식물이나 병해충, 혹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음
 - 수입검사품: 수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 검사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묘목, 관상용식물, 절화, 구근, 종자 등임.
- 과실, 채소, 곡물, 두류, 목재, 향신료, 한방약원료 등
 - 검사불요품: 식물일지라도 제재목이나 제조차(茶) 등 고도로 가공된 것은 검사품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다음 품목은 검역 대상이 아님

① 제재목, 목공품, ②등나무, 코르크 ③마대, 면, ④차, 건조한 호프의 꽃, 건조죽순 ⑤발효처리된 바닐라콩 ⑥아류산, 알콜 등으로 처리한 식물 ⑦살구, 무화과, 감, 자두, 배, 대추, 대추야자,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포도, 망고, 복숭아 및 용안 등 건조과실, ⑧코코야자의 내과피 가루 ⑨소매용기에 밀봉된 건조향신료

○ 식물방역 절차

- 식물방역 대상은 수입금지에 해당되지 않은 식물, 검사 대상이 되는 식물은 묘목, 감상용 식물, 절화, 구근, 종자, 과실, 채소, 곡물, 두류, 목재, 향신료, 한방약 원료 등

① 검역과 관련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함

① 검사 결과, 지정검역물에 병해충감염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 증된 경우에는 수입검역증명서가 교부됨. 수입이 금지된 병충해, 지역 및 식물에 대해서는 규칙 제9조 별표 제1 참조. 단, 완전한 소독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기재한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이를 복사한 것을 제출

○ 해외검역

- 아울러 수입금지품일지라도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인정되는 것도 존재함. 이 기준에는 식물의 종류, 품종, 생산지, 소독방법, 수송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며 수출시기에 이들 국가(지역)에 식물방역관을 파견하여 수출국 정부가 행하는 수출검역을 확인함

□ 약사법

○ 일부의 허브에 대해서는 약효성분 등에 있어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에 저촉되는 물품이 아닌지 지자체의 생약사무담당자 또는 후생노동성 의료국 심사관리과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종묘법

- 이 법률은 종묘 등의 심품 종의 보호를 위한 품종등록 관련 제도임.
이 법률에 의해 농림수산성에 육성품종등록이 된 종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로부터 일본에서 해당종묘 등을 육성할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 JAS제도

- 유기JAS
 - 식용유기농산물 내지 유기식물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
 - 첨가는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zenshoku-kyo.or.jp>
- 워싱턴조약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TEL: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 독물 및 극물 단속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화학물질안전대책실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약사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종묘법 : 농림수산성 생산국 종묘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1-7. 채소, 과실 및 동 조리품

HS번호	품 명	관련법규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3	양파, 마늘(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4	양배추, 콜리플라워(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5	양상추 등(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6	당근, 순무, 무 등(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7	오이 등(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8	두류(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09	기타 채소(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10	냉동채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11	일시적으로 보존 처리한 채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12	건조채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13	건조한 콩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714	서류(신선, 냉장, 냉동, 건조)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1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2	기타 넛트(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3	바나나(신선 또는 냉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4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등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5	감귤류(신선 및 건조)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6	포도(신선 및 건조)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7	파파야, 메론, 수박(신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8	사과, 배, 마르멜로(신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09	버찌, 살구, 복숭아, 자두, 슬로우(신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10	기타과실(신선)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11	냉동과실, 냉동넛트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12	일시적으로 보존 처리한 과실, 넛트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13	건조과실(기타의 것)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814	과실 껍질	식품위생법 JAS법
2001	초산 또는 식초로 조제한 채소, 과실, 목실	식품위생법 JAS법
2002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토마토	식품위생법 JAS법
2003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버섯류	식품위생법 JAS법
2004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기타채소(냉동한 것)	식품위생법 JAS법
2005	조제 또는 보존 처리한 기타채소(비냉동)	식품위생법 JAS법
2006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 과실 또는 목실	식품위생법 JAS법
2007	잼, 마머레이드 등	식품위생법 JAS법
2008	과실, 넛트 등의 식용부분	식품위생법 JAS법
2009	과즙, 채소쥬스	식품위생법 JAS법

□ 식물검역

- ① 주요 병해충 발생지역으로부터 과일·채소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기타지역에서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한 검역이 필요함
- ② 다만, 살구, 무화과, 감, 자두, 배, 대추, 대추야자, 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포도, 망고, 복숭아 및 龍眼의 건조과실 및 생과실을 설탕, 아류산, 초산, 알콜 등으로 절인 것은 식물검역의 대상이 아님
- ③ 과일, 채소류를 수입할 시는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식물방역기관이 발행한 식물방역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신청함. 검사결과 병해충 등의 부착이 판명될 시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함
- ④ 훈증 등의 조치는 수입항의 부두지역에 있는 지정 훈증창고에서 전문 방제업자에 의해 실시되며 경비는 수입자 부담임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검사수속

- ① 식물검역을 마친 후, 후생노동성 소관의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2부 제출함. 심사,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날인후 반환함
- ② 과일, 채소 공히 성분규격으로서 농약의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③ 처음 수입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성분표 및 제조공정표 등의 자료제출이 필요함
- ④ 너트류는 아프라토키신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시 아프라토키신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⑤ 과즙음료에 사용되는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사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오렌지, 키위, 복숭아, 사과를 포함하는 식품에 있어서도 원료에 당해 식품이 포함된 사실의 표시가 장려되고 있음

□ JAS규격

- 품질표시
 - 신선과실 및 채소에 대해서는 품명과 원산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JAS마크의 부착
 - ① JAS규격 인증단체에 신청하여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다만, JAS마크의 부착은 제조업자(수입업자)의 판단에 따르며 강제규격은 아님
 - ② 현재 앵두 설탕절임, 잼, 채소통조림, 과실통조림, 토마토가공품, 당근주스 및 당근혼합주스, 잼류, 과실통조림·병조림, 채소통조림·병조림 등이 JAS의 지정품목으로 되어 있음

- 유전자조작
 - JAS법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의 일부개정('01년 후생노동성령 제23호)에 의해 '01년부터 유전자조작식품 및 유전자조작식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유기JAS
 - 유기야채·과실 또는 유기채소·과실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JAS법에 따른 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가용성고형분	40%이상의 것
과일 등 함유율	<p><u>표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잼의 경우 33%이상일 것 2. 마가린의 경우 20%이상일 것 <p><u>특급</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잼의 경우 45%이상일 것 2. 마가린의 경우 30%이상일 것
내용물 품위	<p><u>표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 및 색이 양호해야 함. 2. 젤리화 정도가 적당하고 병충해 및 기타 잡물이 거의 없어야 함. 3. 프리저브 스타일의 경우 과실, 과육 등의 형태 및 양이 비교적 적당하고 과실, 과육 크기가 비슷해야 함. 4. 마가린의 경우 과피의 분포가 거의 균일해야 함. <p><u>특급</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 및 색이 우량해야 함. 2. 젤리화 정도가 적당하고 기타 잡물이 없어야 함. 3. 프리저브 스타일의 경우 과실, 과육 등의 형태 및 양이 적당하고 과실, 과육 등의 크기가 균일해야 함. 4. 마가린의 경우 과피 분포가 균일해야 함.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	<p><u>특급, 표준</u></p> <p>다음에 열거하는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실등 2. 설탕류 3. 당알콜 4. 벌꿀 5. 주류 6. 산미료 <p>감귤류 과즙(함유량 4%이하)</p>
식품첨가물	<p>다음에 열거하는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됨.</p> <p><u>특급</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미료 구연산, DL-주석산, L-주석산 및 DL-사과산 2. pH조정제 구연산나트륨 3. 산화방지제 실리콘수지 4. 겔화제 5. 향료 <p><u>표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미료 2. PH조정제 3. 산화방지제 4. 겔화제 5. 향료

□ 관련기관 및 단체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zenshoku-kyo.or.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1-8. 곡물 및 동 조제품

HS번호	품목	관련법규
1001	밀, 메슬린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002	호밀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003	보리, 나맥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004	귀리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005	옥수수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006	쌀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007	수수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008	메밀, 기장, 기타 곡물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101	밀가루 및 메슬린가루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102	곡분(밀가루, 메슬린가루 제외)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103	곡물 분쇄물, 조분, 펠리트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104	기타 가공곡물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105	감자가루, 프레이크, 펠리트 등	식품위생법 JAS법
1106	건조콩	식품위생법 JAS법
1107	맥아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108	전분, 이눌린	식물방역법 식량법 JAS법
1109	밀의 글루텐	식품위생법 JAS법
1901	맥아엑기스, 곡분, 조분, 전분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902	스파게티, 마카로니류	식품위생법 JAS법
1903	타피오카, 타피오카 대용품	식품위생법 JAS법
1904	곡물조제품	식품위생법 식량법 JAS법
1905	빵, 비스킷, 케익 등	식품위생법 JAS법

주) 이하의 것은 수입할당(IQ) 품목

- (1) 쌀, 쌀가루, 쌀의 분쇄물 및 조분, 펠리트, 압착 또는 프레이크, 기타 가공한 것
- (2) 쌀, 밀, 호밀, 보리 또는 나맥의 분, 분쇄물, 조분, 펠리트, 전분을 함유하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이들 물품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85%를 초과하고 또한 쌀생산물, 밀생산물, 보리생산물 및 전분중 쌀생산물이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케익믹스, 육아용식료를 제외)
- (3) 쌀과자반죽(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을 제외)
- (4) 떡, 경단, 기타 이와 유사한 쌀생산물(육아식용 또는 식이요법용을 제외)
- (5) 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으로서 쌀을 단순히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것이 전중량의 50%이상인 것
- (6) 볶지 않은 곡물의 프레이크와 볶은 곡물의 프레이크 또는 팽창시킨 곡물과의 혼합물에서 얻은 물품의 함유율이 전체중량의 50%이상인 것.
- (7) 입상의 쌀로서 미리 가열에 의한 조리 또는 기타 조제한 것

□ 식량 법

- ① 미곡류 및 맥류를 수입할 시는 관세 외에 별도의 납부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함 (단 관세정율법 등에 의해 관세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
- ② 미곡 등에 대해서 관세 및 납부금의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 것을 수입할 경우는 사전에 수입수량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식물방역

- ① 주요 병충해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검역이 필요
- ② 식물, 및 동 제품을 수입할 시는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검사신청서』에 수출국 식물방역기관 발행의 식물방역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신청함. 검사결과, 병충해 등의 부착이 판명될 시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가 취해짐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식품으로 제공되는 식물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 담당과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함
- ② 처음 수입하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 등의 첨부자료를 제출해야 함
- ③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 첨가물, 농약잔류기준

- ① 쌀, 밀, 옥수수 등에 대해서는 해충 구제를 위해 재배 시나 저장, 운송 중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가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농약잔류기준이 있으므로 잔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② 비스킷에는 표백, 보존의 목적으로 이산화황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 잔존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또한 케익에 대해서는 지정 이외의 착색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함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곡류, 두류의 성분기준

품 목	성 분 기 준
한천	붕소화합물: 1g/kg 이하 (H3BO3로서)
쌀(현미)	카드뮴, 카드뮴화합물: 1.0ppm 미만 (Cd로서)
두류	시아나화합물: 음성 (단, 버터콩, 화이트콩, sultaniya콩, Saltan-Pya콩, Peyin콩, Lima콩은 500ppm 이하 (HCN으로서)
팥소	시아나화합물: 음성
즉석면	함유유지: 산가 3이하, 또는 과산화 30이하

JAS규격에 의거한 마카로니류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일반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섹택 및 형상이 양호할 것 ◦ 조적이 견고하고 자른 단면이 유리모양의 광택을 가질 것
이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것
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후의 향과 맛이 양호하고 이취가 없을 것
외형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이상일 것
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이하일 것
단백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이상일 것. (단 계란을 첨가했을 시는 12.0%이상일 것)
회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0%이하일 것. (단 계란이나 채소를 첨가했을 시는 제외)
수소이온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 이상일 것.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열거하는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듀럼종 밀의 세물리나, 듀럼종 밀의 보통밀가루, 강력밀의 팔리나 및 강력밀의 보통밀가루 ② 계란 ③ 채소 (토마토 및 시금치)
내용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증량에 적합해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알리지 물질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음. 메밀, 밀, 대두, 젤라틴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해당식품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표시에 등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조

□ JAS규격

① 품질표시

곡물 및 동 조제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② JAS마크의 부착

JAS 규격부여 단체에 신청하여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은 가능함. 단 JAS 마크의 부착 여부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의향에 의하며 강제규격은 아님

현재 즉석면, 생면 타입의 즉석면, 건면, 수제소면, 마카로니류 등 총 5품목이 JAS 마크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③ 유기JAS

유기곡물 또는 유기곡물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④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

감자조제품, 대두조제품, 옥수수조제품 등 유전자조작식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상세한 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물방역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senshoku-kuo.or.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식량법 :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부계획과
TEL: 03-3502-8111(代) <http://www.syokuryo.maff.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1-9. 당류, 코코아 및 동 조제품

HS번호	품 목	관련법규
1701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식품위생법 JAS법 설탕 및 전분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1702	인조별꽃당	식품위생법 약사법 JAS법
1703	당밀(설탕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기는 것)	식품위생법 JAS법
1704	사탕과자(화이트초콜릿함유, 코코아 미함유)	식품위생법 JAS법
1801	카카오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JAS법
1802	카카오의 껍질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JAS법
1803	카카오페이스트	식품위생법 JAS법
1804	카카오버터	식품위생법 JAS법
1805	코코아분	식품위생법 JAS법

□ 식물방역

- ① 주요 병해충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검역이 필요함
- ② 식물 및 동 제품을 수입할 시는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식물방역기관 발행의 식물방역증명서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신청함. 검사결과, 병충해 등의 부착이 판명될 시는 훈증, 소독 등의 조치가 취해짐
- ③ 소매용기에 밀봉한 건조된 향신료는 식물방역의 대상 외임

□ 설탕 및 전분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 본 법률은 수입에 관련된 설탕 및 전분 등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로, 감자당, 첨채당 및 자당을 수입할 시 관세와 더불어 독립 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조정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음. 당의 성분(성분마다 관세번호가 상이하다)에 따라서 조정금이 상이함. 상세내용은 세관에 문의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
- ② 처음 수입하는 가공품은 상세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를 첨부해야 함.
- ③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참조

□ JAS규격

- ① 품질표시
당류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②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
첨채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③ 유기JAS
유기당류·코코아 또는 기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zenshoku-kyo.or.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규격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설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
TEL: 03-5583-8196 <http://alic.lin.go.jp>

1-10. 향신료

HS번호	품목	관련법규
0901	커피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0902	차	
0903	마태	
0904	고추	
0905	바닐라콩	
0906	계피	
0907	정향	
0908	설육, 카르다몬(cardamon)	
0909	아니스, 회향	
0910	생강, 샤프란, 기타 향신료	

주) 건조시킨 향신료로 소매용기에 밀봉된 것은 식물방역법의 대상에서 제외

□ 식물방역

- ① 중요 병해충 발생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검역이 필요
- ② 식물 및 동 제품을 수입할 시는 식물방역소에 『식물수입검사신청서』와 수출국 식물방역기관 발행의 식물방역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신청함. 검사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소독 등의 조치가 취해짐
- ③ 소매용기에 밀봉한 건조된 향신료는 식물방역 대상에서 제외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함
- ②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참조
- ③ 처음 수입하는 가공품은 상세한 성분표 및 제조공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 ④ 고추 등에 대해서는 아플라톡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시에 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해야 함

□ JAS 규격

① 품질표시

향신료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존 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② 유기JAS

유기향신료 또는 기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zenshoku-kyo.or.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1-11. 유지종자 및 동 조제품

HS번호	품목	관련법규
1201	대두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JAS법
1202	낙화생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	
1205	채종	
1206	해바라기씨	
1207	기타 유량종자	
1507	대두유	
1508	낙화생유	
1509	올리브유	
1510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타 기름	
1511	팜유	
1512	해바라기유, 홍화씨유	
1513	야자유, 팜핵유	
1514	채종유, 겨자유	
1515	기타 식물유	

주) 유량종자의 조제품을 의료용이나 화장품으로서 수입하는 경우는 약사법의 규제를 받음.

□ 식물검역

- 병충해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수입식물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식물방역소에 제출함. 검사는 식물방역관이 지시한 장소에서 실시되는데 병균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소독 처리가 실시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식품으로 제공되는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가 필요함
- ② 식물검역 후,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담당과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함. 심사 및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날인하여 반환함
- ③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 ④ 농약잔류기준에 대해서는 「식품위생6법」을 참조할 것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알리지 물질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음. 대두, 낙화생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도 원료에 해당식품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JAS 규격

① 품질표시

유량종자 및 동 조제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②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

대두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은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③ 유기JAS

유기종자 또는 기타 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일본농림규격에 의거한 식용 올리브 오일의 품질기준

품 목	기 준	
올리브유	일반상태	올리브 특유의 향미를 유지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일 것. 색 : 특유의 색 유지 수분 및 불순물 : 0.30%이하일 것 비중(25/25°C) : 0.908-0.914 일 것 굴절률(25°C) : 1.466-1.469 일 것 산가 : 2.0 이하일 것 감화가 : 184-196 일 것 요소가 : 75-94 일 것 불감화물 : 1.5%이하일 것
정제 올리브유	일반상태	맑고 깨끗하고 맛과 향이 좋을 것 색 : 특유의 색 유지 수분 및 불순물 : 0.15%이하일 것 비중(25/25°C) : 0.908-0.914 일 것 굴절률(25°C) : 1.466-1.469 일 것 산가 : 0.60% 이하일 것 감화가 : 184-196 일 것 요소가 : 75-94 일 것 불감화물 : 1.5%이하일 것

□ **관련기관**

○ 식물방역법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전국식물방역협회

TEL: 03-5294-1520 <http://www.zenshoku-kyo.or.jp>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1-12. 각종 조제식품

HS번호	품목	관련법규
1704	설탕과자류	식품위생법
1806	초콜릿	식품위생법
2101	커피 및 커피대용품	식품위생법 식량법
2102	효모, 베이킹파우더	식품위생법
2103	소스, 혼합조미료	식품위생법
2104	스프류	식품위생법
2105	아이스크림	식품위생법
2106	기타 조제식품	식품위생법 식량법

주) 다음 열거하는 품목은 수입할당(IQ) 품목임.

- (1) 아이스크림믹스 및 우유의 천연 조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 (2006-90)
- (2) 쌀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30%를 넘는 조제식품 (2106-90-2-E ex)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식품으로 제공되는 것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고가 필요함.
관할 검역소 식품감시 담당과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함
심사 및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날인하여 반환함
- ② 수입수속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규격기준

품 목	기 준
일반 식품	항생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됨.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임. ①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D 각조의 항 및 우유 등의 성령 별표 2 우유 등의 성분규격 및 제조, 조리, 보존방법 기준의 부(一) 우유 등 일반 성분규격 및 제조방법 기준의 판(6)에 정한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② ①에 해당하는 것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
아이스 크림	우유고형분 : 15.0%이상 중, 유지지방분 : 8.0%이상 세균수 : 100,000이하(단, 발효유 또는 유산균음료를 원료로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세균수가 100,000이하일 것) 대장균군 : 음성

□ 첨가물 등의 규제

- ① 소스에 사용이 금지된 안식향산 및 지정 외 첨가물인 유화안정제의 폴리솔베이트나 착색료의 퀴놀린 옐로우나 Azorubine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 ② 마요네즈나 드레싱에서는 산화방지나 제품의 유화안정과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TBHQ(산화방지제)나 폴리솔베이트(유화안정제), 해당품에의 사용이 금지된 안식향산 및 솔빈산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③ 아이스크림의 성분규격으로서는 乳고형분, 유지방분, 세균수, 대장균군이 규정되어 있고, 제조방법의 기준도 규정되어 있음

□ 식량법

- ① 미곡 등 및 맥류 등을 수입할 시는 관세의 납부 외에 납부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함. (단 관세 정율법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금의 납부는 불요함.)
- ② 미곡 등에 대해서 관세 및 납부금의 납부가 의무화된 것 이외의 것을 수입할 시는 사전에 수입수량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해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알리지 표시

-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계란, 우유, 밀, 메밀, 낙화생, 총 5품목을 포함한 식품에 알리지 식품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 또한 기타 20품목의 알리지 원인물질에 대해서도 표시가 권장되고 있음. 표시 예 등에 대한 상세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 JAS규격

- 품질표시
 - 유제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상미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JAS마크의 부착

- ① JAS규격 부여 단체에 신청하여 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단 JAS 마크의 부착 여부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의향에 의하며 강제규격은 아님
- ② 조제식료품에 대해서는 JAS규격등록기관으로부터 JAS규격을 취득할 수 있음. 유제품으로서 JAS규격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간장, 우스터소스, 풍미조미료, 드레싱 등

○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표시

유전자조작식품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에는 표시가 의무화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유기JAS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식량법 :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부계획과
TEL: 03-3502-8111(代) <http://syokuryo.maff.go.jp>

1-13. 물 · 알콜류 · 식초

HS번호	품 목	관련법규
2201	물	식품위생법 JAS법
2202	물(감미료나 향미료를 첨가한 것)	식품위생법 JAS법
2203	맥주	식품위생법 주세법
2204	와인, 포도즙	식품위생법 주세법
2205	베르뭇주, 기타 포도주	식품위생법 주세법
2206	기타 발효주	식품위생법 주세법
2207	에틸알콜류(알콜도수 80%이상)	식품위생법 주세법 알콜사업법
2208	에틸알콜류(알콜도수 80%이하)	식품위생법 주세법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품	식품위생법 JAS법

□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절차

- ① 음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신고가 필요함
- ② 후생노동성 검역소 식품감시담당에 수입신고서 2부를 제출함
심사 및 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을
날인하여 반환함
- ③ 처음 수입하는 경우는 상세한 성분표 및 제조공정을 기입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 ④ 수입절차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참조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음료의 성분규격

구 분	성분규격
청량음료	혼 탁 : 허용되지 않음 침전물 : 허용되지 않음 비소, 납, 카드뮴 : 검출되면 안됨 대장균군 : 음성 (11.1ml 중, L. B. 배지법)
미네랄 워터	腸球菌 : 음성 (11.1ml 중, L. B. 배지법) 연농균 : 음성 (11.1ml 중, 아스파라긴 bouillon 배지법)

□ 첨가물 등의 규제

- ① 미네랄워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규격기준(성분규격, 제조기준 및 보존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② 와인, 샴페인, 세리주 등의 과실주를 수입할 시는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등의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 또는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으므로 지정 외 첨가물의 유무, 사용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③ 탄산음료의 원재료에 식물 또는 동물의 조성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그 pH수분활성에 따라 상이한 가열처리가 필요함
- ④ 용기 포장되어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표시(명칭, 원재료, 첨가물, 보존방법, 제조년월일, 제조소재지, 제조자명 등)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지정장소에 표시해야 함
- ⑤ 위스키 및 맥주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의거한 공정경쟁규약이 정해져 있음. 이는 반드시 지켜야할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준수하도록 지도가 행해지고 있음

□ 알콜사업법

- 알콜류는 알콜 함유량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상이. 알콜도수가 90%이상인 알콜류는 알콜사업법의 대상이 되며 90%미만의 알콜류는 주세법 대상이 됨. 알콜도수가 90%이상의 알콜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경제 산업국으로 수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주세법

- 주류판매는 면허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판매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별로 해당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주 또한 종래부터 주류의 소매업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판매소에서 수입 주류를 판매할 경우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 수입주류의 도매업면허에 대해서는 연간도매예상량이 과실주, 위스키, 브랜드의 경우 6kl 이상, 맥주의 경우 60kl이상 되는 것이 면허의 요건임

□ JAS제도

- 품질표시
 - 물·알콜류·식초에 대해서는 품명, 원재료, 내용량, 제조업자, 유효기간, 보존방법 등의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 식초에 대해서는 JAS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JAS규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 단 JAS마크 부착의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 의사에 따르며 강제규격은 아님
- 유기JAS
 - 유기식초를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일본의 유기 JAS기준에 따라서 인정되고 해당제품에 유기 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상세내용은 관련자료 참조

□ 관련기관

- 식품위생법
 - 후생노동성 의료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주세법: 국세청 과세부 주세과
TEL: 03-3581-4161(代) <http://www.nta.go.jp>

- JAS규격
 - 농림수산업 소비자·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 <http://www.jasnet.or.jp>

- 알콜사업법: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과학과
TEL: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2. 농수산물의 수입심사·검사

□ 식물방역법

- 청과물이나 곡물 등의 식물을 매개로 하여 병해충이 일본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성의 식물방역소에서 「식물방역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됨. 식물 또는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특정 식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식물방역소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류 등의 동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매개로 하여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일본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됨.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는 동물이나 가축, 가공품이 있으므로 이들 품목을 수입할 시는 사전에 관할 동물검역소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내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항생물질 또는 수확 후 농약 등 농수산물의 화학물질 등의 잔류에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수산물, 축산물,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가 실시됨. 수입식품에 관해서도 동 법률에 근거하여 항구나 공항의 검역소에서 검역, 감시, 지도가 실시됨

□ 관세법

- 농수산물의 관세나 수입금지 농수산물의 관리는 재무성이 「관세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세관에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수입의 가부를 판정함. 이 때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세법 이외의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법규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관하여 허가·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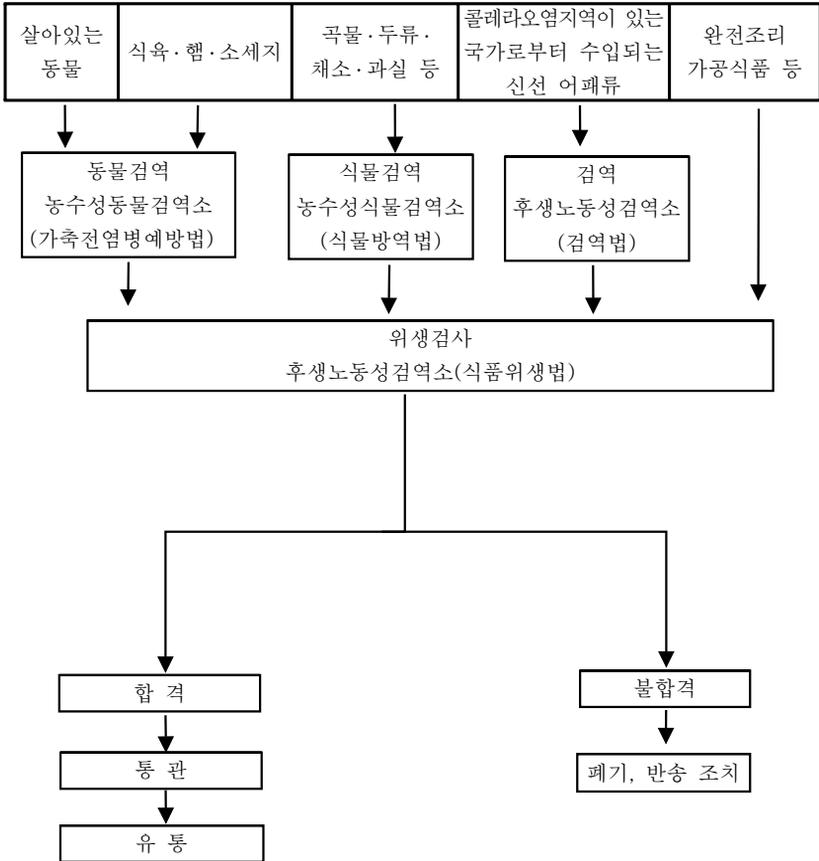
□ 검역법

- 검역소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검사 이외에, 콜레라 등 특별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관하여 검역법에 의거한 검사도 실시함

□ 기 타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 등에 따른 적절한 품질표시도 중요함

농수산물의 수입 심사 및 검사 절차



3. 가축전염병예방법

□ 법률의 목적

- 가축전염성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진흥 도모

□ 법률의 개요

- 국내에 있어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및 만연의 예방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유통에 기인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국내 침입을 방지하고자 수출입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 동 법의 대상품목(지정 검역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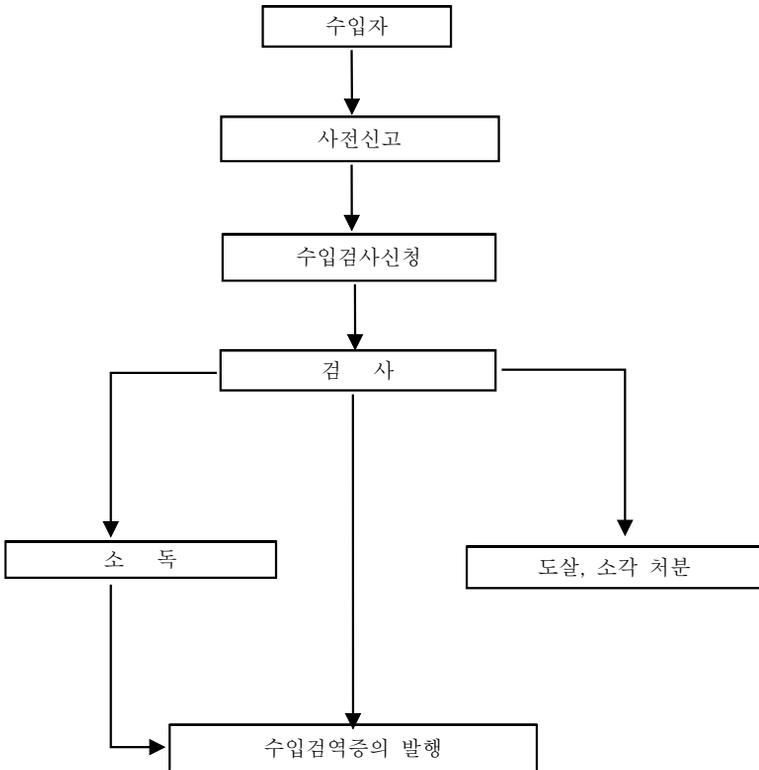
- ① 우제류 동물, 말, 닭, 집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개, 토끼, 꿀벌
- ② 닭, 집오리, 메추라기 및 칠면조의 알
- ③ ①의 동물의 뼈, 지방, 혈액, 털, 가죽, 뿔, 발굽, 건 및 장기
- ④ ①의 동물의 생유, 정액, 수정란, 미수정란, 혈분, 분 및 노
- ⑤ ①의 동물의 육분, 육골분, 혈분, 익분, 제각분 및 장기분
- ⑥ ③의 것을 원료로 한 소세지, 햄 및 베이컨
- ⑦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시험연구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것

□ 법률에 의거한 검사

- ① 수입된 지정검사물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의 가축방역관에 의해 수입금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증명서 첨부 유무,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 유무에 대해서 검사가 실시됨
- ② 가축방역관은 검사결과 지정 검역물이 가축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함

□ **관련기관**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동물검역의 절차



우제류 동물 및 동 육류 등의 수입금지지역 구분(개략)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3조) (2007년 12월 시점)

구분	지역	수입금지 대상물				비고
		우제류 동물	생체액 수정란	소세지 햄, 베이컨	우제류 동물의 육, 내장	
0	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폴란드, 헝가리,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사르디니아섬 제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벨리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칠레, 북마리아나제도, 뉴질랜드, 바누아트, 뉴카레도니아, 호주(35개지역)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건강증명서가 있으면 수입가능 (주)수입가능인 경우에도 *BSE(광우병)발생국가로부터의 소, 양, 염소의 육제품 *조류독감발생국(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의 육제품 *돼지콜레라발생국(지역)으로부터의 돼지고기제품 *CWD(만성소모성질환)발생국가로부터의 사슴 육제품의 경우 반입이 불가능하다.				검역 불필요
1	싱가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5개지역)	수출국정부기관 발행의 건강증명서가 있으면 수입가능		수입금지 주1)참조	수입금지 주2)참조	
2	상기 이외의 지역	수입금지		수입금지 주2)참조		

주1) 농림수산장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처리시설에서 일정 가열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주2) 농림수산장관이 지정한 처리시설에서 일정 가열처리가 행해진 것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0의 지역은 상당기간 구제역 등의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으며 방역체제도 정비되어 있고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지역.

1의 지역은 방역체제가 정비되어 있으며 당면 구제역 등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간주되나 발생 우려를 완벽히 부정할 수 없는 지역.

2의 지역은 구제역 등의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이 있거나 방역체제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역. 이곳에 속한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시 수출국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 필요.

(주) 상기 표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도 현지에서의 질병발생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동물검역소에 문의할 것.

4. 광견병예방법

□ 법률의 목적

- 광견병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을 방지하고 이를 박멸함으로써 공중 위생 향상 및 공공복지 증진 도모

□ 법률의 개요

- 검역을 받지 않은 개나 고양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음(제7조).
전항의 검역에 관한 사무는 농림수산대신의 소관으로서 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함

□ 수입 개의 검사절차

- 개의 수입검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개는 광견병 또는 랩토스피라증의 검역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계류검사를 받아야 함. 계류검사는 원칙적으로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실시함
- 수입 가능한 항구 및 공항
 - 개의 수입은 하기의 지정된 항구 및 공항을 통해야 함.
 - 도마코마이항, 게이힌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 간몬항, 하카다항, 가고시마항, 나하항, 신치토세공항, 도쿄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 간사이국제공항, 신규슈공항, 후쿠오카공항, 가고시마공항, 나하공항
- 사전신고
 - 화물로써 수입되는 개는 일본도착 40일 전까지 수입시기, 마리수를 도착항을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신고해야 함. 또한 동물검역소에서의 신고상황(계류시설의 수용상황)에 따라서는 수입항, 시기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수입검사신청서의 제출

- 개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도착 후 지체 없이 신청서를 동물검역소에 제출하여 가축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장소 및 계류기간

- 계류검사는 동물을 사람 및 기타 동물과 격리하여 질병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동물검역소의 계류시설에서 행함
수입 시 계류기간은 광견병의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80일로 함. 단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류기간을 12시간 이내로 함
-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부터의 수입되어지는 개 가운데 이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 ① 마이크로칩 등에 의한 확실한 개체식별
 - ② 출생이후 또는 과거 180일간 광견병 청정지역에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음
- 비청정국가·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개 및 고양이 가운데 이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 ① 마이크로칩 등에 의한 확실한 개체식별
 - ② 효과적인 백신 접종 증명(생후 91일 이후 30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접종)
 - ③ 충분한 '항체가' 확인
 - ④ 180일간의 대기기간
- 농림수산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부터 수입되는 시험연구용 개 및 고양이

○ 계류기간중의 사육관리

- 계류시설은 전국에 12개 있으나 사육고나리를 수탁하는 업자가 상주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예정 동물검역소에 문의할 것
- 계류기간 중의 검사비용은 동물검역소에서 부담하나 수송, 사육관리, 수의사의 왕진, 동물 반송·처분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입자 부담임. 또한 계류 기간 중에는 질병에 걸려도 계류시설을 벗어날 수 없음

-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 계류검사가 종료되면 동물검역관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행받음. 일본국내에서의 개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검역증명서」를 개 사육장소의 지자체 창구에 지참하여 등록수속을 해야 함

□ **관련기관**

-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전염병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5. 워싱턴조약

□ 조약의 목적

- 지구자연의 소중한 한 부분인 야생동식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특정종이 과도한 국제거래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협정한 것임

□ 규제의 대상

- 조약의 부속서에 수록된 동식물 또는 그 파생물 (알, 종자, 구근, 과일, 박제 또는 가공품)
 - 대상 동식물의 종의 규제구분
본 조약에서는 대상을 아래 3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① 부속서 I에 분류된 동식물 및 그 파생물

멸종위기에 있는 종으로 특히 엄격히 규제되며 상업 목적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단 예외적으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수출, 수입 쌍방의 허가서가 있으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부속서 I에 분류된 동식물의 예 및 사용목적

- 오랑우탄(애완용), 코끼리(상아를 도장이나 악세사리로 이용), 호랑이 (뼈 등을 한방약의 원재료·강장제로, 모피를 장식품으로 이용), 코뿔소(뿔을 한방약의 원재료로 이용), 반달가슴곰(담농을 한방약의 원재료로 이용), 고래(식용), 콩고잉꼬(애완용), 대모를 포함한 모든 바닷거북(대모갑제품, 박제), 악어(피혁제품), 도롱뇽(애완용), 용상 어류 다수(캐비어), 드레곤사 홍미금용(애완용), 선인장류 다수(관상용), 난류 다수(관상용), 알로에류 다수(관상용) 등

② 부속서 II에 분류된 동식물 및 그 파생물

현재 멸종할 위기에 있지는 않지만,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

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상업적 목적의 거래라도 수출국의 수출허가서가 발급되면 수입이 가능함

부속서 II에 분류된 동물의 예와 사용목적

- 하마(어금니를 장식물이나 악세사리 원재료로 이용), 북극곰(박제), 부속서 및 계재 종 이외의 원숭이류 전체(실험용, 애완용), 부속서 및 계재 종 이외의 고양이류 전체(모피, 애완용), 부속서 및 계재 종 이외의 앵무새류 전체(애완), 아시아상자거북류 전체(애완용, 식용), 카멜레온

③ 부속서 III에 분류된 동식물 및 그 파생물

체결국이 자국의 관할 내에서 규제해야 함을 인정하고 또한 단속에 있어 다른 체결국의 협력이 필요한 종(種). 수출입 시는 원산지증명서(부속서III에 계재된 국가의 것은 수출허가서가 필요)가 필요

주) 체결국은 부속서 I의 종에 대해서 유보한 경우에는 그 종의 거래에 대해 비체결국 취급이 가능함. 일본은 현재 6종(향유고래, 망치고래, 밍크고래, 정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큰고래)을 유보하고 있음

부속서 III에 분류된 동물의 예, 사용목적

캐나다의 해마(어금니를 장식물이나 악세사리 원재료로 이용), 가나에 생식하는 종의 다수 등

□ 수입절차

○ 부속서 I의 동식물 및 그 파생물

- 이 종의 것은 수입할당품목으로 수입자는 하기의 해당 관련서류를 수입할당신청서에 첨부하여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농수산실에 제출하여 수입할당증명서를 취득함

① 학술연구용

학술연구용이라는 내용의 서약서

수입할 동식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 사육번식품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사육번식품이라는 내용의 증명서

③ 본 조약 발효 이전의 취득품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본 조약 발효 이전의 취득품이라는 내용의 증명서

- 경제산업성에서는 이 할당신청을 기초로 부속서 I에의 해당여부 확인, 그 종이 몇 번 식품인지 여부 또는 조약 발효 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확인, 수출허가서의 유효성 확인 후 수입할당증명서(수입신청서)를 교부함

- 다음에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수출허가서와 함께 수입할당증명서, 승인서를 수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함

○ 부속서 II의 동식물 및 그 파생물

① 관리당국 등이 있는 국가 등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 사전확인품목의 경우

사전확인신청서,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행한 수출허가서 등

경제산업성에서는 부속서 II에의 해당여부 확인, 수출허가서(수출 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사전확인서를 교부함.

다음에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사전확인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함.

- 사전확인품목 이외의 경우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

② 관리당국이 없는 국가 등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 해당지역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의 승인(2호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승인은 해주지 않고 있음

○ 부속서 III의 동식물 및 그 파생물

① 관리당국이 있는 국가 등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 사전확인품목의 경우

사전확인신청서,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사전확인서를 교부함

다음에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송부받은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사전확인서에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 신고함

- 사전확인품목 이외의 경우

수출국 관리당국이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수출증명서

② 관리당국이 없는 국가 등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해당지역을 선적지로 하는 경우, 경제산업장관의 승인(2호 승인)을 받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승인은 해주지 않고 있음

□ 관련기관

○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무역심사과(가공품)

무역심사과 농수산물

TEL: 03-3501-1511(代) <http://www.meti.go.jp>

워싱턴조약사무국

<http://www.cites.org>

6. 검역법

□ 법률의 목적

- 국내에 상시 존재하지 않는 전염병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매개체로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기타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주

당 법률에 있어서 ‘검역전염병’이란 다음과 같은 전염병을 말함

가. 전염병의 예방 및 전염병의 환자에 대한 의료 관련 법률(1998년 법률 제 114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류전염병(에보라출혈열, 크리미아, 콩고출혈열, 남미출혈열, 천연두, 페스트, 마르부르크 병, 라사열

나. 콜레라

다. 흑토병

라. 위에 기술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국내에 상재하지 않은 전염병 가운데 해당 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정령을 통해 정해져 있는 것

□ 법률적용

- 의사증 및 무증상병원체보유자에 대한 법률 적용
 - 상기전염병 또는 콜레라 의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염병 또는 콜레라 환자로 간주하고 당 법률을 적용

- 상기전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전염병 증상이 없어도 전염병환자로 간주하고 당 법률을 적용

○ 검역항 등

- 당 법률에 있어서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이란 각각 정령을 통해 정해지는 항구 또한 비행장을 말함

□ 입항 등의 금지

- 외국을 출항하거나 또는 외국에 기항하고 내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 내지 항공 중에 외국을 발항 또는 외국에 기항한 기타 선박, 항공기로부터 사람 및 물자를 운송한 선박, 항공기는 검역을 받기 위해서 검역구역 등 지정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 또는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는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내지는 물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역증명 또는 가검역증명 교부를 받지 않을 경우 국내에 선박, 항공기를 입항, 착륙(수)시킬 수 없음

□ 검역절차

① 신청수속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 등의 장은 해당 선박 등이 검역항 또는 검역비행장에 접근했을 때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의 유무 등,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검역소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함. 검역을 받기 전에 선박 등의 장은 검역소장에게 선박 등의 명칭 또는 등록번호, 출항지명, 기항지명,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② 검역실시

선박 등이 검역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시하는 장소에 들어갔을 경우, 검역소장은 악천후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히 검역을 개시해야 함

③ 인증

검역 또는 사전 통보로 인해 해당선박 등을 통해서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소장에 의해 검역완료증이 교부됨. 검역완료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가검역완료증이 교부됨

□ **관련기관**

○ 후생노동성건강국 결핵전염병과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7. 식물방역법

□ 법률의 목적

- 수출입식물 및 국내식물을 검역하여 식물에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고 그 만연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 및 활성화 도모

□ 법률의 개요

- 수입 식물 및 그 용기포장에는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수입금지품이 아닌지, 유해동식물이 부착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제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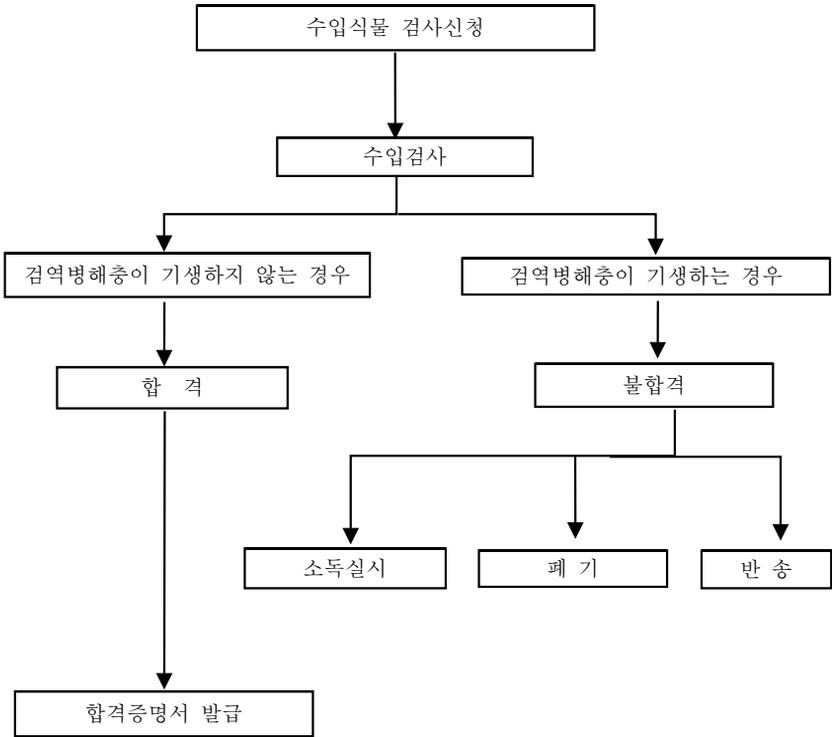
□ 대상품목

- 묘목, 구근, 절화, 생과실, 채소, 곡물, 두류, 목재, 기호식품, 향신료 등 수입 식물 등은 ①수입금지품 ②수입검사품 ③검사불요품으로 구분됨
 - ① 수입금지품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한 지역의 병해충의 기생식물 또는 병해충 자체, 흙
 - ② 수입검사품
수입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물. 검사대상이 되는 식물은 묘목, 관상용식물, 절화, 구근, 종자, 과실, 채소, 곡물, 두류, 목재, 향신료원료, 한방약원료, 기타
 - ③ 검사불요품
식물일 지라도 製材나 製茶와 같이 고도의 기술로 가공된 것

□ 관련기관

- 농림수산물 소비·안전국 식물방역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식물수입검역의 절차



수입금지지역, 식물 및 검역유해동식물

2007년 11월 20일 최종 개정

지 역	식 물	대상이 되는 검역유해동식물
1. 이스라엘, 키프로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레바논,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독일,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몰타, 구유고슬라비아, 아프리카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파나마, 온두라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버뮤다, 서인도제도(쿠바,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제외), 호주(타스마니아 제외), 하와이제도	아키, 아보카도, 아메다마노키, 올스파이스, 올리브, 카슈너츠, 키위후르츠, 티바나키요우치쿠토오, 고렌시, 석류, 자보치카바, 소라마메, 테리하보쿠, 나즈메야시, 난요오자쿠라, 웨이즈아, 포포, 마메링고, 리유우간, 레이시, 이찌지쿠속 식물, 인겐속 식물, 감속식물, 카릿사속 식물, 쿠루미속 식물, 쿠와속식물, 코즈코로바속 식물, 고흐노키속식물, 스구리속식물, 토케이소오속식물, 도비아리스속식물, 나즈메속식물, 닌멘시속식물, 바쇼오속식물(성숙하지않은 마나나 생과실을 제외), 파콰이아속식물(부표제1에 열거한 것을 제외), 반지로오속식물, 판노키속식물, 반레이시속식물, 히이라기토라속 식물, 비야쿠단속식물, 후투기속식물, 포도속식물(부표제3에 열거한 것을 제외), 후토모속 식물, 망고속식물(부표제2 및 제16에 열거한 것을 제외), 모치노키속식물, 모모타마나속식물, 와타속식물, 아카테즈과식물, 우리과식물(부표제3에 열거한 것을 제외), 선인장과 식물(부표제35에 열거한 것을 제외), 가지과식물(부표제3에 열거한 것을 제외), 장미과식물(부표제3 및 제31에 열거한 것을 제외) 및 밀감과 식물(부표제4에서 제8까지 및 제39에 열거한 것을 제외)의 생과실	지중해과실과리
2.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대만, 중국(홍콩 제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하와이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감귤류(부표제10에 열거한 것을 제외), 아세로라, 아보카도, 살구, 무화과나무, 인도메탕구, 화란딸기, 올리브, 카지유마루, 쿠로쯔구, 고렌시, 자쿠로, 산토루, 자두, 태평양호두, 테리하보투, 토마토, 배, 나즈메야시, 파콰이아(부표제1, 제11 및 제12에 열거한 것을 제외. 4의항도 같음.), 비와, 빈로오쥬, 모도(부표제32에 열거한 것을 제외), 복숭아, 모모타마나, 산복숭아, 란브탄, 류우간, 사과, 레이시(부표제13 및 제14에 열거한 것을 제외.)완피, 아카타네노키속 식물, 감속물, 가지속식물, 대추속식물, 닌멘시속식물, 판지로속식물, 감자속식물, 히로세레우스속 식물, 후투기속식물, 망고속식물(부표제15에서 제17까지 및 제36에 열거한 것을 제외. 4의항도 같음.)란사속 식물 및 아카테즈과 식물의 생과실과 성숙된 마나나 생과실	밀감과실과리중군

(다음페이지에 계속)

지 역	식 물	대상이 되는 검역유해동식물
3. 이스터 섬, 호주(타스마니아섬 제외), 파푸아뉴기니, 폴리네시아	감귤류, 아보카도, 살구, 무화과나무, 올리브, 키위, 고렌시, 버찌, 석류나무, 파리고추, 시로사포테, 자두, 토마토, 배, 나즈메야시, 파파이야, 반지로오, 비와, 포도, 마루메로, 복숭아, 사과, 감속식물, 키이치고속식물, 구와속식물, 고희노키속식물, 도케이소오속식물, 나즈메속식물, 반레이시곡식물, 후토모모속식물 및 망고속식물(부표제2에 열거한 것을 제외)의 생과실과 성숙한 바나나의 생과실	퀸즐랜드 과실파리
4.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대만, 중국,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파푸아뉴기니, 하와이 제도, 미크로네시아	참외과식물(부표제18에 열거한 것을 제외)의 생경엽 및 생과실에 강낭콩, 키마메, 사사계, 파리고추, 토마토, 가지, 파파이야, 히로세레우스속 식물 및 망고속 식물의 생과실	멜론파리
5.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인도, 키프로스, 요르단, 시리아, 중국, 터키, 파키스탄, 미얀마, 레바논, 유렵 주, 구 소비에트 연방, 아프리카, 미국(하와이 제외),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호주, 뉴질랜드	① 살구, 버찌(별표 제19에서 제21까지, 제38에 나온 것 제외), 자두(별표 제 37에 나온 것 제외), 가지, 마르멜로, 복숭아(별표 제22 및 제23에 나온 것 제외) 및 사과(별표 제 24, 25, 31 및 34에 나온 것 제외)의 생과실 및 호두의 생과실 및 핵자(별표 제26에 나온 것 제외)	코드린 나방
6.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대만, 중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브루나이, 홍콩,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캐나다 제외, 서인도제도 포함), 남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하와이 제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나팔꽃속식물, 고구마속식물 및 메꽃속식물의 생경엽 및 생피근 등의 지하부 및 카사바의 생피근 등의 지하부	개미바구미

(다음페이지에 계속)

지 역	식 물	대상이 되는 검역유해동식물
7. 중국, 북아메리카(캐나다제외, 서인도제도포함), 남아메리카, 뉴질랜드, 하와이,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나팔꽃속식물, 고구마속식물 및 메꽃속 식물의 생경엽 및 생피근 등의 지하부	고구마바구미
8. 인도, 터키, 네팔, 부탄, 유럽(알바니아 및 그리스제외), 구 소비에트 연방,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우루과이, 에콰도르, 칠레, 포클랜드제도, 페루, 볼리비아, 뉴질랜드	가지과 식물의 생경엽 및 생피근 등의 지하부	potato wart
9. 터키,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페인, 덴마크, 독일, 헝가리,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구 체코슬로바키아, 구 유고슬라비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양배추, 엉겅퀴속식물, 가지과식물의 생경엽	콜로라도 감자잎벌레
10. 이스라엘, 인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룩셈부르크, 연합왕국, 구 소비에트 연방, 알제리, 북아메리카(서인도제도 제외),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명아주속식물 및 과지과식물의 생경엽등의 지하부	감자벌레
11. 인도, 키프로스,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프랑스, 포르투갈, 몰타, 구 소비에트 연방, 카나리아제도, 미국, 캐나다, 파나마,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칠레, 포클랜드제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뉴질랜드	가지과식물의 생경엽 등의 지하부	감자낭포선충

(다음페이지에 계속)

지 역	식 물	대상이 되는 검역유해동식물
12. 아랍연방, 예멘,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미얀마, 요르단, 레바논, 유럽(네덜란드 제외), 구 소비에트연방,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리비아, 미국, 엘살바도르, 캐나다, 쿠바, 파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도미니카, 하티티, 푸에르토리코,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호주(타스마니아 제외)	가지과식물(별표제27 및 제30, 제42 및 제47에 나오는 것을 제외)의 생경엽 및 생과실	벼이삭미이라병
13. 미국, 하와이	아보카도, 알파과, 후추, 옥수수, 고구마, 사탕수수, 수박, 무, 콩, 고춧가루, 토마토, 파인애플, 호박, 메론, 낙화생, 등	감귤선충
14. 이란, 터키, 유럽, 구 소비에트 연방, 북아메리카(서인도 제도제외), 뉴질랜드	보리속식물, 밀속식물 및 호밀속식물의 경엽 및 개밀속식물의 경엽(별표 제28, 33에 나온 것 제외)	헤센파리
15. 한국, 북한 및 대만을 제외한 외국	벼, 벧짚(별표 제29에 나온 것 제외), 벼쥐 및 왕겨	벼줄기선충, 토리코코니즈, 카우다타, 발렌시아 기타 일본에서 나지 않는 검역유해동식물
16. 이스라엘, 이란, 키프로스, 요르단, 터키, 레바논,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모르드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구 체코슬로바키아, 구 유고슬라비아, 이집트, 미국, 캐나다, 파테말라, 버뮤다, 멕시코, 뉴질랜드	모과나무, 서양모과나무,	화상병균

(다음페이지에 계속)

지 역	식 물	대상이 되는 검역유해동식물
17. 예멘,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타이, 대만,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필리핀, 부탄,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아프리카카주, 미국 브라질, 파푸아뉴기니	Aeglopsis chevalieri, Atalantia missionis, Calodendrum capensis, Triphasia trifolia, Clausena indica, Citroncirus webberi, Swinglea glutinosa, Feronia limonia, Severinia buxifolia, Balsamocitrus dawei, Microcitrus australis, wampi	감귤그리닝병

별표 (조건부 수입이 허가되는 것)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9조 관계

1. 하와이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솔로종의 파파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 호주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R2E2종, 케이트종, 켄징턴종, 켄트종 및 파마종의 망고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 네덜란드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딸기,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포도, 페포계호박 및 멜론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발렌시아종, 워싱턴네블종, 토망고종 및 프론티아종의 스위트오렌지, 레몬, 포도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5. 스위스에서 운송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외의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발렌시아종, 워싱턴네블종, 토망고종 및 프론티아종의 스위트오렌지, 포도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6. 이스라엘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shamouti종, 발렌시아종의 스위트오렌지, 포도, 수하(suha)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7. 호주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발렌시아종 및 워싱턴네블종의 스위트오렌지, 레몬, 임페리얼, 엘렌데일, murcott, minneola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8. 스페인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레몬, 네블종 및 발렌시아종의 스위트오렌지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9. 삭제
10. 대만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풍강, 탕강, liutin종의 스위트오렌지, 포멜로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1. 대만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솔로종의 파파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2. 필리핀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솔로종의 파파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3. 대만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여지 (litchi)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4. 중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여지(litch)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5. 필리핀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마닐라수피종의 망고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6. 대만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Irwin종, 케이트종,

harden종의 망고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7. 타이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nang klarngwun종, nandorkmai종, pimsen daeng종, rad종의 망고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8. 중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멜론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19.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버찌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0. 캐나다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lambert종의 버찌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1. 뉴질랜드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summite종, sam종, stella종, dawson종, burlat종, bing종, lambert종, rainier종의 버찌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2.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넥타린(Nectarine)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3. 뉴질랜드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firebrite종, 판타지아종, red gold종의 넥타린(Nectarine)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4. 뉴질랜드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gala종, granny smith종, fuji종, graeburn종, red delicious종, royal gala종의 사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5.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사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6.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hartley종, payne종, franquette종의 통호두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7. 캐나다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토마토
28.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건조에 혼합된 밀집 및 벼과식물의 줄기와 잎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29. 중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벗집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0.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토마토
31. 프랑스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golden delicious종의 사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2. 대만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거봉, 이탈리아종의 포도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3. 캐나다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건조에 혼합된 밀집 및 벼과식물의 줄기와 잎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4. 호주의 타스마니아섬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후지사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5. 콜롬비아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엘로우 피타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6. 하와이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케이트종, haden종의 망고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7. 미국에서 운송되어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다젠종의 서양 자두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8. 칠레에서 운송되어 타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된 bing종의 버찌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39. 아르헨티나에서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그레이 프루트, 발렌시아종의 스위트오렌지 및 레몬의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0. 타이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망고스틴의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41. 이스라엘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트라이엄프종의 감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2. 벨기에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토마토 및 오이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43. 브라질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타미엣 킨스종의 망고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4. 호주의 타스마니아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버찌의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5. 이탈리아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타로 코종의 스위트오렌지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6. 미국으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감자의 생괴경(生塊莖)으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
47. 멕시코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토마토 생과실.

48. 인도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알폰소종 케서종, 초우사종, 번건과리종, 말리카종 및 랑글러 종의 망고 생과실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49. 하와이로부터 발송되어 기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되는 안수리 움과 식물의 생식물 지하부로 농림수산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8.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식량법)

□ 법률의 목적

- 주요 식량인 쌀이나 밀은 주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중요한 농산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곡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계획적인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및 정부에 의한 주요식량의 구입 및 수입, 매도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꾀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 안정에 기여

□ 주요식량

- 당 법률에 있어서 ‘주요식량’이란 쌀, 밀, 기타 정령으로 정해진 식량 (이를 가공하거나 조제한 것 가운데 정령을 통해 정해진 것을 포함)을 의미

□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

- ① 정부는 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수급의 정확한 예상치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쌀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 쌀 공급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축의 기동적인 운영, 적절하고 원활한 유통 확보를 도모함과 동시에 쌀의 적절한 매입, 수입 및 매도를 행함
- ② 정부는 상기생산조정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논에서의 벼이외의 작물의 생산 진흥에 관한 시책, 기타 관련시책과의 연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를 행하도록 노력함
- ③ 정부는 밀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밀 수급의 정확한 예상치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밀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한 비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밀의 적절한 수입 및 도매를 행함

□ 쌀 유통제도

- 2004년 4월에 식량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쌀 유통제도도 크게 변함. 구체적으로는 계획유통제도가 폐지됨
 - ① 쌀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에 의한 안정공급을 위한 자주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 ② 객관적인 수급정보 제공
 - ③ 공정 및 중립적인 쌀 거래시장 정비
 - ④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표시 및 검사제도 재편성
 - ⑤ 쌀 공급확보체제 구축 등 이 정비·구축됨

- 또한 ‘계획유통미’와 ‘계획외유통미’의 제도상 구별이 없어졌으며 제도상으로는 ‘민간유통미’와 비축미로서 매매되는 ‘정부미’가 됨

□ 밀 유통 특징

- 밀은 식량법 가운데 쌀과 함께 주요 식량으로써 간주되고 있으나 생산 및 유통실태 등에서 쌀과는 크게 다름. 쌀은 수요량을 넘어서 국내 생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밀의 경우 수요량의 약 90%가 수입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유통과 관련해서는 쌀의 경우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기본적으로 곡물상태로 유통되나 밀의 경우 최종적으로 빵 및 면으로서 소비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각종 가공과정을 경유한다는 특징이 있음.

□ 식량법에 근거한 납부금

미곡	292엔/kg
미곡분	321엔/kg
밀, 메슬린, 라이맥	45.20엔/kg
대맥 및 나맥	28.60엔/kg
소맥분, 메슬린분, 라이맥분	62.20엔/kg
대맥분, 나맥분	52엔/kg
대맥, 나맥의 압착 또는 플레이크	57.80엔/kg
소맥, 라이맥의 압착 또는 플레이크	80.60엔/kg
기타 가공곡물(관세정률법 별표 1104·21호 기재)	72.40엔/kg
소맥전분	99.60엔/kg
소맥 또는 라이맥의 조제품	58.80엔/kg
대맥 또는 나맥의 조제품	37.40엔/kg

□ 관련기관

-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식료부계획과

TEL: 03-3502-8111(代) <http://www.syokuryo.maff.go.jp>

9. 식품위생법

- 최근,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BSE 발생 및 잔류농약기준위반, 식중독, 식품의 위장표시 등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2003년 8월부터 개정식품위생법이 시행됨. 또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본방침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이 2003년 7월부터 시행됨

- 식품위생법의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법률 목적 개정
식품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건강보호가 목적으로 첨부됨
 -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식품의 안정성 확보 등, 식품위생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화 됨
 - ③ 식품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제 개정
식품첨가물의 사용금지기준 및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을 포함한 식품유통의 금지 등
 - ④ 검사 및 감시체제 강화
도도부현에 의한 식품감시지도계획, 국가에 의한 수입식품의 감시지도계획 등이 책정됨
 - ⑤ 음식에 의한 사고 대응강화
식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기관리체제 강화 도모
 - ⑥ 도축장법 및 식조처리사업 규제 재검토
법의 목적에 국민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취지를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가 명확화
 - ⑦ 벌칙 강화
표시의무위반 등 사업자에 대한 벌금액, 징역형의 인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행해짐

-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은 방대한 것으로 개정사항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하일부 법률 요약 및 요점,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에 관련된 개정사항을 기재함. 개정 식품위생법의 전문은 총무성 홈페이지(<http://www.soimu.go.jp/>)의 법령검색을 참조할 것

□ 법률의 목적

- 식품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

□ 법률의 개요

- 국가, 도도부현 등의 역할
 - 국가, 도도부현 및 특별구는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식품 위생에 관한 올바른 지식보급,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 식품위생에 관한 연구 추진, 식품위생에 관한 검사 능력 향상 및 식품위생의 향상과 관련되는 인재양성, 또는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가는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과 함께 연구, 수입되어지는 식품, 첨가물, 기구 및 포장용기에 대한 식품 위생에 관한 검사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 책무가 충분히 이행 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함
- 사업자 역할
 - 식품 등의 사업자는 식품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수여하고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각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식품 등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 습득, 판매식품 등의 원재료 안정성의 확보, 판매식품 등의 자주검사 실시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함

○ 대상품목

- ① 식품이란 모든 식물물을 의미함. 단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② 첨가물이란 식품제조 과정, 또는 식품의 가공 내지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 침투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사용하는 물질을 의미함
- ③ 천연향료란 동식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 또는 그 혼합물로 식품의 착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④ 기구란 음식기, 할팽도구 외에도 기타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섭취용으로 사용되며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 외에도 어떠한 사물을 의미함. 단 농업 및 수산업에서의 식품 채취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기타 도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⑤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이 넣어져서 포장되어 있는 것임

□ 수입식품의 감시체제

- 후생노동장관에 의한 수입식품의 감시지도계획 책정, 공표가 도입되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서 후생노동장관의 판단으로 검사명령을 기동적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되었음.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금지·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도부현지사 등이 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률제정으로 인해 후생노동장관도 영업금지·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음

□ 사업자의 책무

-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는 판매하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업자 책무가 규정되었음. 구체적으로는 판매식품의 자주검사, 매입처 정보의 기록과 보존, 최신 식품기술정보 수집, 식품위생지식 및 기술 습득, 원재료의 안전성 확인 및 확보 등을 거론할 수 있음

□ 국민의 의견청취

- 후생노동장관은 규격·기준의 책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후생노동장관 및 도도부현지사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공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 널리 국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었음

□ 농약 등의 포지티브리스트제

- 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리스트제도란 일정량 이상의 농약 등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제도로 2006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대상이 되는 것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 신선식품,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임. 식품첨가물은 본 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은 아니나 일반 식품으로서 유통되어 있는 것을 첨가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이 됨

□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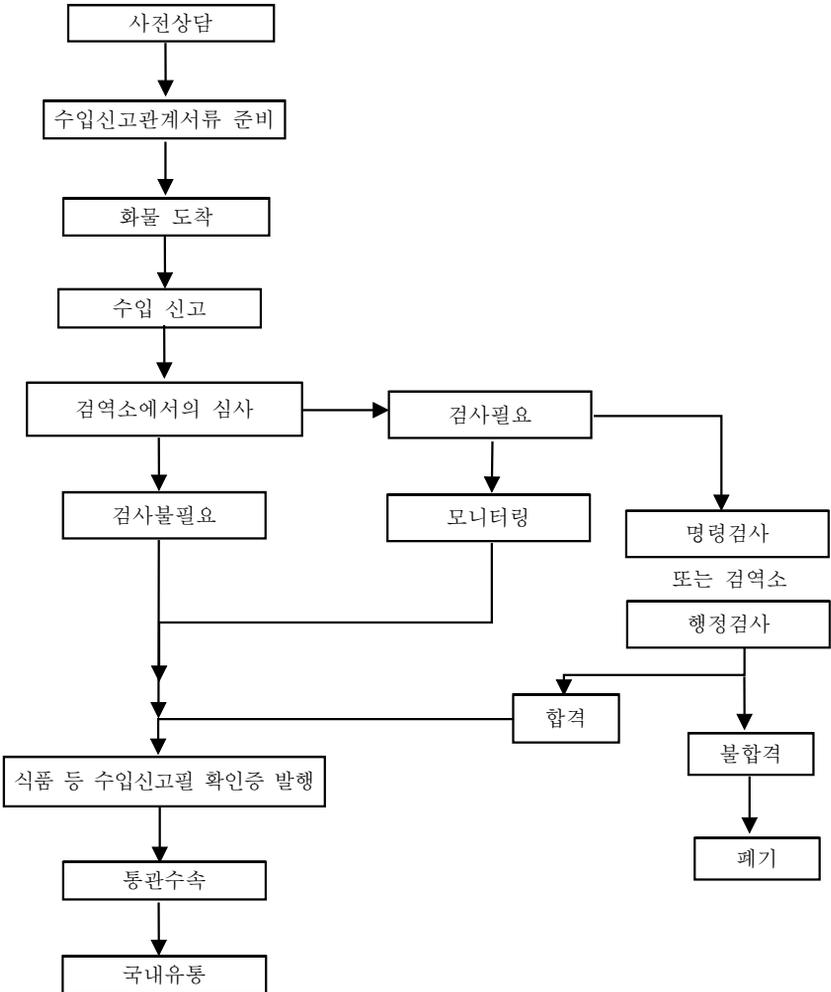
-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 및 식품의 위장표시문제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 및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서 범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칙이 강화됨

식품위생법 벌칙	
위반내용	벌칙
유해식품의 판매 금지, 지정의 첨가물 사용, 폐기명령 위반, 영업금·정지 위반	3년이하의 징역, 300만엔이하의 벌금 법인 1억엔 이하 벌금
규격기준위반식품의 판매금지 표시기준위반식품의 판매금지 (규격기준위반, 표시기준위반에 한함)	2년이하의 징역, 200만엔이하의 벌금 법인 1억엔이하의 벌금
시설기준위반, 시설개선명령위반 의사의 식중독 신고의무위반	1년이하의 징역, 100만엔이하의 벌금
임검검사거부, 허위보고 등	50만엔 이하의 벌금
등록인정기관에 관한 벌칙(예:직원의 비밀유지의무위반)	1년이하의 징역, 100만엔이하의 벌금

□ 수입신고제도

- 식품 등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을 수입하려는 취지를 후생노동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이 수입신고수속은 전국 약 31개 장소의 항구·공항 검역소에서 행해짐

수입신고제도 흐름



□ 알러지 표시

- ① 알러지 물질을 포함한 식품(특정원재료 등)은 실제의 알러지 발증수, 중독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령상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과 통지로 표시를 권장하는 것으로 구분됨

구 분	알러지 물질을 포함한 식품
식품위생법으로 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중독도, 발증수가 많은 것)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등 5품목
표시를 권장하는 식품 (발증수가 낮거나, 많아도 중독된 예가 적고, 현시점에서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	전복, 오징어, 이크라, 새우, 오렌지, 게, 키위, 소고기, 호두,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산마, 사과, 젤라틴 등 19품목

- ② 대상식품
 - 비닐이나 상자 등의 용기로 포장한 모든 가공식품이 대상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영업용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도 표시의 대상임
 - 단 점포에서 계량 판매하는 반찬류나 벌크로 판매하는 빵, 주문 판매하는 도시락 등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음. 또한 용기 포장의 면적이 30cm² 이하의 작은 사이즈는 표시가 면제됨
- ③ 표시를 필요로 하는 함유량
 - 식품알러지는 사람에 따라서는 극히 적은 양으로도 발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백질 함량이 미량일지라도 표시해야 함. 단, 가공식품 1kg에 대하여 수 mg 이하의 경우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④ 표시 예
 - 알러지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서 원재료란에 그 내용을 표시함

개별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의 표시 예

- 각 각의 원재료마다 알리지 물질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을 포함)이라 표시함

품 명: 슈크림
원재료명: 플라워페이스트(밀가루, 콘스타치, 설탕, 대두유, 기타), 계란, 우유, 설탕, 소맥분, 전분(소맥분을 포함), 소금

품 명: 감자샐러드
원재료명: 감자, 당근, 햄(계란, 돼지고기를 포함), 마요네즈(계란, 대두유를 포함), 단백질 가수분해물(돼지고기를 포함), 조미료(아미노산 등), 발색제(아초산Na), 린산Na

일괄적으로 표시되는 경우의 표시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알리지 물질을 원재료명의 마지막에 정리하여 표시하는 경우

품 명: 국수장국
원재료명: 간장, 가다랭이포, 다시마, 아미노산액, 설탕, 소금(원재료의 일부에 밀가루를 포함)

⑤ 금지되는 표시

- 다음과 같은 표시는 금지됨.
- “들어갈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 같은 「가능성표시」.
- 고가 재료(전복, 이크라, 송이버섯 등)가 마치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과 같은 표시. 함유량, 형태 등에 착안한 표시를 병기하고 그것이 주요 원재료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 관련기관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기획정보과
TEL: 03-5253-1111 <http://www.mhlw.go.jp>

10.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JAS법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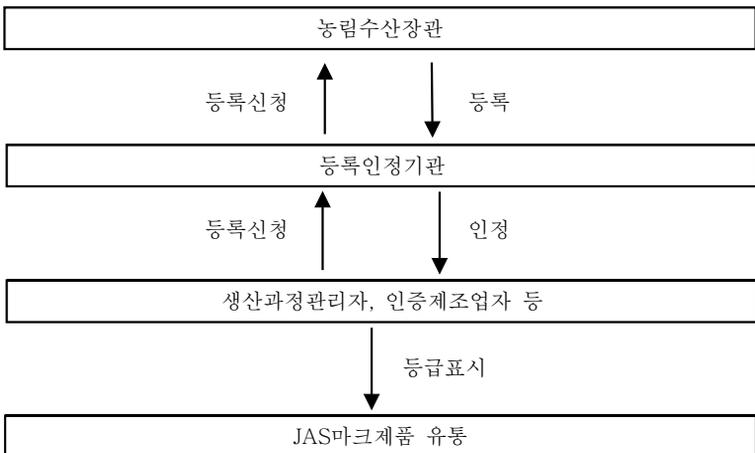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 175호(JAS법)’에 의거한 제도로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생산의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를 행함으로써 일반소비자의 선택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JAS제도는 이하와 같은 2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JAS규격제도
농림수산업장관이 제정한 일본농림규격(JAS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 품질표시기준제도
농림수산업장관이 제정한 표시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게 의무화 하는 제도

□ JAS규격제도의 개요

- JAS규격의 제정 등
 - JAS규격은 농림수산업장관이 농림물자의 종류(품목)를 지정하여 제정됨. 규격의 제정 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소비자, 생산자, 유통관계자,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농림물자규격조사회(JAS조사회)’의 의견을 경유할 필요가 있음
 - JAS규격은 일반적으로 적용 범위, 정의, 기준, 측정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의 요구의 변화에 따르기 위해, 또한 필요성이 없어진 규격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JAS규격에 대한 재검토가 5년마다 이루어짐. 재검토시에는 생산, 거래, 사용 또는 소비 현황 및 향후 전망과 더불어 국제적인 규격(코덱스규격 등)의 동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규격대상품목: JAS법에 있어서 농림물자란 주류, 의약품 등을 제외한 ①음식료품 및 유지, ②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과 더불어 이들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자(①에 거론한 것은 제외)로서 정령을 통해 정해진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물자의 경우 JAS규격을 제정할 수 있음. 제정된 JAS규격에 해당하는 품목일 경우 국내·국외 여부에 상관없이 JAS규격의 대상이 됨
- JAS규격에 의한 등급
 - 등급검사 결과, JA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JAS마크 부착여부는 제조업자 등의 의사에 따르며 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제품의 유통에도 제한은 없기 때문에 JAS마크제도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JAS마크에 의해 품질이 보증된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되어야야 비로소 이루어짐

JAS 등급 매김



○ 품질표시기준제도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JAS마크의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품질표시를 의무화시키는 품질표시기준제도가 있음
-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기준이 되는 정보의 정확한 전달 필요성으로 인해 1999년의 JAS법개정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모든 음식료품에 관한 횡단적인 품질표시기준이 규정되었음. 이외에도 음식료품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품질표시기준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음
-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농림물자의 유통형태에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이나 어느 경우에도 일반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모든 유통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음
- 품질표시기준에 의한 표시사항 : 모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이 대상이 됨

①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 가공식품 가운데 용기에 넣어져 있거나 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품질에 관하여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 등의 시명 또는 명칭 내지 주소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또한 이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 위치 중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일괄되게 표시해야 함

②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

- 신선식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표시에 대해서는 명칭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③ 수산물품질표시기준

- 신선식품 가운데 수산물의 표시와 관련하여 신선식품품질표시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표시사항 외에도 해동, 양식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④ 유전자조작 관련 표시

- 콩, 옥수수, 감자, 유채씨, 면실, 자주개사리, 참깨 및 이를 주 원

재료로 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관련 표시가 필요함

⑤ 유기식품 관련 표시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및 유기사료와 관련하여 유기JAS법이 규정되어 있음. 이들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기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감시체제와 위반에 대한 대응

① JAS규격관련

- 등록인정기관은 인증제조업자 등이 계속 인증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 및 인증제조업자 등이 마크부착 및 표시의 의무를 적절히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
- 또한 농림수산안전소비기술센터는 JAS규격 등의 업무가 정확히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인정기관의 업무 실시상황 감시를 행함과 동시에 JAS마크제품의 대상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더불어 농림수산장관은 등록인정기관(외국 포함)의 업무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할 수 있음

② 품질표기기준관련

- 지방농정국·지방농정사무소에서는 전국 슈퍼, 식품점 등의 신선식품 소매점포에 있어서 명칭, 원산지 등의 품질표시가 적정한가에 대한 여부를 일상적으로 순회조사하고 또한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표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소매점포의 매입처 제조업자 등도 조사함으로써 원산지표시가 올바른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조사 결과, 부적절한 품질표시가 확인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르는 행정조치가 취해짐. 또한 이와 같은 농림수산장관의 권한 가운데 일부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행하고 있음

- JAS제도동등국가
 - 2007년 12월 말 시점, 농림물자에 대해서 일본농림규격에 의한 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음

지정농림물자	국가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아일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필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 **관련기관**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代) <http://www.jasnet.or.jp>

11. 주세법

□ 법률의 목적

- 재정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주류에 주세율 부과

□ 주류의 정의 및 종류

- 당 법률에 있어서 ‘주류’란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말함

□ 법률의 개요

-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이며 제조소로부터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주세법은 주류를 제법 및 성상 등에 따라서 4종류·17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류에 따라서 다른 세율이 적용됨

□ 주류 및 주세 분류

- 주류 및 주세 분류는 별표의 내용과 같음

□ 법률에 의거한 면허

-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는 면허제도가 설정되어 있어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 또는 판매장별로 그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함
-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 10조에 정한 요건에 해당할 시는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 수입주류의 판매에 대해서는 ①종전부터 일반 주류소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판매소가 자기가 수입한 주류를 소매하는 경우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②수입주류도매업면허는 연평균 예상판매량이 약 6kl 이상인 것이 면허의 요건임

주류 분류	
주류분류(종류)	해당주류(품목)
발포성주류	맥주
	발포주
	기타 발포성 주류
양조주류(주)	청주
	과실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류(주)	연속식증류소주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블랜디
	원료용 알콜
	스피리츠
혼성주류(주)	합성청주
	미림
	감미과실주
	리큐르
	분말주
	잡주

(주) 기타 발포성주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주세(엔/kl)		
주류 분류	기본세율	특별세율
발포성주류 (주)	220,000엔	발포주(맥아비율 25%이상 50%미만) 178,125엔
		발포주(맥아비율25%미만) 134,250엔
		기타 발포성주류 80,000엔
양조주류	140,000엔	칭주 120,000엔
		과실주 80,000엔
증류주류	200,000엔(21도미만) (20도 이상부터는 1도당 가산액 10,000엔)	위스키 블랜디 스피리츠 → 370,000엔(37도미만) (37도이상은 기본세율)
혼성주류	220,000엔(21도미만) (20도 이상부터는 1도당 가산액 11,000엔)	합성칭주 100,000엔
		미림 및 잡주 20,000엔
		감미과실주 및 리큐르 120,000엔(13도 미만)
		분말주 390,000엔

□ 관련기관

- 국세청 과세부 주세과

TEL: 03-3581-4161(代) <http://www.nta.g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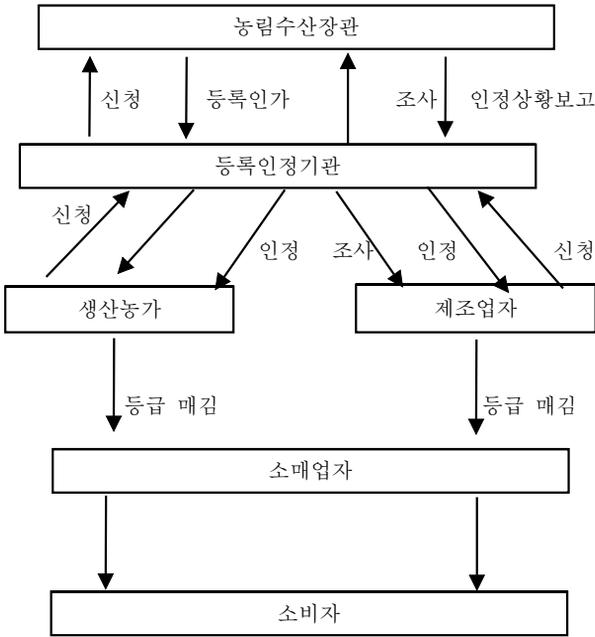
12. 유기식품

① 유기식품과 관련된 JAS 제도설정 경위

- 유기농산물 표시와 관련해서는 1992년에 ‘유기농산물 등과 관련된 청과물 등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표시의 적절화를 도모해 왔으나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시가 다수 발견되는 등 표시가 혼란되는 상태가 계속 되어옴
-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7월에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특정 JAS규격이 제정되었으며 더불어 2005년에 유기축산물 및 유기사료의 JAS규격이 제정되었음. 이로써 유기식품과 관련해서는 특정 JAS규격에 적합한가에 대한 여부를 통해 JAS마크를 부착하고 유기 JAS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기○○’, ‘오가닉○○’등의 표시를 할 수 없게 되었음

②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 인정기관의 농림수산물 등록
JAS제도에 의거한 유기인증을 행하고자 하는 인정기관은 농림수산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결과, 합격할 경우 등록인정기관 으로서 등록됨
- 인증사업자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을 행하고자 하는 농가 및 제조업자는 등록인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등록인정기관은 인정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행하고 인정함. 등록인정기관은 인정한 사업자(인증사업자)가 인정 후에도 JAS규격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 1년에 1회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행함
- 인증사업자에 의한 등급 매김
인정을 받은 유기농산물의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 제조업자는 생산, 제조과정의 기록 등에 따라서 스스로 생산, 제조한 유기식품의 등급을 매기고 JAS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함



출처: 농림수산성 ‘유기식품 검사인증제도에 대해서’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seido_a.pdf

③ 유기식품의 생산기준(요점)

- 유기농산물

퇴비 등에 의한 토작(土作)을 행하고 파종, 이식의 전2년, 및 재배 중(다년생작물의 경우 수확 전 3년 이상) 원칙적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은 사용하지 않음
 유전자조작 종묘는 사용하지 않음

- 유기가공식품

화학적으로 합성된 식품첨가물 및 약제사용은 극력 기피함
 원재료는 물과 식염을 제외하고 95%이상이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이어야 함
 약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된 공장에서 제조해야 함
 유전자조작 기술을 사용하지 않음

- 유기축산물

사료는 주로 유기농산물을 부여함

야외에서 방목하는 방법을 택하는 등,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사육해야 함

항생물질 등을 질병예방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유전자조작기술을 사용하지 않음

주 1. 상기요점은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에 대해서’로부터 발췌

주 2.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의 생산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하기 홈페이지 참조

유기농산물 :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kikaku_a.pdf

유기가공식품 :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kikaku_a.pdf

유기축산물 : http://www.maff.go.jp/j/jas/jas_kikaku/pdf/yuuki_kikaku_a.pdf

④ 해외로부터의 유기식품 수입

- 2종류 수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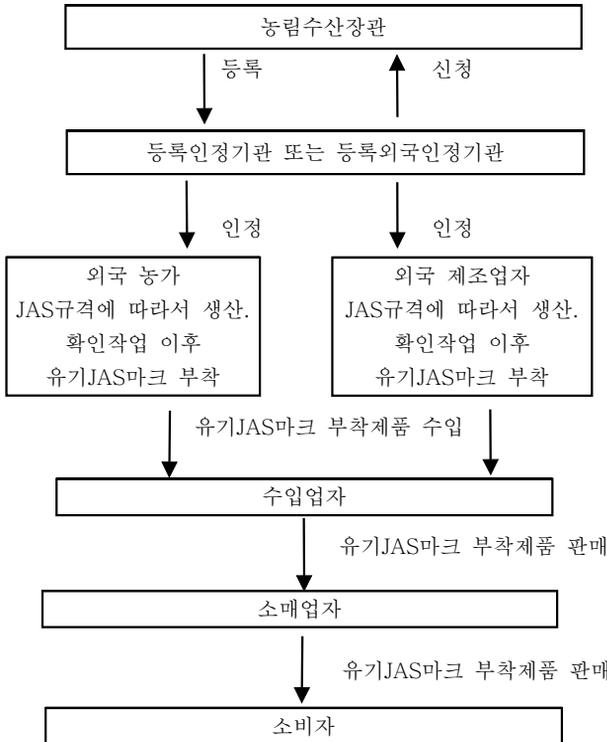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한 ‘유기○○’, ‘오가닉○○’ 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수입품의 경우도 동일함. 수입된 유기식품에 등급 매김 표시를 하고 ‘유기○○’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음

- 일본의 등록인정기관 또는 등록외국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국제조업자 등이 생산, 제조한 유기식품에 유기JAS마크를 부착하고 유통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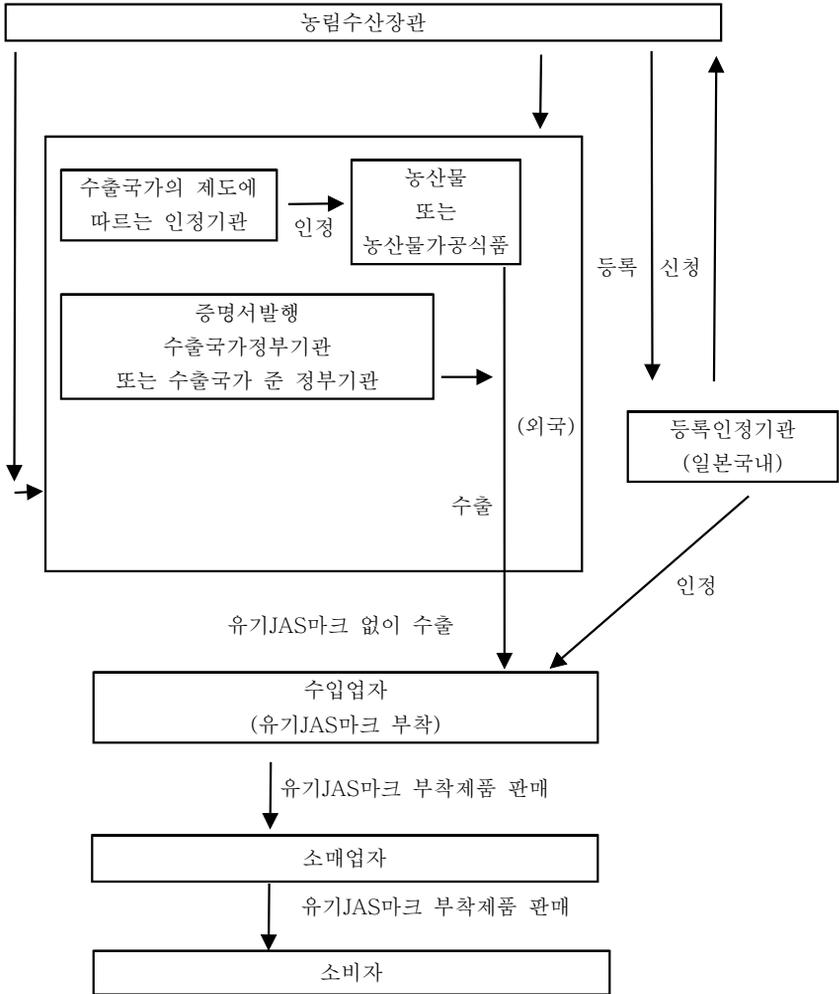
- 이 경우에는 유기JAS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생산농장 및 가공공장)는 자사에서 등급을 매기고 유기JAS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일본의 수입기업은 유기JAS마크가 부착된 농산물·가공식품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유기○○’등의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음

- 2007년 12월말 시점에서 일본의 농림수산성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외국인정기관은 11기관이 있기 때문에 유기JAS제품의 생산·판매를 행하고자 하는 외국 사업자는 이와 같은 등록외국인정기관 또는

해외에서의 인정활동을 행하고 있는 일본 인정기관에 신청하여 유기 JAS인증사업자가 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JAS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지정농림물자에 해당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한함)
- 이 경우 일본 정부가 JAS에 의한 등급제도와 동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정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더불어 해당국가의 유기인정을 받은 유기농산물·유기농산물가공식품으로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출품에 유기JAS마크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일본의 유기JAS인정수입기업이 유기JAS마크를 부착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 JAS제도와 동등한 등급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 지정농림물자에 대해서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등급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것으로 인정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하 ‘유기JAS 동등국가’라고 칭함)

지정농림물자	국가명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아일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 유기JAS가공식품 생산원료
 -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JAS인정유기농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업자는 유기JAS인정원료 내지 유기JAS동등국가의 인정기준에서 인정된 원료를 사용해야 함
 - 유기JAS동등국가에서 JAS인정유기농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사용원료는 반드시 유기JAS인정품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국가의 유기기준에 따라서 인정된 원료도 사용 가능. 한편 JAS인정유기축산물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료가 되는 축산동물은 생산되어지는 국가가 유기JAS동등국가,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 여부와 상관없이 원료는 모두 유기JAS에 의해 인정된 것이어야 함 (축산물은 지정농림물자가 아니기 때문임).
 - 수출업자에 의한 소분류
 -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은 생산한 사업자가 직접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와 수출업자의 손을 경유하여 수출되어지는 경우로 총 2가지 경우가 있음.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① 생산사업자가 생산한 것을 소분류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생산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을 자사에서 재포장하여 유기JAS마크를 재부착하고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는 유기JAS소

분류업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음

② 생산사업자가 생산한 것을 바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생산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을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유기JAS소분류업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음

○ 유기JAS제품의 동등국가경유 수출

-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농산물, 농산물가공식품)을 유기JAS동등국가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을 바로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동등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수출되어지는 유기JAS제품에는 반드시 유기JAS마크가 부착

② 유기JAS동등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을 동등 국가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동등국가에서 생산된 유기JAS제품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유기JAS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음

□ 관계기관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안전소비기술센터

TEL: 048-600-2371(代) <http://www.famic.go.jp>

- (사)일본농림규격협회

TEL: 03-3249-7120(代) <http://www.jasnet.or.jp>

13. 유전자조작작물

□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대상

- 표시의무대상은 콩, 옥수수, 감자, 채종, 면실, 알과파 미 첨채로 총 7종류의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가공공정이후에도 유전자조작 DNA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긴 단백질이 잔존하는 32개의 식품군 및 고오레인산유전자조작콩 및 이를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등임

□ 표시의무

- ① 기존의 것과 조성, 영양가 등이 동등한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으로 가공공정이후에도 조작된 DNA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단백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 또는 ‘유전자조작불분별’ 표시를 해야 함
- ② 조작된 DNA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단백질이 가공공정에서 제거·분해되어 식품속에 잔존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유전자조작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음
- ③ 비유전자조작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유전자조작이 아님을 표시할 필요가 없음. 단, 임의로 ‘유전자조작이 아닌 것을 분별’, ‘유전자조작이 아님’ 등의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

□ 임의표시

- ① 기름 및 간장 등의 가공식품
기름 및 간장 등 조작된 DNA 및 이로 인해 발생한 단백질이 가공공정에서 제거·분해되어 최신 검출기술을 통해서도 단백질의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단 임의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

② 비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분별생산유통관리가 행해진 비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조작 관련 표시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 단, 임의로 ‘유전자조작이 아님’을 밝히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

□ 표시의무가 과해지지 않는 것

○ 표시 대상이더라도 이하의 경우는 표시할 필요가 없음

- ① 음식료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시식 가판대와 같이 설비를 설치하여 시식하게끔 하는 경우
- ② 신선식품을 생산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신선식품을 설비를 설치하여 취식하게끔 하는 경우

의무표시대상품목(2007년 12월 시점)

가공식품(32식품군)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
(1) 두부류 및 유부	콩
(2) 냉동두부, 비지	콩
(3) 낫토	콩
(4) 두유류	콩
(5) 된장	콩
(6) 콩자반	콩
(7) 콩 통조림	콩
(8) 콩고물	콩
(9) 볶은 콩	콩
(10) (1)~(9)까지의 것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콩
(11) 콩(조리용)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콩
(12) 콩가루를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콩
(13) 콩단백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콩
(14) 가지꽃콩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콩
(15) 콩 발아식품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옥수수
(16) 옥수수 과자	옥수수
(17) 콘스터치	옥수수
(18) 팝콘	옥수수
(19) 냉동 옥수수	옥수수
(20) 옥수수 통조림	옥수수

(다음 페이지에 계속)

가공식품(32식품군)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
(21) 콘플라워를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옥수수
(22) 콘그리츠를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옥수수
(23) 옥수수(조리용)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옥수수
(24) (16)~(20)까지의 것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옥수수
(25) 감자 과자	감자
(26) 건조감자	감자
(27) 냉동감자	감자
(28) 감자전분	감자감자
(29) (25)~(28)까지의 것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감자
(30) 감자(조리용)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감자
(31) 알파파를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알파파
(32) 칩채(조리용)을 주된 원재료로 하는 것	칩채

출처: 후생노동성

유전자조작농산물 상업재배국(2006년 시점)

국가	농산물
미국	콩, 옥수수, 면실, 채종, 알파파
아르헨티나	콩, 옥수수, 면실
브라질	콩, 면실
캐나다	채종, 옥수수, 콩
인도	면실
중국	면실
파라과이	콩
남아프리카	옥수수, 콩, 면실
우루과이	콩, 옥수수
필리핀	옥수수
호주	면실
루마니아	콩
멕시코	면실, 콩
스페인	옥수수
콜롬비아	면실
프랑스	옥수수
이란	-
온두라스	옥수수
체코	옥수수
포르투갈	옥수수
독일	옥수수
슬로바키아	옥수수

주1. 출처: ISAAA(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 및 후생노동성

2. 농산물명은 일본에서의 유전자조작 표시에 관한 대상농산물 가운데 ISAAA의 자료에 의해 해당국가에서 상업재배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 **분별생산유통관리에 대해서**

- ① 분별생산유통관리란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비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생산, 유통 및 가공의 각 단계에서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하여 분별관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명확하게 한 관리 방법을 말함
- ② 분별생산유통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산지, 작목,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입량이 가장 많은 벌크 운송된 북미산의 대두 및 dent종의 옥수수에 대해서 (재)식품산업센터가 작성한 분별생산유통관리의 「유통매뉴얼」이 있으므로 참고로 할 것

동 매뉴얼에서는 생산, 유통 및 가공의 각 단계마다의 확인사항, 관리방법 등에 대해 쓰여 있고 위 사항에 근거하여 확인한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 양식 예, 증명서 발행 절차, 증명서의 보관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음

- ③ 매뉴얼과 다른 분별생산유통관리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른 분별생산유통관리와 동등한 그 이상의 신뢰성이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함

□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일정 혼입**

- ① 대두 및 옥수수에 5%이하 혼입되어 있는 경우는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일정혼입」이라고 규정
- ② 혼입률이 5%이하인 경우는 분별생산유통관리가 적절히 행해졌다는 전제 아래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혼입률을 나타내는 것임. 분별생산유통관리를 행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유전자조작의 혼입률이 5% 이하인 경우나 의도적으로 유전자조작농산물을 혼입한 경우는 기준 제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혼입」이라고 볼 수 없음

□ 표시대상품목에 분별생산유통관리를 한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을 사용한 경우의 표시방법

- ① 원재료만을 기재하거나 해당원재료의 다음에 괄호를 붙여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을 사용했음을 기재
- ② 가공식품으로 원재료 1종류만 이용한 경우(예: 볶은 콩가루)는 원재료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명칭만을 기재하든가 해당원재료명을 기재하고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붙여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을 사용했음을 기재

□ 유전자조작하지 않았음을 기재하는 방법

- ① 「유전자조작이 아님」이라고 기재하는 표시방법은 임의지만 기재할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야 함
- ② 일괄표시 사항란에 표시하는 경우는 원재료명의 다음에 괄호를 치고 「유전자조작이 아님」 등과 같이 분별생산유통관리를 이행한 비유전자조작농산물을 이용했다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음

유전자조작에 관한 표시 예

○ 콩(대두)를 원료로 하는 식품의 예

- ① 유전자조작을 분별하지 않은 대두를 원료로 하는 경우(의무표시)

명칭	OO
원재료명	대두(유전자조작불분별), OO
내용량	30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냉장보관, 10도이하에서 보존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② 비유전자조작 대두를 원료로 하는 경우

명칭	OO
원재료명	간콩, 대두, OO
내용량	1k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또는

명칭	OO
원재료명	간콩, 대두(비유전자조작 분별), OO
내용량	1k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의 예

① 유전자조작을 분별하지 않은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경우(의무표시)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전분(옥수수(유전자조작 불분별)), OO
내용량	1k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② 비유전자조작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경우(임의표시)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식물유지, 콘스타치, OO
내용량	8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또는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식물유지, 콘스타치(비유전자조작을 분별), OO
내용량	8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감자(감자전분, 타피오카전분)를 주원료로 하는 식품의 예

① 유전자조작을 분별하지 않은 감자를 원료로 하는 경우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감자전분(유전자조작 불분별), OO
내용량	10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또는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전분, 감자(유전자조작 불분별), OO
내용량	10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② 유전자 조작감자를 분별하지 않은 감자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전분, (감자(유전자조작 불분별), 타피오카),OO
내용량	8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또는

명칭	OO
원재료명	밀가루, 감자전분(유전자조작 불분별), 타피오카전분, OO
내용량	80g
품질보존기간	O년 O월 O일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서 보관
제조사	OO 식품주식회사 도쿄 지요다구 OO

□ 관계기관

- 유전자조작식품의 품질표시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은 시설에서 받고 있음
-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관하여
 -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 소비안전기술센터본부(매주 수요일)
TEL: 048-600-2366
 - 사단법인 일본식품 위생협회(매주 월요일)
TEL: 03-3403-4127
 - 인근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전국 8개 소재)의 표시지도과
- 전반적인 표시 시스템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준심사과
TEL: 03-5253-1111(代) 내선 2444, 03-3595-2341(야간직통),
FAX: 03-3595-2341
 - 인근 각보건소 위생담당과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표시·규격과식품표시·규격감시실
TEL: 03-3502-8111(代) 내선 4486 또는 4487, 03-3502-7804(야간직통)
FAX: 03-3502-0594
- 분별생산유통관리의 「유통 매뉴얼」
재단법인 식품산업센터
TEL: 03-3224-2361
- 식품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농림수산성 소비자실
TEL: 03-3591-6529
FAX: 03-3502-0594
- 식품표시 신고
프리다이얼 0120-481-239

14. 농약단속법

- 2002년 여름 이후, 무등록농약이 전국적으로 유통,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밝혀짐에 따라서 국민의 '식'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 이로 인해 2002년 12월에 농약단속법이 개정되어 무등록농약 제조, 수입, 사용 금지(판매는 기존부터 금지), 농약사용기준에 위반되는 농약사용 금지, 벌칙 강화 등이 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이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식품 내에 잔류가 확인되어도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대해서 일정량을 넘는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잔류기준제도(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2006년 5월에 시행됨

□ 법률의 목적

- 이 법률은 농약에 대한 등록 제도를 설치하여 판매 및 사용의 규제 등을 행함으로써 농약의 품질 적절화 및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 확보를 도모하여 농업생산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환경 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률의 개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해서 농림수산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 이의 판매가 불가능함.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어지는 농약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농약에 대해서 농림수산장관의 등록을 받을 수가 있음
이 경우, 해당농약의 수입업자는 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음. 단 외국의 신청자는 신청 시 국내관리인(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을 선임해야 함

□ **대상품목** : 농약

□ **수입판매등록**

- 수입판매등록은 품종마다 약효, 약해, 독성 및 잔류성 등과 관련된 시험성적서류와 농약 견본(200g 이상)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성 또는 독립행정법인 농약검사소에 신청하여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이후, 농림수산장관에 의한 등록 허가를 받음. 등록된 농약이외는 수입·제조·판매할 수가 없음. 또한 동일유효성분일 경우에도 제형(분형·분제·유제·액제 등)이 상이하거나 제조회사, 수입회사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개의 등록이 필요.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임. 또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영업소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음

□ **용기·포장 표시**

- 농약은 동 법에 따라서 농림수산장관의 농약등록을 취득한 농약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적절히 사용해야 함
-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농약 종류, 명칭
 - 유효성분 등의 종류 및 함유량
 - 내용량
 - 등록번호
 - 적용충해의 범위 및 사용방법
 - 저장상 또는 사용상의 주의
 - 최종 유효 기간

□ **포지티브리스트제도**

- 이 제도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등에 대해서 일정량을 넘는 농약

등이 잔류하고 있는 식품의 파념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써 2006년 5월에 시행되었음.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주요 식품에는 잔류농약기준치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 등, 농약의 잔류치가 없는 경우는 농약의 잔류량과 상관없이 규제 대상 외였음. 그러나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시행된 이후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농산물 포함)에는 원칙적으로 기준 0.01ppm이 적용됨

□ 관계기관

- 농림수산성 생산국 농약자재과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독립행정법인 농약검사소
TEL: 0423-83-2151(代) <http://www.acis.go.jp>

15. 식품안전기본법

- 광우병 발생, 잔류농약기준위반, 식품 위장표시 등, 최근 식품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식품 안정성 확보의 기본이 되는 법률 ‘식품안전기본법’이 200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법률의 목적

-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 기타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해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및 소비자의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시책의 책정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의 개요

-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기본인식
 -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 인식 하에 조치가 강구되고 이행되어져야 함(제 3조)
- 식품공급과정에서의 적절한 처리
 - 농림수산물의 생산부터 식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국내외에서의 식품공급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식품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강구되어짐으로써 이행되어져야 함.(제 4조)
-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미연방지
 -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국민의 의견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과학적 지견에 따라서 강구되어짐으로써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국민의 건강으로의 악영향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이행되어져야 함.(제 5조)

○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 ①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동물용 의약품, 기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림어업의 생산자재, 식품(원료 또는 재료로서 사용되어지는 농림수산물 포함), 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기타 사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제1의적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과정의 각 단계에 있어서 적절히 강구해야할 책무를 가짐
- ② 식품관련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사업활동에 관한 식품, 기타 품목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함
- ③ 식품관련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사업활동에 관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제 8조)

○ 소비자의 역할

-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함 (제 9조)

○ 식품건강영향평가 실시

-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관련해서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인 내지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그러한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는 식품이 인체에 섭취됨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식품건강영향평가’라고 칭한다)가 시책별로 이행되어져야 함. 단 다음에 거론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① 해당시책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행할 필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할 때
- ②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명백할 때
- ③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는 억제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애시당초 식품건강영향평가를 행할 여유가 없을 때(제 11조)

○ 정보 및 의견교환 촉진

-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의 책정과 관련해서는 해당시책의 책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시책에 관한 정보 제공, 해당 시책에 대한 의견을 논할 기회 부여, 기타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제 13조)

□ 대상품목

- 모든 음식물(약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외)

□ 관계기관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

TEL: 03-5251-9130 <http://www8.cao.go.jp/shokuhin/>

16. 식육기본법

- 국민이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추기 위해 식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 ‘식육기본법’이 2005년 6월 10일 제정되었으며 200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됨

□ 법률의 목적

- 근래의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요로운 인간성을 갖출 수 있는 식육을 추진해야 함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함을 감안하여 식육과 관련하여 기본이념을 제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식육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식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및 향후에 걸쳐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의 생활과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의 개요

① 가정에서의 식육추진

- 보호자 및 자녀의 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건전한 식습관의 확립을 도모
- 가족요리교실 등, 바람직한 습관을 배우면서 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건강미 등 적절한 영양관리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 제공
- 임산부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도 등

② 학교 및 보육소, 시설 등의 식육추진

- 학교, 보육소 등에 있어서 매력 있는 식육을 추진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과 건전한 심신의 성장을 도모
- 학교, 보육소 등에 있어서 식육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작성

- 식육의 지도에 부합한 직원 배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의 의식 계발 등, 지도체제의 정비
 -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학교급식 실시
 - 농장 등에서의 실습 및 식품의 조리 등 다양한 체험활동 등
- ③ 지역에서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 지역에 있어서 영양, 식습관, 식료의 소비와 관련된 식생활의 개선을 추진하여 생활 습관병을 예방
-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 책정 및 보급계발
 - 식육의 전문적 지식 보유자 양성 및 활용
 - 보건소 및 시정촌 보건 센터 등에서의 식육 보급계발
 - 의료기관 등에서의 식육 보급계발
 - 식품관계사업자 등이 행하는 식육 추진을 위한 활동 지원 등
- ④ 식육추진운동 전개
- 국민, 교육관계자, 농림어업자, 식품관련사업자 등에 의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식육활동의 전국전개를 도모
- 식육 추진을 위한 행사 실시
 - 중점적, 효과적으로 식육 추진에 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기간 지정
 - 불란티어와의 연대 등
- 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림어업의 활성화 등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를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
- 농림수산물의 생산, 식품 제조, 유통 등에서의 소비자에 의한 체험활동 촉진
 - 학교급식 등에서의 농림수산물 지산지소 촉진
 - 식품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생이용 등
- ⑥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등
- 전통적인 행사 및 관례와 연결된 식문화, 지역의 특색있는 식문화 등, 전통있는 우수한 식문화 계승을 도모

- 풍요로운 식문화 계승·발전
- 식문화에 관한 지식 보급 등

⑦ 식품의 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의 제공 및 국제교류의 추진

국민의 적절한 식생활의 선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육에 관한 국제교류를 추진

-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등의 조사연구
-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등의 정보 수집·제공
- 해외에서의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등의 정보수집
- 식육에 관한 연구자 등의 국제교류 및 해외와의 정보교환 등

□ 대상품목

- 모든 음식물

□ 관계기관

- 내각부 식육추진실
TEL: 03-5253-2111
-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사무국
TEL: 03-5251-9230 <http://www.fsc.go.jp>
- 문부과학성 스포츠·청소년국학교건강교육과
TEL: 03-5253-4111(代) <http://www.mext.go.jp>
- 후생노동성 건강국 총무과 생활습관병대책실
TEL: 03-5253-1111(代) <http://www.mhlw.go.jp>
-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소비자정보관
TEL: 03-3502-8111(代) <http://www.maff.go.jp>

자료출처

- 동 보고서는 한-일 FTA에 대비하여 일본의 농업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출처 자료 중 공개된 자료를 발췌·번역 및 편집하여 펴낸 보고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책자 및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농림수산통계 2007년판 / 농림수산성 통계부 발행
- 채소생산출하통계 2006년판 / 농림수산성 통계부 발행
- 과수생산출하통계 2006년판 / 농림수산성 통계부 발행
- 식품산업통계연보 2007년판 / 재단법인 식품산업센터 발행
- 농림수산물수입법규 2007년판 / JETRO
- 주요국 농산물 수입제도 2006 일본편 / 농수산물유통공사

【참고사이트】

- 농림수산성(<http://www.maff.go.jp/>)
- 임야청(<http://www.rinya.maff.go.jp/>)
- 수산청(<http://www.jfa.maff.go.jp/>)
- 재무성(<http://www.mof.go.jp/>)
-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
- 경제산업성(<http://www.meti.go.jp/>)
-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http://www.esri.go.jp/>)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http://www.ipss.go.jp/>)
- 일본은행(<http://www.boj.or.jp/>)
- 외식산업 종합조사연구센터(<http://www.gaishokusoken.jp/>)
- 일본 자동차판매기 공업회(<http://www.jvma.or.jp/>)
- 일본 통신판매협회(<http://www.jadma.org/>)
- 일본햄·소시지공업협동조합(<http://hamukumi.lin.go.jp/>)
- 일본 후쿠오카시 중앙도매시장(<http://www.city.fukuoka.lg.jp/nousui/chuohoroshiurishijo/sitemap.html>)

일본 농업현황과 수입제도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자료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팀

02-6300-1391 ~ 1400

02-6300-1609

www.at.or.kr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신고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